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3. 12.

국가인권위원회

제 출 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3년 10월 22일 귀 기관과
체결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12.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책임연구원	이정열
선임연구원	이선수
선임연구원	황성수
선임연구원	홍순정

목 차

1. 조사 개요	1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2. 조사의 범위 및 내용	8
3. 조사 연구 방법 체계	9
3-1. 조사 방법별 Process	10
1) 조사방법별 조사대상	10
2-1) 일대일 면접조사 과정	10
2-2) 방문조사(자기기입 방식) 과정	10
3) 우편조사 과정	11
4. 조사 응답자 특성	13
가. 일반국민	13
나. 시민단체	15
다. 언론단체	16
라. 국회의원	17
마. 법조인	18
바. 사형집행참여자	19
5. 조사 항목	20
6.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	23

II. 결과 요약24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25
2.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8
3. 죄목별 법정최고형으로서의 사형에 대한 의견 30
4. 사례를 통해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31
5. 사형제도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33
6. 사형제도의 형벌 부합성 및 범죄예방효과 35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38
8. 사형수의 권리에 대한 인식 40
9. 사형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43
10. 오관가능성 48
11. 사형제도와 피해자 구제 방법 50

III. 조사를 통한 사형제도 개선방향53

IV. 조사 결과62

제1장 일반국민편63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64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64
나.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점 66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66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67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68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68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70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70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71
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	74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75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76
3. 세계 사형제도 추세 및 특징	77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77
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의 특징	78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79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79
나.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80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80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81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83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84
사. 법조항의 표현	85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86
자. 사형집행 방법	88
5.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88
가. [사례1]	88
나. [사례2]	90
다. [사례3]	92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94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96
가. 인간의 기본권	96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98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98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99
가.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99
나.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101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02

제2장 시민단체편 104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05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05
나. 사형제도가 폐지시, 예상되는 점	106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107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107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108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109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110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110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111
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	114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114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115
3. 국민들이 느끼는 세계 사형제도 추세 및 특징	116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116
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의 특징	117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118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118
나.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119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119
라.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120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121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122
사. 법조항의 표현	123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123
자. 사형집행 방법	124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125
가. [사례1]	125
나. [사례2]	126
다. [사례3]	127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129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130
가. 인간의 기본권	130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131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132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33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34

제3장 언론종사자편 135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36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36
나. 사형제도가 폐지시, 예상되는 점	137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138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138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139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140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142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142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143
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	145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146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146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147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147
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의 특징	148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149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149
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150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 시기에 대한 의견	150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151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152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제공에 대한 의견	154
사. 법조항의 표현	154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155
자. 사형집행 방법	156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157
가. [사례1]	157
나. [사례2]	158
다. [사례3]	160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162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164
가. 인간의 기본권	164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165
다.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166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67
가. 오판 가능성에 대한 의견	167
나. 오판가능성 인한 사형제도 폐지	168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68
10.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	169

제4장. 국회의원 편 171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72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72
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경우 예상되는 점	173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174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174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175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176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177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177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178
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의 수	180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181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182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183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184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184
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184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185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186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187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188

사. 법조항의 표현	188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189
자. 사형집행 방법	189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190
가. [사례1]	190
나. [사례2]	192
다. [사례3]	193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195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197
가. 인간의 기본권	197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198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199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00
가.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200
나. 오판가능성 인한 사형제도 폐지	201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01

제5장. 법조인 편

204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05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05
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예상되는 점	207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207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208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208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209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211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211
나.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 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	212
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213
라.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의 수	216
마.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217
바.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218
사. 사형집행과 범죄예방의 효과 관계	219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220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220
나. 사형제도 폐지국의 특징	221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222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222
나.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222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 시기에 대한 의견	223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224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225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한 의견	227
사. 법조항의 표현	227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228
자. 사형집행 방법	228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230
가. [사례1]	230
나. [사례2]	231
다. [사례3]	233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235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237
가. 인간의 기본권	237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237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238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39
가.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239
나. 현재 우리나라의 오판율	240
다.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241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42

제6장. 사형집행참여자편 -----244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45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45
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예상되는 점	247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247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248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249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249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251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251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252
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의 수	254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255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256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257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257
나. 사형폐지 국가들의 특징	258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258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258
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259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260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261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262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264
사. 사형수들의 수용태도	264
아. 법조항의 표현	265
자.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266
차. 사형수에 대한 면회 허용	267
카. 사형집행 방법	268
타. 사형집행 참관 경험	269
파. 사형집행 참관에 대한 의견	270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271
가. [사례1]	271
나. [사례2]	272
다. [사례3]	274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275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278
가. 인간의 기본권	278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278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280
8. 오관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81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82
별첨. 설문지	284

표 목 차

II. 결과요약

〈 표-1 〉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5
〈 표-2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이유	27
〈 표-3 〉 설문 유형별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9
〈 표-4 〉 ‘법정최고형으로서의 사형’에 대한 반대율	30
〈 표-5 〉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폐지율)	32
〈 표-6 〉 사형제도와 국가의 사회문화적 현실과의 관계	34
〈 표-7 〉 사형제도의 형벌부합성과 범죄예방효과	36
〈 표-8 〉 생명권에 대한 인식	39
〈 표-9 〉 사회정의·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40
〈 표-10 〉 사형수의 권리에 대한 인식	41
〈 표-11 〉 교화 태도 비교	42
〈 표-12 〉 사형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43
〈 표-13 〉 적절한 사형집행 방법	44
〈 표-14 〉 사형집행시기	45
〈 표-15 〉 1998년 이후 정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평가	47
〈 표-16 〉 오판가능성	48
〈 표-17 〉 실제 오판율에 대한 예상	49
〈 표-18 〉 피해자 가족의 구제 방법	51
〈 표-19 〉 사형수 가족의 구제 방법(복수응답,	52

IV. 조사결과

제1장 일반국민편

〈 표-1 〉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64
〈 표-2 〉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67
〈 표-3 〉 사형수의 가족을 피해자로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견	69
〈 표-4 〉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71
〈 표-5 〉 사형제도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72
〈 표-6 〉 문화수준인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73
〈 표-7 〉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75
〈 표-8 〉 사형제도가 형벌로서의 적합성	76
〈 표-9 〉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77
〈 표-10 〉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78
〈 표-11 〉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	81
〈 표-12 〉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	82
〈 표-13 〉 사형수의 수용 방법	83
〈 표-14 〉 국가적 차원의 교정·교화프로그램 제공 및 교화 가능성	85
〈 표-15 〉 법조항의 표현	86
〈 표-16 〉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일 공지 반대 이유	87
〈 표-17 〉 [사례1]에서의 사형제도 존폐 여부	89
〈 표-18 〉 [사례2]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91
〈 표-19 〉 [사례3]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93
〈 표-20 〉 사형반대율 및 대체형벌	96
〈 표-21 〉 인간의 기본권	97
〈 표-22 〉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98
〈 표-23 〉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99
〈 표-24 〉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100
〈 표-25 〉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 폐지 의견	101
〈 표-26 〉 사형제도의 존폐 및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03

제2장 시민단체편

〈 표-1 〉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05
〈 표-2 〉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108
〈 표-3 〉 사형수의 가족을 피해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109
〈 표-4 〉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11
〈 표-5 〉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112
〈 표-6 〉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113
〈 표-7 〉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114
〈 표-8 〉 사형제도가 형벌로써의 적합성	115
〈 표-9 〉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116
〈 표-10 〉 사형제도 채택여부에 대한 국제적 추세	117
〈 표-11 〉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	120
〈 표-12 〉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	121
〈 표-13 〉 사형수에게 국가적 차원의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제공	122
〈 표-14 〉 [사례1]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125
〈 표-15 〉 [사례2]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126
〈 표-16 〉 [사례3]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128
〈 표-17 〉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명.....	130
〈 표-18 〉 인간의 기본권	131
〈 표-19 〉 사회정의,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132
〈 표-20 〉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34

제3장 언론중사자편

〈 표-1 〉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36
〈 표-2 〉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139
〈 표-3 〉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141
〈 표-4 〉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42
〈 표-5 〉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143
〈 표-6 〉 우리나라 문화적,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144
〈 표-7 〉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145
〈 표-8 〉 사형제도가 형벌로서의 적합성	146
〈 표-9 〉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147
〈 표-10 〉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148
〈 표-11 〉 신속한 사형집행에 대한 의견	151
〈 표-12 〉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	152
〈 표-13 〉 사형수의 수용 문제	153
〈 표-14 〉 법조항의 표현	155
〈 표-15 〉 [사례1]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157
〈 표-16 〉 [사례2]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159
〈 표-17 〉 [사례3]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161
〈 표-18 〉 사형반대율 및 대체형벌	164
〈 표-19 〉 인간의 기본권	165
〈 표-20 〉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166
〈 표-21 〉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167
〈 표-22 〉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68

제4장 국회의원편

〈 표-1 〉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72
〈 표-2 〉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176
〈 표-3 〉 우리나라 문화적,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179
〈 표-4 〉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181
〈 표-5 〉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와의 관계	182
〈 표-6 〉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185
〈 표-7 〉 사형집행을 안한 정부에 대한 의견	186
〈 표-8 〉 [사례1]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 여부	191
〈 표-9 〉 [사례2]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192
〈 표-10 〉 [사례3]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194
〈 표-11 〉 주요 범죄별 사형반대율 및 대체형벌	197
〈 표-12 〉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199
〈 표-13 〉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200
〈 표-14 〉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201
〈 표-15 〉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02
〈 표-16 〉 여론조사시 사형폐지의견이 높을 경우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03

제5장 법조인편

〈 표-1 〉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05
〈 표-2 〉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208
〈 표-3 〉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210
〈 표-4 〉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211
〈 표-5 〉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	212
〈 표-6 〉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213
〈 표-7 〉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 여부	214
〈 표-8 〉 우리나라 사회의 불안정도와 사형유지관계	215

〈 표-9 〉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217
〈 표-10 〉	사형제도가 형벌로써의 적합성	218
〈 표-11 〉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219
〈 표-12 〉	사형집행과 범죄예방 효과와의 관계	220
〈 표-13 〉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별 증감 상황	221
〈 표-14 〉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223
〈 표-15 〉	흉악범의 사형 집행 시기에 대한 의견	224
〈 표-16 〉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	225
〈 표-17 〉	사형수와 일반수용자의 수용 문제	226
〈 표-18 〉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제공 및 교화 가능성	227
〈 표-19 〉	사형집행 방법	229
〈 표-20 〉	[사례1]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230
〈 표-21 〉	[사례2]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232
〈 표-22 〉	[사례3]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234
〈 표-23 〉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명	236
〈 표-24 〉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238
〈 표-25 〉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239
〈 표-26 〉	오판가능성 평가	240
〈 표-27 〉	현재 우리나라의 오판율	241
〈 표-28 〉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 폐지 동의 여부	242
〈 표-29 〉	사형제도의 존폐 및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43

제6장 사형집행참여자편

〈 표-1 〉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45
〈 표-2 〉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248
〈 표-3 〉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250
〈 표-4 〉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251
〈 표-5 〉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252
〈 표-6 〉 우리나라 문화적,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253
〈 표-7 〉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255
〈 표-8 〉 사형제도가 형벌로서의 적합성	255
〈 표-9 〉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256
〈 표-10 〉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별 증감 상황	257
〈 표-11 〉 사형수의 집행시기	260
〈 표-12 〉 흉악범의 사형집행 시기	261
〈 표-13 〉 사형집행을 안한 정부에 대한 의견	262
〈 표-14 〉 사형수와 일반수용자의 수용 문제	263
〈 표-15 〉 사형수의 교화 정도 평가	265
〈 표-16 〉 법조항의 표현	266
〈 표-17 〉 사형집행 전 면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	268
〈 표-18 〉 [사례1]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271
〈 표-19 〉 [사례2]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273
〈 표-20 〉 [사례3]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274
〈 표-21 〉 사형반대율 및 대체형벌	277
〈 표-22 〉 인간의 기본권	278
〈 표-23 〉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279
〈 표-24 〉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280
〈 표-25 〉 오판가능성에 대한 평가	281
〈 표-26 〉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282
〈 표-27 〉 사형제도의 존폐 및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283

I. 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의 범위 및 내용
3. 조사연구방법체계
4. 조사응답자 특성
5. 조사항목
6. 실사설계(Fieldwork Design)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생명형으로서의 사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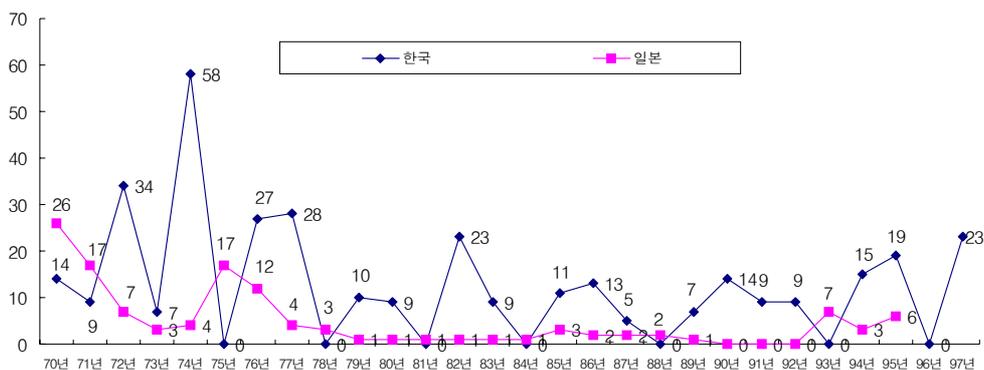
- 우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 (헌법 제110조 제4항)하고 있는 사형은 생명형으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임

- 일단 형이 집행되면 설사 잘못된 집행이라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형벌임

○ 형사 정책의 중요한 쟁점 현안으로서의 사형제도

- 우리나라와 같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사형집행 건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의 사형집행건수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1심 판결에서의 사형선고 건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음

< 그림 1> 한·일간 사형집행 건수 비교 (단위:건)



-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형폐지론이 우세함

- 현재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전세계 195개국 중에서 112개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일본 등 83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음(2003년 4월 현재)
- 완전폐지한 국가 이외에도 사형의 범위를 특수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가 16개국, 군법이나 전시(戰時) 등에만 사형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가 14개국, 사형제도는 있지만 최근 10년간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던 국가가 24개국으로 명목상으로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많음
- 국내에서도 2001년도 여·야 국회의원 150여명이 서명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함 이는 국회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사형제도 폐지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음을 엿 볼 수 있음

사형존폐론에 대한 주장

사형폐지론	사형존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성 - 인도주의 - 위하력의 부존재 - 오판문제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구제 불가능 - 사형의 교화개선 기능의 부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의 법적 확신 - 흉악범에게는 필요악 - 사회방위를 위한 불가피성 - 오판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고 오판의 경우는 극히 드문 예 - 헌법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0대 현안과제 중의 하나

- 국가인권위원회가 새정부에 제출한 10대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음
 - 국가보안법 개폐
 -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

-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사형제도 개선
- 보호감호제도 개선
-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 외국인 노동자 인권
- 인권관련 협약 중 주요 미가입 협약 및 UN인권 협약 유보사항
-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
-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 방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10대 현안과제 중 사형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일반국민과 시민단체, 언론인, 법조인, 종교인, 교도관 및 기타 사형집행과 관련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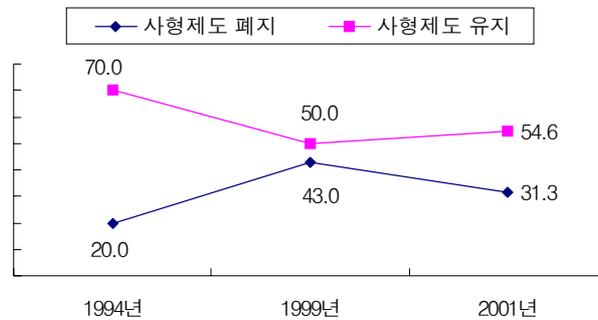
○ 기존 조사의 문제점

-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각 방송사 및 언론사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함
-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조사 당시의 사회적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칫 인기투표식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아래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
- 1994년 초의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도의 존치를 찬성하는 사람이 70%가량 되었고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은 고작 20%밖에 되지 않았음 또한, 1999년 10월 한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43%로 종전보다 근본적으로 증가하였고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도 50%로 5년 전보다 근본적으로 감소함 2001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사형제도의 폐지는 31.3%, 반대는 54.6%로 나타남

- 사형제도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제도에 대한 즉자적이고 단편적인 찬반여부보다 논리적 근거가 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림 2>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 추이



○ 이번 조사의 핵심적인 내용

- 객관적인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총1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인 설문을 작성하였음
- 기존의 조사처럼 조사대상을 일반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 언론인 및 교도관 종교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데 의의가 있음
- 사형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찬반의견 및 찬반에 대한 이유뿐만 아니라 전문가 심층조사결과 도출된
 -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대한 의견

- 피해자 및 사형수 가족에 대한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 사형이 법정최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찬반 의견 및 대체 형벌
- 사형집행 시기 및 사형집행 방법에 대한 의견
- 사형수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 기타 의견

등의 여러 의견들을 폭넓게 설문에 반영하여 과거 조사에서처럼 시대적 분위기에 휩쓸려 의견이 달라지는 상황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함

-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 및 사형수의 가족을 위한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아직 공론화된 적이 없으나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이 부분에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함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 절차

- 국제사형폐지연맹위원회 피터 호지킨슨 영국대표는 사형제도의 폐지논의 과정은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 동의를 구하고 ➡ 대체형벌에 대하여 연구하고 ➡ 사형제도 찬성론자 설득에 필요한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 사형제를 폐지한 외국의 경험과 구체적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의 존치 이유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국민의 법감정

- 일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 가정파괴범 등 강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사형제도가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할 때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하는 쪽과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상존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정황적·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조사의 목적

-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 사형수 가족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사형 대체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사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집단으로부터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

2. 조사의 범위 및 내용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방법	조사 기간
일반국민	일반국민 1,064명	면접조사	2003,10.22~2003.12.10
시민단체	시민단체상시근로자260명	우편조사/전화조사	2003,10.22~2003.12.10
언론인	신문/통신사-127명 방송사 - 153명	우편조사/전화조사	2003,10.22~2003.12.10
국회의원	국회의원 100명	면접조사	2003,10.22~2003.12.10
법조인	법관-113명 검사-138명 변호사-105명	우편조사/면접조사	2003,10.22~2003.12.10
교도관,교정위원, 의무관	◎ 교도관 서울구치소 - 21명 대전교도소 - 25명 부산교도소 - 21명 광주교도소 - 19명 대구교도소 - 20명 ◎ 교정위원 기독교 - 18명 불교- 23명 천주교 - 56명 ◎ 의무관 - 55명	면접조사/우편조사	2003,10.22~2003.12.10

1. 교도관 :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사형수를 포함한 수용자를 관리 치안에 대한 업무 수행하는 자
2. 교정위원 : 사형수를 포함한 수용자를 교화, 교정하는 일을 포함하여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의무관 :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조사 연구 방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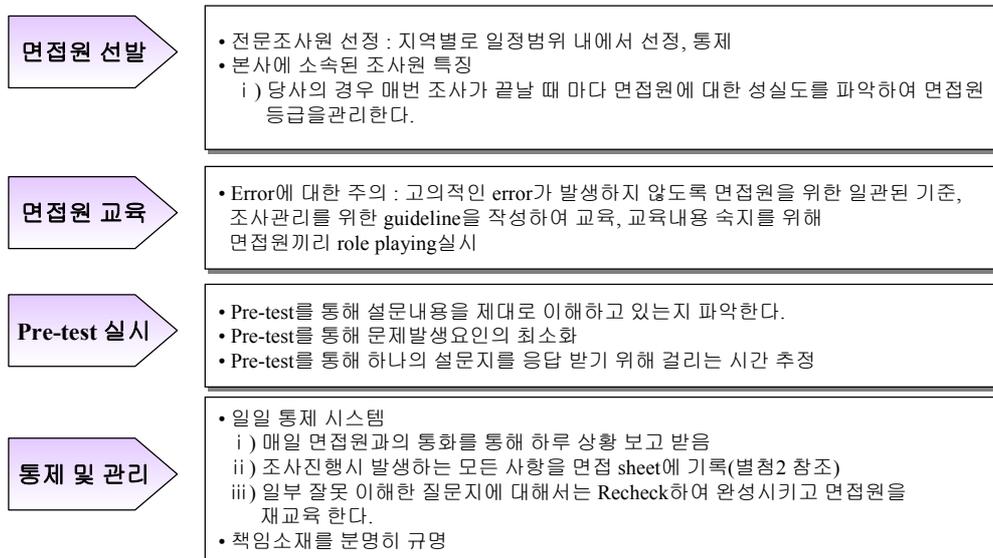
	방 법	내 용
1단계	기존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 관련 연구 논문 - 사형제도 관련 법조문 - 사형제도 관련 외국 연구 사례 - 사형 판결 사례 연구 - 기타
2단계	전문가 Brain Stor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주제 추출
3단계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 존치론자 : 3명 - 폐지론자 : 3명 - 관련전문가:2명 - 교도관 :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 존치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수렴 -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 - 설문 주제별 항목 추출
4단계	설문지 자문 및 감수	최종 설문지 감수(e-mail, 팩스 등)
5단계	설문 수행 및 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한 사형제도의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

3-1. 조사 방법별 Process

1) 조사방법별 조사대상

- 일대일 면접조사 : 일반국민
- 방문조사(자기기입 방식) : 국회의원, 변호사, 교도관, 의무관, 언론인
- 우편조사 : 법관, 검사, 시민단체, 교정위원,

2-1) 일대일 면접조사 과정



2-2) 방문조사(자기기입 방식) 과정

- 방문조사 대상자 중 교도관과 의무관은 교도소나 구치소를 직접방문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관과 당사 담당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취지 등을 설명한 후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함

- 국회의원의 경우는 담당연구원과 전문조사원이 한 조가 되어 국회의
원 집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변호사, 언론인은 사전에 조사원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직접방문
하여 조사를 실시함

3) 우편조사 과정

1) 명부 입수 및 확인

: 조사에 필요한 명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공문을 이용하여 확보할 예정임

2) 설문작성 담당자 확인

- 리스트에 의해 사회 인사들의 주소변경 여부 및 설문작성 담당자 확인 작업을 실시함.
- 이 작업은 전화로 진행되며 진행요원은 조사 담당연구원을 중심으로 조사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교육된 전문 진행요원에 의하여 진행됨.
- 경험에 의하면 1일 평균 30명 정도의 확인이 가능하며, 진행 요원들은 본인이 최초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설문지가 회수될 때까지 관리를 지속하게 됨.

➔ 이 과정은 조사자료의 Quality확보 및 정확한 응답률의 산정, 효율적인 조사 관리에
필수적인 과정임.

3) 설문조사의 진행

- STEP 1 : 설문지는 먼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담당자에게 미리 전달함.
- STEP 2 : 1차 설문 발송 후 대상자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남.
 - 1) 질문지를 방치해 놓고 있음
 - 2) 질문지를 폐기함
 - 3) 아주 소수만이(약 5% 이내) 자발적으로 작성을 시도함
 - ➔ 1)의 경우 : 독려전화
 - 2)의 경우 : 재발송(재발송 비율이 거의 200%에 가까움)
 - 3)의 경우 : 설문지를 주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4) 설문지 Visual Editing 후 누락질문 확인

- : 설문지 에디팅 후 누락질문 및 비논리적 응답에 대하여 확인함.
이 과정은 담당 연구원과 담당 실사감독원에 의하여 진행되며, No Answer, Don't Know 여부를 확인함.
- : 조사원이 직접 면접으로 진행한 질문지의 경우는 Validity Test를 동시에 진행함.

5) 본격적인 visual editing 및 coding

- 검증이 완료된 설문지는 코딩이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인 visual editing이 선행되어야 한다. editing manual은 사전에 작성되어 코더들에게 교육한다.
- open문항에 대한 코딩은 코딩 전에 응답빈도와 응답내용을 사전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구원의 연구 담당자와 본 사의 담당 연구원의 상호 협의 하에 Categorizing한다.
- 코딩의 방식은 자료의 양, 코딩작업의 정확성, raw data의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코딩 가이드는 원칙적으로 그동안의 결과에 따르며 설문지의 확정과 동시에 작성되어 editing과 코딩시 일관적인 기준하에 이루어지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조사원의 통제 및 관리

- 실사의 책임은 당사에서 우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 조사원을 직접 실사 책임자가 총괄적인 실사관리 및 중앙통제 기능을 한다.
- 조사전체의 수행과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배부 및 회수 상황에 관한 세부적인 공정진도표를 작성하여 매일 보고한다.

4. 조사 응답자 특성

가. 일반국민(N=1,064)

구 분	내 용			
1) 성별	남자 49.9% 여자 50.1%			
2) 연령	만 24세 이하	25.9%	만 40-44세 이하	13.6%
	만 25-29세 이하	13.3%	만 45-49세 이하	7.8%
	만 30-34세 이하	12.9%	만 50-54세 이하	8.2%
	만 35-39세 이하	14.0%	만 55-59세 이하	4.3%
3) 거주지	서울	28.2%	충남	3.5%
	경기	19.0%	경북	3.5%
	부산	8.7%	대전	3.4%
	대구	5.4%	충북	3.4%
	전남	5.4%	광주	2.9%
	인천	5.1%	울산	2.3%
	경남	3.9%	강원	1.8%
	전북	3.8%		
4) 응답자종교	없음	42.8%	천주교	8.6%
	기독교	26.7%	기타	0.2%
	불교	21.8%		
5) 응답자 학력	대학원졸업이상	3.0%	고졸	43.2%
	대졸	48.3%	중졸이하	5.5%
6) 응답자직업	사무직	25.4%	자영업	10.3%
	학생	21.8%	전문직	6.5%
	주부	17.9%	무직	2.5%
	판매/서비스/영업직	12.0%	기타	3.6%
7) 응답자 월평균소득	150만원미만	22.6%	300-350만원미만	7.8%
	150-200만원미만	23.0%	350-400만원미만	4.1%
	200-250만원미만	19.3%	400만원 이상	4.8%
	250-300만원미만	12.4%		

<일반국민 조사 표본과 모집단 비교>

구 분	응답자 특성	표본분포(%)	모집단 분포(%)
성별	남 자	49.9	50.8
	여 자	50.1	49.2
연령별	20대 이하	39.2	37.3
	30대	26.0	26.5
	40대	21.4	22.3
	50대	12.5	13.8
지역	서울	23.5	23.2
	부산	8.7	8.4
	대구	5.4	5.6
	인천	5.1	5.5
	광주	2.9	3.0
	대전	3.4	3.1
	울산	2.3	2.3
	경기	19.0	19.4
	강원	1.8	3.1
	충북	3.4	3.1
	충남	3.5	3.7
	경북	3.5	5.6
	경남	5.4	6.3
	전북	3.8	3.9
전남	5.4	3.9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나. 시민단체(N=260명)

구 분	내 용 (n=260명)			
1) 성별	남자 48.1% 여자 51.9%			
2) 연령	만 24세 이하	5.4%	만 40-44세 이하	8.8%
	만 25-29세 이하	26.5%	만 45-49세 이하	5.4%
	만 30-34세 이하	30.8%	만 50-54세 이하	1.5%
	만 35-39세 이하	16.9%	만 55-59세 이하	1.2%
	만 60세 이상	3.5%		
3) 조사지역	서울	73.5%	광주	0.4%
	경기	17.7%	대전	0.4%
	전북	3.1%	울산	0.4%
	인천	2.3%	경남	0.4%
	전남	1.2%	제주	0.8%
4) 응답자 종교	없음	48.1 %	천주교	11.5%
	기독교	28.5 %	기타	1.5%
	불교	10.4 %		
5) 응답자 학력	대학원졸업이상	27.7 %	고졸	8.5 %
	대졸	63.5 %	중졸이하	0.4 %
6) 응답자 월 평균 소득	150만원미만	78.8%	300-350만원미만	1.9%
	150-200만원미만	10.8%	350-400만원미만	1.2%
	200-250만원미만	4.6%	400만원 이상	1.5%

다. 언론단체(N=278명)

구 분	내 용 (n=278명)			
1) 성별	남자 85.6% 여자 14.4%			
2) 연령	만 24세 이하	4.3%	만 40-44세 이하	21.9%
	만 25-29세 이하	12.2%	만 45-49세 이하	18.0%
	만 30-34세 이하	16.2%	만 50-54세 이하	5.8%
	만 35-39세 이하	16.5%	만 55세 이상	5.1%
3) 조사지역	서울	43.9%	부산	2.9%
	강원	13.7%	전남	2.5%
	경남	7.2%	대전	2.2%
	전북	6.8%	울산	2.2%
	경북	4.3%	인천	1.4%
	광주	3.6%	충남	1.1%
	대구	3.2%	제주	1.1%
	충북	3.2%	경기	0.7%
4) 응답자의 종교	없음	39.9 %	천주교	12.2%
	기독교	24.8 %	기타	2.5%
	불교	18.7 %		
5) 근무처	방송사	55.0 %	신문/통신사	45.0 %

라. 국회의원(N=100명)

구 분	내 용 (n=100명)			
1) 성별	남자 96.0% 여자 4.0%			
2) 연령	만 35-39세 이하	2.0%	만 50-54세 이하	19.0%
	만 40-44세 이하	5.0%	만 55-59세 이하	16.0%
	만 45-49세 이하	16.0%	만 60세 이상	42.0%
3) 소속구지역	서울	21.0%	강원	1.0%
	부산	4.0%	충북	2.0%
	대구	5.0%	충남	4.0%
	인천	6.0%	경북	9.0%
	광주	3.0%	경남	6.0%
	대전	2.0%	전북	2.0%
	울산	1.0%	전남	4.0%
	경기	13.0%	비례대표	16.0%
	제주	1.0%		
4) 응답자 종교	기독교	39.0%	천주교	22.0%
	불교	15.0%	없음	24.0%
5) 소속정당	한나라당	49.0%	새천년 민주당	25.0%
	열린우리당	21.0%	비교섭단체	5.0%
6)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8.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8.0%
	행정자치위원회	6.0%	윤리특별위원회	6.0%
	건설교통위원회	11.0%	통일의교통상위원회	6.0%
	문화관광위원회	10.0%	보건복지위원회	2.0%
	재정경제위원회	7.0%	환경운동위원회	5.0%
	교육위원회	5.0%	정무위원회	3.0%
	여성위원회	6.0%	법제사법위원회	3.0%
	산업자원위원회	7.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6.0%		

<국회의원 조사 표본과 모집단 비교>

구 분	소속	표본분포(%)	모집단 분포(%)
교섭단체별	한나라당	49.0	54.2
	새천년민주당	25.0	22.9
	열린우리당	21.0	17.3
	비교섭단체	5.0	5.5

마. 법조인(N=356명)

구 분	내 용 (n=356명)			
1) 성별	남자 95.2% 여자 4.8%			
2) 연령	만 25-29세 이하	3.7%	만 45-49세 이하	12.1%
	만 30-34세 이하	28.7%	만 50-54세 이하	3.9%
	만 35-39세 이하	28.9%	만 55-59세 이하	2.0%
	만 40-44세 이하	18.3%	만 60세 이상	2.5%
3) 조사지역	서울	24.2%	경기	7.9%
	부산	9.8%	강원	4.5%
	대구	9.6%	충북	3.9%
	인천	8.1%	경남	8.4%
	광주	5.9%	전북	5.3%
	대전	8.4%	전남	0.8%
	울산	2.8%	제주	0.3%
4) 응답자의 종교	기독교	21.1%	기타	2.2%
	불교	21.1%	없음	41.3%
	천주교	14.3%		
5) 직무	법관	31.7%	변호사	29.5 %
	검사	38.8%		

바. 사형집행참여자(N=264명)

구 분	내 용 (n=264명)			
1) 성별	남자 86.0% 여자 14.0%			
2) 연령	만 25-29세 이하	8.7%	만 45-49세 이하	17.4%
	만 30-34세 이하	10.2%	만 50-54세 이하	10.6%
	만 35-39세 이하	15.5%	만 55-59세 이하	9.8%
	만 40-44세 이하	19.3%	만 60세 이상	8.3%
3) 조사지역	서울	6.1%	강원	3.8%
	부산	11.4%	충북	2.3%
	대구	14.4%	충남	6.1%
	인천	0.8%	경북	4.9%
	광주	10.2%	경남	4.5%
	대전	11.0%	전북	1.9%
	울산	0.8%	전남	4.2%
4) 응답자종교	경기	16.3%	제주	1.5%
	기독교	18.2%	기타	1.1%
	불교	25.0%	없음	26.9%
5) 직무	천주교	28.8%		
	교도관	40.2%	교정위원	45.0 %
	의무관	39.0%		

5. 조사 항목

(1)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

-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 존·폐 이유
- 사형제도 폐지시 예상점
- 사형제도의 존폐와 문화·사회현실과의 관련정도
- 극단적 상황에서의 사형제도 존폐

(2)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

- 국민들이 느끼는 현재 사형제도 폐지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
- 사형제도 폐지국의 특징
- 사형제도와 형벌의 목적과의 부합성
- 사형제도와 범죄 예방 효과와의 관계
- 국민들이 느끼는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수
-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한 정부의 태도 평가
- 사형수와 일반 수용수의 수용 문제
- 국가적 차원의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 제공 및 기대 효과
- 사형집행 방법
-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 제안
-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의견

(3)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 사례 1 제시하여 해당경우의 사형 존폐 및 그 이유
- 사례 2 제시하여 해당경우의 사형 존폐 및 그 이유
- 사례 3 제시하여 해당경우의 사형 존폐 및 그 이유
- 사형수의 집행시기
-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주요 죄명을 제시 후 사형찬반과 그에 합당한 대체 형벌

(4) 생명권에 대한 인식

- 인간의 기본이 되는 권리
 -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
 -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 오판의 가능성
 -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주장
-

(5)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범조항의 표현
 -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일자 공지 여부
 -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의견
 -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주장
-

(6) 응답자 특성

- 성별
 - 연령
 - 거주지역
 - 종교
 - 학력
 - 직업
 - 월평균 소득
-

※ 언론인 대상 질문

- 언론 보도와 범죄예방의 효과
 - 사형집행 과정 언론 공개 여부
 - 흉악범죄의 언론공개가 형벌에 영향을 미칠 시 평가
-

※ 국회의원 대상 질문

- 여론조사 시 사형폐지율이 높은 경우 사형폐지 동의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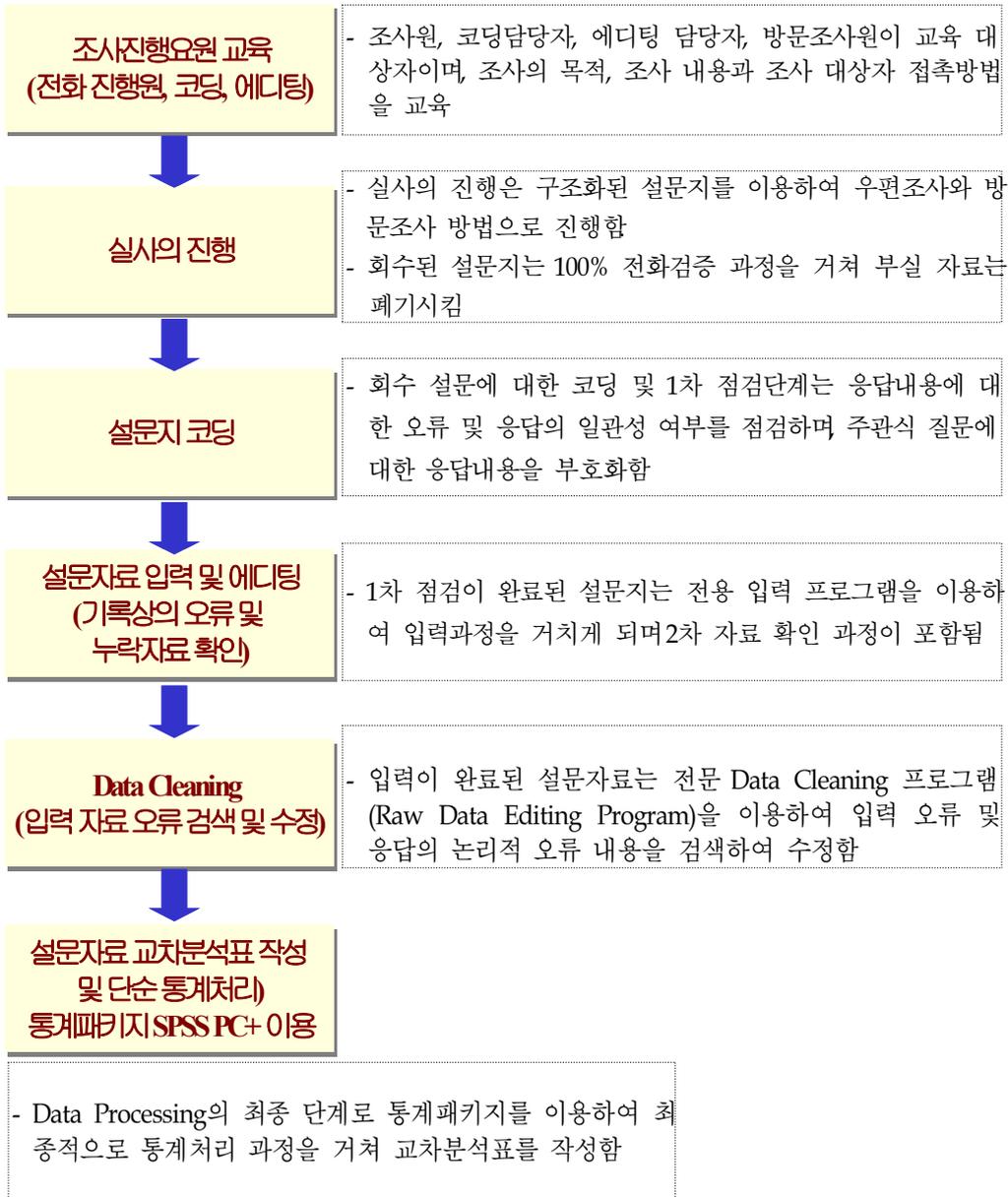
※ 법조인 대상 질문

-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 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
 - 사형제도 폐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안전성 여부
 - 사형집행과 범죄예방효과와의 관계
 - 우리나라 재판의 오판율
-

※ 사형집행참여자 대상 질문

- 사형집행 전 사형수와의 면회 허용 문제
 - 사형수의 수용태도
 - 사형집행 참관 경험 유무 및 집행 후 생활의 변화
 - 사형집행 시 교화된 사형수
 -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

6.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



II. 결과 요약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2.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3. 법정 최고형으로서의 사형에 범죄별
4. 사례를 통해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5. 사형제도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6. 사형제도의 형벌 부합성 및 범죄예방효과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8. 사형수의 권리에 대한 인식
9. 사형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10. 재판 가능성
11. 사형제도와 피해자 구제방법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논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01년에는 국회의원 150여명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특별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일까? 일반국민들과 달리 각계 각층의 의견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아직 일반국민들의 법감정은 사형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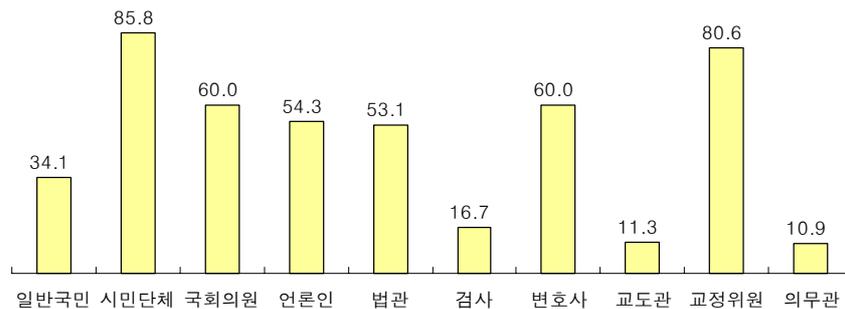
< 표-1 >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당장 폐지되어야함	언젠가는 폐지되어야함	법질서유지를 위해 존속되어야 하지만 선고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함	더강화되어야함
일반국민	1,064	13.2	20.9	57.7	8.3
시민단체	260	60.8	25.0	14.2	-
국회의원	100	29.0	31.0	40.0	-
언론인	278	23.0	31.3	42.1	3.6
법관	113	19.5	33.6	46.9	-
검사	138	5.8	10.9	77.5	5.8
변호사	105	27.6	32.4	40.0	-
교도관	106	3.8	7.5	61.3	27.4
교정위원	103	56.3	24.3	19.4	-
의무관	55	3.6	7.3	74.5	14.5

일반국민의 경우는 57.7%가 '법질서유지를 위해 존속되어야 하지만'

선고나 집행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당장 폐지되어야 하거나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폐지의견이 34.1%로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언론인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중론을 피력한 응답자가 전체의 약 40~42%로 나타난 데 반해 사형제도를 '당장 또는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두 집단이 모두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언론인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법조인 중에서는 법관과 변호사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검사는 대조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와 교도관, 의무관은 의견이 비슷했는데 이들은 신중론을 주장하는 비율이 각각 77.5%, 61.3%, 75.3%로 높은 반면 폐지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은 약 10~16%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도관과 의무관의 경우는 사형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정위원과 시민단체의 경우는 80% 이상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집단의 경우는 종교 교리에 따라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제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그림-1 >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 향후 폐지] 응답 비율(%)



교정위원의 경우는 그동안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교정 및 교화활동을 통해 사형수도 일반수용자와 동일하게 교정 및 교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론자들은 나름대로의 존폐 이유가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폐지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형벌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또한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갱생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오관가능성' 문제를 이유로 많이 들고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오관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법조인보다는 법조인의 경우 더 이 문제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형존치론자들은 존치 이유를 '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범죄 예방효과 및 죄에 대한 댓가 등의 의견을 존치 이유로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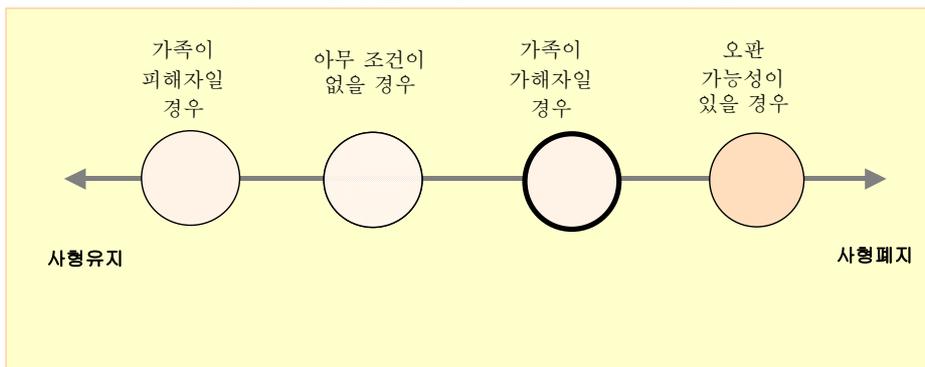
< 표-2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이유 (%)

응답자구분	사형제도 폐지 이유			사형제도 찬성 이유		
	생명권 침해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함	오관가능성	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범죄예방 효과 있음	인과응보
일반국민	52.8	39.8	32.0	52.1	34.2	33.0
시민단체	82.1	20.6	48.9	35.1	29.7	51.4
국회의원	85.0	18.3	38.3	87.5	27.5	12.5
언론인	60.9	23.8	39.7	56.7	24.4	30.7
법관	80.0	33.3	78.3	88.7	60.4	43.4
검사	52.2	26.1	60.9	71.3	53.0	54.8
변호사	81.0	19.0	26.1	78.6	38.1	42.9
교도관	25.0	58.3	25.0	71.3	37.2	46.8
교정위원	71.1	38.6	27.7	75.0	35.0	20.0
의무관	83.3	16.7	66.7	65.3	22.4	42.9

2. 제한적 사형제도¹⁾에 대한 의견

본 조사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로 질문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집단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족이 범죄 피해자 가족을 가정할 경우 사형제도 폐지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으며 자신의 가족이 가해자 가족을 가정할 경우는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보다는 보다 더 완화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관가능성을 고려할 경우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은 폐지 쪽으로 더 기울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그림-2> 상황별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사형을 직접적인 살인과 관련된 범죄에만 적용하고 정치범 등과 같은 직접적인 살인과 관련없는 범죄(정치범, 공안사범 등)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유지 입장을 제시한 집단이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제시한 집단보다 더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형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현행 사형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60 ~ 8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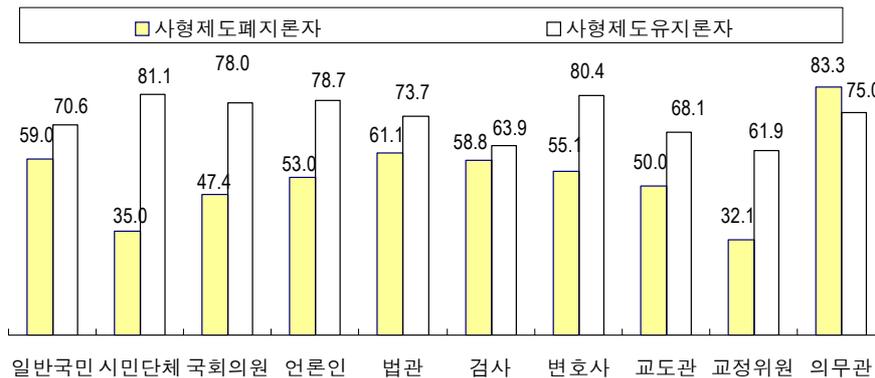
1) 제한적 사형제도는 사형을 반인륜적 범죄에만 적용하고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 사형을 인정하는 제도

< 표-3 > 설문 유형별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응답자구분	응답자 수	당장폐지 + 향후폐지 (a)	가상의 상황		오판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사형제도 폐지 찬성율 (b)	제한적 사형제도 에 대한 동의율
			가해자 가족 입장	피해자 가족 입장			
일반국민	1,064	34.1	52.4	29.0	62.4	36.0	66.4
시민단체	260	85.8	87.3	79.6	87.3	85.8	41.5
국회의원	100	60.0	55.0	49.0	51.1	57.0	61.0
언론인	278	54.3	58.6	44.2	67.6	53.6	64.7
법관	113	53.1	55.8	40.7	58.4	47.8	68.1
검사	138	16.7	17.4	8.0	20.3	12.3	63.0
변호사	105	60.0	60.0	52.4	70.5	55.2	66.7
교도관	106	11.3	14.2	4.7	34.9	9.4	67.0
교정위원	103	80.6	77.7	72.8	78.6	78.6	37.9
의무관	55	10.9	25.5	7.3	30.9	10.9	76.4

주) (a), (b)는 질문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설문한 결과이며, (a)는 가정
처음에, (b)는 질문의 맨 나중에 한 질문임

< 그림-3>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율(%)



3. 죄목별 법정최고형으로서의 사형에 대한 의견

< 표-4 > '법정최고형으로서의 사형'에 대한 반대율(%)

		일반 국민	시민 단체	국회 의원	언론인	법관	검사	변호사	교도관	교정 위원	의무관
일반 형사범	살인죄·존속살해죄	35.2	86.2	54.0	60.1	46.9	12.3	50.5	19.8	81.6	23.6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53.4	93.5	69.0	75.2	61.1	34.1	69.5	50.0	84.5	45.5
	강도살인죄	42.9	88.5	61.0	60.1	45.1	10.9	50.5	14.2	82.5	20.0
특정 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 ·유인죄의가중처벌	42.1	87.7	55.0	57.6	56.6	26.8	57.1	17.0	81.6	25.5
	살인범의보복범죄에 대한가중처벌	52.0	91.9	60.0	62.6	50.4	19.6	57.1	23.6	82.5	25.5
정치범	내란목적살인죄	55.1	90.8	62.0	70.1	55.8	21.0	59.0	31.1	81.6	40.0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 괴·중요임무종사죄	67.9	92.7	73.0	76.6	79.6	37.0	74.3	48.1	85.4	56.4
공안 사범	여적죄	57.0	91.2	69.0	77.0	69.0	34.8	69.5	32.1	83.5	50.9
	간첩죄	66.3	95.0	74.0	84.5	82.3	44.9	80.0	48.1	88.3	65.5
	반국가단체의구성수괴 ·중요임무종사죄	74.3	97.3	76.0	87.8	77.0	42.0	77.1	51.9	89.3	70.9
군사 범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 수괴·중요임무종사죄	79.4	96.9	77.0	88.1	81.4	50.0	81.9	65.1	92.2	72.7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75.2	95.8	78.0	87.1	80.5	51.4	82.9	63.2	86.4	61.8
	적전에서의명령등의 허위 전달죄	75.3	96.2	74.0	86.0	78.8	51.4	78.0	57.5	84.5	63.6

그렇다면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할 수 있는 죄 중에서 대표적 인 몇 가지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으로서 사형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직 접적인 살인과 관련성이 적은 군사범죄와 공안사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으 로 사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는 정치범 중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 죄목의 경우는 직접 살인과 관련성이 적다는 판단으로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살인죄·존속살해죄, ‘살인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죄목의 경우는 시민단체와 교정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단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이후 정치범이나 공안사범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판결은 감소하는 반면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최근의 현실 때문에 국민들의 법 감정은 이 부분에 대해 관대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의 범죄별 사형에 대한 대체형별로는 종신형을 지적한 비율이 무기형보다는 월등히 높다. 종신형 중에서도 감형이 있는 종신형과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 있는데 두 방법 중에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사형죄목은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공안사범, 정치범, 군사범죄의 경우는 ‘감형이 있는 종신제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사례를 통해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실제로 [사례1]의 경우는 1981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된 OOO씨의 사례이다. 이 사례는 오판의 가능성을 예로 들어 설문한 사례이다. 공판과정에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O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4~1985년 각계인사의 대대적인 구명운동으로 무기로 감형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 표-5 >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폐지율(%))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사례1] 오관가능성이 있는 사례	[사례2] 군형법처벌사례	[사례3] 흉악범죄사례
일반국민	1,064	67.6	46.9	19.5
시민단체	260	88.8	83.5	76.5
국회의원	100	66.0	55.0	46.0
언론인	278	64.4	56.8	42.4
법관	113	54.0	51.3	38.1
검사	138	12.3	9.4	6.5
변호사	105	59.0	51.4	45.7
교도관	106	22.6	18.9	4.7
교정위원	103	81.6	80.6	70.9
의무관	55	25.5	14.5	5.5

[사례2]의 경우는 1963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형을 당한 최영오 일병(당시 OO대학교 OOO학과 4학년 재적)의 사례이다. 고참병이 개인적인 편지를 몰래 뜯어보고 자신을 농락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참병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OOO 일병의 경우는 그 당시 군대가 관료주의적이어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군대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군형법은 다른 형법에 대해 엄격하다. 대부분 군사재판은 재심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판결은 곧 집행에 이르게 된다.

[사례3]의 경우는 지존과 사건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그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범행 방법이 반사회적이어서 판결 후 사형 집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사례이다.

각각의 집단마다 주어진 사례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 사례별로 가장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례3]의 경우 일반국민들 중 대다수인 80% 정도가 사형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오판가능성이 있는 [사례1]에 대한 반응은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약 67%가 동의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의 경우는 [사례3]과 같은 범죄 때문에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별로 볼 때 [사례1]의 경우는 어느 정도 오판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예로[사례3]과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얼마나 흉악한지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의견이 다르다. 심지어 교정위원이나 시민단체 종사자들조차도 일반범죄보다는 사회적 흉악범죄사례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찬성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일반적인 국민정서는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하지만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형제도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사형제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법에서는 제 250조를 포함하여 89개의 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 절대적 존엄을 인정하고 있다 1988년 헌법 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사형제도와 관련된 많은 헌법 소원이 있었는데 1996년 11월 사형제도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사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²⁾

- 2) 첫째,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 둘째,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아 아직은 현행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사형이란 형벌이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89개조항)이 과연 행위의 불법간에 적절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당한 것이라 하

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
고, 이런 범죄에는 그 행위의 형태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
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
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 표-6 > 사형제도와 국가의 사회문화적 현실과의 관계(%)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사회 문화적 현실과 관련정도 1)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이 사형제도폐지에 적합한 시기인지 여부 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3)
일반국민	1,064	79.2	18.1	62.4
시민단체	260	92.3	66.2	88.1
국회의원	100	86.0	38.0	71.0
언론인	278	78.4	30.2	71.9
법관	113	81.4	25.7	72.6
검사	138	59.4	8.0	47.8
변호사	105	79.4	31.4	74.3
교도관	106	59.4	4.7	30.2
교정위원	103	88.3	58.3	84.5
의무관	55	69.1	3.6	45.5

주1) [관련있다 + 매우관련있다] 비율

주2) 사회문화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만큼 성숙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주3) 사형폐지 국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대법원은 1963년 처음으로 사형제도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존엄은 인정하면서 사형제도는 언제나 국가의 실정과 도덕적 감정·법조문

에 나타난 표현 등을 고찰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0여년 이상이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1963년 대법원의 판시결과가 내용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되었던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볼 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한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 지를 질문하였다. 결과는 모든 응답자 집단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논지처럼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과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집단이 시민단체와 교정위원이었으며, 검사, 교도관, 의무관들은 10%미만이 사회문화적으로 성숙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도 18.1%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교도관 의무관 검사들도 30 ~ 40%이상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응답을 하였고 일반국민은 62.4%, 나머지 응답자 집단들은 70%이상이 '사형제도 폐지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형제도의 형벌 부합성 및 범죄예방효과

형벌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범죄예방 또는 범죄억제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사형제도가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법조인과 교도관, 의무관의 경우는 사형제도가 형벌의 목적

에 부합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교정위원들의 경우는 사형제도가 형벌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응답이 낮다.

일반국민들의 경우는 사형제도가 형벌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되는데 반해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인식은 '사형제도라는 방패막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 생명권에 대한 침해라는 인식보다는 사형제도가 갖는 범죄 예방 및 억제효과 즉 국가질서 유지차원에서 필요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표-7 > 사형제도의 형벌부합성과 범죄예방효과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사형제도와 형벌목적 부합성 1)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2)
일반국민	1,064	49.0	71.1
시민단체	260	16.9	20.0
국회의원	100	45.0	50.0
언론인	278	53.2	55.4
법관	113	71.7	68.1
검사	138	89.9	87.7
변호사	105	55.2	61.0
교도관	106	88.7	92.5
교정위원	103	26.2	33.0
의무관	55	80.0	85.5

주1) [부합되는 편이다 + 매우 부합된다] 응답 비율

주2)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응답 비율

그러나 사형폐지론자들은 훨씬 더 과학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통계로는

- 처형률의 감소가 살인 발생율에 미치는 영향
- 사형의 폐지와 부활이 살인율에 미치는 영향
- 사형 존치 지역과 폐지 지역의 살인범죄율 비교
- 사형집행 전후의 살인사건 경향성 분석

와 같은 통계들이다.

위의 통계에 근간을 둔 연구에서의 주장은 사형집행의 증감이나 사형제도의 존치 및 폐지는 살인율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살인범죄율을 낮추는 데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는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의 연구이다. 두 차례의 연구 결과는 “사형제도가 중신형과 같은 형벌에 비해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채택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이다 라는 것이었다³⁾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수치들이 일관되게 의미하는 바는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더라도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975년 : 3.09명/10만명, 1980년 : 2.41명/10만명, 2001년 1.78명/10만명)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집단에서는 이러한 통계데이터에 근거하여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사형집행에 대해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언론종사자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질문은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내용이라 보편적인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3)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3rd edition, 2002, p. 230

효과에 대한 응답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언론 종사자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사형집행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의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사회권, 참정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집단에서 생명권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타집단에 비해 법조인의 경우는 법관, 검사, 변호사 구분 없이 생명권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비례의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수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인식이 다르다. 법조인과 교도관, 의무관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일관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의 경우는 일관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7%로 매우 낮으며 교정위원의 경우는 40.8%가 일관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일반국민, 국회의원, 언론인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50~55%정도가 일관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살인죄를 지은 사형수의 경우도 생명권을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의 생명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논리의 모순이 여기서도 발생한다. 사형제도를 유지하자고 하면서 사형수의 생명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국 관련집단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식은 사형제도는 유지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보루일 뿐이지 실제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표-8 > 생명권에 대한 인식(%)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헌법이 생명권에 대한 일관성 여부 (1)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2)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생명권(3)
일반국민	1,064	52.7	56.5	63.4
시민단체	260	22.7	90.4	79.2
국회의원	100	55.0	77.0	78.0
언론인	278	50.4	65.8	71.9
법관	113	79.6	76.1	93.8
검사	138	92.8	50.7	81.9
변호사	105	62.9	81.0	83.8
교도관	106	86.8	29.2	63.2
교정위원	103	40.8	87.4	81.6
의무관	55	85.5	23.6	61.8

주1) [조금 일관성이 있다+매우 일관성이 있다] 응답 비율

주2) 사형수의 생명권 긍정응답 비율

주3)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응답비율

또한 헌법재판소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검사, 교도관, 의무관의 경우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례3]처럼 살인의 동기와 방법이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응답자의 약 50%정도가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교정위원의 경우는 일관되게 생명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대다수가 갖고 있다

< 표-9 > 사회정의·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다수의 생명권보호 위해 필요	인간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권까지 보호할 필요 없음	기 타
일반국민	1,064	29.2	27.0	43.8	-
시민단체	260	8.1	76.9	13.8	1.2
국회의원	100	12.0	47.0	36.0	5.0
언론인	278	15.8	45.8	37.1	1.5
법관	113	23.9	38.1	35.4	2.6
검사	138	39.1	9.4	49.3	2.2
변호사	105	17.1	43.8	38.1	1.0
교도관	106	33.0	8.5	58.6	-
교정위원	103	4.9	71.8	22.3	1.0
의무관	55	32.7	10.9	54.5	1.8

8. 사형수의 권리에 대한 인식

사형수의 수용방법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대중적인 인식은 현행처럼 일반수용자의 함께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들에 의하면 사형수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형수가 종교에 귀의할 뿐 아니라 일반수용자에 비해 교정 및 교화가 잘되어 오히려 사형수가 일반수용자들을 교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⁴⁾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사형수의 수용생활이나 교화된 상태를 실제 경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다른 일반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를 위해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이러한 걱정은 실제로

4) 이 증언은 관련 전문가 심층조사 중에 사형수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의 증언임

는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사형수들이 항상 심리적으로 평정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겠지만 일반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게 주변에서 사형수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증언이다

< 표-10 > 사형수의 권리에 대한 인식(%)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일반수용자 함께 수용함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	사형수의 교정 및 교화 가능성	사형집행 일자에 대한 사전고지
일반국민	1,064	61.6	92.1	90.9	60.2
시민단체	260	89.6	99.2	97.3	69.2
국회의원	100	75.0	98.0	97.0	42.0
언론인	278	64.4	93.5	95.0	48.6
법관	113	65.5	95.6	97.3	44.2
검사	138	55.1	88.4	87.7	35.5
변호사	105	68.6	96.2	97.1	55.2
교도관	106	53.8	86.8	77.4	7.5
교정위원	103	76.7	99.0	99.0	44.7
의무관	55	45.5	81.8	78.2	27.3

현재 사형수에게는 국가차원에서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부 생각으로는 어차피 사형될텐데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번 조사 결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형수에게도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수용자와 똑같이 교정 및 교화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처럼 종교계를 중심으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은 체계적인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사형수의 교화태도를 일반수용자와 비교했을 경우 교정위원들은 일반수용자에 비해 교화가 빨리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도관의 경우는 오히려 더 늦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표-11 > 교화 태도 비교(%)

	응답자수	일반수용자와 비슷하다	일반수용자보다 훨씬 빨리 교화된다	일반수용자에 비해 교화가 늦게 된다	잘 모름
교도관	106	34.0	8.5	42.5	15.1
교정위원	103	23.3	46.6	7.8	22.3
의무관	55	23.6	7.3	10.9	58.2

이외에 사형수에게는 사형이 언제쯤 이루어지는 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 현행과 같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은 지 질문한 결과 일반인과 시민단체 소속의 경우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형수를 관리하고 있는 교도관이나 의무관의 경우는 사형집행시기를 미리 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형집행일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느냐 알려주지 말아야 하느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사형수 개인으로는 너무 일찍 알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신변정리나 가족과의 이별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사형집행일을 전후해서 느끼는 내부 분위기를 실제 체험하고 있는 교도관의 경우는 미리 알려 주는 것에 대해 극단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연할 수 없지만 일부 사형수가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사회일각에서 필요이상의 관심을 갖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형집행 시간은 죽음에 이르는 1시간 전까지도 사형수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저 분위기만으로 사형집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뿐이라고 한다⁵⁾

사형집행전 사형수에게 면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관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당연히 만나게 해야 된다고 답하였고, 35.6%는 만나게는 하지만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에는 94.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형수 담당 교정공무원이 심층조사 중에 증언한 내용임

9. 사형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는 반사회적인 범죄도 있지만 정치범 등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이적행위와 관련된 범죄도 있다. 앞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사형제도를 일부 반사회적 범죄에는 계속해서 유지하되 나머지 경우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60%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시민단체나 교정위원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공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표-12 > 사형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동의	바람직한 범조항	
			(1)안	(2)안
일반국민	1064	66.4	18.8	81.2
시민단체	260	41.5	3.1	94.2
국회의원	100	61.0	3.0	91.0
언론인	278	64.7	10.4	87.1
법관	113	68.1	5.3	90.3
검사	138	63.0	4.3	90.6
변호사	105	66.7	1.9	96.2
교도관	106	67.0	22.6	72.6
교정위원	103	37.9	4.9	90.3
의무관	55	76.4	32.7	65.5

주1)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주2)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실제 법조항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은 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현행 제도는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000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법관의 선고 영역을 넓히는 법조항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형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 지 질문하였다. 현행 제도에서의 사형집행 방법은 군형법은 총살형이고 일반형법에서는 교수형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수형을 사형집행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갑오경장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참수형, 교수형, 능지처참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사형집행도 공개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던 것이 참수형은 금지되고 교수형만이 남게 되었고 사형집행장도 공개되지 않는 감옥안에서만 사형집행을 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군법의 경우는 총살형이 더 명예롭다는 이유로 총살형을 유지하고 있다

< 표-13 > 적절한 사형집행 방법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교수형	주사형	기타	모름	사형제도 페이지
일반국민	1064	35.5	47.3	16.4	0.4	0.4
시민단체	260	10.0	37.7	16.1	22.7	11.5
국회의원	100	24.0	39.0	11.0	25.0	1.0
법관	113	32.7	42.5	5.6	8.0	0.9
검사	138	42.8	34.8	3.8	7.2	1.4
변호사	105	50.5	26.7	8.5	11.4	2.9
교도관	106	39.6	42.5	9.4	4.7	3.8
교정위원	103	27.2	32.0	21.4	17.5	2.9
의무관	55	36.4	41.8	9.0	5.5	7.3

그러나 사형집행 방법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인간적인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지만 사형수에게 가장 공포감을 덜 주며 빠른 시간내에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이 사형수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교수형 이외의 사형집행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결과는 주사형이 더 좋을 것이라고 응답이 교수형이 더 좋다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법관과 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에서 교수형보다 주사형이 사형집행 방법으로서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많은 주에서 교수형 대신에 독물주사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기의자와 가스실을 이용하였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던 시절에는 교수형을 사용했다 사형집행 방법도 시대적 변천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00년이 넘는 지금도 사형집행 방법에는 변화가 없다

< 표-14 > 사형집행시기(%)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홍악범의 경우	
		계속미룸	최종판결후 1년 이내	오관우려 때문에 5년 이상	최종판결후 10년 뒤 재심후 결정	신속한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빠를수록 좋다
일반국민	1064	5.4	18.2	38.2	36.2	58.1	41.8
시민단체	260	26.9	1.5	14.6	51.2	90.8	5.8
국회의원	100	29.0	4.0	24.0	35.0	77.0	15.0
언론인	278	19.1	9.7	32.4	34.2	71.6	25.5
법관	113	12.4	16.8	26.5	25.7	77.0	15.9
검사	138	1.4	37.7	22.5	30.4	60.9	31.2
변호사	105	12.4	14.3	31.4	37.2	81.0	15.2
교도관	106	1.9	45.3	20.8	16.7	43.4	55.7
교정위원	103	26.2	4.9	9.7	47.6	82.5	11.7
의무관	55	7.3	29.1	36.4	16.4	47.3	52.7

사형집행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례3]과 같이 흉악범으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를 최종 판결 후 얼마 안되어 사형을 집행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한 사형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오관가능성을 시정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의 형벌 중 최고형인 사형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로 그 선고와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법감정이다 그렇다면 사형집행은 최종판결 후 언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결과 전반적으로는 5년이상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종판결 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수용중인 사형수의 수용태도를 평가하여 재심의 기회를 주는 의견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 다음으로는 오관우려가 있기 때문에 5년이상 사형집행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교도관의 경우는 최종판결 후 1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집단보다 월등히 높은 45.3%로 나타났으며, 범조인 중 검사의 경우도 1년 이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7.7%로 타 집단에 비해 높다. 사실 교도관의 경우 사형수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은 집단이다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사형수의 수용태도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되는 데 하나는 완전히 교화되어 일반 수용자보다도 더 교화된 참 인간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사형수를 사형한다기보다는 친구를 살인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 부류는 끝까지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교도관을 모략하고 동료 수용자들을 괴롭히는 사형수들도 있다⁶⁾ 이들 두 부류 모두에 대해 교도관들은 오래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뒤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형집행은 1997년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

6) 심층조사 중 교정공무원이 증언한 내용임

다. 특히 정권이양기에는 사형집행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임기 동안 한 건의 집행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형집행을 미루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교정위원의 경우 70%이상이 사형제도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사형집행을 미룬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회의원들 중 50%는 사형집행을 미루는 것이 적절했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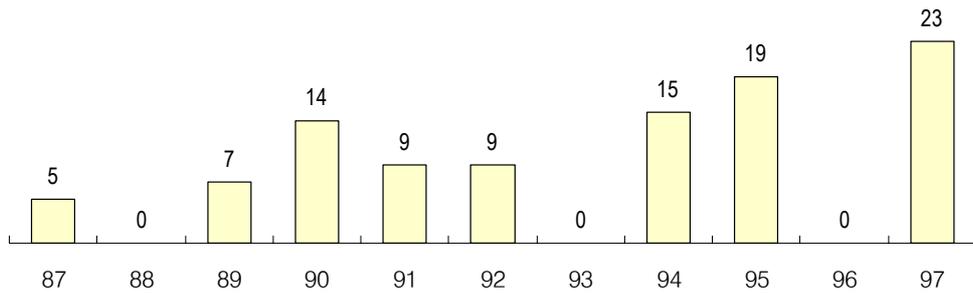
< 표-15 > 1998년이후 정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평가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적절하다	신중해야 하지만 한건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피해를 변상한 사형수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집행해야함
일반국민	1064	22.5	42.7	34.9
시민단체	260	77.3	8.1	13.1
국회의원	100	50.0	26.0	19.0
언론인	278	39.9	37.1	22.7
법관	113	23.0	61.9	14.2
검사	138	9.4	65.9	23.9
변호사	105	32.4	43.8	23.8
교도관	106	3.8	58.5	35.8
교정위원	103	69.9	16.5	10.7
의무관	55	10.9	67.3	21.8

이외에 일반국민이나, 법조인, 교도관, 의무관의 경우는 사형집행을 신중하게 하지만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무조건 사형집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 피해에 대해 그 피해를 변상한 사형수를 제외하고는 사형집행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이나 교도관의 경우는

3명중 1명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4 > 연도별 사형 집행 건수<단위:명>



국회의원들의 경우 사형제도폐지에 찬성하는 경우는 전체의 57%이지만 국민 여론이 폐지의견이 더 많이 나온다면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비율이 66%인 것으로 대중적 여론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다

10. 오판가능성

논란이 되고 있는 오판가능성 여부에 대해 실제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검사를 제외하고는 오판가능성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16 > 오판가능성(%)

	응답자수	전혀없다	거의없다	약간있다	매우많다
법 관	113	0.9	29.2	69.9	-
검 사	138	1.4	54.3	40.6	0.7
변호사	105	-	14.3	73.3	12.4

물론 변호사의 경우 응답자의 85.7%가 오판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오판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을 담당하는 법관들조차 오판가능성에 대해 69.9%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사법제도상의 오판가능성에 대해 설문한 것으로 사형 판결 자체가 오판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법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이렇다면 사형판결로 절대적으로 완전하다고는 누구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실제 오판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 지를 질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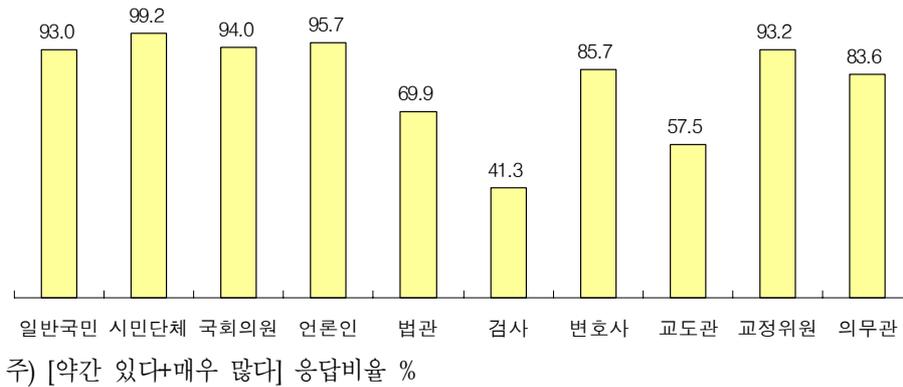
< 표-17 > 실제 오판율에 대한 예상(%)

	응답자수	1%이하	2~5%	6~10%	11%이상	21%이상
법 관	113	62.8	26.5	7.1	-	-
검 사	138	74.6	13.8	1.4	-	-
변호사	105	25.7	41.0	20.0	9.6	4.8

변호사의 경우 2~5%정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41%였다. 법관과 검사의 경우는 오판의 가능성은 있으나 1%이하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법관은 62.8%, 검사는 74.6%가 이같이 응답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오판의 가능성을 전제할 경우 사형제도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오판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법조인의 응답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도관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오판가능성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판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림-5 > 오판가능성(%)



11. 사형제도와 피해자 구제 방법

사형제도의 피해자는 설문에서도 질문한 것처럼 피해자 가족은 물론 사형수의 가족도 사형제도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범죄로 가족을 잃은 경우 설령 그 범죄인을 죄의 대가로 사형을 시키더라도 원한이나 미움, 증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대부분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는 어떤 보상체계가 필요한 지 질문하여 보았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신경정신적 치료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사형수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을 응답한 경우도 시민단체와 교정위원 집단에서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범죄피해자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범죄 피해는 아니더라도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등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소집단 활동들이 있는 데 이와 비슷하게 범죄피해자 가족들도 자신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표-18 > 피해자 가족의 구제 방법(%)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사형수를 처형함으로써 원한이 제거되는 지 여부	피해자 가족의 구제 방법(복수응답)			
			신경정신적 치료	위로금의 지급	화해프로그램 개발	세금감면 학비보조
일반국민	1,064	10.5	43.5	35.4	25.7	24.7
시민단체	260	6.5	58.5	35.8	42.7	21.9
국회의원	100	7.0	48.0	33.0	33.0	15.0
언론인	278	12.9	43.2	33.8	25.9	24.8
법관	113	23.0	58.4	54.0	21.2	31.0
검사	138	34.1	37.7	54.3	16.7	29.7
변호사	105	18.1	37.1	41.9	37.1	19.0
교도관	106	43.4	46.2	42.5	17.0	22.6
교정위원	103	7.8	40.8	24.3	60.2	6.8
의무관	55	40.0	54.5	49.1	12.7	32.7

사형수의 가족도 사형제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응답 결과 법조인과 교도관, 의무관들은 비교적 냉담하다. 이들 중에는 약 30% 정도만이 사형수 가족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외에 일반국민과 국회의원들은 약 40%정도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60%이상이 사형수 가족도 사형제도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형수의 가족에게는 어떤 보상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0~40% 정도가 '신경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일부만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형수의 가족도 사형제도의 피해자라고 인식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감정은 모든 집단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표-19 > 사형수 가족의 구제 방법(복수응답, %)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사형수 가족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지 여부	사형수 가족의 구제 방법			
			신경정신적 치료	조치가 필요없음	사회적 냉대 해소	위로금 지급
일반국민	1,064	47.6	37.0	9.9	8.5	17.2
시민단체	260	84.2	39.7	4.1	6.8	6.8
국회의원	100	63.0	36.5	6.3	4.8	8.0
언론인	278	66.5	24.9	10.8	8.6	9.2
법관	113	39.8	20.0	20.0	2.2	8.9
검사	138	35.5	12.2	22.4	-	8.2
변호사	105	46.7	30.6	8.2	-	14.3
교도관	106	34.0	19.4	19.4	5.6	8.4
교정위원	103	72.8	22.7	-	6.7	13.4
의무관	55	32.7	33.3	16.7	5.6	11.2

III. 조사를 통한 사형제도 개선방향

□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중론이 우세함

- 일반국민의 경우는 폐지 의견이 34.1%로 3명 중 1명은 사형제도 폐지 의견 제시
- 시민단체와 교정위원의 경우는 폐지 의견이 80% 이상임
- 국회의원, 변호사의 경우는 약 60%가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
- 언론인과 법관의 경우는 약 50% 정도 폐지에 찬성 의견 제시
- 검사, 교도관, 의무관의 경우는 약 10%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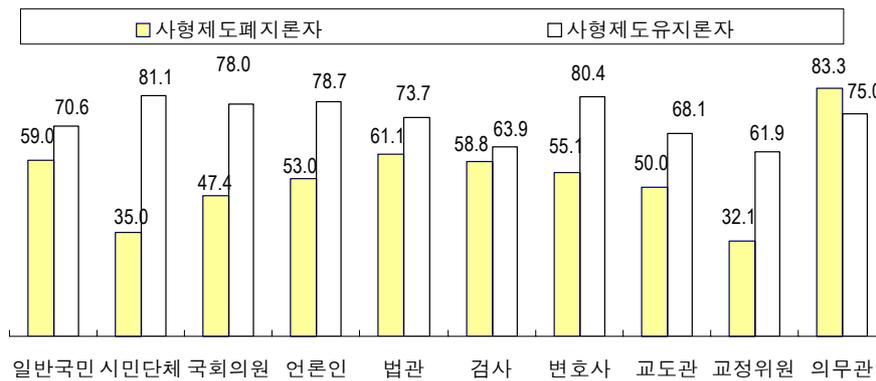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당장 폐지되어야함	언젠가는 폐지되어야함	법질서유지를 위해 존속되어야하지만 선고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함	더강화되어야함
일반국민	1,064	13.2	20.9	57.7	8.3
시민단체	260	60.8	25.0	14.2	-
국회의원	100	29.0	31.0	40.0	-
언론인	278	23.0	31.3	42.1	3.6
법관	113	19.5	33.6	46.9	-
검사	138	5.8	10.9	77.5	5.8
변호사	105	27.6	32.4	40.0	-
교도관	106	3.8	7.5	61.3	27.4
교정위원	103	56.3	24.3	19.4	-
의무관	55	3.6	7.3	74.5	14.5

□ 사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은 시민단체와 교정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의견이 훨씬 많음.
- 제한적 사형제도는 사형제도 찬성자, 반대자를 불문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사형폐지론자보다는 유지론자의 경우가 찬성율이 높음

<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율(%)>



<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폐지율)(%) >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사례1] 오관가능성이 있는 사례	[사례2] 균형법처벌사례	[사례3] 흉악범죄사례
일반국민	1,064	67.6	46.9	19.5
시민단체	260	88.8	83.5	76.5
국회의원	100	66.0	55.0	46.0
언론인	278	64.4	56.8	42.4
법관	113	54.0	51.3	38.1
검사	138	12.3	9.4	6.5
변호사	105	59.0	51.4	45.7
교도관	106	22.6	18.9	4.7
교정위원	103	81.6	80.6	70.9
의무관	55	25.5	14.5	5.5

-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본 결과에서도 각각의 경우마다 사형제도 찬반 의견이 달라짐을 볼 때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중 군사범, 공안사범, 정치범에 대해서는 사형보다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생명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종신형 중에서도 특정범죄의 경우는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공안사범, 정치범, 군사범죄의 경우는 감형이 있는 종신형이 대체형벌로 적당하다고 응답함.

<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대한 반대율(%) >

		일반 국민	시민 단체	국회 의원	언론인	법관	검사	변호사	교도관	교정 위원	의무관
일반 형사범	살인죄·존속살해죄	35.2	86.2	54.0	60.1	46.9	12.3	50.5	19.8	81.6	23.6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53.4	93.5	69.0	75.2	61.1	34.1	69.5	50.0	84.5	45.5
	강도살인죄	42.9	88.5	61.0	60.1	45.1	10.9	50.5	14.2	82.5	20.0
특정 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 ·유인죄의가중처벌	42.1	87.7	55.0	57.6	56.6	26.8	57.1	17.0	81.6	25.5
	살인범의보복범죄에 대한가중처벌	52.0	91.9	60.0	62.6	50.4	19.6	57.1	23.6	82.5	25.5
정치범	내란목적살인죄	55.1	90.8	62.0	70.1	55.8	21.0	59.0	31.1	81.6	40.0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 괴·중요임무종사죄	67.9	92.7	73.0	76.6	79.6	37.0	74.3	48.1	85.4	56.4
공안 사범	여적죄	57.0	91.2	69.0	77.0	69.0	34.8	69.5	32.1	83.5	50.9
	간첩죄	66.3	95.0	74.0	84.5	82.3	44.9	80.0	48.1	88.3	65.5
	반국가단체의구성외수괴 ·중요임무종사죄	74.3	97.3	76.0	87.8	77.0	42.0	77.1	51.9	89.3	70.9
군사 범죄	정권탈취목적이없는반란 수괴·중요임무종사죄	79.4	96.9	77.0	88.1	81.4	50.0	81.9	65.1	92.2	72.7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75.2	95.8	78.0	87.1	80.5	51.4	82.9	63.2	86.4	61.8
	적전에서의명령등의 허위전달죄	75.3	96.2	74.0	86.0	78.8	51.4	78.0	57.5	84.5	63.6

- 사형과 관련된 법조항의 표현에 대해서도 'OOO죄는 사형에 처한다'는 표현보다는 'OOO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찬성율을 보여, 좀더 폭넓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현행 법조문 표현의 근간은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사형수의 수용 방법 및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

- 사형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일반수용자와 같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음. 따라서 사형수를 분리 수용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 사형수의 경우도 국가차원에서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약 90%의 응답자들이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에 찬성의견을 제시, 이 부분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사형수의 경우도 교정 및 교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사형집행 시기

- 현행법상으로 최종 판결 후 6개월 이내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집행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판결후 10년 정도 뒤에 행정성적과 죄의 대가에 대한 보상 여부를 근거로 하여 재심을 한 후 재심결과에 따라 최종 형집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음
- 흉악범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략 70% 이상임.

< 사형집행시기 >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흉악범의 경우	
		계속미룸	최종판결후 1년 이내	오판우려 때문에 5년 이상	최종판결후 10년 뒤 재심후 결정	신속한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빠를수록 좋다
일반국민	1,064	5.4	18.2	38.2	36.2	58.1	41.8
시민단체	260	26.9	1.5	14.6	51.2	90.8	5.8
국회의원	100	29.0	4.0	24.0	35.0	77.0	15.0
언론인	278	19.1	9.7	32.4	34.2	71.6	25.5
법관	113	12.4	16.8	26.5	25.7	77.0	15.9
검사	138	1.4	37.7	22.5	30.4	60.9	31.2
변호사	105	12.4	14.3	31.4	37.2	81.0	15.2
교도관	106	1.9	45.3	20.8	16.7	43.4	55.7
교정위원	103	26.2	4.9	9.7	47.6	82.5	11.7
의무관	55	7.3	29.1	36.4	16.4	47.3	52.7

□ 피해자 가족 및 사형수 가족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 피해자 가족의 경우는 사형수를 사형시킨다하여도 원한이나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함
-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피해자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함 그 중에서도 신경정신적 치료(가족상담 등)를 가장 필요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피해자 가족 스스로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함.

< 피해자 가족의 구제 방법(중복응답, %) >

응답자구분	응답자수	사형수를 처형함으로써 원한이 제거되는지 여부	피해자 가족의 구제 방법			
			신경정신적 치료	위로금의 지급	화해프로그램 개발	세금감면 학비보조
일반국민	1,064	10.5	43.5	35.4	25.7	24.7
시민단체	260	6.5	58.5	35.8	42.7	21.9
국회의원	100	7.0	48.0	33.0	33.0	15.0
언론인	278	12.9	43.2	33.8	25.9	24.8
법관	113	23.0	58.4	54.0	21.2	31.0
검사	138	34.1	37.7	54.3	16.7	29.7
변호사	105	18.1	37.1	41.9	37.1	19.0
교도관	106	43.4	46.2	42.5	17.0	22.6
교정위원	103	7.8	40.8	24.3	60.2	6.8
의무관	55	40.0	54.5	49.1	12.7	32.7

-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은 사형수의 가족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보다는 관심과 공감도가 낮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 수준의 보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IV. 조사 결과

- 제1장 일반국민편
- 제2장 시민단체편
- 제3장 언론종사자편
- 제4장 국회의원편
- 제5장 법조인편
- 제6장 사형집행참여자편

제1장 일반국민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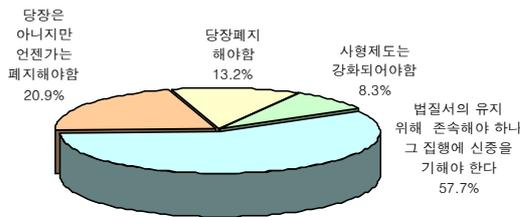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5.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속되어야 하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7.6%로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0.9%로 나타나 사형제도 유지 쪽에 많은 의견을 보였다

<그림-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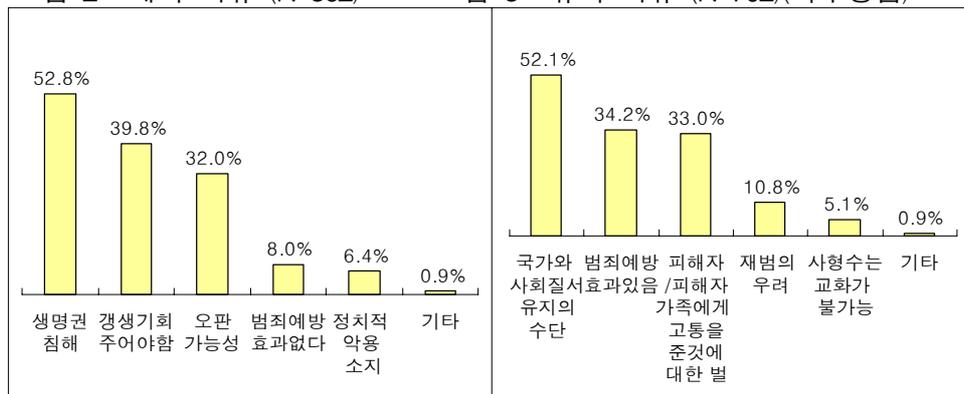


<표-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1,064, %)

		응답자수	법질서유지 위해 존속되어야 하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해야한다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해야한다	사형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전 체		1,064	57.6	20.9	13.2	8.3
성 별	남	531	59.1	18.6	14.7	7.5
	자	533	56.3	23.1	11.6	9.0
연령별	10 대	135	59.3	24.4	13.3	3.0
	20 대	282	55.7	20.9	16.3	7.1
	30 대	286	60.8	18.9	12.2	8.0
	40 대	228	56.1	21.5	13.6	8.8
	50 대	133	56.4	20.3	7.5	15.8
종교별	기 독 교	284	50.4	25.4	16.9	7.4
	불 교	232	58.6	19.8	9.5	12.1
	천 주 교	91	50.5	29.7	15.4	4.4
	기타/없음	457	63.2	16.8	12.3	7.7
학력별	고졸이하	518	57.9	19.3	13.1	9.7
	대졸이상	546	57.5	22.3	13.2	7.0

- 사형제도 유지에 긍정적인 의견이 남자는 66.6%, 여자는 65.3%를 보였다.
- 20대의 연령층에서는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16.3%로 타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45.1%로 타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사형제도 폐지 이유로는 사형제도가 인간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하여 갱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39.8%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오판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32.0%의 비율을 보였다.
-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사형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으로34.2%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이라는 응답도 33.0%의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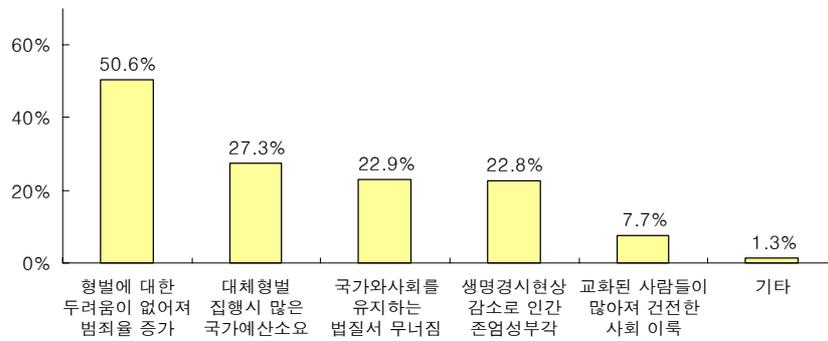
<그림-2> 폐지 이유 (N=362) <그림-3> 유지 이유 (N=702)(복수응답)



나.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점

- 사형제도 폐지 시에 예상되는 점으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50.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체형벌을 집행하는 데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가 27.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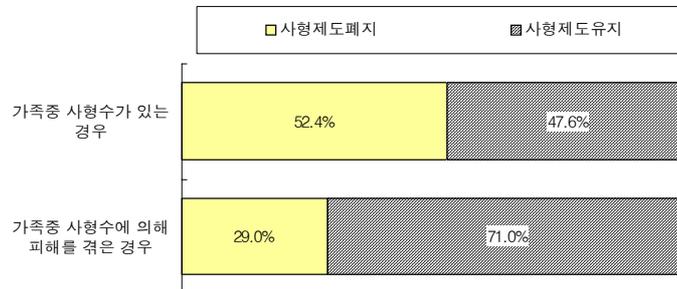
<그림-4> 사형제도 폐지시 예상되는 점 (N=1,064,복수응답)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가족 중 사형수가 있는 경우를 가정했을 시에는 사형제도 폐지가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가정했을 시에는 사형제도의 유지가 높아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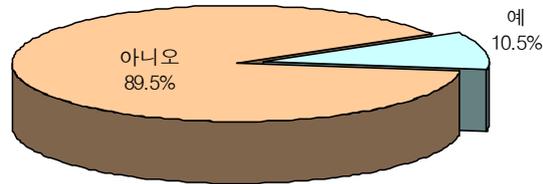
<그림-5>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N=1,064)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만약 가족이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사형시키더라도 원한/증오/미움 등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9.5%로 없어질 것 같다는 의견 10.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6>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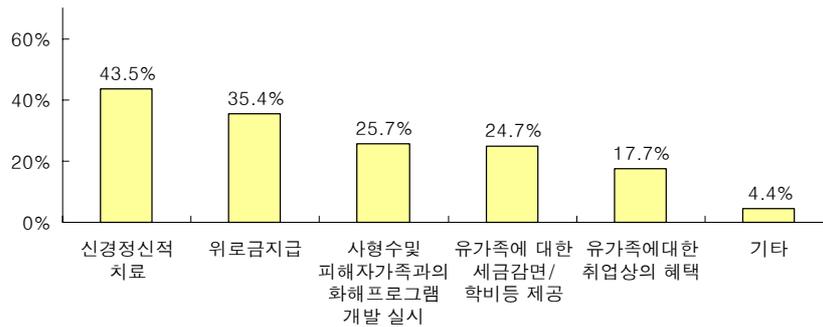
<표-2>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N=1,064, %)

		응답자수	원한/증오/미움이 제거된다	원한/증오/미움이 제거되지 않는다
전 체		1,064	10.5	89.5
성별	남	531	12.4	87.6
	여	533	8.6	91.4
연령별	10 대	135	8.9	91.1
	20 대	282	11.7	88.3
	30 대	286	10.5	89.5
	40 대	228	8.8	91.2
	50 대	133	12.8	87.2
종교별	기 독 교	284	11.6	88.4
	불 교	232	9.5	90.5
	천 주 교	91	11.8	88.2
	기타/없음	457	10.1	89.9
학력별	고졸이하	518	10.0	90.0
	대졸이상	546	11.0	89.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5.5	94.5
	찬 성	681	13.4	86.6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구제 방법으로는 신경정신적인 치료가 4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위로금지급이 35.4%, 사형수 및 피해자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이 25.7%, 유가족에 대한 세금 감면/학비 등의 제공이 24.7%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기타 의견으로는 회복방법이 없음 다각적인 조치 필요, 사형수를 사형집행해야함, 종교로 극복해야함, 특별조치 불필요함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7>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N=1,064,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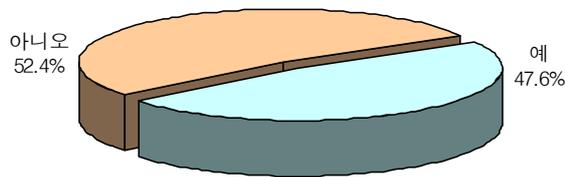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1) 사형수 가족을 사형제도의 피해자로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견

- 사형수 가족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47.6%로,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52.4%)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는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2.5%로 나타나 남자 42.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종교가 불교인 응답자이거나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사형수의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39.7%, 42.0%로 나타나, 기독교·천주교 응답자와는 차별적인 생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 사형수의 가족을 피해자로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견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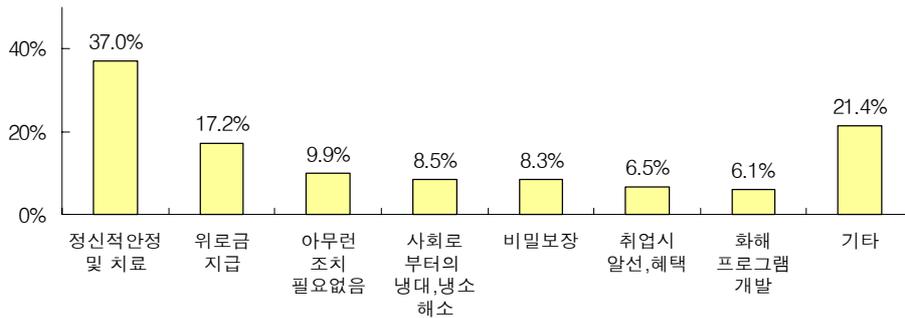
<표-3> 사형수의 가족을 피해자로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견 (N=1,064,%)

		응답자수	사형수 가족은 피해자이다	사형수 가족은 피해자가 아니다
전 체		1,064	47.6	52.4
성별	남 자	531	42.6	57.4
	여 자	533	52.5	47.5
연령별	10 대	135	42.2	57.8
	20 대	282	51.1	48.9
	30 대	286	47.9	52.1
	40 대	228	48.7	51.3
	50 대	133	42.9	57.1
종교별	기 독 교	284	57.4	42.6
	불 교	232	39.7	60.3
	천 주 교	91	63.7	36.3
	기타/없음	457	42.2	57.8
학력별	고졸이하	518	46.9	53.1
	대졸이상	546	48.2	51.8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61.4	38.6
	찬 성	681	39.8	60.2

2) 사형수 가족에 대한 조치

- 사형수 가족에 대한 조치로는 37.0%가 정신적 안정 및 치료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위로금 지급(17.2%), 아무런 조치 필요 없음(9.9%), 사회로부터의 냉대, 냉소 해소(8.5%), 비밀보장(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사회적응 프로그램개발 사회적 관심, 범죄사실 등에 대한 사회적 대책, 세금감면 가족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 참여, 학비제공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9> 사형수의 가족에 대한 조치 (N=506,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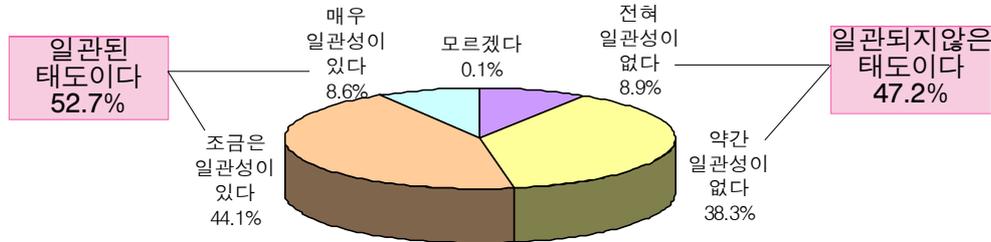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다는 의견이 52.7%로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가 찬성하는 응답자에 비해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다

<그림-10>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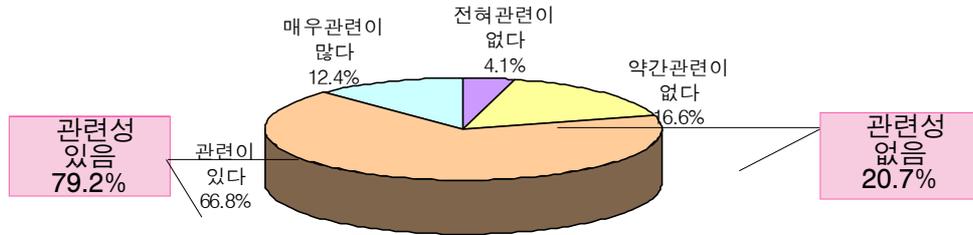
<표-4>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N=1,064, %)

		응답자수	전혀 일관성이 없다	약간은 일관성이 없다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	매우 일관성이 있다	4점 평균
전 체		1,064	8.9	38.3	44.1	8.6	2.52
성별	남 자	531	10.4	36.2	42.4	10.9	2.54
	여 자	533	7.5	40.3	45.8	6.4	2.51
연령별	10 대	135	9.6	40.0	43.7	6.7	2.47
	20 대	282	7.8	45.4	41.8	5.0	2.44
	30 대	286	10.5	38.8	41.6	9.1	2.49
	40 대	228	10.5	32.5	43.9	13.2	2.60
	50 대	133	4.5	30.1	54.9	9.8	2.70
종교별	기 독 교	284	8.8	40.1	42.6	8.1	2.50
	불 교	232	7.3	39.7	44.0	9.1	2.55
	천 주 교	91	12.1	34.1	41.8	12.1	2.54
	기타/없음	457	9.2	37.2	45.5	8.1	2.53
학력별	고졸이하	518	7.9	38.2	46.9	6.8	2.53
	대졸이상	546	9.9	38.3	41.4	10.4	2.5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15.1	46.5	35.0	3.4	2.27
	찬 성	681	5.4	33.6	48.2	11.6	2.67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 사형제도는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과 관계가 있다는 응답이 79.2%로 관계가 없다는 의견 20.7%보다 훨씬 많은 의견을 보였다
- 이에 대한 태도는 남자(73.2%) 보다는 여자(85.2%)가, 연령별로는 20대 (85.1%)에서, 종교별로는 천주교 (89.0%)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11> 사형제도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N=1,064)



<표-5> 사형제도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N=1,0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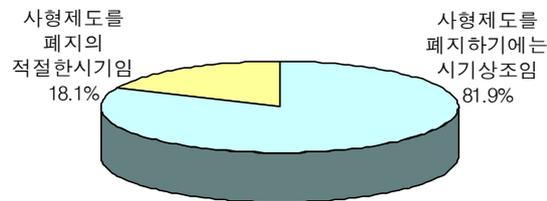
		응답자수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매우 관련이 있다	4점 평균
전 체		1,064	4.1	16.6	66.8	12.4	2.88
성별	남	531	5.8	20.9	60.8	12.4	2.80
	여	533	2.4	12.4	72.8	12.4	2.95
연령별	10 대	135	6.7	14.8	64.4	14.1	2.86
	20 대	282	3.5	11.3	72.3	12.8	2.94
	30 대	286	3.5	22.0	62.2	12.2	2.83
	40 대	228	4.8	15.8	69.7	9.6	2.84
	50 대	133	3.0	19.5	62.4	15.0	2.89
종교별	기 독 교	284	4.2	13.4	69.7	12.7	2.91
	불 교	232	3.4	18.5	64.7	13.4	2.88
	천 주 교	91	2.2	8.8	72.5	16.5	3.03
	기타/없음	457	4.8	19.3	65.0	10.9	2.82
학력별	고졸이하	518	4.8	15.3	68.1	11.8	2.87
	대졸이상	546	3.5	17.9	65.6	13.0	2.88
사형찬반 여부	반	383	3.4	11.2	69.7	15.7	2.98
	대 찬 성	681	4.6	19.7	65.2	10.6	2.82

1) 문화 수준 및 사회 현실

- 문화 수준 및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81.9%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남자(78.5%)보다는 여자(85.2%)가, 연령별로는 30대(83.9%)에서, 종교별로는 불교(86.6%)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3.2%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응답자에 비해 훨씬 높다.

<그림-12>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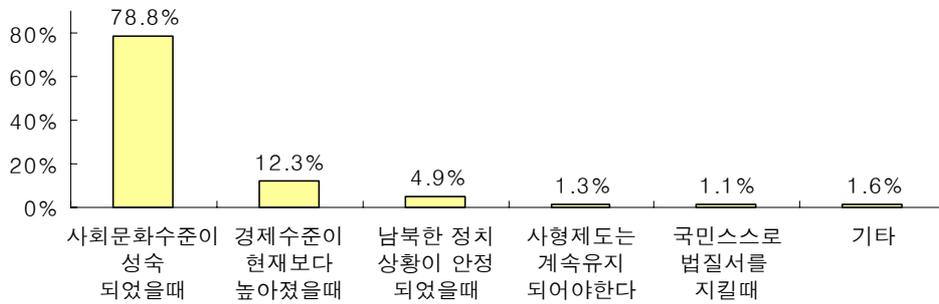
<표-6> 문화수준인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N=1,064, %)

		응답자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전 체		1,064	81.9	18.1
성별	남 자	531	78.5	21.5
	여 자	533	85.2	14.8
연령별	10 대	135	80.7	19.3
	20 대	282	79.1	20.9
	30 대	286	83.9	16.1
	40 대	228	83.8	16.2
	50 대	133	81.2	18.8
종교별	기 독 교	284	82.4	17.6
	불 교	232	86.6	13.4
	천 주 교	91	75.8	24.2
	기타/없음	457	80.3	19.7
학력별	고졸이하	518	82.2	17.8
	대졸이상	546	81.5	18.5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61.6	38.4
	찬 성	681	93.2	6.8

2) 적절한 사형제도 폐지시기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문화 수준이 성숙되었을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12.3%는 경제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졌을 때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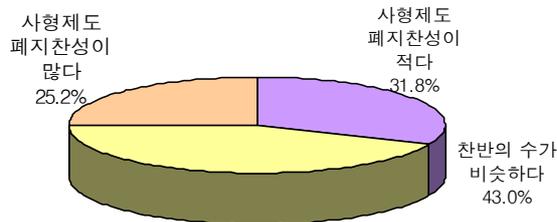
<그림-13> 사형제도 폐지의 적절한 시기 (N=1,064, %)



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

- 일반국민의 43.0%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14>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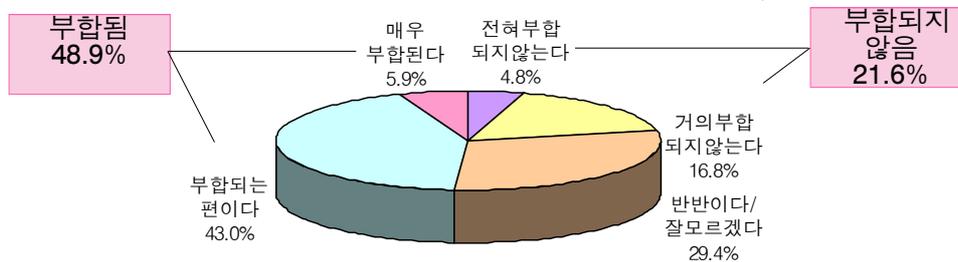
<표-7>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N=1,064, %)

		응답자수	사형제도 폐지찬성이 적다	폐지찬성·반대가 비슷하다	사형제도 폐지찬성이 많다
전 체		1,064	31.8	43.0	25.2
성 별	남 자	531	32.2	41.1	26.7
	여 자	533	31.3	45.0	23.6
연령별	10 대	135	33.3	40.7	25.9
	20 대	282	37.6	40.1	22.3
	30 대	286	31.1	42.0	26.9
	40 대	228	28.1	45.6	26.3
	50 대	133	25.6	49.6	24.8
종교별	기 독 교	284	31.0	45.4	23.6
	불 교	232	29.3	45.7	25.0
	천 주 교	91	25.3	51.6	23.1
	기타/없음	457	34.8	38.5	26.7
학력별	고졸이하	518	28.8	44.0	27.2
	대졸이상	546	34.6	42.1	23.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29.0	42.0	29.0
	찬 성	681	33.3	43.6	23.1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사형제도가 형벌 목적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48.9%가 부합성을 인정하였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형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다.
- 여자(42.6%)보다는 남자(55.4%)가, 연령별로는 50대(56.4%)에서 사형제도가 형벌 목적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5> 사형제도가 형벌로서의 적합성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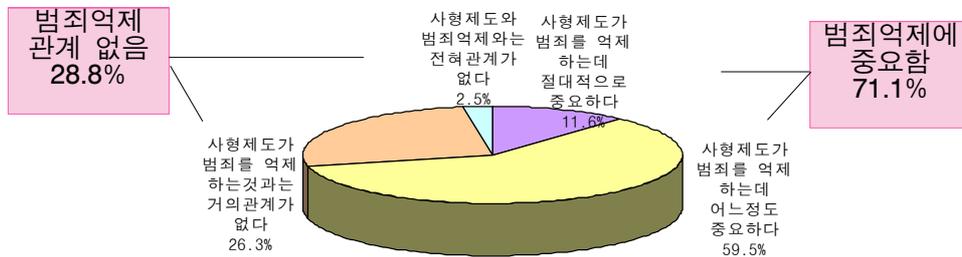
<표-8> 사형제도가 형벌로서의 적합성 (N=1,064, %)

		응답자수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반반이다/ 잘모름	부합되는 편이다	매우 부합된다	5점 평균
전 체		1,064	4.8	16.8	29.4	43.0	5.9	3.28
성 별	남 자	531	6.4	16.6	21.7	46.5	8.9	3.35
	여 자	533	3.2	17.1	37.1	39.6	3.0	3.22
연령별	10 대	135	6.7	17.8	32.6	39.3	3.7	3.16
	20 대	282	5.7	19.5	32.3	38.3	4.3	3.16
	30 대	286	4.2	15.4	29.7	42.3	8.4	3.35
	40 대	228	4.4	16.2	25.4	48.2	5.7	3.35
	50 대	133	3.0	14.3	26.3	49.6	6.8	3.43
종교별	기 독 교	284	4.6	20.4	27.5	43.0	4.6	3.23
	불 교	232	3.9	14.2	33.2	42.7	6.0	3.33
	천 주 교	91	5.5	15.4	36.3	36.3	6.6	3.23
	기타/없음	457	5.3	16.2	27.4	44.6	6.6	3.31
학력별	고졸이하	518	5.6	15.3	31.3	43.6	4.2	3.26
	대졸이상	546	4.0	18.3	27.7	42.5	7.5	3.3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8.6	34.2	34.7	20.6	1.8	2.73
	찬 성	681	2.6	7.0	26.4	55.7	8.2	3.60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지는 전체의71.1%가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응답자 중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경우는 57.4%가 효과가 없다고 했다
- 특히 종교가 불교인 응답자의 75.4%는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림-16>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N=1,064)



<표-9>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N=1,0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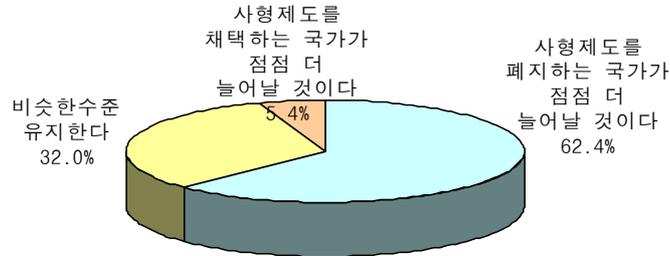
		응답자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느정도 중요하다	거의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4점 평균
전 체		1,064	11.6	59.5	26.3	2.5	2.20
성 별	남 자	531	13.6	58.2	24.9	3.4	2.18
	여 자	533	9.6	60.8	27.8	1.7	2.22
연령별	10 대	135	7.4	62.2	27.4	3.0	2.26
	20 대	282	7.4	60.3	29.8	2.1	2.27
	30 대	286	14.0	59.8	23.8	2.4	2.15
	40 대	228	15.4	55.7	25.0	3.9	2.18
	50 대	133	12.8	60.9	25.6	0.8	2.14
종교별	기 독 교	284	8.5	54.6	34.2	2.5	2.31
	불 교	232	15.9	59.5	22.0	2.6	2.11
	천 주 교	91	4.4	62.6	30.8	2.2	2.31
	기타/없음	457	12.7	61.9	22.8	2.6	2.15
학력별	고졸이하	518	13.3	57.1	26.1	3.3	2.19
	대졸이상	546	9.9	61.7	26.6	1.8	2.2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3.1	39.4	51.7	5.7	2.60
	찬 성	681	16.3	70.8	12.0	0.7	1.97

3. 세계 사형제도 추세 및 특징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 향후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62.4%로 나타났다으며,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의견은 5.4%로 나타났다. 또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폐지 국가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80%를 넘지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52%만이 폐지 국가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특히, 연령별로는 20대의 68.1%,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 72.5%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7>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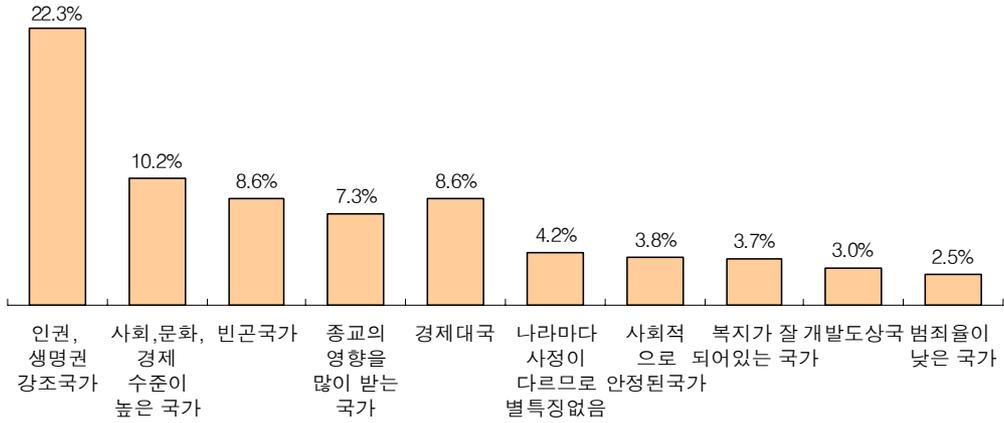
<표-10>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N=1,064, %)

		응답자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전 체		1,064	62.4	32.0	5.4
성별	남 자	531	61.8	31.6	6.4
	여 자	533	63.0	32.3	4.3
연령별	10 대	135	64.4	28.9	6.7
	20 대	282	68.1	28.0	3.5
	30 대	286	62.9	33.2	3.8
	40 대	228	59.2	34.2	6.1
	50 대	133	52.6	36.8	9.8
종교별	기 독 교	284	64.4	30.6	4.6
	불 교	232	57.3	36.2	5.6
	천 주 교	91	72.5	23.1	4.4
	기타/없음	457	61.7	32.4	5.9
학력별	고졸이하	518	58.7	33.6	7.1
	대졸이상	546	65.9	30.4	3.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80.9	16.4	2.3
	찬 성	681	52.0	40.7	7.0

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의 특징

-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22.3%가 인권, 생명권 강조 국가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 문화,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 10.2%, 빈곤 국가 8.6%,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7.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18> 사형제도 폐지국 국가의 특징 (N=1,064,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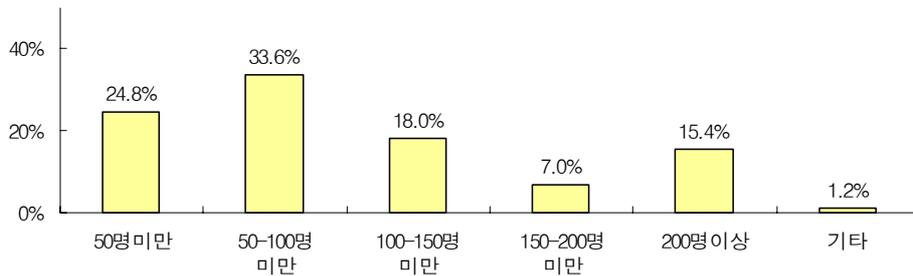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국민들이 느끼는 사형수의 수는 50~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5.4%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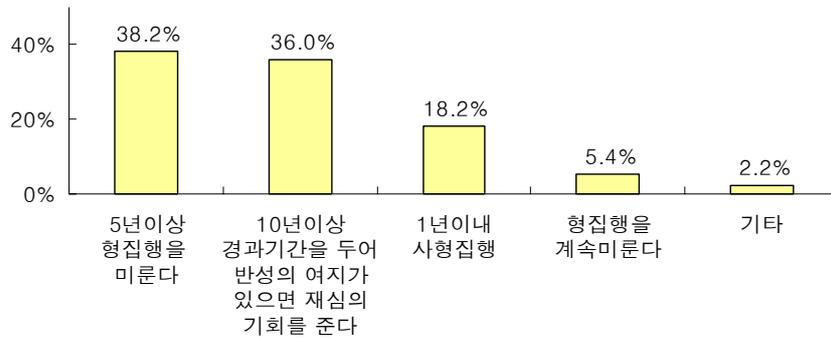
<그림-19> 체감으로 느끼는 사형수의 수 (N=1,064)



나.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 사형 집행시기는 '오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사형집행을 미루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형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6.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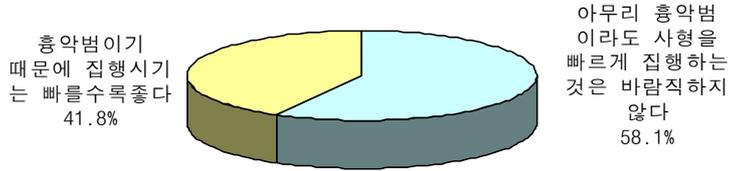
<그림-20> 사형수의 사형 집행시기 (N=1,064)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 흉악범의 사형집행을 사회적 여론에 따라 사형집행을 신속하게 하였을 때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8.1%로 나타났다. 즉,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사형집행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다.
- 특히, 이러한 의견은 남자(54.0%)보다는 여자(62.1%)가, 연령별로는 20대(64.5%), 종교가 천주교인 응답자(64.8%), 학력이 대졸이상(60.3%)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21>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 (N=1,064)



<표-11>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 (N=1,0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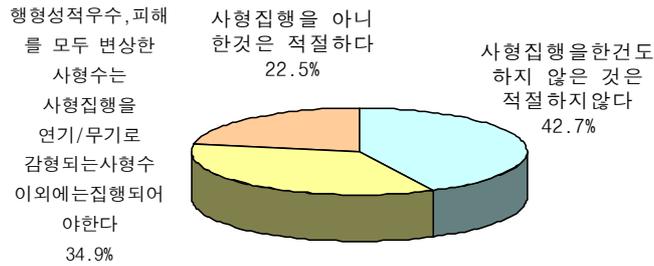
		응답자수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집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전 체		1,064	58.1	41.8
성별	남 자	531	54.0	46.0
	여 자	533	62.1	37.7
연령별	10 대	135	59.3	40.7
	20 대	282	64.9	35.1
	30 대	286	57.7	42.3
	40 대	228	56.6	43.0
	50 대	133	45.9	54.1
종교별	기 독 교	284	64.1	35.9
	불 교	232	51.3	48.7
	천 주 교	91	64.8	34.1
	기타/없음	457	56.5	43.5
학력별	고졸이하	518	55.8	44.2
	대졸이상	546	60.3	39.6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82.5	17.5
	찬 성	681	44.3	55.5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형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2.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51.4%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6.2%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러한 의견은 여자(39.6%)보다는 남자(45.8%)가, 연령별로 50대(48.9%)에

서, 응답자의 종교가 불교(47.4%)인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2>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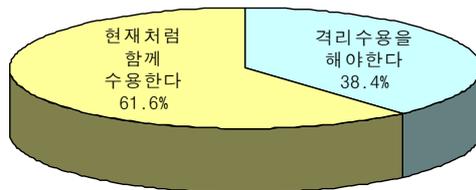
<표-12>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N=1,064, %)

		응답자수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한 건도 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성적 우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는 사형집행을 연기/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 이외에는 집행되어야 한다	사형집행을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
전 체		1,064	42.7	34.9	22.5
성 별	남 자	531	45.8	31.1	23.2
	여 자	533	39.6	38.6	21.8
연령별	10 대	135	47.4	25.2	27.4
	20 대	282	37.9	36.9	25.2
	30 대	286	44.4	36.0	19.6
	40 대	228	39.9	36.8	23.2
	50 대	133	48.9	34.6	16.5
종교별	기 독 교	284	39.1	36.3	24.6
	불 교	232	47.4	33.2	19.4
	천 주 교	91	35.2	34.1	30.8
	기타/없음	457	44.0	35.0	21.0
학력별	고졸이하	518	44.8	31.5	23.7
	대졸이상	546	40.7	38.1	21.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20.6	27.9	51.4
	찬 성	681	55.1	38.8	6.2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1.6%로,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38.4%보다 높게 나타났다.
-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 64.5%가 현재처럼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 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에, 50대에서는 타연령층에 비해 격리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9.6%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23> 사형수의 수용 방법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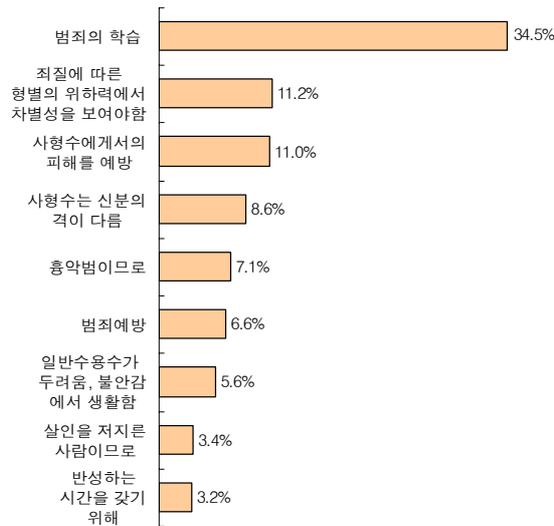


<표-13> 사형수의 수용 방법(N=1,064, %)

		응답자수	격리수용을 해야한다	현재처럼 함께 수용해야 한다
전 체		1,064	38.4	61.6
성 별	남	531	38.2	61.8
	여	533	38.6	61.4
연령별	10 대	135	40.0	60.0
	20 대	282	34.0	66.0
	30 대	286	35.3	64.7
	40 대	228	40.4	59.6
	50 대	133	49.6	50.4
종교별	기 독 교	284	35.6	64.4
	불 교	232	46.1	53.9
	천 주 교	91	36.3	63.7
	기타/없음	457	36.8	63.2
학력별	고졸이하	518	40.2	59.8
	대졸이상	546	36.8	63.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25.8	74.2
	찬 성	681	45.5	54.5

- 격리수용 이유로는 범죄의 학습우려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형벌의 위하력에서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응답이 11.2%로 나타났다.

<그림-24> 사형수를 격리수용 시켜야 하는 이유(N=409, %, 복수응답)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 사형수에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92.1%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이 비율이 높았으며, 40대의 연령층에서 타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시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교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90.9%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93.9%로 타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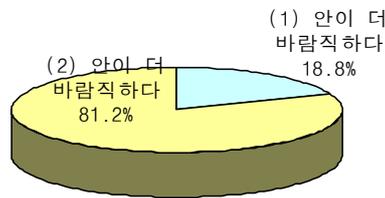
<표-14> 국가적 차원의 교정·교화프로그램 제공 및 교화 가능성
(N=1,064, %)

		응답자수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		교화 가능성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사형수는 교정 및 교화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다	사형수도 교정 및 교화가 될 것이다
전 체		1,064	92.1	7.9	9.0	90.9
성 별	남 자	531	89.6	10.4	12.2	87.6
	여 자	533	94.6	5.4	5.8	94.2
연령별	10 대	135	90.4	9.6	13.3	86.7
	20 대	282	92.2	7.8	6.7	92.9
	30 대	286	92.0	8.0	9.4	90.6
	40 대	228	95.6	4.4	6.1	93.9
	50 대	133	88.0	12.0	13.5	86.5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99.0	1.0	5.2	94.8
	찬 성	681	88.3	11.7	11.2	88.7

사. 법조항의 표현

- 법조항의 표현⁷⁾ 중 (2)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1.2%로 나타나, 판결의 폭을 넓히는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30대(21.7%), 종교가 불교(22.0%)일 경우에는 (1)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25> 법조항의 표현 (N=1,064)



7) 1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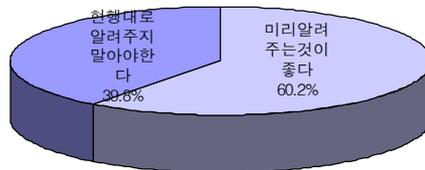
<표-15> 법조항의 표현 (N=1,064, %)

		응답자수	(1)안이 더 바람직하다	(2)안이 더 바람직하다
전 체		1,064	18.8	81.2
성 별	남 자	531	20.0	80.0
	여 자	533	17.6	82.4
연령별	10 대	135	18.5	81.5
	20 대	282	17.4	82.6
	30 대	286	21.7	78.3
	40 대	228	18.9	81.1
	50 대	133	15.8	84.2
종교별	기 독 교	284	14.8	85.2
	불 교	232	22.0	78.0
	천 주 교	91	20.9	79.1
	기타/없음	457	19.3	80.7
학력별	고졸이하	518	17.8	82.2
	대졸이상	546	19.8	80.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5.0	95.0
	찬 성	681	26.6	73.4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사형수에게 집행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0.2%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39.8%를 보였다.
- 사형집행 일자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는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52.2%로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비인도적 9.7%, 자살/자해의 가능성 3.8%, 심리적인 동요로 소란 발생 3.5%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26>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일 공지 찬·반(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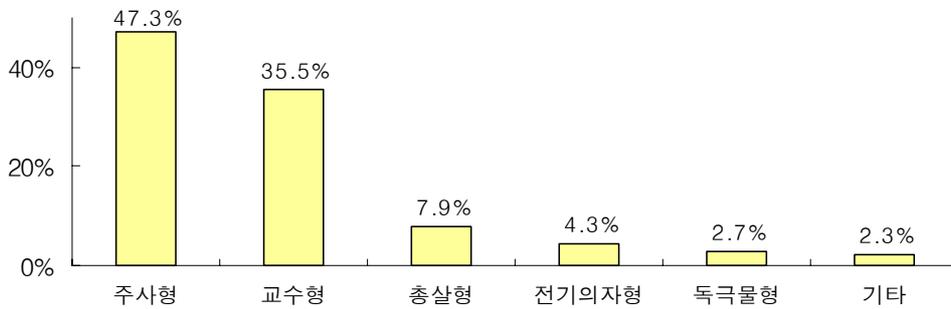
<표-16>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일 공지 반대 이유(N=423, 중복응답)

반대 이유	응답자수	비율(%)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221	52.2
비인도적	41	9.7
자살, 자해 가능성	16	3.8
심리적인 동요로 소란 등 발생	15	3.5
미리 알려주면 부정적인 일이 많이 발생	15	3.5
교정, 교화에 악영향	12	2.8
굳이 알려줘야 할 필요성 없음	12	2.8
죄값에 대한 두려움의 고통으로 살 수 있게 알리지 말아야 함	12	2.8
하루하루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11	2.6
모르겠다	11	2.6
탈주우려	10	2.4
자포자기 방지	9	2.1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알려줄 필요 없다	8	1.9
알려주지 않는 것이 사형수를 배려하는 것 같아서	16	3.8
통제불능 등의 돌발사태 발생 방지	5	1.2
존재가치가 없는 범죄자라서	5	1.2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자임	4	0.9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줄 수 있어서	4	0.9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3	0.7
사형수가 삶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3	0.7
파생범죄 예방	2	0.5
새로운 증거나 오판 반복의 우려가 있어서	2	0.5
수용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2	0.5
사형수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1	0.2
수용자들에게 범죄지식을 전달할 것 같아서	2	0.5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1	0.2

자. 사형집행 방법

-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주사형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7.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수형 35.5%, 총살형 7.9%, 전기의자형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27> 사형집행 방법 (N=1,064)



5.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가.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 위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로 나타났다.
- [사례1]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사형폐지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타 연령층보다 50대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7> [사례1]에서의 사형제도 존폐 여부 (N=1,064,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1,064	67.6	32.2
성별	남	531	64.0	35.8
	여	533	71.1	28.7
연령별	10 대	135	67.4	32.6
	20 대	282	68.1	31.6
	30 대	286	65.0	35.0
	40 대	228	68.4	31.1
	50 대	133	70.7	29.3
종교별	기 독 교	284	71.5	28.2
	불 교	232	66.8	33.2
	천 주 교	91	71.4	28.6
	기타/없음	457	64.8	35.0
학력별	고졸이하	518	69.1	30.7
	대졸이상	546	66.1	33.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97.9	2.1
	찬 성	681	50.5	49.2

①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719명)	응답률
· 오판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오판가능성)	87.1 %
·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해	8.1 %
· 신중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	2.8 %
·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8 %
· 어떤 이유로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1.5 %
· 재심을 통해 기회를 주어야 함	1.0 %

②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343명)	응답률
·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	10.2 %
· 사회질서 확립	9.9 %
· 흉악범죄 예방	9.3 %
· 정확한 사전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사형제도 유지	8.2 %
·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도 사형제도 유지되어야 함	7.0 %
· 살인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임	7.0 %
· 증거가 확실하여 오판이 없다면 사형집행해야 함	5.5 %
· 오판의 가능성으로 진실 규명 기회 부여 후 사형집행	5.5 %
· 오판의 가능성은 적음	4.7 %
· 법질서 유지	4.4 %
· 제도자체는 존속되어야 함	3.8 %
· 재범 우려 방지	2.9 %

나.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균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 위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9%,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1%로 사형제도 유지 쪽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여자는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52.2%로, 유지 의견 48.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에도 폐지 의견이 59.3%로 유지 40.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연령별로는 타연령층보다 30대에서 사형제도의 유지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사례2]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1,064,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1,064	46.9	53.1
성 별	남	531	41.8	58.2
	여	533	52.0	48.0
연령별	10 대	135	48.1	51.9
	20 대	282	48.9	51.1
	30 대	286	42.7	57.3
	40 대	228	49.6	50.4
	50 대	133	45.9	54.1
종교별	기 독 교	284	55.6	44.4
	불 교	232	41.8	58.2
	천 주 교	91	59.3	40.7
	기타/없음	457	41.6	58.4
학력별	고졸이하	518	44.6	55.4
	대졸이상	546	49.1	50.9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86.2	13.8
	찬 성	681	24.8	75.2

①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폐지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499명)	응답률
· 우발적인 사건이므로	43.5 %
·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함	21.6 %
· 인간의 생명권 존엄성을 보호해야 함	11.4 %
·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함	9.2 %
· 교정 및 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9.0 %
· 사형당할 만큼의 죄는 아님	4.4 %
·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로 대체 가능함	3.6 %
· 어떤 이유라도 사형은 폐지되어야 함	3.2 %
· 인간이라 실수할 수 있으므로	2.6 %
· 가해자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2.6 %
· 살인자라서 사형을 시키는 것은 모순임	2.1 %

②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유지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565명)	응답률
·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하지 못함	25.0%
· 사람을 죽인 죄 값을 받아야함(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함)	18.1%
· 감정에 의한 살인을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함	12.7%
·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재범의 우려가 있음	11.2%
· 고참사병(타인)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함	7.8%
· 인명 경시 풍조 예방	6.5%
· 놀림,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고참병을 죽일 만큼의 사건이 아님	6.2%
· 군대존속을 위해 (군대는 명령 우선인데 우선사항을 지키지 않음)	5.5%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2.8%

다.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여 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9.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5%로 사형제도 유지 쪽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연령별로는 타연령층보다 30대에서 사형제도의 유지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에 폐지 의견이 29.6%로 타종교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사례3]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1,064,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1,064	19.5	80.5
성 별	남 자	531	20.7	79.3
	여 자	533	18.4	81.6
연령별	10 대	135	20.0	80.0
	20 대	282	23.8	76.2
	30 대	286	16.8	83.2
	40 대	228	21.1	78.9
	50 대	133	13.5	86.5
종교별	기 독 교	284	29.6	70.4
	불 교	232	12.9	87.1
	천 주 교	91	23.1	76.9
	기타/없음	457	16.0	84.0
학력별	고졸이하	518	18.3	81.7
	대졸이상	546	20.7	79.3
사형찬반여부	반 대	383	53.3	46.7
	찬 성	681	.6	99.4

①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208명)	응답률
· 교화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29.3 %
·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 고취	22.1 %
·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책임이 있음	8.7 %
· 사형 대신 다른 방법의 형벌을 모색해야 함	8.1 %
·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음	7.2 %
·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4.8 %
·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함	4.8 %
· 종신형이 적당할 것 같음	4.8 %
· 흉악범죄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음	4.3 %

②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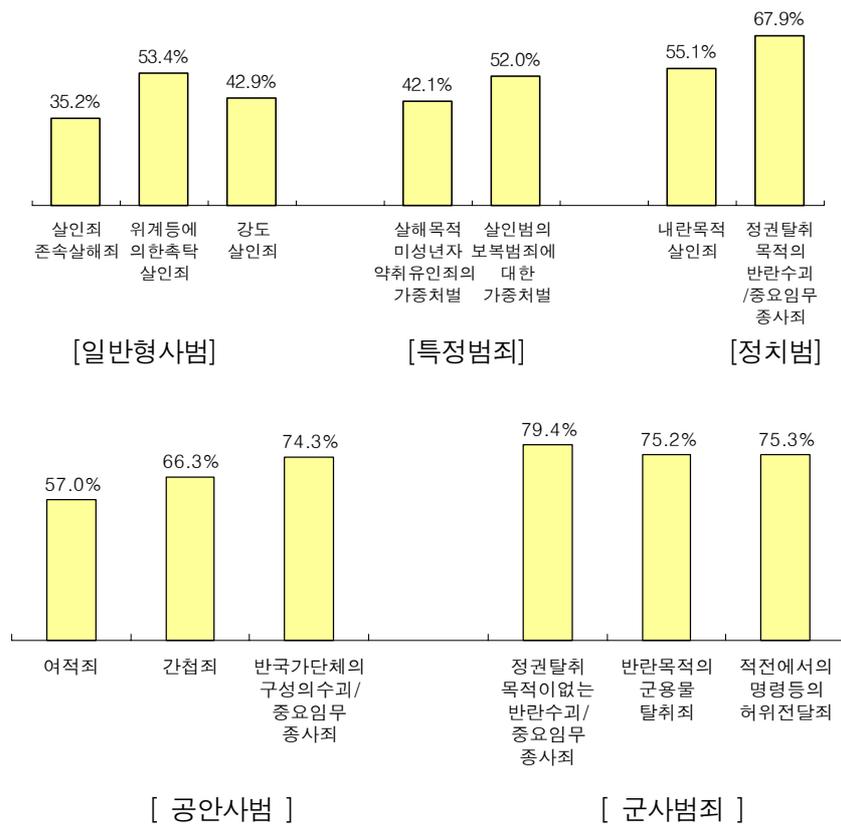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856명)	응답률
· 살해 방법이 비인간적이라서	20.2 %
· 흉악범 및 강력범이기 때문에	12.7 %
· 인간이기를 포기 인간이하라 반드시 죽어야 한다	7.8 %
·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7.4 %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므로	6.8 %
· 반성 및 교화가 힘들어서	5.6 %
· 사회방위 차원 및 범죄예방	4.7 %
· 타인의 귀중한 목숨을 빼앗아 용서받을 수 없다	4.4 %
· 인과응보 (죄의 대가)	4.1 %
· 인간 생명 및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4.1 %
· 여러명을 죽인 연쇄 살인사건이라서	4.1 %
· 모방범죄(유사범죄) 의 우려가 있어서	3.6 %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 일반형사범에 해당하는 '위계등에의한축타살인죄는 사형반대가 53.4%로 그 대체형벌로는 감형있는 종신형이40.1%로 가장 높았다.
-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항가중처벌은 사형반대가 52.0%였으며, 그에 해당하는 대체형벌로는 감형있는 종신형이33.3%로 가장 높았다.
- 정치범의 경우는 모두 사형반대비율이 높았으며 '내란목적살인죄와 '정권탈취목적의 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의 대체형벌로는 모두 무기형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 공안사범의 경우도 모두 사형반대비율이 높았으며 그 대체형벌로는 무기형이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 군사범죄의 경우도 역시 모두 사형반대비율이 높았으며 '정권탈취목적이 없는 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의 대체형벌로는 40.7%가 감형이 있는 중신형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의 대체 형벌로는 각각 42.8%, 40.8%를 보인 무기형이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그림-28>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한 사형반대율 (N=1,064)



<표-20> 사형반대율 및 대체형벌

	범죄명	사형 반대율 (%)	대체형벌(%)			
			감형 없는 중신형	감형 있는 중신형	무기형	기타
일반형사범	살인죄·존속살해죄	35.2	40.8	30.9	27.7	0.6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53.4	29.2	40.1	29.0	1.7
	강도살인죄	42.9	32.5	35.1	30.9	1.5
특정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42.1	36.4	31.7	31.5	0.4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한가중처벌	52.0	32.5	33.3	33.1	1.1
정치범	내란목적살인죄	55.1	30.2	32.8	35.5	1.5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67.9	25.9	34.9	37.4	1.8
공안사범	여적죄	57.0	29.5	30.2	39.1	1.2
	간첩죄	66.3	27.0	34.2	37.2	1.6
	반국가단체의구성외수괴·중요임무종사죄	74.3	24.3	34.4	38.7	2.6
군사범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79.4	18.1	40.7	38.5	2.7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75.2	20.2	34.5	42.8	2.5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75.3	18.6	37.5	40.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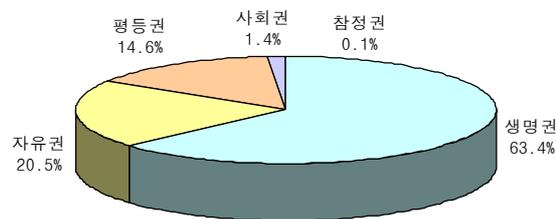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가. 인간의 기본권

-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는 생명권(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유권(20.5%), 평등권(14.6%), 사회권(1.4%) 순으로 나타났다.

- 생명권에 대한 인식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욱 높았으며 남자는 자유권에 대해 여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타연령층에 비해 50대의 경우, 학력이 고졸이하의 경우는 평등권에 대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29> 인간의 기본권 (N=1,064)



<표-21> 인간의 기본권 (N=1,064, %)

		응답자수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전 체		1,064	63.4	20.5	14.6	1.4
성별	남 자	531	60.6	23.4	14.5	1.3
	여 자	533	66.2	17.6	14.6	1.5
연령별	10 대	135	54.8	25.9	17.8	1.5
	20 대	282	66.0	22.3	11.0	0.7
	30 대	286	65.4	19.9	12.2	2.1
	40 대	228	67.1	15.4	16.2	1.3
	50 대	133	56.4	21.1	21.1	1.5
종교별	기 독 교	284	65.1	20.4	12.7	1.8
	불 교	232	61.2	17.7	19.8	.9
	천 주 교	91	70.3	16.5	11.0	2.2
	기타/없음	457	62.1	22.8	13.8	1.3
학력별	고졸이하	518	60.0	21.2	17.0	1.7
	대졸이상	546	66.7	19.8	12.3	1.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76.2	13.3	8.9	1.6
	찬 성	681	56.2	24.5	17.8	1.3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4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29.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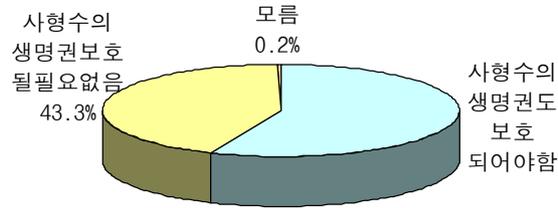
<표-22>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N=1,064, %)

		응답자수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체		1,064	43.8	29.2	27.0
성 별	남	531	42.4	27.9	29.8
	여	533	45.2	30.6	24.2
연령별	10 대	135	35.6	34.0	30.4
	20 대	282	42.6	29.4	28.0
	30 대	286	45.1	26.2	28.7
	40 대	228	44.3	31.6	24.1
	50 대	133	51.1	26.3	22.6
종교별	기 독 교	284	37.3	38.8	23.9
	불 교	232	48.7	27.2	24.1
	천 주 교	91	39.6	38.5	22.0
	기타/없음	457	46.2	22.5	31.3
학력별	고졸이하	518	43.4	30.5	26.1
	대졸이상	546	44.1	28.0	27.8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20.6	59.0	20.4
	찬 성	681	56.8	12.5	30.7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6.5%로 나타났으며,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3.3%로 나타났다.

<그림-30>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1,064)



<표-23>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1,064, %)

		응답자수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전 체		1,064	56.5	43.3
성별	남 자	531	53.5	46.3
	여 자	533	59.5	40.3
연령별	10 대	135	57.0	43.0
	20 대	282	61.7	37.9
	30 대	286	56.6	43.4
	40 대	228	54.8	44.7
	50 대	133	47.4	52.6
종교별	기 독 교	284	65.5	34.5
	불 교	232	48.7	50.9
	천 주 교	91	64.8	35.2
	기타/없음	457	53.2	46.6
학력별	고졸이하	518	56.2	43.8
	대졸이상	546	56.8	42.9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90.1	9.9
	찬 성	681	37.6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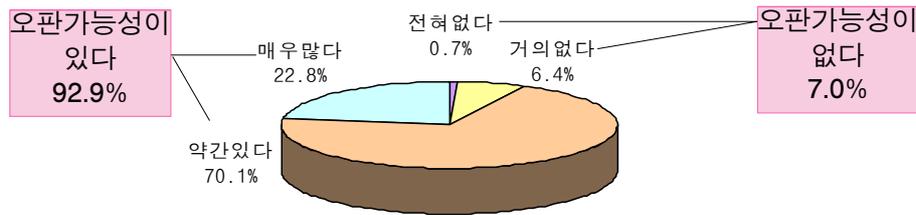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가.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 사법제도 상 잘못된 판결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92.9%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의견은 남자(91.7%)보다 여자(94.2%)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종교가 기독교(95.8%)인 경우가 타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31> 오판가능성의 평가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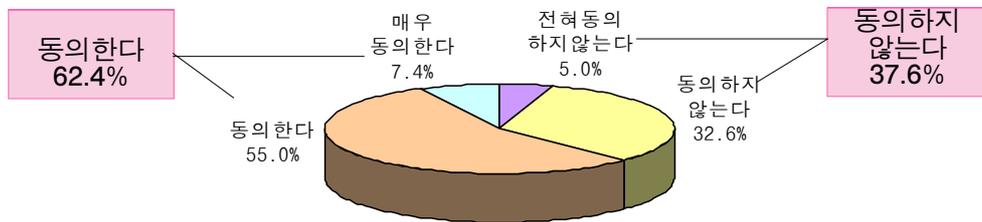
<표-24>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N=1,064, %)

		응답자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4점 평균
전 체		1,064	0.7	6.4	70.1	22.8	3.15
성별	남	531	0.9	7.3	71.0	20.7	3.11
	여	533	0.4	5.4	69.2	25.0	3.19
연령별	10 대	135	-	6.7	73.3	20.0	3.13
	20 대	282	0.7	7.8	69.1	22.3	3.13
	30 대	286	1.0	5.2	69.9	23.8	3.16
	40 대	228	0.9	5.3	68.4	25.4	3.18
	50 대	133	-	7.5	72.2	20.3	3.13
종교별	기 독 교	284	.4	3.9	69.4	26.4	3.22
	불 교	232	1.3	6.9	65.1	26.7	3.17
	천 주 교	91	.0	7.7	68.1	24.2	3.16
	기타/없음	457	.7	7.4	73.5	18.4	3.10
학력별	고졸이하	518	0.6	5.2	72.2	22.0	3.16
	대졸이상	546	0.7	7.5	68.1	23.6	3.15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0.5	3.1	70.0	26.4	3.22
	찬 성	681	0.7	8.2	70.2	20.9	3.11

나.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 오판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경우는 62.4%로 나타났다으며, 37.6%는 이 의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의견은 타연령층에 비해 20대(68.8%)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0대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에 45.9%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32>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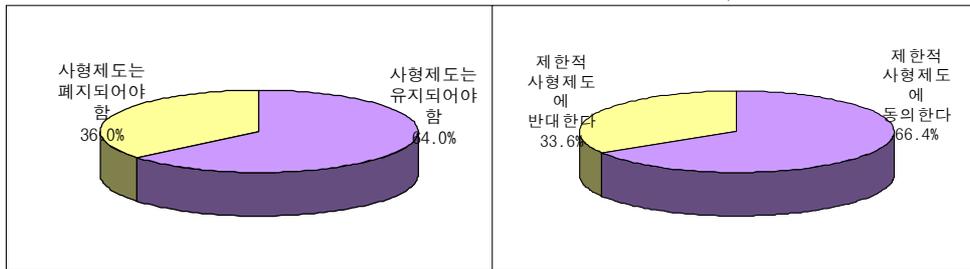
<표-25>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 폐지 의견 (N=1,064, %)

		응답자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4점 평균
전 체		1,064	5.0	32.6	55.0	7.4	2.65
성별	남	531	6.2	31.3	54.2	8.3	2.65
	여	533	3.8	34.0	55.7	6.6	2.65
연령별	10 대	135	3.0	34.8	51.9	10.4	2.70
	20 대	282	4.6	26.6	58.2	10.6	2.75
	30 대	286	7.7	31.8	54.2	6.3	2.59
	40 대	228	3.9	3.2	56.6	5.3	2.63
	50 대	133	3.8	42.1	50.4	3.8	2.54
종교별	기 독 교	284	4.2	28.5	57.7	9.5	2.73
	불 교	232	6.0	39.7	47.0	7.3	2.56
	천 주 교	91	3.3	29.7	63.7	3.3	2.67
	기타/없음	457	5.3	32.2	55.6	7.0	2.64
학력별	고졸이하	518	3.9	36.3	53.1	6.8	2.63
	대졸이상	546	3.0	29.1	56.8	8.1	2.6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1.6	7.3	73.6	17.5	3.07
	찬 성	681	6.9	46.8	44.5	1.8	2.41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4.0%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36.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종교가 기독교이거나 천주교인 경우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45.8%, 47.3%로 타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사형을 반사회적 범죄에만 적용하고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66.4%, 동의하지 않음이 33.6%로 나타났다.

<그림-33>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1,064)



<표-26> 사형제도의 존폐 및 제한적 사형제도⁸⁾에 대한 의견(N=1,064,%)

		응답자수	사형제도 존폐의견		제한적 사형제도	
			폐지	유지	찬성	반대
전 체		1,064	36.0	64.0	66.4	33.6
성 별	남 자	531	35.0	65.0	66.7	33.3
	여 자	533	37.0	63.0	66.2	33.8
연령별	10 대	135	43.0	57.0	63.0	37.0
	20 대	282	37.9	62.1	61.7	38.3
	30 대	286	32.9	67.1	69.9	30.1
	40 대	228	36.4	63.6	66.7	33.3
	50 대	133	30.8	69.2	72.2	27.8
종교별	기 독 교	284	45.8	54.2	62.7	37.3
	불 교	232	29.3	70.7	71.6	28.4
	천 주 교	91	47.3	52.7	63.7	36.3
	기타/없음	457	31.1	68.9	66.7	33.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383	100.0	-	59.0	41.0
	찬 성	681	-	100.0	70.6	29.4

8) 제한적 사형제도는 사형을 반인륜적 범죄에만 적용하고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 사형을 인정하는 제도

제2장 시민단체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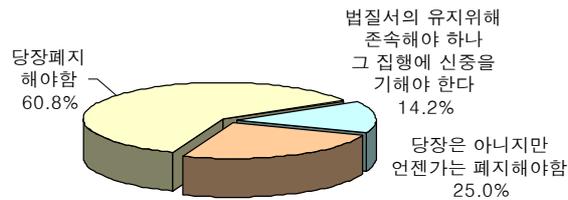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5.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전체적으로 사형제도 유지보다는 당장 또는 추후에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85.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종교가 불교인 경우는 타종교에 비해 다소 엄격한 태도를 보여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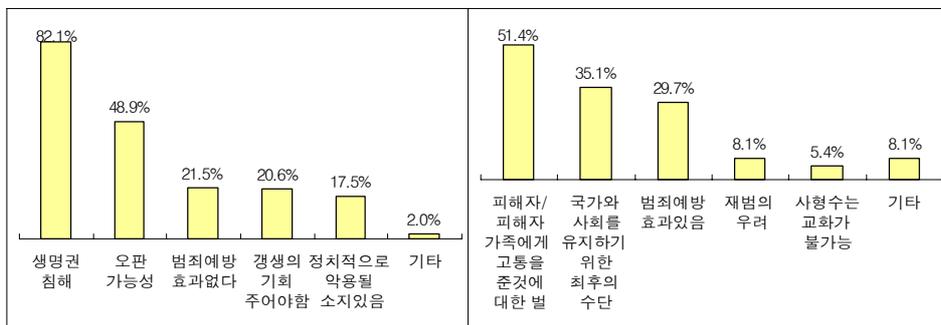


<표-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260, %)

		응답자수	법질서유지 위해 존속해야 하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전 체		260	14.2	25.0	60.8
종교별	기 독 교	74	16.2	27.0	56.8
	불 교	27	29.6	33.3	37.0
	천 주 교	30	16.7	33.3	50.0
	기타/없음	129	9.3	20.2	70.5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1.8	27.4	70.9
	찬 성	37	89.2	10.8	-

- 사형제도의 폐지 이유로는 사형제도가 인간이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8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오판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48.9%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2> 폐지 이유(N=223) <그림-3> 유지 이유(N=37,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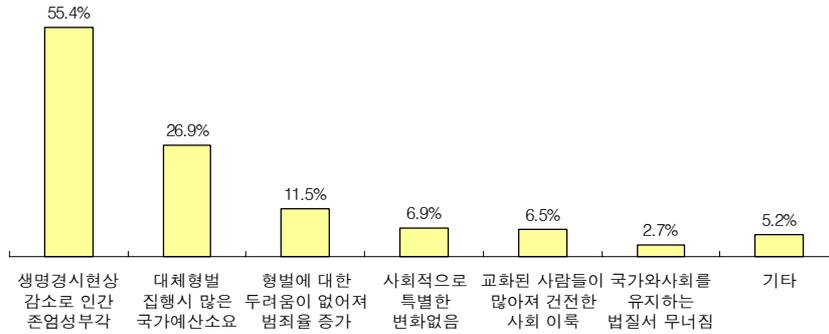


-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사형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51.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견으로 35.1%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29.7%로 나타났다.

나. 사형제도가 폐지시, 예상되는 점

- 사형제도 폐지 시에 예상되는 점으로는 생명경시 현상 감소로 인간의 존엄성이 부각된다는 의견이 55.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체형벌을 집행하는 데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가 26.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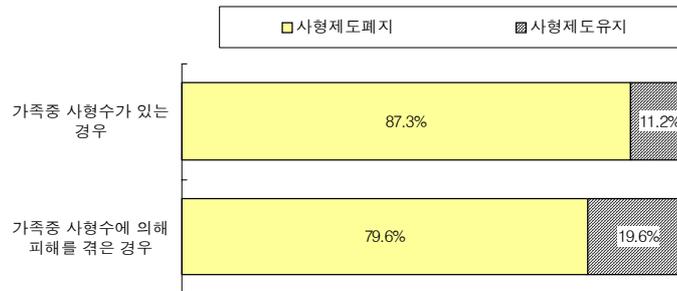
<그림-4>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점 (N=260, 복수응답)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가족 중 사형수가 있는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 모두 사형제도의 폐지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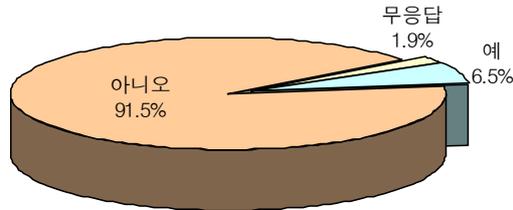
<그림-5>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N=260)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만약 본인의 가족이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가해자를 사형시키더라도 원한/증오/미움 등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91.5%로 없어질 것 같다는 의견 6.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6>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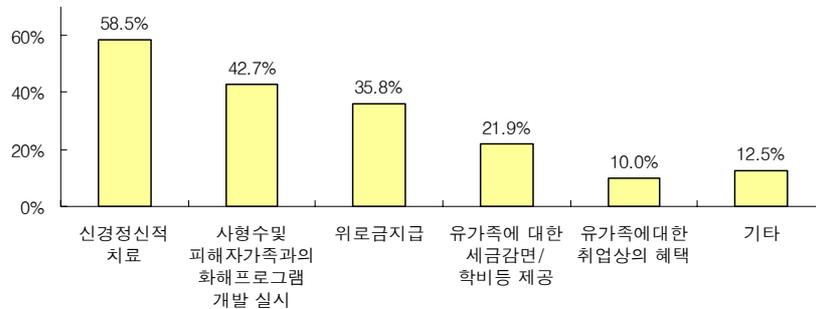
<표-2>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N=260, %)

		응답자수	원한/증오/미움이 제거된다	원한/증오/미움이 제거안된다
전 체		260	6.5	91.5
종교별	기 독 교	74	9.5	86.5
	불 교	27	11.1	85.2
	천 주 교	30	6.7	93.3
	기타/없음	129	3.9	95.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1.8	96.4
	찬 성	37	35.1	62.2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구제방법으로는 신경정신적인 치료가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사형수 및 피해자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이 42.7%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위로금지금이 35.8%, 유가족에 대한 세금감면/학비 등의 제공이 21.9% 등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사형수를 사형집행 해야 함 시간이 필요하며 회복방법이 없음, 사형수의 진정한 참회, 인권의식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7>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N=260,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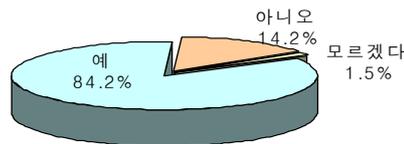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1) 사형수 가족을 사형제도의 피해자로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견

-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84.2%로, 그 가족이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비율(14.2%)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형수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8> 사형수의 가족을 피해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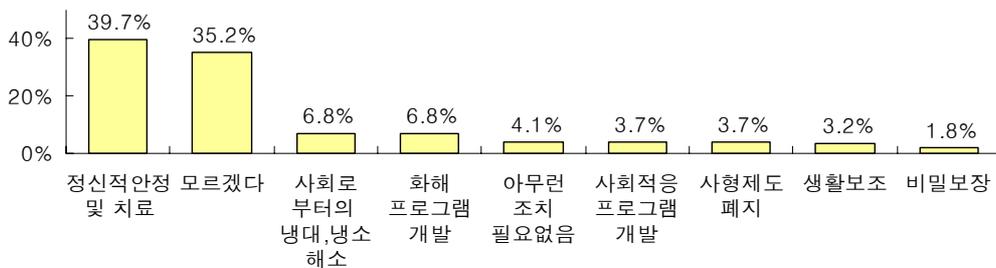
<표-3> 사형수의 가족을 피해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N=260, %)

		응답자수	사형수 가족은 피해자이다	사형수 가족은 피해자가 아니다
전 체		260	84.2	14.2
종교별	기 독 교	74	81.1	17.6
	불 교	27	81.5	18.5
	천 주 교	30	80.0	16.7
	기타/없음	129	87.6	10.9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88.3	9.9
	찬 성	37	59.5	40.5

2) 사형수 가족에 대한 조치

- 사형수 가족에 대한 조치로는 39.7%가 정신적 안정 및 치료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로부터의 냉대, 냉소 해소(6.8%), 화해프로그램개발(6.8%), 아무런 조치 필요 없음(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세금감면 위로가 필요함, 위로금지급, 사회적 관심, 가족과 함께 교화프로그램참여, 이전(이사)를 시켜준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9> 사형수의 가족에 대한 조치 (N=219,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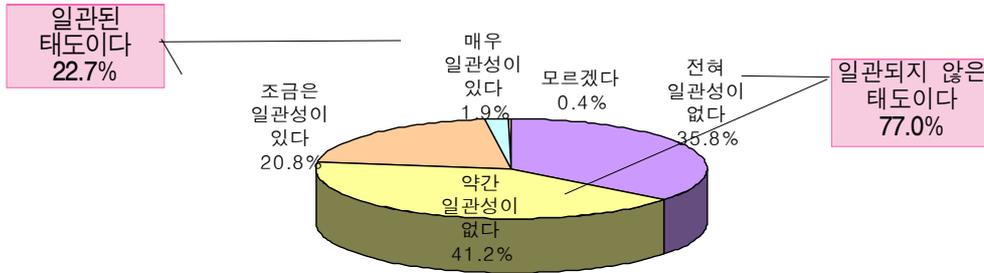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의견은 77.0%로 나타났으며, 일관성이 있다는 의견이 22.7%에 불과했다.

<그림-10>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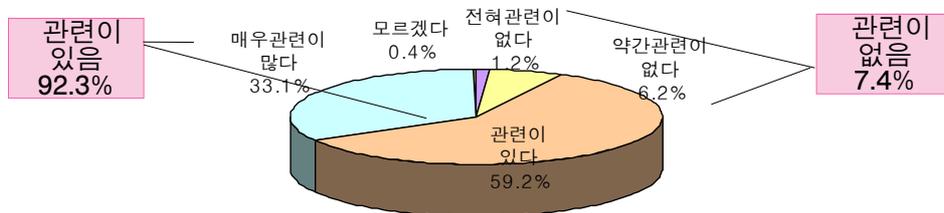
<표-4>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N=260, %)

		응답자수	전혀 일관성이 없다	약간은 일관성이 없다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	매우 일관성이 있다	4점 평균
전 체		260	35.8	41.2	20.8	1.9	1.89
종교별	기 독 교	74	29.7	43.2	24.3	2.7	2.00
	불 교	27	29.6	40.7	25.9	3.7	2.04
	천 주 교	30	40.0	33.3	23.3	3.3	1.90
	기타/없음	129	39.5	41.9	17.1	.8	1.79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41.3	43.0	14.8	0.9	1.75
	찬 성	37	2.7	29.7	56.8	8.1	2.72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 사형제도는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과 관계가 있다는 응답은 92.3%로 관련이 없다는 의견 7.4%보다 훨씬 많은 의견을 보였다

<그림-11> 사형제도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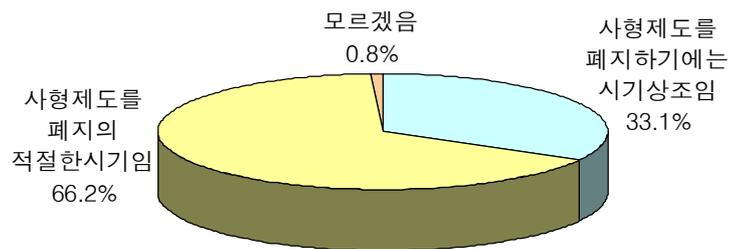
<표-5>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N=260, %)

		응답자수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매우 관련이 많다	4점 평균
전 체		260	1.2	6.2	59.2	33.1	3.25
종교별	기 독 교	74	-	5.4	59.5	33.9	3.29
	불 교	27	3.7	18.5	59.3	18.5	2.93
	천 주 교	30	-	6.7	56.7	36.7	3.30
	기타/없음	129	1.6	3.9	59.7	34.9	3.28
사형찬반 여부	반 대 성	223	-	3.1	60.1	36.8	3.34
	찬 성	37	8.1	24.3	54.1	10.8	2.69

1)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 우리나라의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형제도 폐지 시기는 '현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66.2%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33.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중 74.4%는 '현재가 적절한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그림-12>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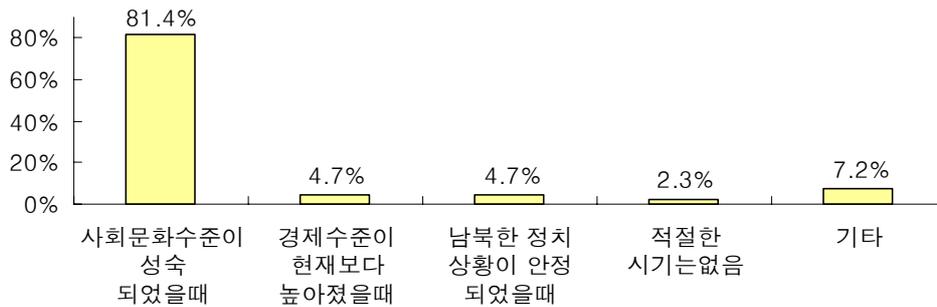
<표-6>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N=260, %)

		응답자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전 체		260	33.1	66.2
종교별	기 독 교	74	36.5	62.2
	불 교	27	40.7	59.3
	천 주 교	30	33.3	66.7
	기타/없음	129	29.5	69.8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24.7	74.4
	찬 성	37	83.8	16.2

2) 적절한 사형제도 폐지 시기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문화 수준이 성숙되었을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제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졌을 때, 남북한 정치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라는 응답이 각각 4.7%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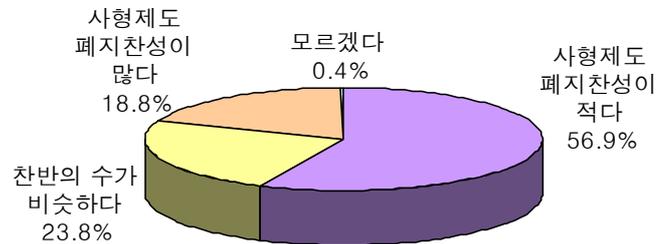
<그림-13> 적절한 사형제도 폐지 시기 (N=86,%)



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

- 시민단체의 56.9%는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많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찬성하는 의원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은 18.8%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14>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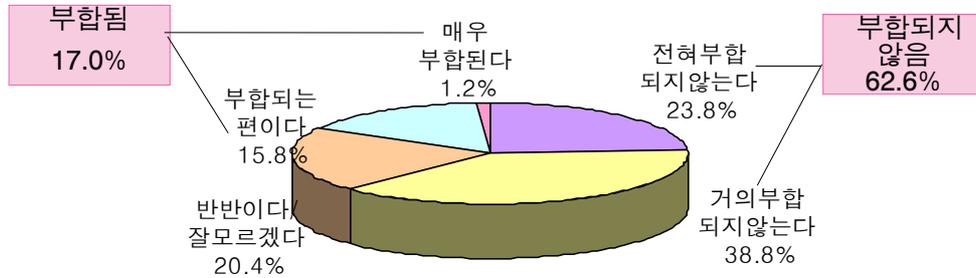
<표-7>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N=260, %)

		응답자수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 적다	폐지 찬성·반대가 비슷하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 많다
전 체		260	56.9	23.8	18.8
종교별	기 독 교	74	51.4	27.0	21.6
	불 교	27	51.9	29.6	18.5
	천 주 교	30	43.3	16.7	40.0
	기타/없음	129	64.3	22.5	12.4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59.2	22.0	18.4
	찬 성	37	43.2	35.1	21.6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사형제도가 형벌 목적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62.6%가 부합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5> 사형제도가 형벌로써의 적합성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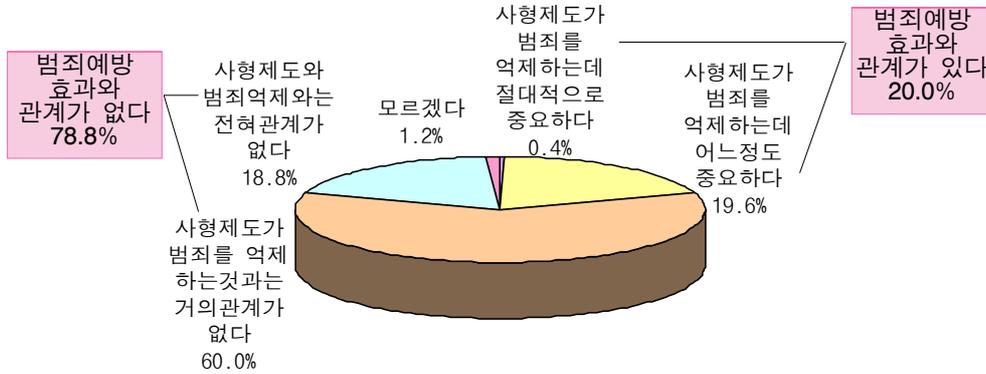
<표-8> 사형제도가 형벌로써의 적합성 (N=260, %)

		응답자수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반반이다/잘모름	부합되는 편이다	매우 부합된다	5점 평균
전 체		260	23.8	38.8	20.4	15.8	1.2	2.32
종교별	기 독 교	74	23.0	39.2	20.3	16.2	1.4	2.34
	불 교	27	25.9	25.9	25.9	22.2	.0	2.44
	천 주 교	30	13.3	36.7	20.0	26.7	3.3	2.70
	기타/없음	129	26.4	41.9	19.4	11.6	.8	2.19
사형찬반 여부	반 대 찬	223	27.8	44.8	19.3	7.6	0.4	2.08
	찬 성	37	0.0	2.7	27.0	64.9	5.4	3.73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78.8%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87.9%가 사형제도는 범죄예방효과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 하였다.

<그림-16>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N=260)



<표-9>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N=2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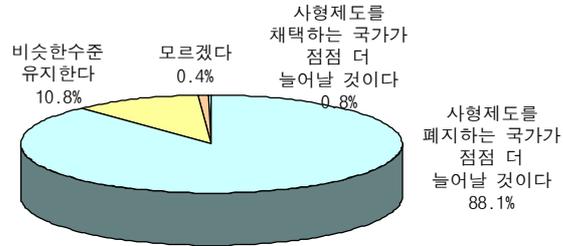
		응답자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느정도 중요하다	거의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4점 평균
전 체		260	0.4	19.6	60.0	18.8	2.98
종교별	기 독 교	74	29.7	51.4	18.9	-	2.89
	불 교	27	22.2	70.4	7.4	-	2.85
	천 주 교	30	36.7	43.3	20.0	-	2.83
	기타/없음	129	9.3	66.7	20.9	2.3	3.1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	11.2	65.9	22.0	3.11
	찬 성	37	2.7	70.3	24.3	-	2.22

3. 국민들이 느끼는 세계 사형제도 추세 및 특징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 향후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국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은 88.1%로 나타났다으며,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의견은 0.8%에 불과하였다.

<그림-17> 사형제도의 세계적(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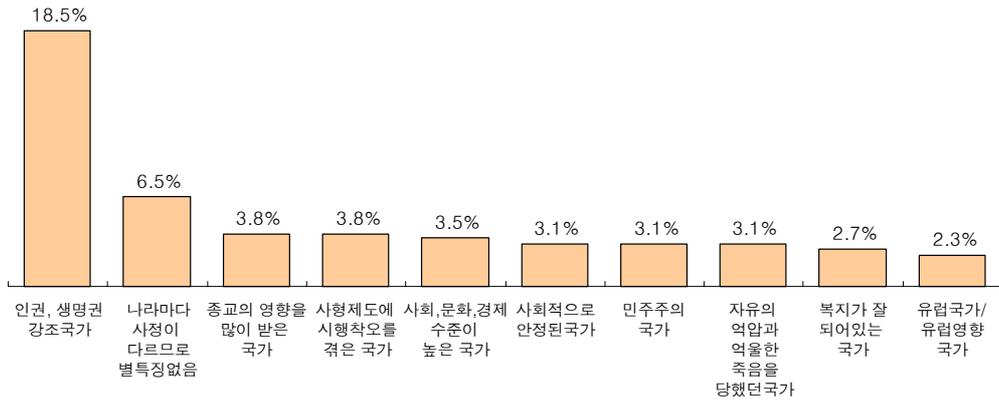
<표-10> 사형제도 채택여부에 대한 국제적 추세(N=260, %)

		응답자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전 체		260	88.1	10.8	0.8
종교별	기 독 교	74	51.4	27.0	21.6
	불 교	27	51.9	29.6	18.5
	천 주 교	30	43.3	16.7	40.0
	기타/없음	129	64.3	22.5	12.4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59.2	22.0	18.4
	찬 성	37	43.2	35.1	21.6

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의 특징

-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18.5%가 인권, 생명권 강조 국가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별 특징이 없다는 의견이 6.5%,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3.8%, 사형제도에 시행착오를 겪은 국가 3.8%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18> 사형제도 폐지국의 특징 (N=260,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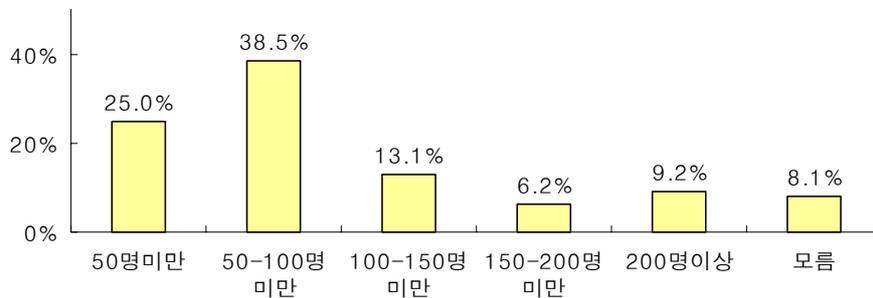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느끼는 사형수의 수는 50~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50명 미만이 25.0%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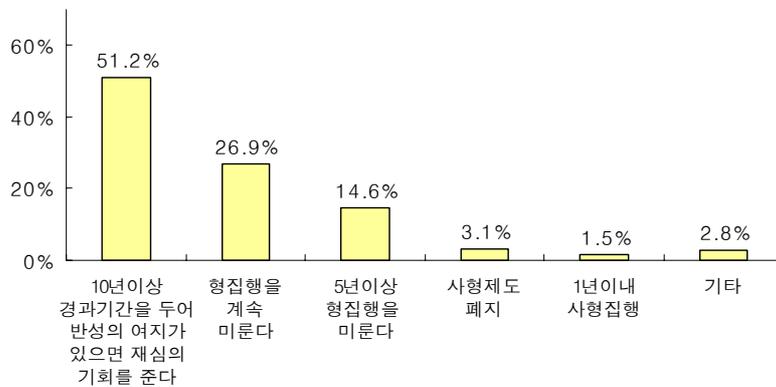
<그림-19> 체감으로 느끼는 사형수의 수 (N=260)



나.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 사형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형집행을 계속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6.9%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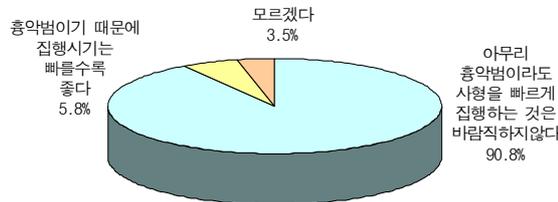
<그림-20> 사형수의 사형 집행시기 (N=260)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 흉악범의 사형집행을 사회적 여론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였을 때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90.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21> 흉악범의 사형집행 시기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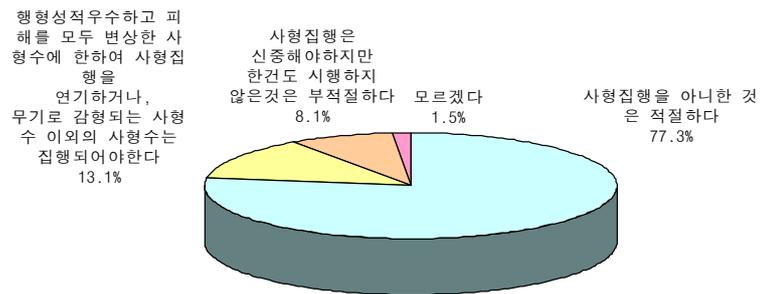
<표-11>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 (N=260, %)

		응답자수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집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전 체		260	90.8	5.8
종교별	기 독 교	74	89.2	6.8
	불 교	27	81.5	18.5
	천 주 교	30	93.3	3.3
	기타/없음	129	93.0	3.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94.6	1.8
	찬 성	37	67.6	29.7

라.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시민단체에서는 77.3%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러한 의견은 여자(71.9%)보다는 남자(83.2%)에서 더욱 높았다.

<그림-22>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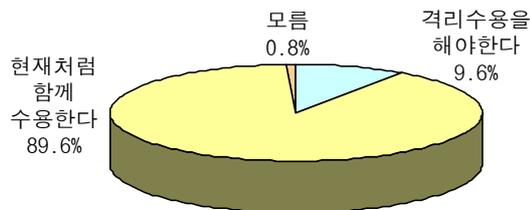
<표-12>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N=260, %)

		응답자수	사형집행을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	행형성적우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는 사형집행을 연기/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이외에는 집행되어야 한다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한건도 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 체		260	77.3	13.1	8.1
종교별	기 독 교	74	77.0	12.2	10.8
	불 교	27	70.4	18.5	11.1
	천 주 교	30	66.7	16.7	13.3
	기타/없음	129	81.4	11.6	4.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87.4	5.4	5.4
	찬 성	37	16.2	59.5	24.3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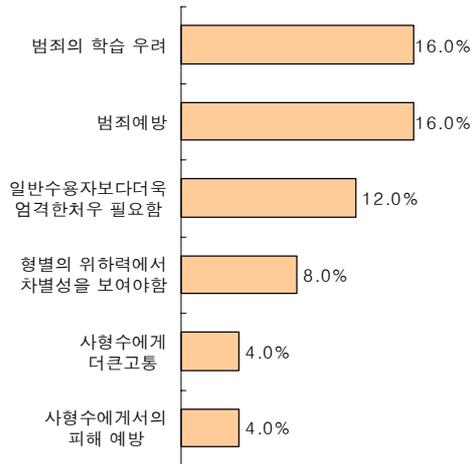
-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9.6%로,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9.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23> 사형수의 수용 방법 (N=260)



○ 격리수용 이유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24> 사형수를 격리수용시켜야 하는 이유(N=25, 중복응답)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 사형수에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99.2%로 나타났다.
-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시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교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97.3%로 나타나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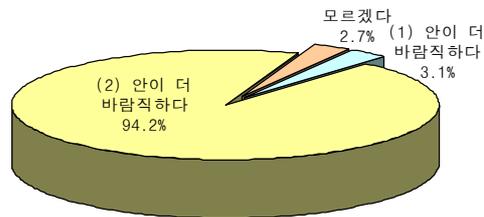
<표-13> 사형수에게 국가적 차원의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제공(N=260)

	응답자수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		교화 가능성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사형수는 교정 및 교화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다	사형수도 교정 및 교화가 될 것이다
전 체	260	99.2	0.4	1.9	97.3
사형찬반 여부	반 찬	223	-	0.9	98.2
	대 성	37	2.7	8.1	91.9

사. 법조항의 표현

- 법조항의 표현⁹⁾ 중 (2)안이 (1)안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4.2%를 보였다.

<그림-25> 법조항의 표현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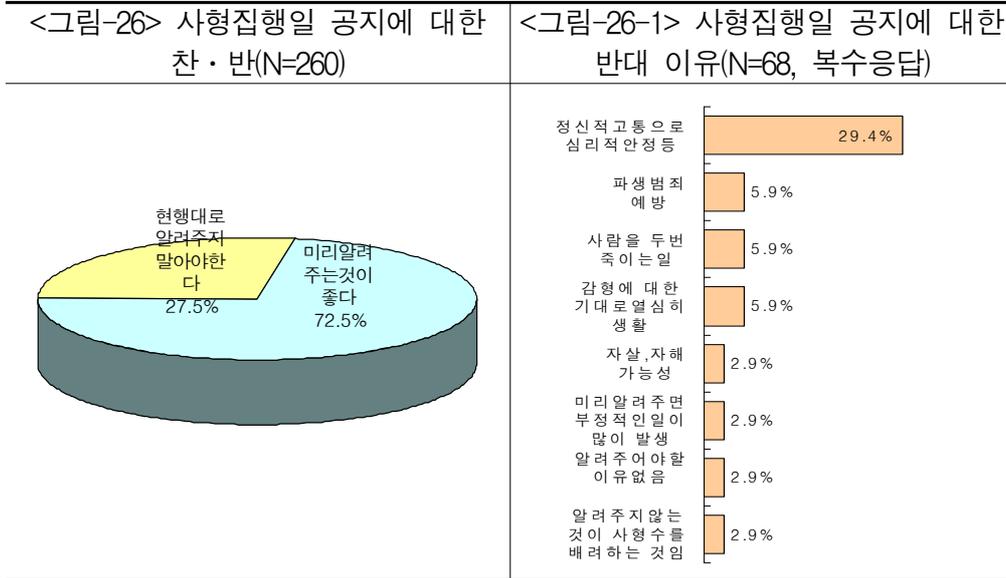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사형수에게 집행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9.2%로 나타났으며, 현행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6.2%를 보였다.
- 사형집행일자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는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파생범죄 예방,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 감형에 대한 기대로 열심히 생활한다 등의 이유가 각각 5.9%로 나타났다.

9) 1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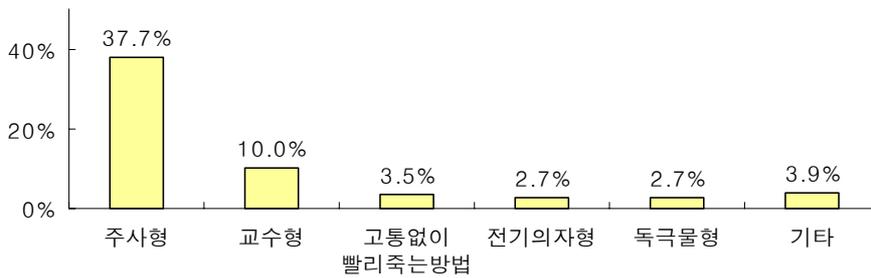
2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 사형집행 방법

-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주사형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37.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수형이 10.0%로 나타났다.
- 기타로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총살형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27> 사형집행 방법 (N=260)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가.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 위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8.8%를 보였다.
- 사형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응답자의 경우도 이 사례를 보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사례1]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N=260,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260	88.8	10.4
사형찬반 여부	반	223	98.7	1.3
	대 찬 성	37	29.7	64.9

1)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231명)	응답률
· 오관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오관가능성)	69.3 %
· 사형제도가 없다면 시간을 두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므로	7.4 %
·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해	5.6 %
· 신중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	2.6 %
·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모순	4.3 %
· 사형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1.7 %

2)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27명)	응답률
· 오관의 가능성은 적음	11.1 %
· 최종판결은 신중하되 사형제도는 유지	11.1 %
· 정확한 사전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사형제도 유지	7.4 %
· 위 사례는 죄가 없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7.4 %
· 증거가 확실하여 오관이 없다면 사형집행해야 함	7.4 %
· 완벽한 제도는 없으므로 긍정적면이 부정적면보다 많다면 시행	3.7 %
· 흉악범죄 예방	3.7 %
· 오관의 가능성으로 진실 규명 기회 부여 후 사형집행	3.7 %
·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생각	3.7 %
·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사형집행	3.7 %
· 사형제도는 사회적 안위와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	3.7 %
·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도 유지	3.7 %

나.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균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3.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5.4%로 사형제도 폐지 쪽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종교가 불교인 경우에도 유지 의견이 타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다소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사례2]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260,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260	83.5	15.4
사형찬반 여부	반	223	96.4	2.7
	대 찬 성	37	5.4	91.9

1)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폐지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217명)	응답률
· 우발적인 사건이므로	20.7 %
· 인간의 생명권 존엄성을 보호해야 함	12.0 %
· 교정 및 교화가 가능함	15.2 %
· 사형시켜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음	7.8 %
· 군복무라는 특수상황을 이해해줘야 함	7.4 %
·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함	6.9 %

2)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40명)	응답률
·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하지 못함	17.5 %
· 사람을 죽인 죄 값을 받아야함(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함)	17.5 %
· 감정에 의한 살인을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함	10.0 %
· 균형법은 일반법과 다름	7.5 %
· 인명 경시 풍조 예방	5.0 %

다.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여 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6.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2.3%로 사형제도 폐지 쪽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16> [사례3]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260,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260	76.5	22.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89.2	2.7
	찬 성	37	5.4	91.9

1)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폐지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99명)	응답률
·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책임이 있음	18.1 %
· 교화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13.0 %
·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 고취	12.6 %
·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음	9.0 %
· 사형 대신 다른 형벌을 모색해야 함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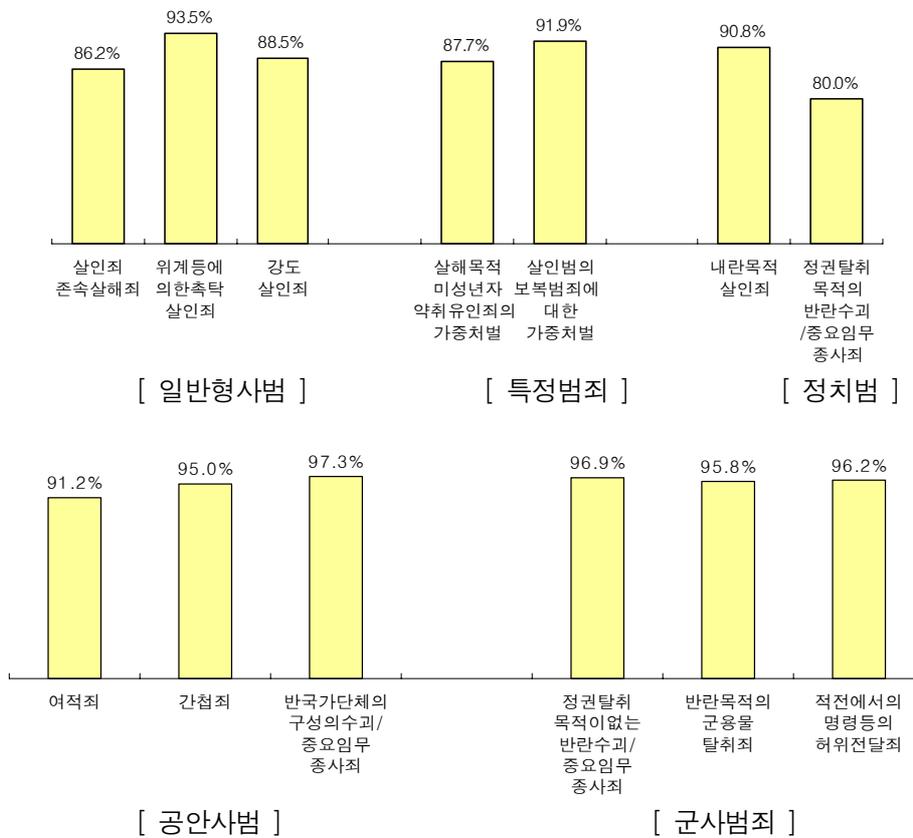
2)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58명)	응답률
· 인과응보 (죄의 대가)	12.0 %
· 살해 방법이 비인간적이라서	15.5 %
·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8.6 %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므로	8.6 %
· 타인의 귀중한 목숨을 빼앗아 용서 받을 수 없다	5.2 %
· 사회의 안전을 위해 영원한 격리 필요	3.4 %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 시민단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

<그림-28>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한 사형반대율 (N=260)



<표-17>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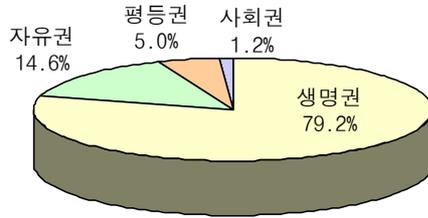
	범죄명	사형 반대율 (%)	대체형별(%)			
			감형없는 중신형	감형있는 중신형	무기형	기타
일 반 형 사 범	살인죄·존속살해죄	86.2	32.6	42.9	18.3	6.2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93.5	20.2	54.7	14.4	10.7
	강도살인죄	88.5	21.7	48.3	21.7	8.3
특 정 범 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87.7	36.0	39.5	18.0	6.5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한가중처벌	91.9	25.9	45.6	21.3	7.0
정 치 범	내란목적살인죄	90.8	23.7	41.9	22.5	11.8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92.7	18.7	47.3	21.2	12.7
공 안 사 범	여적죄	91.2	16.0	42.6	24.9	16.5
	간첩죄	95.0	12.6	45.7	24.7	17.0
	반국가단체의구성수괴·중요임무종사죄	97.3	9.5	41.9	26.1	22.5
군 사 범 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96.9	11.1	44.8	21.8	22.3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95.8	10.8	44.6	22.5	22.1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96.2	11.6	42.8	23.2	22.4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가. 인간의 기본권

-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는 생명권(7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유권(14.6%), 평등권(5.6%), 사회권(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29> 인간의 기본권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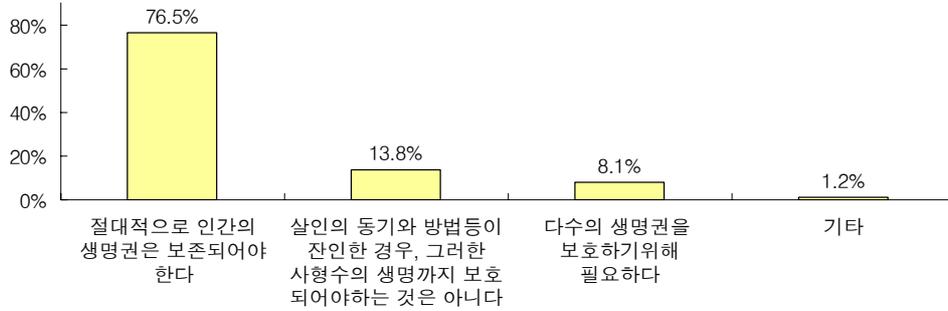
<표-18> 인간의 기본권 (N=260, %)

		응답자수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전 체		260	79.2	14.6	5.0	1.2
종교별	기 독 교	74	79.7	12.2	6.8	1.4
	불 교	27	85.2	11.1	3.7	-
	천 주 교	30	86.7	13.3	-	-
	기타/없음	129	76.0	17.1	5.4	1.6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83.4	10.3	5.4	0.9
	찬 성	37	54.1	40.5	2.7	2.7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76.5%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 기타의 의견으로는 사회적 책임 때문에 타인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동일시 해야 함 사형의 대안 방법 제시, 인간 생명을 같은 인간이 침해할 권리는 없다 등이 있었다

<그림-30> 사회정의의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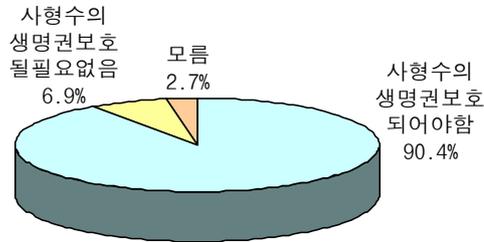
<표-19> 사회정의의,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N=260, %)

		응답자수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체		260	77.1	13.8	8.1
종교별	기 독 교	74	73.0	14.9	10.8
	불 교	27	66.7	22.2	11.1
	천 주 교	30	76.7	20.0	3.3
	기타/없음	129	81.4	10.1	7.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88.7	8.7	3.1
	찬 성	37	5.4	56.8	37.8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6.5%로 나타났으며,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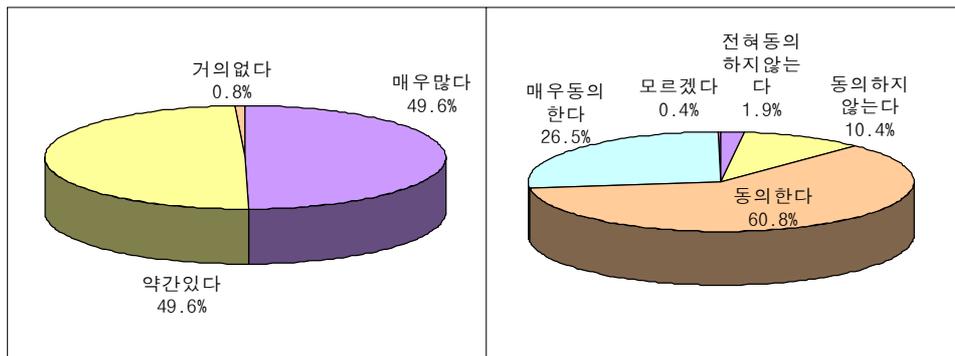
<그림-31>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260)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 사법제도 상 잘못된 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9.2%로 나타났다.
- 오판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87.3%로 이 의견에 반대하는 비율 12.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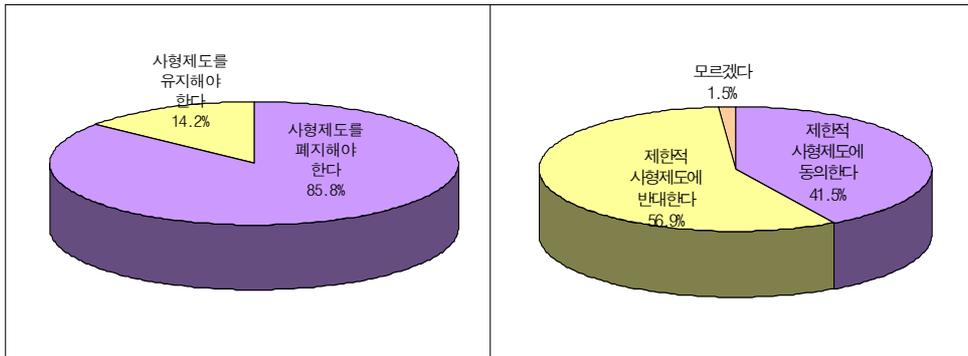
<그림-32> 오판가능성 여부(N=260) <그림-33>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 폐지 의견 (N=260)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5.8%로 유지하자는 14.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시민단체 종사자의 경우 성별, 연령, 종교, 학력에 상관없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 사형을 반사회적 범죄에만 적용하고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41.5%, 동의하지 않음이 56.9%로 나타났다.

<그림-34>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N=260)



<표-20>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응답자수	사형제도 존폐 의견		제한적 사형제도	
			폐지	유지	찬성	반대
전 체		260	85.8	14.2	41.5	56.9
종교별	기 독 교	74	82.4	17.6	45.9	51.4
	불 교	27	70.4	29.6	63.0	37.0
	천 주 교	30	86.7	13.3	26.7	70.0
	기타/없음	129	90.7	9.3	38.0	61.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223	100.0	-	35.0	63.7
	찬 성	37	-	100.0	81.1	16.2

제3장 언론종사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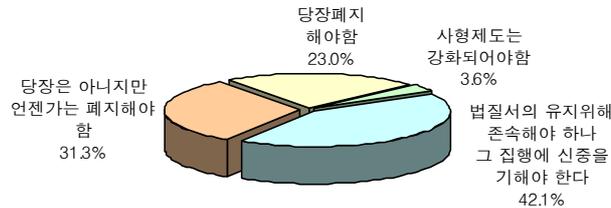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5.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0. 언론보도의 영향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당장 또는 추후에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54.3%의 비율을 보였으며,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하나 그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6%를 보였다.
-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는 타종교에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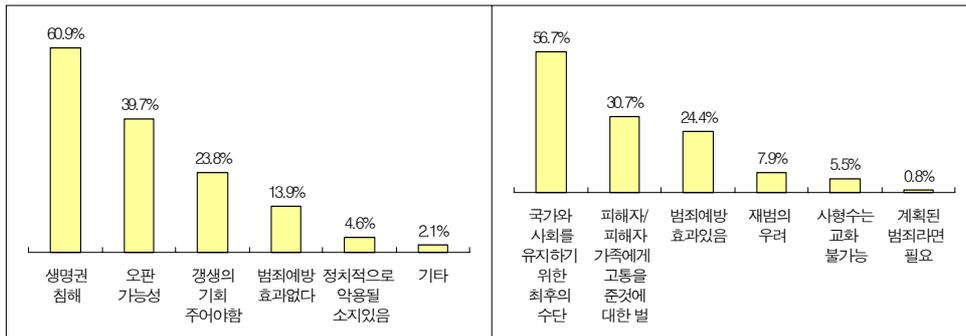


<표-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278, %)

		응답자수	법질서유지 위해 존속해야 하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전 체		278	42.1	31.3	23.0	3.6
연령별	20 대	46	37.0	47.8	10.9	4.3
	30 대	91	41.8	30.8	26.4	1.1
	40 대	111	42.3	27.9	24.3	5.4
	50대이상	30	50.0	20.0	26.7	3.3
종교별	기 독 교	69	23.2	36.2	40.6	.0
	불 교	52	30.8	23.1	42.3	3.8
	천 주 교	34	29.4	44.1	23.5	2.9
	기타/없음	123	17.9	28.5	48.0	5.7

- 사형제도 폐지 이유로는 사형제도가 인간이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6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오판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39.7%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2> 폐지 이유(N=151) <그림-3> 유지 이유(N=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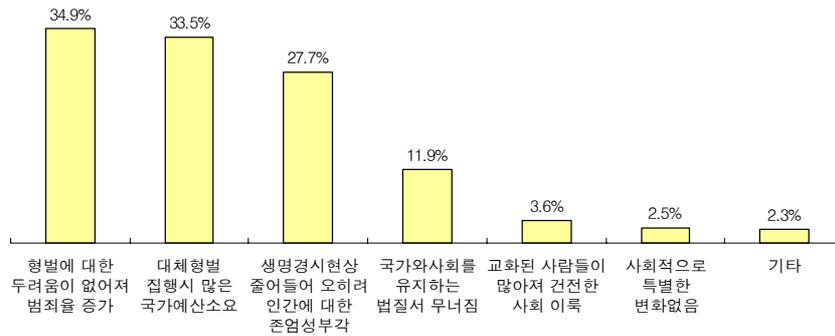


-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국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견으로 56.7%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사형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30.7%로 나타났다. 그 외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24.4%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예상되는 점

- 사형제도가 폐지 시에 예상되는 점으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체형벌을 집행하는 데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33.5%로 나타났다. 그 외 생명경시현상이 줄어들어 오히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27.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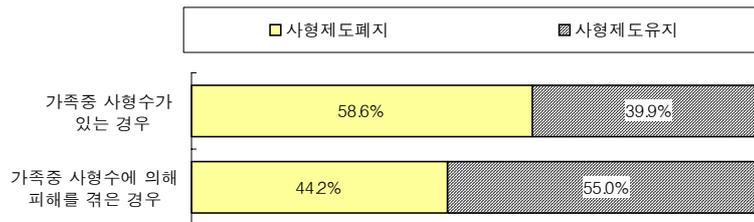
<그림-4>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점 (N=278,복수응답)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가족 중 사형수가 있는 경우를 가정할 때는 사형제도 폐지가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사형제도의 유지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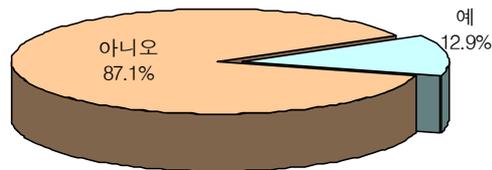
<그림-5>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을 때 (N=278)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만약 가족이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가해자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 등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7.1%로 없어질 것 같다는 의견 12.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6>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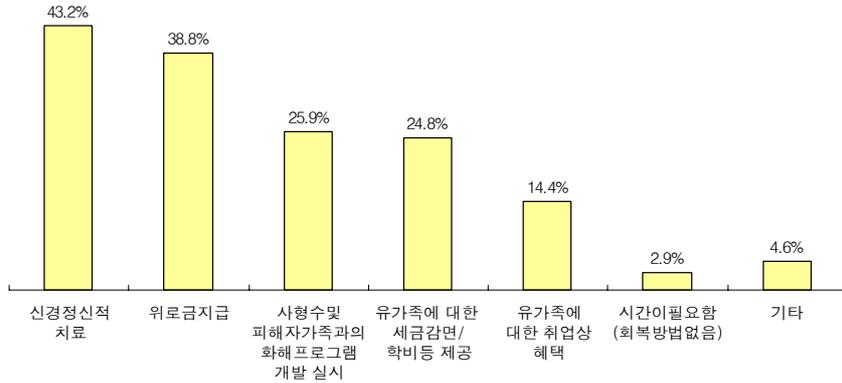
<표-2>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N=278,%)

		응답자수	원한/증오/미움이 제거된다	원한/증오/미움이 제거되지 않는다
전 체		278	12.9	87.1
연령별	20 대	46	6.5	93.5
	30 대	91	12.1	87.9
	40 대	111	17.1	82.9
	50대이상	30	10.0	90.0
종교별	기 독 교	69	11.6	88.4
	불 교	52	11.5	88.5
	천 주 교	34	11.8	88.2
	기타/없음	123	14.6	85.4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4.0	96.0
	찬 성	127	22.0	77.2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구제방법으로는 신경 정신적인 치료가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위로금지급이 38.8%를 보였다. 이외에 사형수 및 피해자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이 25.9%, 유가족에 대한 세금감면/학비 등의 제공이 24.8% 등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다각적인 조치필요 사회 및 국가가 책임 피해자 가족 요양, 용서하는 수밖에 없음, 사형수 가족을 추방이나 이민을 가도록 하게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7>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N=278,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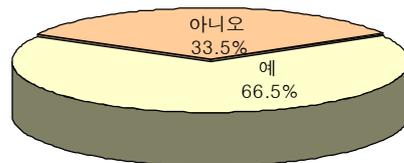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1) 사형수 가족을 사형제도의 피해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 사형수 가족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66.5%로 피해자로 생각 안 하는 비율(33.5%)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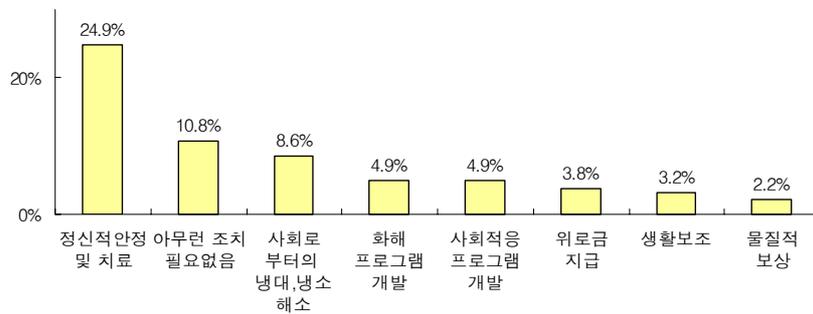
<표-3>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N=278, %)

		응답자수	사형수 가족 또한 피해자이다	사형수 가족 또한 피해자가 아니다
전 체		278	66.5	33.5
연령별	20 대	46	69.6	30.4
	30 대	91	68.1	31.9
	40 대	111	64.0	36.0
	50대이상	30	66.7	33.3
종교별	기 독 교	69	65.2	34.8
	불 교	52	67.3	32.7
	천 주 교	34	70.6	29.4
	기타/없음	123	65.9	34.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79.2	20.8
	찬 성	127	52.8	47.2

2) 사형수 가족에 대한 조치

- 사형수 가족에 대한 조치로는 24.9%가 정신적 안정 및 치료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아무런 조치 필요 없음(10.8%), 사회로부터의 냉대, 냉소 해소(8.6%), 화해프로그램개발(4.9%), 사회 적응적인 프로그램개발(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 외의 의견으로는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밀보장, 가족과 함께 교화프로그램참여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9> 사형수의 가족에 대한 조치 (N=185,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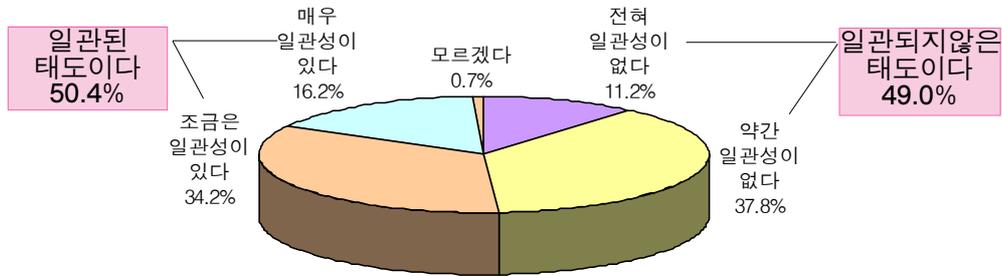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의견이 49.0%로 나타났으며, 일관성이 있다는 의견이 50.4%로 거의 반반의 의견을 보였다

<그림-10>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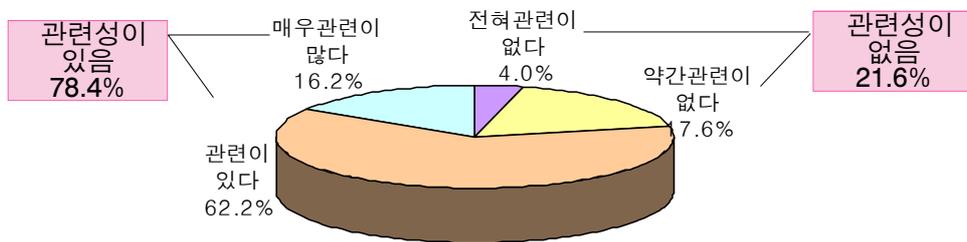
<표-4>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N=278, %)

		응답자수	전혀 일관성이 없다	약간은 일관성이 없다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	매우 일관성이 있다	4점 평균
전 체		278	11.2	37.8	34.2	16.2	2.56
연령별	20 대	46	6.5	39.1	47.8	6.5	2.54
	30 대	91	9.9	42.9	35.2	12.1	2.49
	40 대	111	15.3	33.3	30.6	18.9	2.54
	50대이상	30	6.7	36.7	23.3	33.3	2.83
종교별	기 독 교	69	11.6	39.1	33.3	15.9	2.54
	불 교	52	11.5	36.5	40.4	11.5	2.52
	천 주 교	34	14.7	35.3	38.2	8.8	2.42
	기타/없음	123	9.8	38.2	30.9	20.3	2.6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19.5	55.0	22.8	2.0	2.07
	찬 성	127	1.6	18.1	48.0	32.3	3.11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 사형제도는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과 관계가 있다는 응답은 78.4%로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 21.6%보다 훨씬 많은 의견을 보였다

<그림-11>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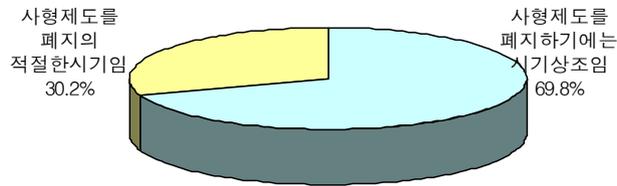
<표-5>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N=278, %)

		응답자수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매우 관련이 많다	4점 평균
전 체		278	4.0	17.6	62.2	16.2	2.91
연령별	20 대	46	2.2	10.9	71.7	15.2	3.00
	30 대	91	4.4	20.9	65.9	8.8	2.79
	40 대	111	2.7	18.9	56.8	21.6	2.97
	50대이상	30	10.0	13.3	56.7	20.0	2.87
종교별	기 독 교	69	.0	15.9	63.8	20.3	3.04
	불 교	52	5.8	19.2	57.7	17.3	2.87
	천 주 교	34	8.8	5.9	61.8	23.5	3.00
	기타/없음	123	4.1	21.1	63.4	11.4	2.8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1.3	5.4	70.5	22.8	3.15
	찬 성	127	5.5	32.3	53.5	8.7	2.65

1)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 문화수준 및 사회 현실을 감안할때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형제도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69.8%로 현재가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이 30.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12> 우리나라 문화적,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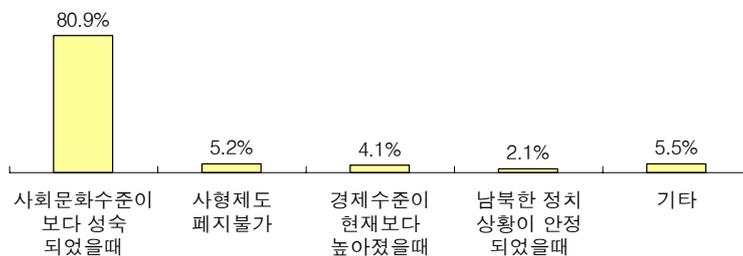
<표-6> 우리나라 문화적,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N=278, %)

		응답자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전 체		278	69.8	30.2
연령별	20 대	46	73.9	26.1
	30 대	91	67.0	33.0
	40 대	111	69.4	30.6
	50대이상	30	73.3	26.7
종교별	기 독 교	69	68.1	31.9
	불 교	52	71.2	28.8
	천 주 교	34	64.7	35.3
	기타/없음	123	71.5	28.5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46.3	53.7
	찬 성	127	96.9	3.1

2) 적절한 사형제도 폐지 시기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문화 수준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사형제도 폐지불가 5.2%, 경제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졌을 때 4.1%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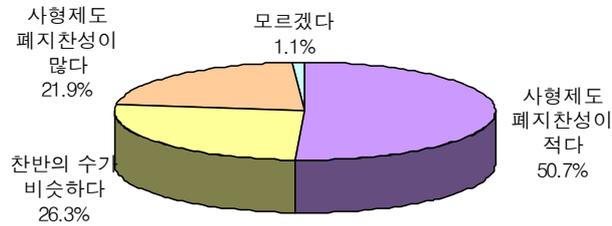
<그림-13> 사형제도 폐지의 적절한 시기 (N=194)



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

- 언론종사자의 50.7%는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적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찬성하는 의원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은 21.9%, 찬반의 수가 비슷하다는 비율 26.3%를 보였다.

<그림-14>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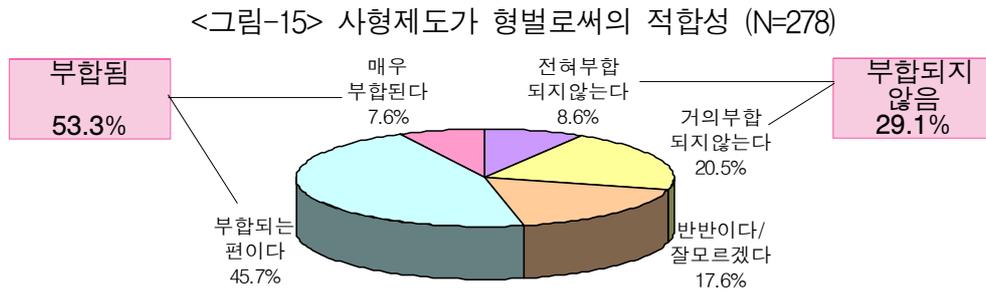


<표-7>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N=278, %)

		응답자수	사형제도 폐지찬성이 적다	폐지찬성·반대가 비슷하다	사형제도 폐지찬성이 많다
전 체		278	50.7	26.3	21.9
연령별	20 대	46	60.9	23.9	15.2
	30 대	91	56.0	23.1	20.9
	40 대	111	42.3	28.8	26.1
	50대이상	30	50.0	30.0	20.0
종교별	기 독 교	69	42.0	30.4	27.5
	불 교	52	48.1	25.0	26.9
	천 주 교	34	73.5	20.6	5.9
	기타/없음	123	50.4	26.0	21.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52.3	24.2	23.5
	찬 성	127	48.8	28.3	20.5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사형제도가 형벌 목적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53.3%가 부합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29.1%만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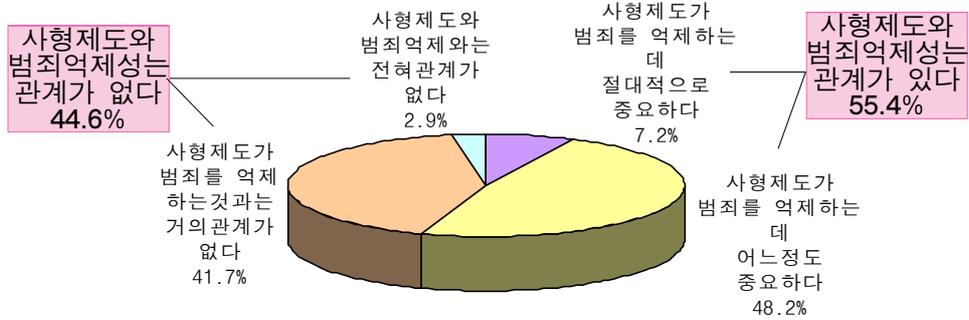
<표-8> 사형제도가 형벌로써의 적합성 (N=278, %)

		응답자수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반반이다/잘모름	부합되는 편이다	매우 부합된다	5점 평균
전 체		278	8.6	20.5	17.6	45.7	7.6	3.23
연령별	20 대	46	6.5	17.4	28.3	45.7	2.2	3.20
	30 대	91	11.0	18.7	18.7	44.0	7.7	3.19
	40 대	111	4.5	26.1	14.4	49.5	5.4	3.25
	50대이상	30	20.0	10.0	10.0	36.7	23.3	3.33
종교별	기 독 교	69	4.3	26.1	18.8	47.8	2.9	3.19
	불 교	52	13.5	17.3	15.4	44.2	9.6	3.19
	천 주 교	34	20.6	20.6	17.6	35.3	5.9	2.85
	기타/없음	123	5.7	18.7	17.9	48.0	9.8	3.3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15.4	36.2	25.5	22.1	0.7	2.56
	찬 성	127	0.8	2.4	8.7	73.2	15.0	3.99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 55.4%가 있다고 응답하여 없다는 의견 44.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16>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N=278)



<표-9>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N=278, %)

		응답자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느정도 중요하다	거의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4점 평균
전 체		278	7.2	48.2	41.7	2.9	2.40
연령별	20 대	46	2.2	45.7	47.8	4.3	2.54
	30 대	91	5.5	46.2	45.1	3.3	2.46
	40 대	111	6.3	50.5	40.5	2.7	2.40
	50대이상	30	23.3	50.0	26.7	-	2.03
종교별	기 독 교	69	.0	47.8	47.8	4.3	2.57
	불 교	52	11.5	50.0	34.6	3.8	2.31
	천 주 교	34	8.8	29.4	58.8	2.9	2.56
	기타/없음	123	8.9	52.8	36.6	1.6	2.3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1.3	24.2	69.8	4.7	2.78
	찬 성	127	13.4	77.2	8.7	0.8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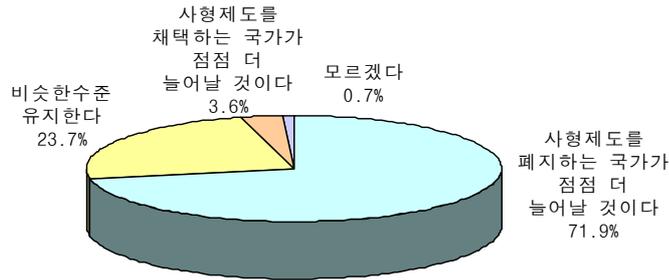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 향후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국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은 71.9%로 나타났다으며,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의견 3.6%에 불과하였다.

- 20대에서는 향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17>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N=278,복수응답)



<표-10>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N=2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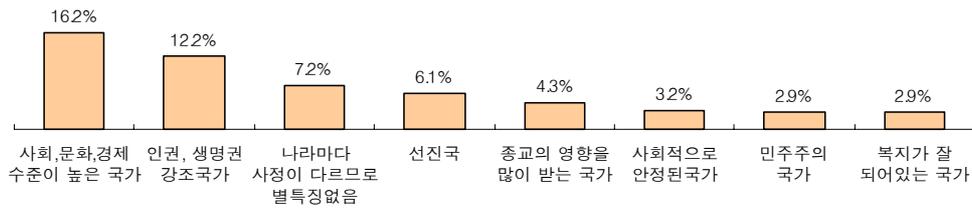
		응답자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전 체		278	71.9	23.7	3.6
연령별	20 대	46	80.4	17.4	2.2
	30 대	91	72.5	24.2	3.3
	40 대	111	67.6	26.1	4.5
	50대이상	30	73.3	23.3	3.3
종교별	기 독 교	69	72.5	24.6	2.9
	불 교	52	69.2	28.8	1.9
	천 주 교	34	82.4	8.8	5.9
	기타/없음	123	69.9	25.2	4.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91.3	6.7	2.0
	찬 성	127	49.6	44.1	4.7

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의 특징

-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사회 문화,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 일 것이라는 응답이 1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권 생명권 강조 국가라고 12.2%가 응답하였다. 그 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

므로 별 특징이 없다는 의견이 7.2%,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4.3% 등이 있었다

<그림-18> 사형제도 폐지국의 특징 (N=278,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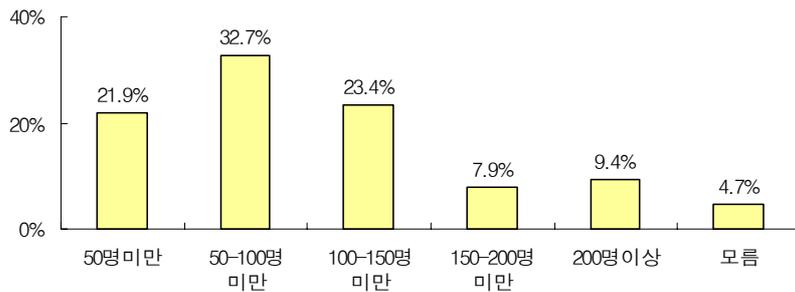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단체들이 느끼는 사형수의 수는 50~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100~150명 미만이 23.4%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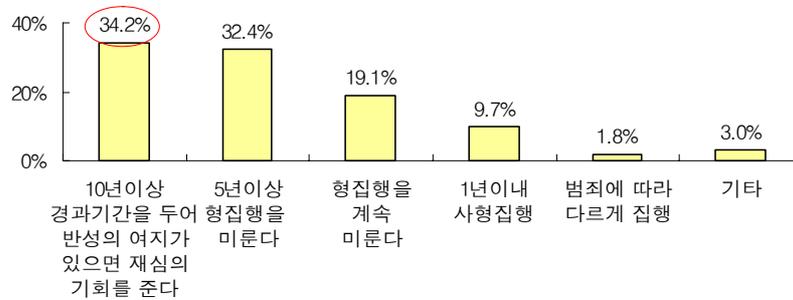
<그림-19> 체감으로 느끼는 사형수의 수 (N=278)



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 사형으로 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 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오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년이상은 사형집행을 미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2.4%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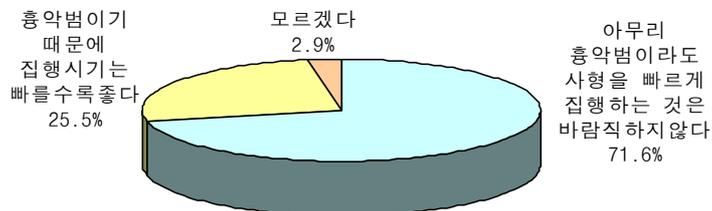
<그림-20> 사형수의 집행시기 (N=278)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 시기에 대한 의견

- 흉악범의 사형집행을 사회여론에 따라 신속하게 하였을 때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71.6%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흉악범이라서 집행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25.5%로 나타났다.

<그림-21> 신속한 사형집행에 대한 의견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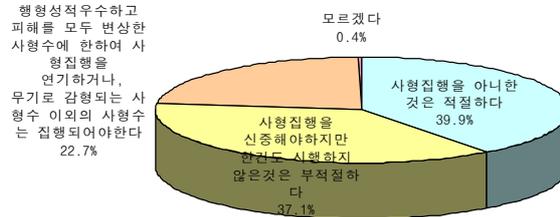
<표-11> 신속한 사형집행에 대한 의견 (N=278, %)

		응답자수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집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전 체		278	71.6	25.5
연령별	20 대	46	71.7	23.9
	30 대	91	74.7	24.2
	40 대	111	73.0	23.4
	50대이상	30	56.7	40.0
종교별	기 독 교	69	71.0	23.2
	불 교	52	65.4	32.7
	천 주 교	34	88.2	11.8
	기타/없음	123	69.9	27.6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86.6	8.7
	찬 성	127	54.3	44.9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언론 종사자들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39.9%, 한 건도 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7.1%를 보였다.
- 타연령층에 비해 40대에서는 사형집행을 한 건도 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그림-22>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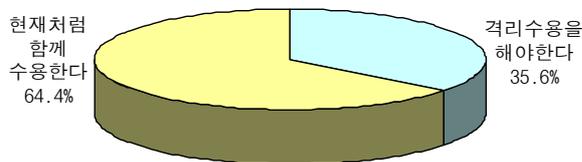
<표-12>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N=278, %)

		응답자수	사형집행을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한 건도 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형성적우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는 사형집행을 연기/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이외에는 집행되어야 한다
전 체		278	39.9	37.1	22.7
연령별	20 대	46	47.8	30.4	21.7
	30 대	91	44.0	34.1	22.0
	40 대	111	33.0	44.1	21.6
	50대이상	30	40.0	30.0	30.0
종교별	기 독 교	69	40.6	39.1	18.8
	불 교	52	44.2	30.8	25.0
	천 주 교	34	61.8	26.5	11.8
	기타/없음	123	31.7	41.5	26.8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67.8	20.1	12.1
	찬 성	127	7.9	56.7	34.6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4.4%로, 격리수용해야 한다는 의견 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는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74.7%)에서, 종교별로는 천주교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3> 사형수의 수용 방법(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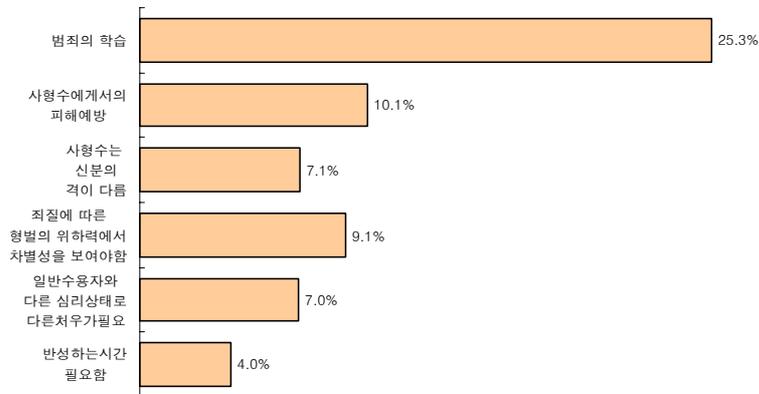


<표-13> 사형수의 수용 문제(N=278, %)

		응답자수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	현재처럼 함께 수용해야 한다
전 체		278	35.6	64.4
연령별	20 대	46	32.6	67.4
	30 대	91	25.3	74.7
	40 대	111	38.7	61.3
	50대이상	30	60.0	40.0
종교별	기 독 교	69	36.2	63.8
	불 교	52	40.4	59.6
	천 주 교	34	26.5	73.5
	기타/없음	123	35.8	64.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18.1	81.9
	찬 성	127	55.1	44.9

○ 격리수용 이유는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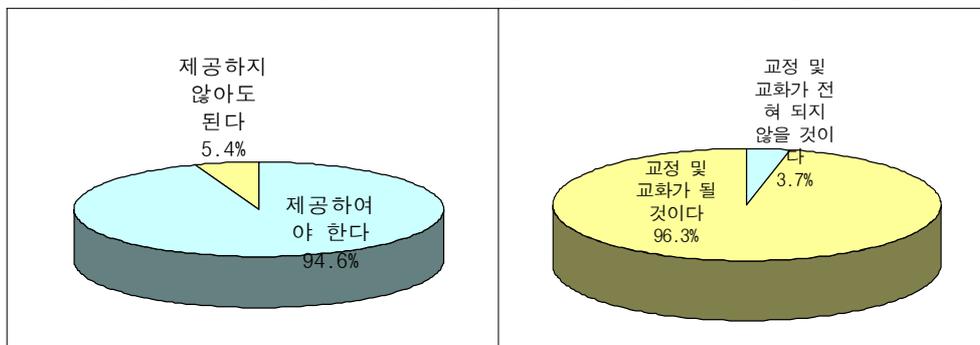
<그림-24> 사형수를 격리수용 시켜야 하는 이유(N=99, 중복응답)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제공에 대한 의견

- 사형수에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93.9%로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 시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교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95.0%로 나타나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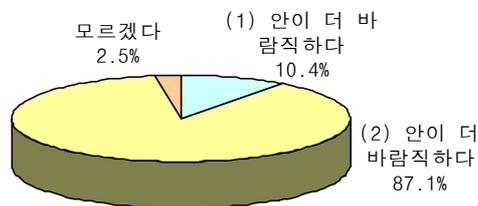
<그림-25> 교정 교화 프로그램 제공 및 교정 및 교화가능성(N=278)



사. 법조항의 표현

- 법조항의 표현¹⁰⁾ 중 (2)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7.1%로 판결의 폭을 넓히는데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림-26> 법조항의 표현 (N=278)



10) 1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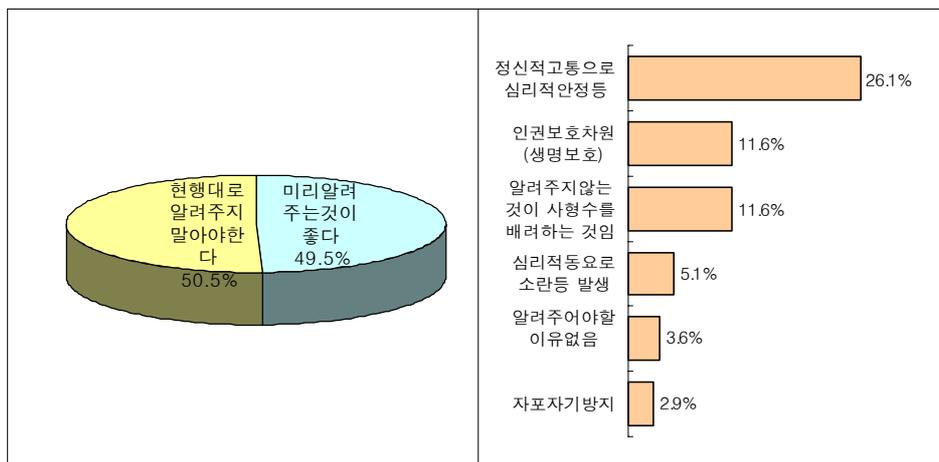
<표-14> 법조항의 표현 (N=278, %)

		응답자수	(1)안이 더 바람직하다	(2)안이 더 바람직하다
전 체		278	10.4	87.1
연령별	20 대	46	4.3	95.7
	30 대	91	9.9	90.1
	40 대	111	12.6	82.9
	50대이상	30	13.3	80.1
종교별	기 독 교	69	11.6	85.5
	불 교	52	11.5	88.5
	천 주 교	34	5.9	88.2
	기타/없음	123	10.6	87.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4.0	92.6
	찬 성	127	18.1	81.1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사형수에게 집행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8.6%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49.6%로 차이가 없었다.

<그림-27> 사형집행일 공지 찬·반 및 이유(N=278,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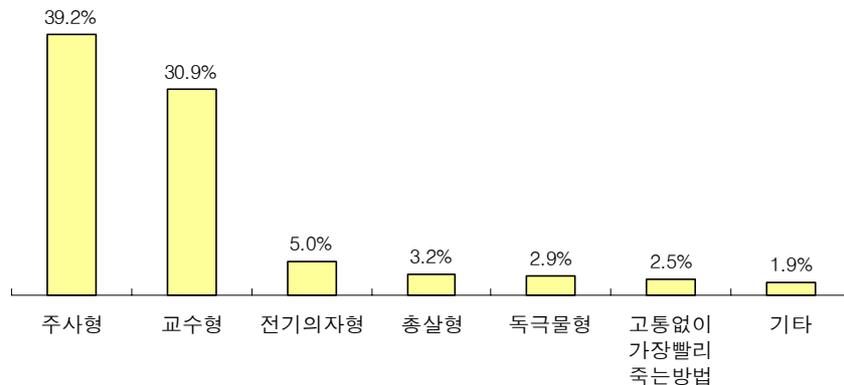


- 사형집행일자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는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2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권보호차원(생명보호)가 11.6%, 알려주지 않는 것이 사형수를 배려하는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11.6% 등의 이유를 보였다.

자. 사형집행 방법

-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주사형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39.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대로 교수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0.9%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스형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28> 사형집행의 방법 (N=278)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가.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 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4.4%로 나타났다.
-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15> [사례1]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N=278,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278	64.4	34.2
연령별	20 대	46	69.6	28.3
	30 대	91	67.0	31.9
	40 대	111	64.0	35.1
	50대이상	30	50.0	46.7
종교별	기 독 교	69	69.6	30.4
	불 교	52	63.5	34.6
	천 주 교	34	76.5	20.6
	기타/없음	123	58.5	39.8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4.0	92.6
	찬 성	127	18.1	81.1

1)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79명)	응답률
· 오판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오판가능성)	60.9 %
·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해	10.1 %
· 사형제도가 없다면 시간을 두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므로	6.7 %
· 국가는 신이 아니다	2.8 %
· 교정 및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7 %
· 사형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1.7 %

2)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95명)	응답률
· 정확한 사전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사형제도 유지	21.1 %
· 오판의 가능성은 적음	14.7 %
· 사회질서의 확립	8.5 %
· 증거가 확실하여 오판이 없다면 사형집행해야 함	4.2 %
· 최종판결은 신중하되 사형제도는 유지	4.2 %
· 흉악범이기 때문에	4.2 %
· 기존의 형량 등급 존치	3.2 %

나.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군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1.7%로 사형제도 폐지 쪽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연령별로는 50대이상에서 사형제도의 유지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타종교에 비해 폐지 의견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사례2]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278,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278	56.8	41.7
연령별	20 대	46	58.7	37.0
	30 대	91	58.2	40.7
	40 대	111	57.7	42.3
	50대이상	30	46.7	50.0
종교별	기 독 교	69	65.2	33.3
	불 교	52	51.9	46.2
	천 주 교	34	70.6	26.5
	기타/없음	123	50.4	48.8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90.6	8.1
	찬 성	127	18.1	80.3

1)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폐지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58명)	응답률
· 우발적인 사건이므로	20.9 %
· 인간의 생명권 존엄성을 보호해야 함	8.2 %
·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형벌집행	9.5 %
·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9.5 %
·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함	7.0 %
· 어떤 이유라도 사형은 폐지되어야 함	4.4 %
· 다른 형벌로 대체가 가능함	4.4 %
· 사형제도를 정당화하는 범죄는 없음	3.8 %
·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음	3.2 %
· 사형시켜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음	3.2 %

2)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16명)	응답률
· 사람을 죽인 죄 값을 받아야함(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함)	12.9%
· 군대존속을 위해 (군대는 명령 우선인데 우선사항을 지키지 않음)	10.3%
· 감정에 의한 살인을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함	10.3%
· 고참을 죽일만큼의 사건이 아님	8.6%
·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하지 못함	6.0%
· 사형선고에 신중을 기한 사형집행	5.2%
· 제도자체는 존속되어야 함	3.4%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함)	3.4%
·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큼	3.4%
· 법질서에 대한 확립을 위해	3.4%

다.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여 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언론단체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4%,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1%로 사형제도 유지 쪽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특히, 50대이상에서는 타연령층보다 사형제도의 유지하자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사례3]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278,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278	42.4	56.1
연령별	20 대	46	45.7	50.0
	30 대	91	45.1	53.8
	40 대	111	42.3	57.7
	50대이상	30	30.0	66.7
종교별	기 독 교	69	52.2	46.4
	불 교	52	38.5	59.6
	천 주 교	34	55.9	41.2
	기타/없음	123	35.0	64.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75.8	22.8
	찬 성	127	3.9	94.5

1)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폐지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18명)	응답률
· 교화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13.6 %
·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책임이 있음	11.0 %
·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 고취	11.0 %
· 무기형이 적당할 것 같아서	6.8 %
· 종신형이 적당할 것 같아서	6.8 %
· 사형에 대한 형벌 대신 다른 방법의 형벌을 모색해야 함	5.9 %
·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2.5 %
· 죄수가 사라졌다고 그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2.5 %
· 스스로 사형을 작정하고 지은 범죄라서 오히려 살려야 한다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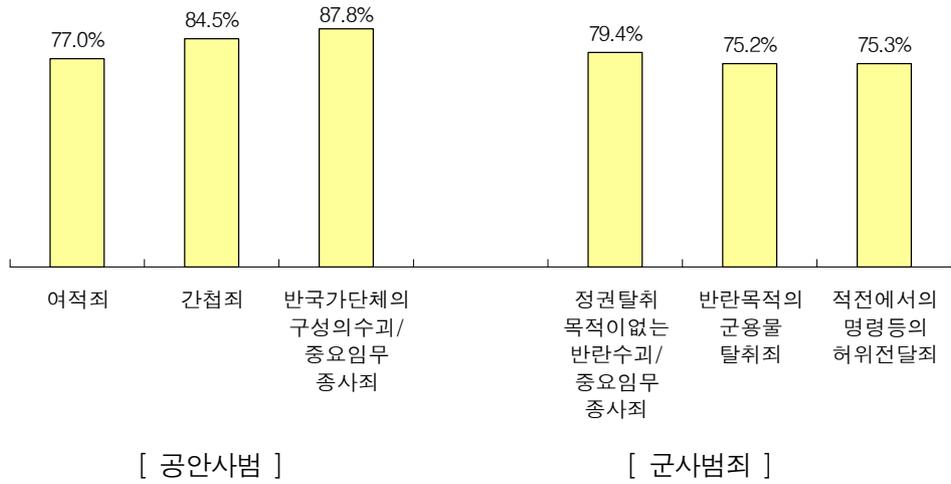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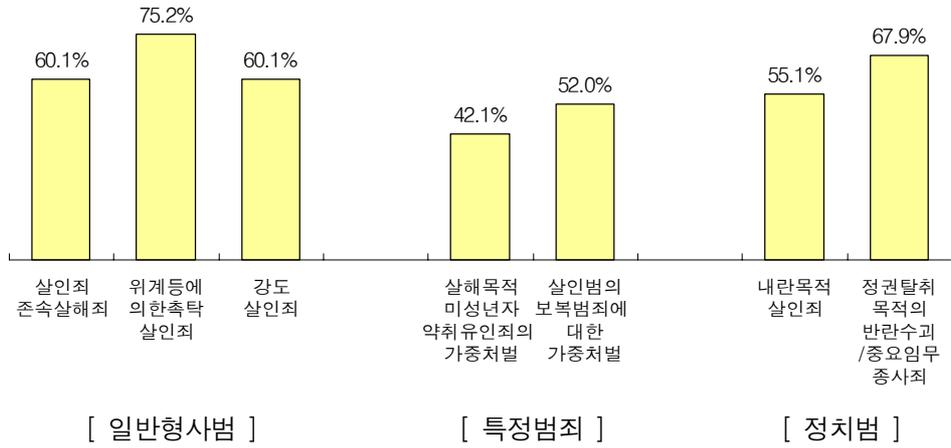
2)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유지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56명)	응답률
· 인간이기를 포기 인간이하라 반드시 죽어야 한다	11.5%
·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10.4%
· 인과응보 (죄의 댓가)	8.3%
· 살해 방법이 비인간적이라서	7.7%
· 사회방위 차원 및 범죄예방	6.4%
· 흉악범 및 강력범이기 때문에	5.1%
· 타인의 귀중한 목숨을 빼앗아 용서 받을 수 없다	4.5%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므로	4.5%
· 모방범죄(유사범죄)의 우려가 있다	3.2%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범죄에 대해서 모두 사형반대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 일반형사범, 정치범, 공안사범, 군사범죄에 해당하는 제시 항목에 대해서 그 대체형벌로는 모두 감형이 있는 종신형을 선택하였다
-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에 대한 대체형벌로는 감형없는 종신형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한가중처벌의 대체형벌로는 감형이 있는 종신형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그림-29>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별 사형 반대율(N=278)



<표-18> 사형반대율 및 대체형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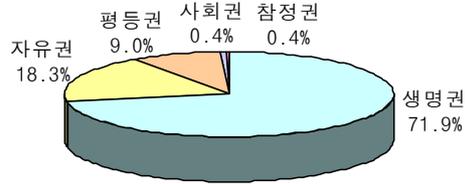
	범죄명	사형 반대율 (%)	대체형벌(%)			
			감형없는 중신형	감형있는 중신형	무기형	기타
인 간 사 범	살인죄·존속살해죄	60.1	36.5	37.7	19.8	6.0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75.2	28.7	44.0	20.1	7.1
	강도살인죄	60.1	29.9	38.3	25.1	6.6
특 정 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57.6	41.3	29.4	24.4	5.0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한가중처벌	62.6	32.2	39.7	22.4	5.7
정 치 범	내란목적살인죄	70.1	31.3	40.0	22.1	6.6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76.6	24.4	41.8	26.8	7.0
공 안 사 범	여적죄	77.0	30.4	34.6	25.7	9.3
	간첩죄	84.5	24.3	39.6	26.8	9.4
	반국가단체의구성외수괴·중요임무종사죄	87.8	20.1	41.0	27.9	11.0
군 사 범 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88.1	14.7	49.0	25.3	10.9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87.1	14.9	45.9	28.5	10.8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86.0	14.2	45.6	28.9	11.3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가. 인간의 기본권

-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는 생명권(71.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유권(18.3%), 평등권(9.0%), 사회권(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30> 인간의 기본권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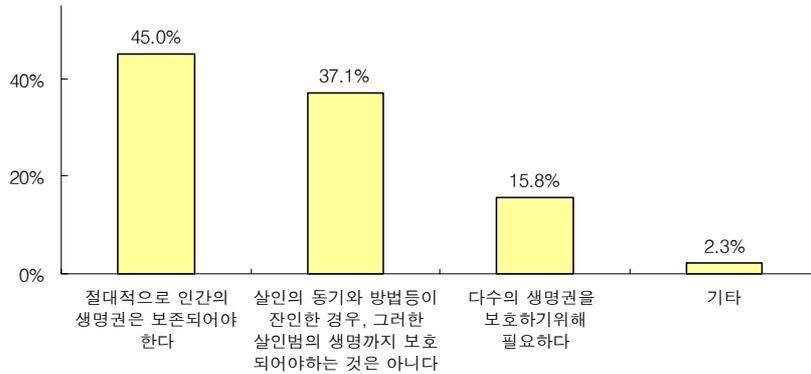
<표-19> 인간의 기본권 (N=278, %)

		응답자수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전 체		278	71.9	18.3	9.0	0.4
연령별	20 대	46	65.2	21.7	10.9	-
	30 대	91	69.2	20.9	9.9	-
	40 대	111	78.4	17.1	4.5	-
	50대이상	30	66.7	10.0	20.0	3.3
종교별	기 독 교	69	76.8	14.5	8.7	.0
	불 교	52	59.6	21.2	17.3	1.9
	천 주 교	34	82.4	11.8	5.9	.0
	기타/없음	123	71.5	21.1	6.5	.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76.5	16.1	6.7	-
	찬 성	127	66.9	21.3	11.0	0.8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45.0%의 비율을 보였다. 살인 동기와 방법이 잔인한 경우는 살인범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7%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사회적 책임 때문에 타인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동일시해야 함, 사형의 대안 방법 제시, 인간 생명을 같은 인간이 침해할 권리는 없다 등이 있었다

<그림-31>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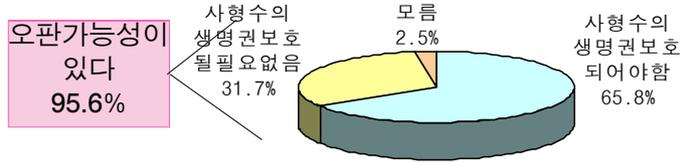
<표-20>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N=278, %)

		응답자수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살인범이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체		278	45.0	37.1	15.8
연령별	20 대	46	41.3	41.3	13.0
	30 대	91	49.5	36.3	12.1
	40 대	111	44.1	34.2	20.7
	50대이상	30	40.0	43.3	13.3
종교별	기 독 교	69	52.2	39.1	7.2
	불 교	52	42.3	38.5	17.3
	천 주 교	34	58.8	23.5	14.7
	기타/없음	123	38.2	39.0	20.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75.8	12.8	8.7
	찬 성	127	9.4	66.1	23.6

다.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5.8%로 나타났으며,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1.7%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종교별로는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에서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278)



<표-21>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2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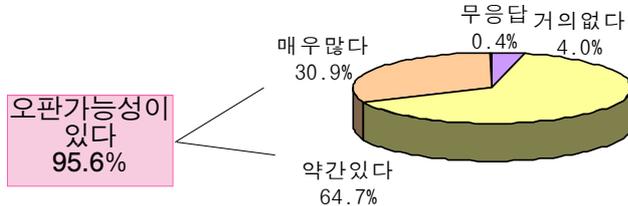
		응답자수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전 체		278	65.8	31.7
연령별	20 대	46	63.0	30.4
	30 대	91	70.3	27.5
	40 대	111	64.9	34.2
	50대이상	30	60.0	36.7
종교별	기 독 교	69	78.3	18.8
	불 교	52	65.4	32.7
	천 주 교	34	76.5	23.5
	기타/없음	123	56.1	40.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92.6	6.0
	찬 성	127	34.6	62.2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가. 오판 가능성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 사법제도 상 잘못된 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의 95.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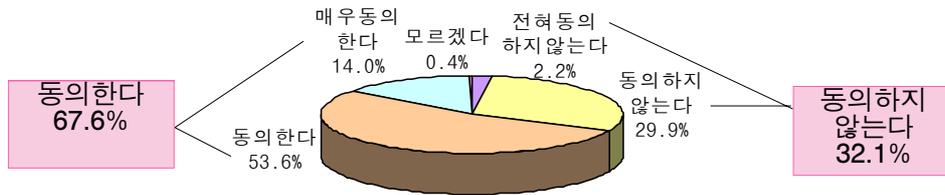
<그림-31> 오판가능성의 평가 (N=278)



나. 오판가능성 인한 사형제도 폐지

-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 67.6%로 반대하는 비율 32.1%보다 높다.

<그림-34>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 폐지 의견(N=278)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유지하자는 의견 45.7%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2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N=278, %)

		응답자수	사형제도 존폐 의견		제한적 사형제도	
			폐지	유지	찬성	반대
전 체		278	53.6	45.7	64.7	34.2
연령별	20 대	46	54.3	45.7	63.0	37.0
	30 대	91	59.3	40.7	60.4	38.5
	40 대	111	51.4	47.7	69.4	29.7
	50대이상	30	43.3	53.3	63.3	33.3
종교별	기 독 교	69	58.0	42.0	62.3	37.7
	불 교	52	50.0	50.0	59.6	40.4
	천 주 교	34	73.5	23.5	67.6	32.4
	기타/없음	123	47.2	52.0	67.5	30.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49	100.0	-	53.0	47.0
	찬 성	127	-	100.0	78.7	19.7

- 남자(52.5%)보다는 여자(60.0%)에서, 연령별로는 30대(59.3%)에서, 응답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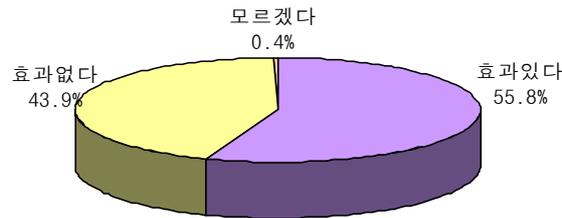
종교가 천주교(73.5%)인 경우가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형을 반사회적 범죄에만 적용하고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64.7%, 동의하지 않음이 34.2%로 나타났다.

10.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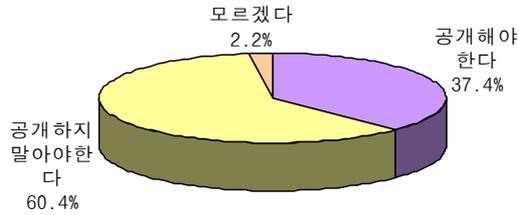
- 사형집행에 대한 언론보도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5.8%로 없다라는 의견 43.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35> 사형집행에 대한 언론보도의 범죄예방 효과 유무 (N=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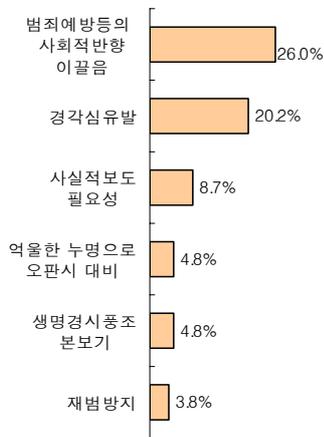


- 사형 집행 과정에 대한 언론 공개 여부 질문에 대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0.4%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 37.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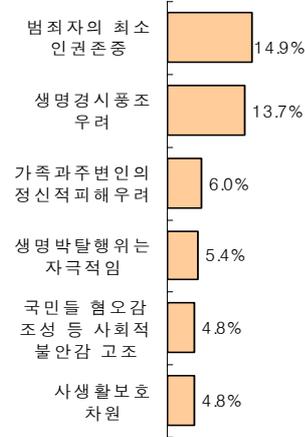
<그림-36> 사형집행과정의 언론공개 여부 (N=278)



<그림-37> 찬성이유(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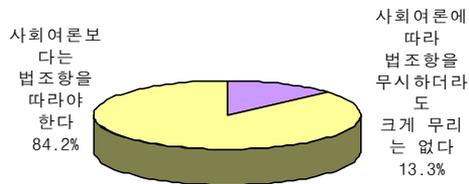


<그림-38> 반대이유(N=168,복수응답)



- 흉악범죄를 언론에 대서특필함으로써 향후 판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반적인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을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회여론이 그렇다면 법조항을 무시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응답이 13.3%로 언론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림-37> 흉악범의 언론 공개 시 형벌의 영향 평가 (N=278)



제4장. 국회의원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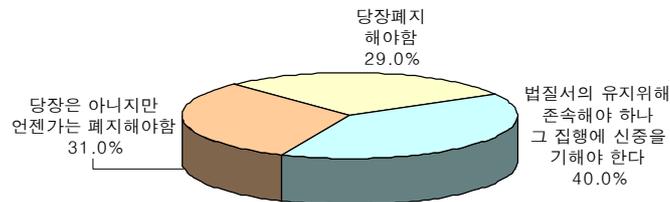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5.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0. 여론조사결과가 사형제도 존폐의견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하나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40.0%였으며, 당장 또는 추후에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60.0%의 비율을 보여 폐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새천년민주당의 경우는 사형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72.0%로 다른 소속정당의원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응답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종교가 불교인 경우에는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찬성율이 각각 50.0%, 66.7%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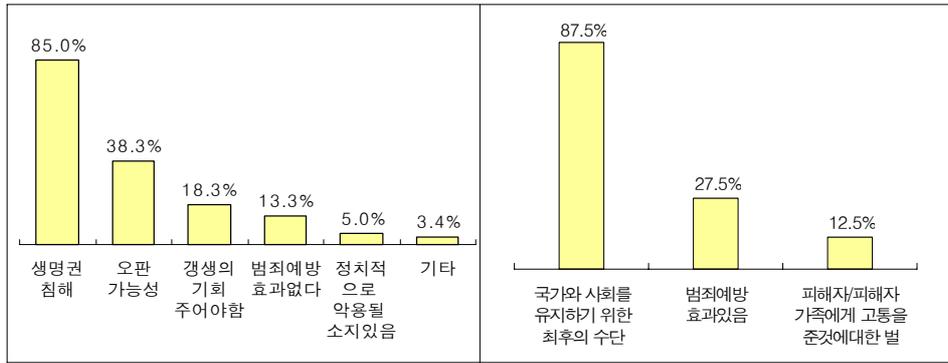


<표-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100, %)

		응답자수	법질서유지 위해 존속되어야 하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전 체		100	40.0	31.0	29.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46.9	38.8	14.3
	열린 우리당	21	33.3	9.5	57.1
	새천년민주당	25	28.0	40.0	32.0
	비교섭 단체	5	60.0	-	40.0
종교별	기 독 교	39	30.8	35.9	33.3
	불 교	15	66.7	20.0	13.3
	천 주 교	22	27.3	27.3	45.5
	기타/없음	24	50.0	33.3	16.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찬	57	-	49.1	50.9
	찬 성	41	92.7	9.3	-

- 사형제도 폐지 이유로는 사형제도가 인간이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8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국가와 사회의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견으로 87.5%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27.5%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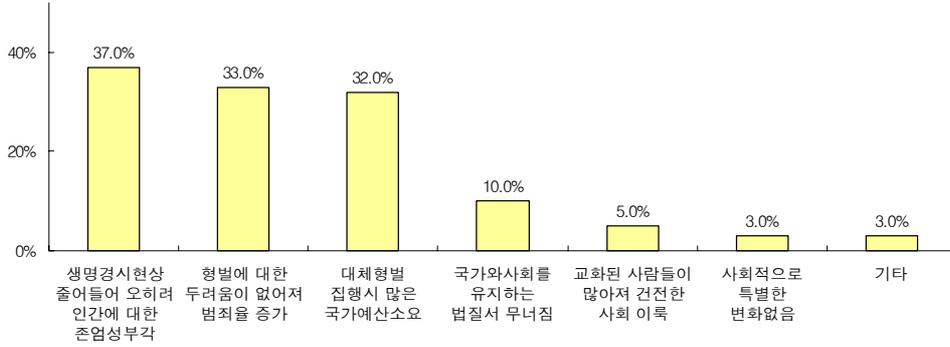
<그림-2> 폐지 이유(N=60) <그림-3> 유지 이유(N=40, 복수응답)



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경우 예상되는 점

- 사형제도가 폐지 시에 예상되는 점으로는 생명경시 현상이 줄어들어 오히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33.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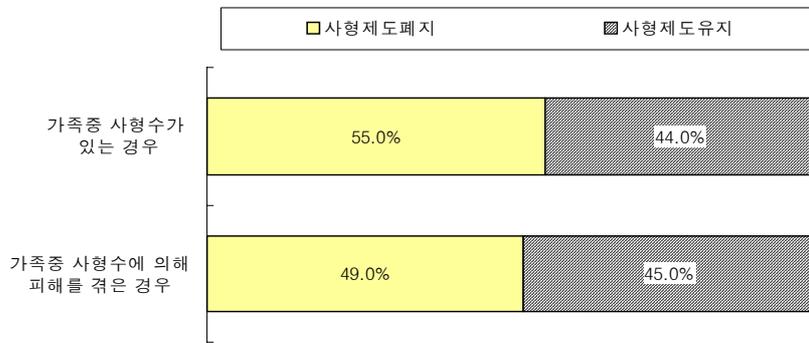
<그림-4>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점(N=100, 복수응답)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가정할 때 모두 사형제도 폐지가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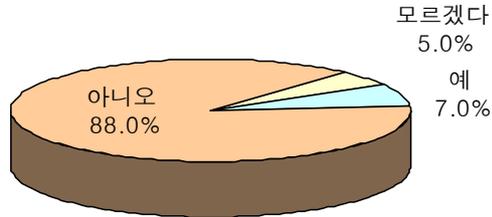
<그림-5>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을 때 (N=100, %)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만약 가족이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가해자를 사형시키더라도 원한/증오/미움 등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8.0%로 없어질 것 같다는 의견 7.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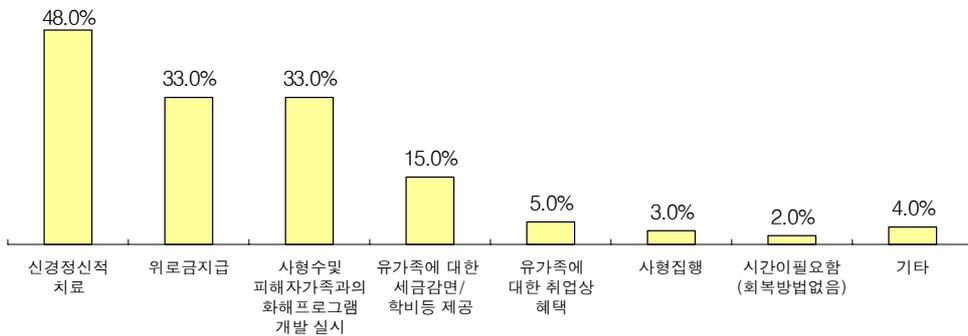
<그림-6>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N=100)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구제방법으로는 신경 정신적인 치료가 4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위로금지급이 33.0%를 보였다. 이외에 사형수 및 피해자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이 33.0%, 유가족에 대한 세금감면/학비 등의 제공이 15.0%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기타 의견으로는 종교의 극복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용 반대, 사형선고를 준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예방다각적인 조치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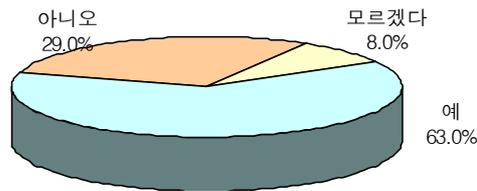
<그림-7>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N=100, 중복응답)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 사형수 가족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63.0%로 그 가족이 피해자로 생각 안 하는 비율(29.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새천년민주당의 경우는 사형수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한나라당은 다른 소속정당에 비해서 사형수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형수의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8>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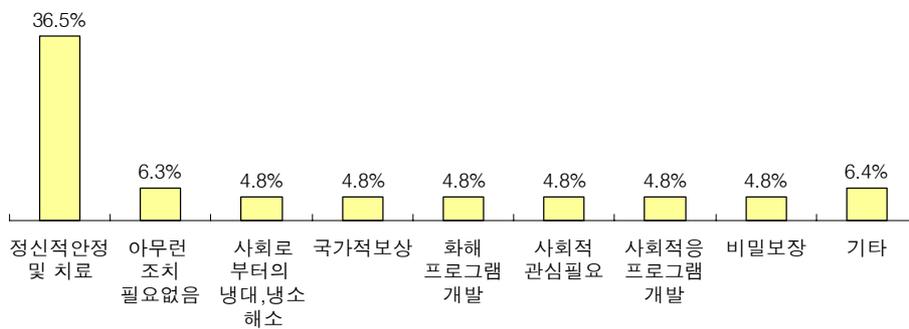


<표-2>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N=100, %)

		응답자수	사형수 가족 또한 피해자이다	사형수 가족 또한 피해자가 아니다
전 체		100	63.0	29.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51.5	38.8
	열린 우리당	21	81.0	14.3
	새천년민주당	25	72.0	24.0
	비교섭 단체	5	60.0	20.0
종교별	기 독 교	39	56.4	33.3
	불 교	15	40.0	46.7
	천 주 교	22	72.7	22.7
	기타/없음	24	79.2	16.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70.2	21.1
	찬 성	41	56.1	41.5

- 사형수 가족에 대한 조치로는 정신적 안정 및 치료라고 36.5%의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아무런 조치 필요 없다는 응답도 6.3% 였다.
- 기타 의견으로는 사형제도폐지, 위로금 지급, 물질적 보상 등이 있었다

<그림-9> 사형수의 가족에 대한 조치 (N=63,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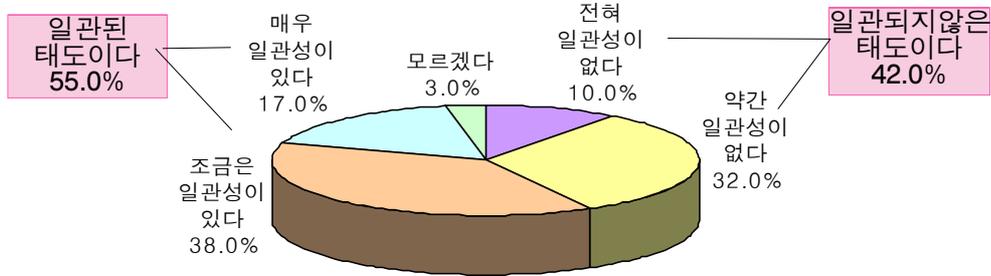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다라는 의견은 55.0%로 나타났으며,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42.0%로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한나라당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비율이 6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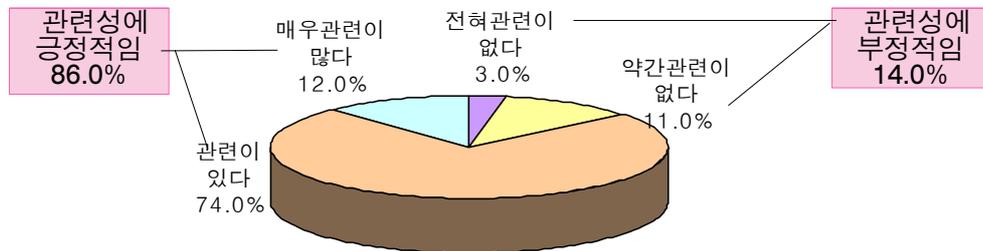
<그림-10>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N=100)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 사형제도는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과 관계가 있다는 응답은 86.0%로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 14.0%보다 훨씬 많은 의견을 보였다

<그림-11>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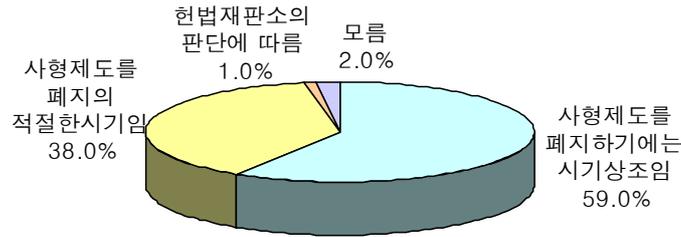


1)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을 감안할때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형제도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59.0%로 현재가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이 38.0%로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은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함을 인정하는 정당은 열린 우리당이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응답자의 종교가 불교인 경우에는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80.0%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2> 우리나라 문화적,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N=100)



<표-3> 우리나라 문화적,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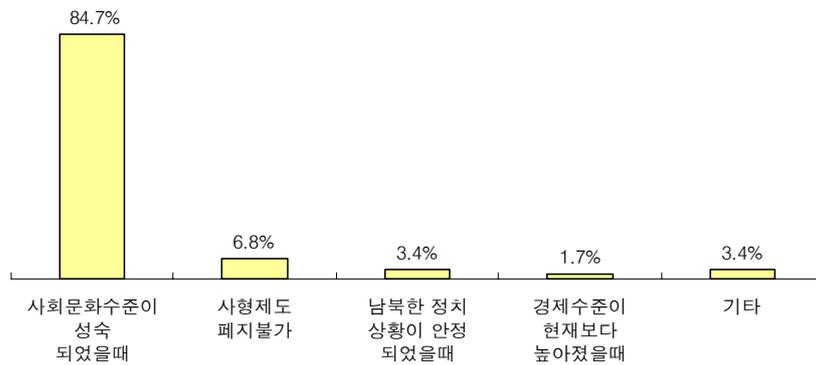
		응답자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화적·사회적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전 체		100	59.0	38.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75.5	22.4
	열린 우리당	21	28.6	66.7
	새천년민주당	25	52.0	44.0
	비교섭 단체	5	60.0	40.0
종교별	기 독 교	39	51.3	43.6
	불 교	15	80.0	13.3
	천 주 교	22	40.9	59.1
	기타/없음	24	75.0	25.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31.6	66.7
	찬 성	41	95.1	-

2) 적절한 사형제도 폐지 시기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문화수준이 성숙되었을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형제도 폐지 불가 6.8%, 남북한 정치상황이 안정되었을 때가 3.4%, 경제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졌을 때 1.7%의 비율을 보였다.

- 기타 의견으로는 적절한 시기는 없다 죄의 대가로 사형이 약한 처벌임을 알 때 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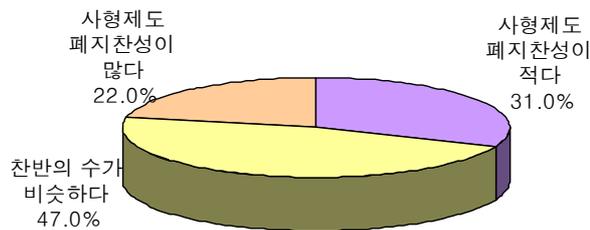
<그림-13> 사형제도 폐지의 적절한 시기 (N=59, %)



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의 수

- 국회의원 47.0%는 사형제도 폐지의 찬반수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하는 의원이 수가 적을 것 같다는 31.0%,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은 22.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14>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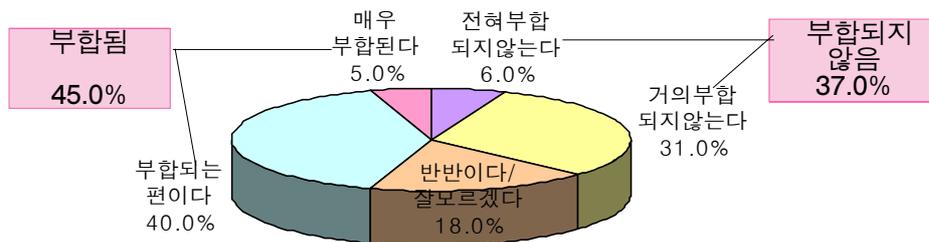
<표-4>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N=100 ,%)

		응답자수	사형제도 폐지찬성이 적다	폐지찬성·반대가 비슷하다	사형제도 폐지찬성이 많다
전 체		100	31.0	47.0	22.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42.9	44.9	12.2
	열린 우리당	21	23.8	47.6	28.6
	새천년민주당	25	16.0	52.0	32.0
	비교섭 단체	5	20.0	40.0	40.0
종교별	기 독 교	39	33.3	41.0	25.6
	불 교	15	40.0	33.3	26.7
	천 주 교	22	18.2	50.0	31.8
	기타/없음	24	33.3	62.5	4.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21.1	49.1	29.8
	찬 성	41	46.3	41.5	12.2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사형제도가 형벌 목적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45.0%가 부합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37.0%만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열린우리당에서는 그 부합성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57.2%로 타소속정당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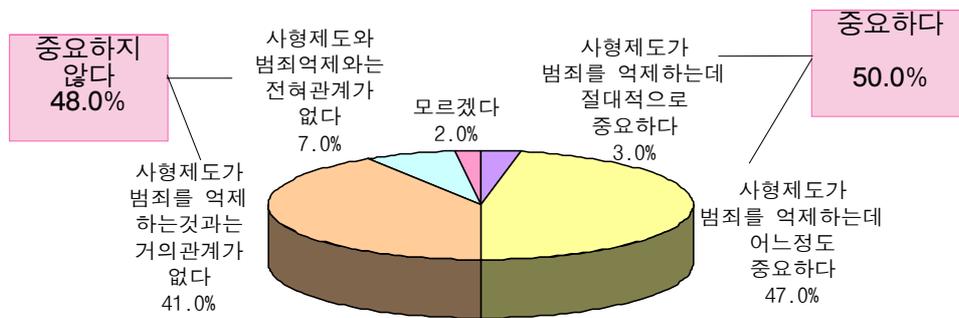
<그림-15> 사형제도가 형벌로써의 적합성 (N=100)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50.0%가 있다고 응답하여 없다는 의견 48.0%보다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와 관계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연령이60세 이상에서 64.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16>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와의 관계(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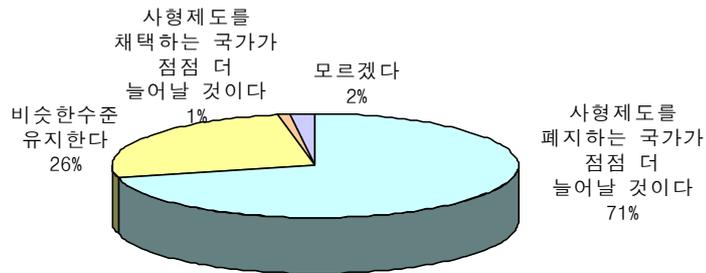
<표-5>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와의 관계(N=100, %)

		응답자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느정도 중요하다	거의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4점 평균
전 체		100	3.0	47.0	41.0	7.0	2.53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6.1	53.1	32.7	6.1	2.40
	열린 우리당	21	-	38.1	38.1	19.0	2.80
	새천년민주당	25	-	40.0	60.0	-	2.60
	비교섭 단체	5	-	60.0	40.0	-	2.40
종교별	기 독 교	39	2.6	48.7	46.2	2.6	2.49
	불 교	15	6.7	60.0	26.7	.0	2.21
	천 주 교	22	4.5	31.8	45.5	13.6	2.71
	기타/없음	24	-	50.0	37.5	12.5	2.6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	14.0	71.9	12.3	2.93
	찬 성	41	7.3	90.2	-	-	1.93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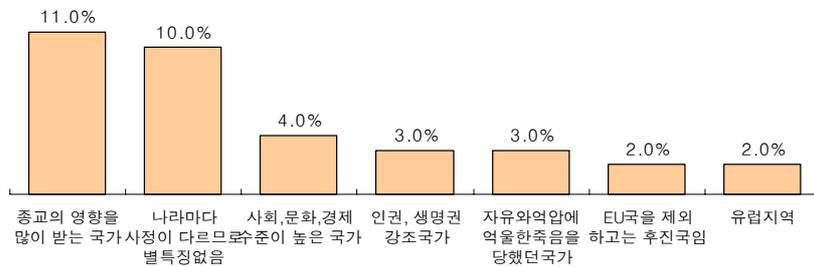
- 향후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국가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71.0%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이유는 26.0%로 나타났다.
-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의 경우는 사형폐지국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6.2%, 76.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17> 세계적인 사형제도 추세 (N=100)



-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라는 의견이 1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별 특징이 없다는 의견이 10.0%를 보였다.

<그림-18> 사형제도 폐지국의 특징 (N=100,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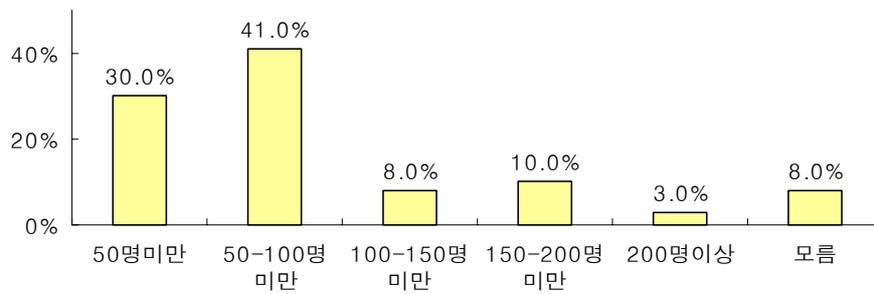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현재 사형수의 수는 50~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50명 미만이 30.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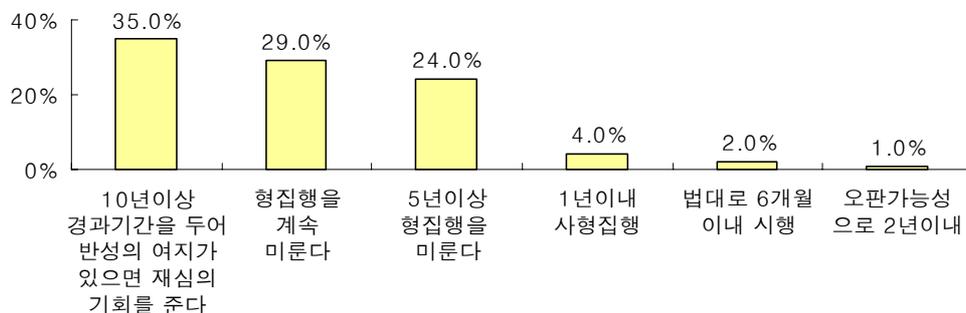
<그림-19> 체감으로 느끼는 사형수의 수 (N=100)



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 적절한 사형시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형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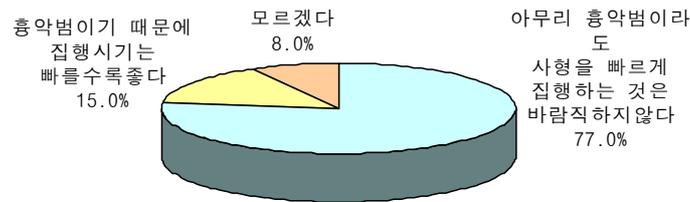
<그림-20> 사형수의 집행시기 (N=100)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 흉악범의 사형집행을 사회적 여론에 따라 신속하게 하였을 때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77.0%를 보였다.
- 소속정당과 상관없이 신속한 사형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하나,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집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한나라당에서는 20.4%로 타소속정당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21> 흉악범의 신속한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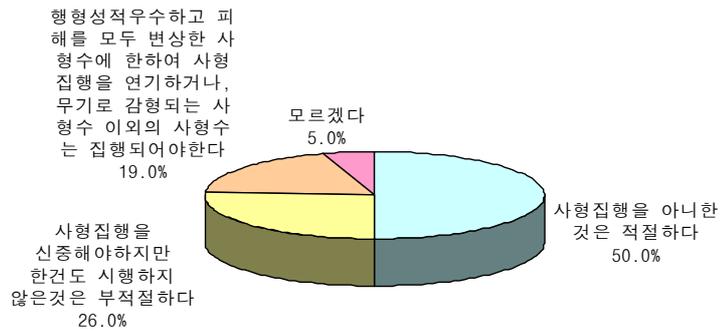
<표-6>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N=100, %)

		응답자수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전 체		100	77.0	15.0
소속정당	한 나라 당	49	69.4	20.4
	열린 우리당	21	81.0	9.5
	새천년민주당	25	88.0	12.0
	비교섭 단체	5	80.0	-
종교별	기 독 교	39	84.6	5.1
	불 교	15	66.7	20.0
	천 주 교	22	86.4	13.6
	기타/없음	24	62.5	29.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86.0	3.5
	찬 성	41	65.9	31.7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국회의원들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50.0%, 한 건도 하지 않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26.0%를 보였다.
- 소속정당 중 열린우리당에서는 사형집행을 안한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6.7%로 타소속정당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종교가 불교인 경우는 사형집행을 한 건도 안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이 타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22> 사형집행을 안한 정부에 대한 의견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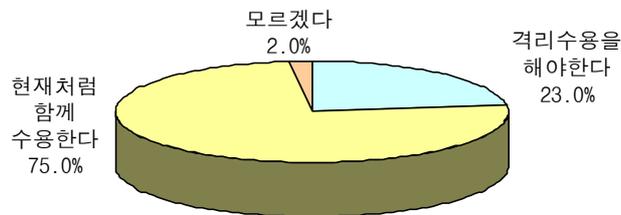
<표-7> 사형집행을 안한 정부에 대한 의견(N=100, %)

		응답자수	사형집행을 안한 것은 적절하다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한 건도 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형성적우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는 사형집행을 연기/ 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 이외에는 집행되어야 한다
전 체		100	50.0	26.0	19.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36.7	32.7	24.5
	열린 우리당	21	66.7	19.0	4.8
	새천년민주당	25	64.0	20.0	16.0
	비교섭 단체	5	40.0	20.0	40.0
종교별	기 독 교	39	56.4	20.5	17.9
	불 교	15	26.7	46.7	26.7
	천 주 교	22	54.5	27.3	4.5
	기타/없음	24	50.0	20.8	29.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77.2	12.3	5.3
	찬 성	41	12.2	46.3	36.6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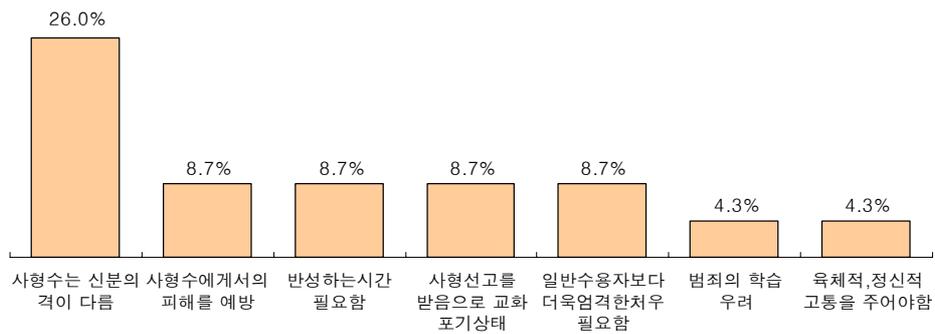
- 일반수용자와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5.0%로,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23.0%보다 높게 나타났다.
-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는 타종교에 비해 격리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35.9%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3> 사형수의 수용 방법 (N=100)



- 격리수용 이유는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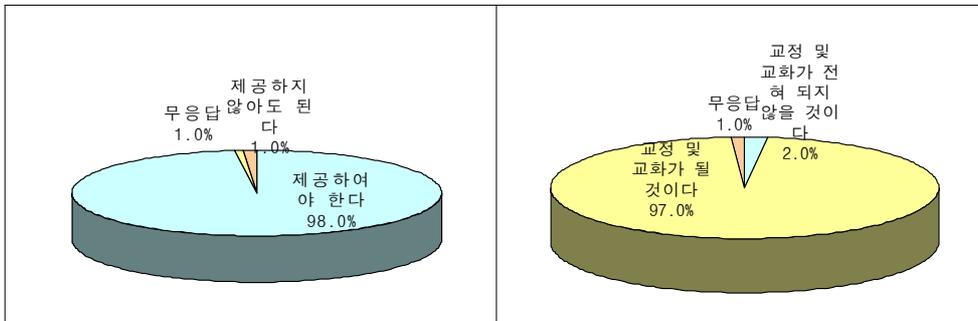
<그림-24> 사형수를 격리수용 시켜야 하는 이유(N=23, %, 중복응답)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 사형수에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98.0%로 대다수의 의견을 차지하였다
-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 시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교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97.0%로 나타나서 국회의원들은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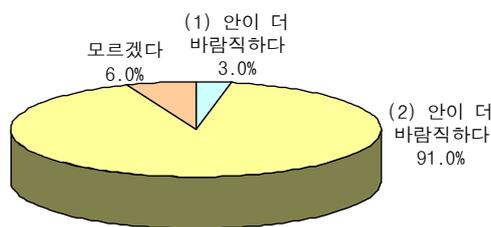
<그림-25> 교정 교화 프로그램 제공 및 교정 및 교화가능성(N=100)



사. 법조항의 표현

- 법조항의 표현¹⁾ 중 (2)안이 (1)안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1.0%를 보였다.

<그림-26> 법조항의 표현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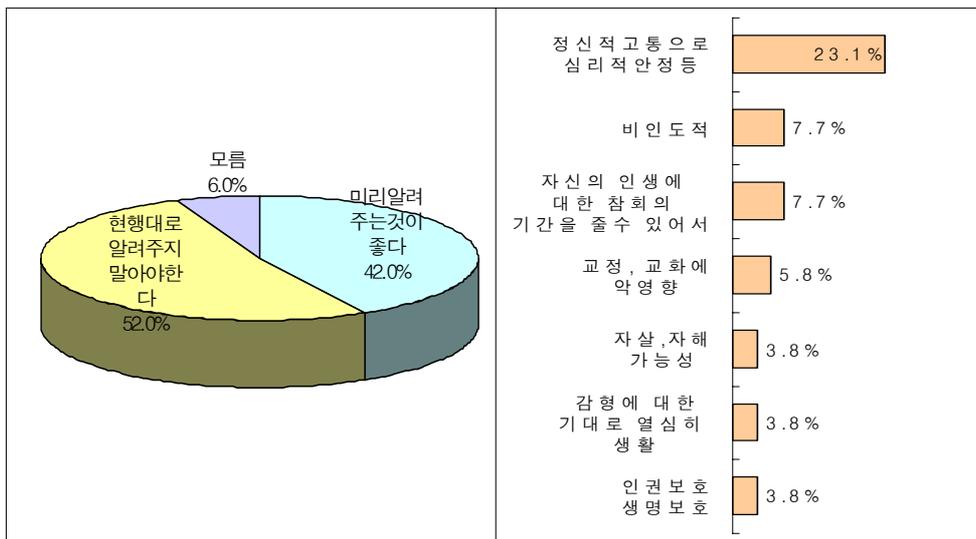
11) 1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사형수에게 집행 일자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2.0%였다.
- 사형집행 일자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는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서 2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비인도적,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회의 기간을 줄 수 있어서 등이 각각 7.7%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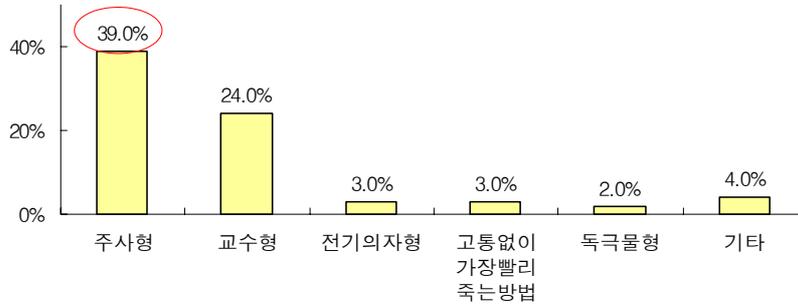
<그림-27>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일 공지 찬·반 및 이유(N=100, %)



자. 사형집행 방법

-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주사형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수형 실시 의견이 24.0%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고통없이 가장 빠르게 죽는 방법 독극물형, 공개교수형, 본인이 원하는대로 적절한 방법은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28> 사형집행의 방법 (N=100)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가.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폐지 의견이 66.0%로 나타났다.
- [사례1]에서 사형제도폐지 의견은 응답자의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가 77.3%로 타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소속정당별로는 새천년민주당에서 80.0%로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다

<표-8> [사례1]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 여부(N=100,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100	66.0	30.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59.2	36.7
	열린 우리당	21	71.4	23.8
	새천년민주당	25	80.0	20.0
	비교섭 단체	5	40.0	40.0
종교별	기 독 교	39	69.2	25.6
	불 교	15	46.7	46.7
	천 주 교	22	77.3	22.7
	기타/없음	24	62.5	33.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94.7	1.8
	찬 성	41	29.3	70.7

1)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66명)	응답률
· 오관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오관가능성)	68.2 %
· 사형제도가 없다면 시간을 두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므로	7.6 %
·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해	4.5 %

2)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30명)	응답률
· 오관의 가능성 적음	20.0%
· 제도자체는 존속되어야 함(사형자체가 문제가 아님)	16.7%
· 정확한 사전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사형제도는 유지	6.7%
· 오관의 가능성이 있어도 사형제도 유지되어야 함	6.7%
·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3.3%
· 증거가 확실하여 오관이 없다면 사형집행	3.3%
· 사형제도는 사회적 인위와 보호를 위해 꼭 필요	3.3%
· 최종판결은 신중하되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함	3.3%
· 판결실수와 사형필요는 연계성이 떨어짐	3.3%

나.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군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1.0%로 사형제도 폐지 쪽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응답자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타종교에 비해 폐지 의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쪽에 64.0%로 타소속정당에 비해 폐지의견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9> [사례2]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100,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100	55.0	41.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49.0	46.9
	열린 우리당	21	61.9	33.3
	새천년민주당	25	64.0	36.0
	비교섭 단체	5	40.0	40.0
종교별	기 독 교	39	59.0	35.9
	불 교	15	26.7	66.7
	천 주 교	22	63.6	36.4
	기타/없음	24	58.3	37.5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91.2	5.3
	찬 성	41	7.3	92.7

1)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폐지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55명)	응답률
· 우발적인 사건	23.6 %
·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함	21.9 %
· 인간의 생명권 존엄성 보호	7.3 %
·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함	7.3 %
· 사형시켜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5.5 %
·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로 대체 가능	3.6 %
·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형벌집행	3.6 %
· 군복무중이라는 특수상황을 이해해줘야 할 것 같아서	3.6 %
· 자책감으로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므로	3.6 %
· 국가는 신이 아니다	1.8 %
· 살인자라서 사형시킨다는 건 모순이다	1.8 %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서	1.8 %
· 범죄예방 효과가 없음	1.8 %

2)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41명)	응답률
· 고참병을 죽일 만큼의 사건이 아님	12.2 %
· 군대존속을 위해	9.8 %
·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 못함	7.3 %
· 사람을 죽인 죄값을 받아야 한다	7.3 %
· 극단적인 예임	7.3 %
· 제도 자체는 존속되어야 함	4.9 %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4.9 %

다.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 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 6여 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0%,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사형제도 유지 쪽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열린우리당은 사형폐지가 57.1%로 타소속정당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특히,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는 사형 폐지 쪽에 많은 의견을 보였다

<표-10> [사례3]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100,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100	46.0	48.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40.8	53.1
	열린 우리당	21	57.1	38.1
	새천년민주당	25	48.0	48.0
	비교섭 단체	5	40.0	40.0
종교별	기 독 교	39	51.3	41.0
	불 교	15	20.0	66.7
	천 주 교	22	63.6	36.4
	기타/없음	24	37.5	58.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78.9	14.0
	찬 성	41	2.4	97.6

1)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46명)	응답률
·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할 기회 주어야	26.1 %
·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 고취	8.7 %
· 죄수가 사라졌다고 그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8.7 %
·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될 것 같아서	6.5 %
· 특권층에 대한 원한은 교화가 가능해서	4.3 %
· 사형에 대한 형벌 대신 다른 방법의 형벌을 모색해야 한다	4.3 %
· 사회적, 국가적으로 책임이 있음	2.2 %
· 죄에 대해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될 것 같아서	2.2 %
· 장기적으로 범죄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함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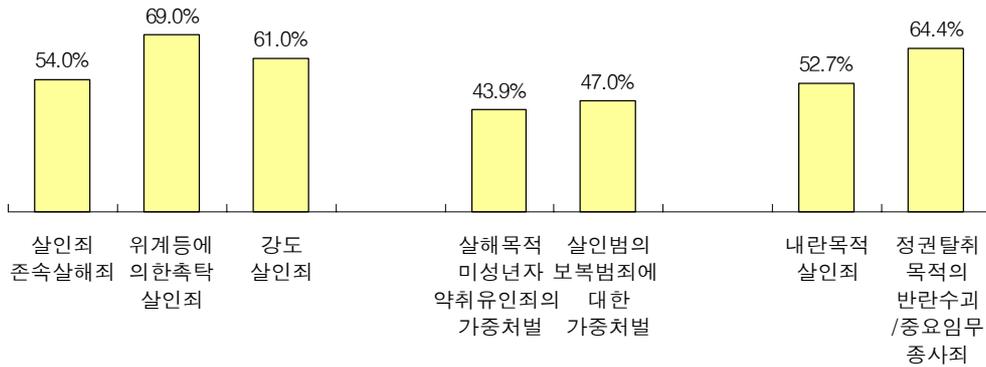
2)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48명)	응답률
·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14.6 %
· 인과응보	12.5 %
·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이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8.3 %
· 흉악범죄는 반사회적 사회악이기 때문에	8.3 %
· 살해방법이 비인간적이라서	6.3 %
· 사회안전을 위해 영원한 격리 필요	6.3 %
· 피해자 및 가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4.2 %
· 사회방위 차원 및 범죄예방	4.2 %
· 사법부의 판단 존중	2.1 %
·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2.1 %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 국회의원들은 제시한 항목중 특정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모두 사형 반대 비율이 사형찬성 비율보다 높았다.
- 정치범에 해당하는 '내란목적살인죄'와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반대가 각각 62.0%, 73.0%였으며 그 대체형벌로는 감형이 있는 종신형이라고 응답하였다
- 공안사범에 해당하는 '간첩죄'와 '반국가단체의구성수괴·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반대가 각각 74.0%, 76.0%였으며 그 대체형벌로는 감형이 있는 종신형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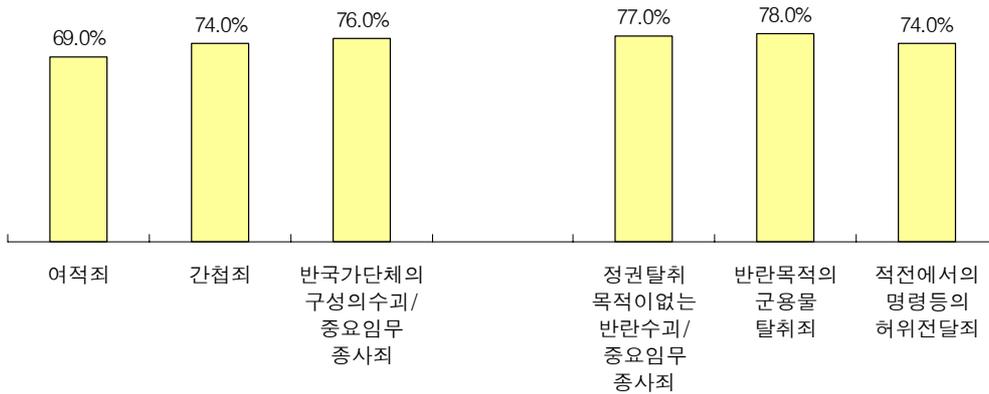
<그림-29>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한 사형반대율 (N=100)



[일반형사범]

[특정범죄]

[정치범]



[공안사범]

[군사범죄]

<표-11> 주요 범죄별 사형반대율 및 대체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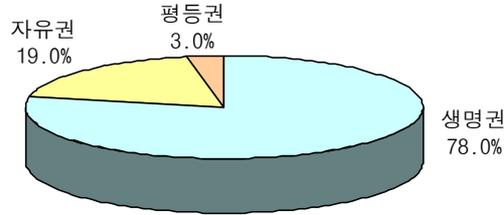
	범죄명	사형 반대율 (%)	대체형별(%)			
			감형없는 중신형	감형있는 중신형	무기형	기타
일반형사범	살인죄·존속살해죄	54.0	46.3	37.0	5.6	11.1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69.0	31.9	43.5	14.5	10.1
	강도살인죄	61.0	32.8	44.3	13.1	9.8
특정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55.0	45.5	32.7	12.7	9.1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한가중처벌	60.0	38.3	41.7	10.0	10.0
정치범	내란목적살인죄	62.0	33.9	38.7	14.5	12.9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중사죄	73.0	23.3	39.7	26.0	11.0
공안사범	여적죄	69.0	36.2	34.7	17.4	11.6
	간첩죄	74.0	23.0	37.8	24.3	14.9
	반국가단체의구성수괴·중요임무중사죄	76.0	26.3	35.5	23.7	14.5
군사범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중사죄	77.0	24.7	42.9	20.8	11.6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78.0	15.4	43.6	29.5	11.6
	적전에서명령등의허위전달죄	74.0	16.2	43.2	28.4	12.2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가. 인간의 기본권

-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는 생명권(78.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유권(19.0%), 평등권(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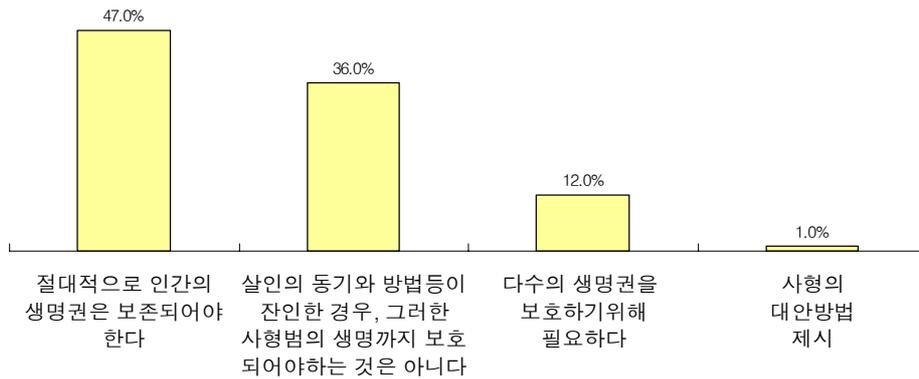
<그림-30> 인간의 기본권 (N=100)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0%의 비율을 보였다.
- 열린우리당은 타소속정당에 비해 절대적 인간의 생명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비율이 57.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이 의견은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에도 63.6%로 타종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림-31>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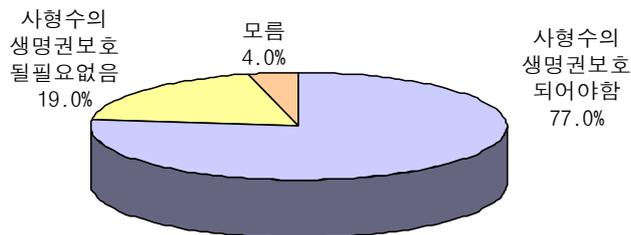
<표-12>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N=100, %)

		응답자수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살인범이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체		100	47.0	36.0	12.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42.9	36.7	16.3
	열린 우리당	21	57.1	33.3	4.8
	새천년민주당	25	48.0	36.0	12.0
	비교섭 단체	5	40.0	40.0	-
종교별	기 독 교	39	51.3	35.9	5.1
	불 교	15	20.0	60.0	20.0
	천 주 교	22	63.6	22.7	13.6
	기타/없음	24	41.7	33.3	16.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78.9	10.5	5.3
	찬 성	41	4.9	73.2	22.0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7.0%로 그 존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9.0%로 나타났다.

<그림-32>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100)



-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는 사형수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95.5%로 높은 의견을 보였으나 불교의 경우는 타인의 생명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53.3%로 과반수 이상을 보였다.

<표-13>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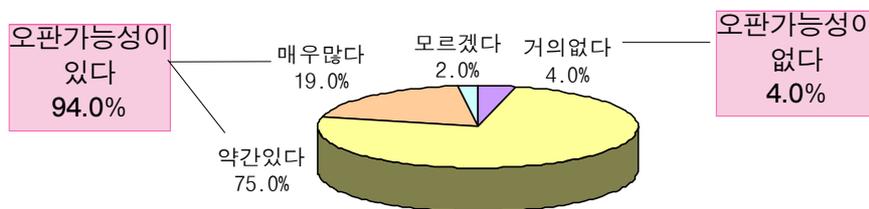
		응답자수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전 체		100	77.0	19.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75.5	18.4
	열린 우리당	21	85.7	14.3
	새천년민주당	25	80.0	20.0
	비교섭 단체	5	40.0	40.0
종교별	기 독 교	39	82.1	15.4
	불 교	15	46.7	53.3
	천 주 교	22	95.5	4.5
	기타/없음	24	70.8	16.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94.7	1.8
	찬 성	41	53.7	43.9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가.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 사법제도 상 잘못된 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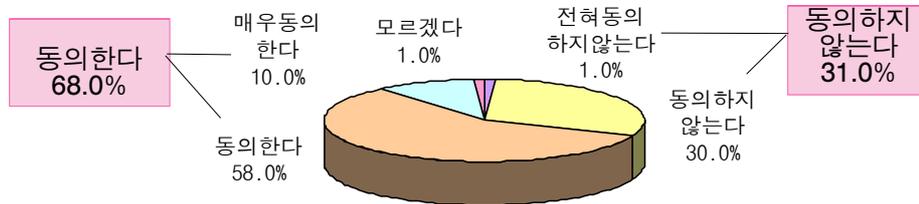
<그림-33> 오판가능성의 평가 (N=100)



나. 오판가능성 인한 사형제도 폐지

-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68.0%였다.
-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가81.8%로 높았으며, 반면 불교인 경우는 33.3%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34>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 폐지 의견 (N=100)



<표-14>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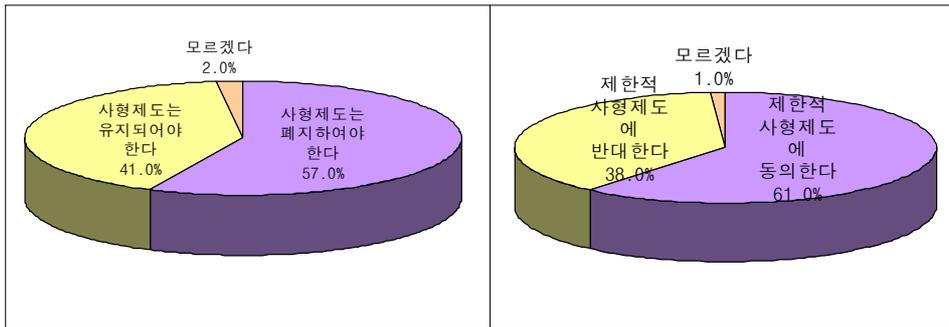
		응답자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4점 평균
전 체		100	1.0	30.0	58.0	10.0	2.78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2.0	32.7	51.0	12.2	2.75
	열린 우리당	21	.0	23.8	71.4	4.8	2.81
	새천년민주당	25	.0	24.0	72.0	4.0	2.80
	비교섭 단체	5	.0	60.0	.0	40.0	2.80
종교별	기 독 교	39	-	30.8	53.8	15.4	2.85
	불 교	15	-	60.0	26.7	6.7	2.43
	천 주 교	22	-	18.2	72.7	9.1	2.91
	기타/없음	24	4.2	20.8	70.8	4.2	2.75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	5.3	75.4	17.5	3.13
	찬 성	41	2.4	61.0	36.6	-	2.34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0%로 유지하자는 의견 41.0%보다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는 사형제도 폐지가 72.7%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불교인 경우는 사형제도 존치쪽에 66.7%로 서로 차이를 보였다.
- 사형을 반사회적 범죄에만 적용하고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61.0%, 동의하지 않음이 38.0%로 나타났다.
- 종교가 불교인 경우는 위와 같은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80.0%로 타종교에 비해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54.5%를 보인 천주교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35> 사형제도 존폐 의견 및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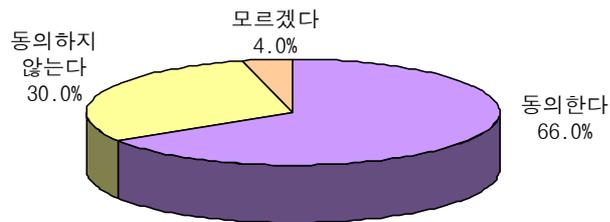
<표-15>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N=278, %)

		응답자수	사형제도 존폐 의견		제한적 사형제도	
			폐지	유지	찬성	반대
전 체		100	57.0	41.0	61.0	38.0
소속정당	한 나라 당	49	51.0	46.9	61.2	38.8
	열린 우리당	21	66.7	33.3	52.4	47.6
	새천년민주당	25	64.0	36.0	72.0	24.0
	비교섭 단체	5	40.0	40.0	40.0	60.0
종교별	기 독 교	39	61.5	35.9	56.4	43.6
	불 교	15	33.3	66.7	80.0	20.0
	천 주 교	22	72.7	27.3	54.5	45.5
	기타/없음	24	50.0	45.8	62.5	33.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찬	57	100.0	-	47.4	50.9
	찬 성	41	-	100.0	78.0	22.0

10. 여론조사 결과가 사형제도 존폐 의견에 미치는 영향

- 여론조사 결과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이 66.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30.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열린우리당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다는 의견이 81.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또한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도 여론조사에 따른다는 의견이 81.8%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불교의 경우는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6> 여론조사시 사형폐지론 의견이 높을 경우
사형제도 폐지 (N=100)



<표-16> 여론조사시 사형폐지의견이 높을 경우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100,%)

		응답자수	여론조사 결과에 동의한다	여론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100	66.0	30.0
소속정당	한 나 라 당	49	57.1	36.7
	열린 우리당	21	81.0	19.0
	새천년민주당	25	76.0	24.0
	비교섭 단체	5	40.0	40.0
종교별	기 독 교	39	69.2	25.6
	불 교	15	33.3	60.0
	천 주 교	22	81.8	18.2
	기타/없음	24	66.7	29.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57	98.2	0.0
	찬 성	41	24.4	70.7

제5장. 법조인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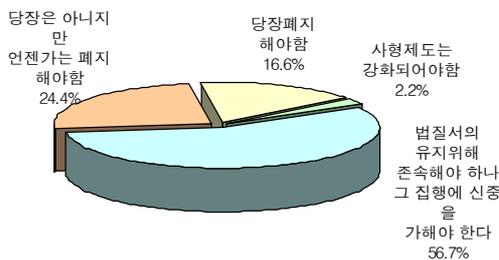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5.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당장 또는 추후에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41.0%였으며,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하나 그 집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6.7%,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2%를 보여 사형제도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4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검사는 사형제도 유지 의견에 83.3%가 찬성하였으며, 법관은 46.9%, 변호사는 40.0%를 보여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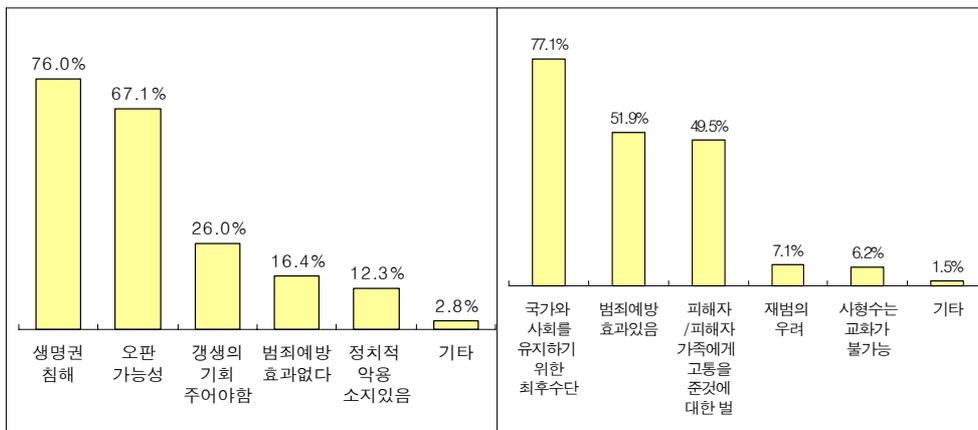


<표-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356, %)

		응답자 수	법질서유지 위해 존속해야 하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전 체		356	56.7	24.4	16.6	2.2
소속	법 관	113	46.9	33.6	19.5	-
	검 사	138	77.5	10.9	5.8	5.8
	변 호 사	105	40.0	32.4	27.6	-
종교별	기 독 교	75	54.7	28.0	16.0	1.3
	불 교	75	54.7	26.7	17.3	1.3
	천 주 교	51	43.1	31.4	23.5	2.0
	기타/없음	155	63.2	19.4	14.2	3.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2.3	52.7	44.2	0.8
	찬 성	222	88.7	7.2	0.9	3.2

- 사형제도 폐지 이유로는 사형제도가 인간이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7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법조인이지만 '오판가능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67.1%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2> 폐지 이유 (N=146) <그림-3> 유지 이유 (N=210)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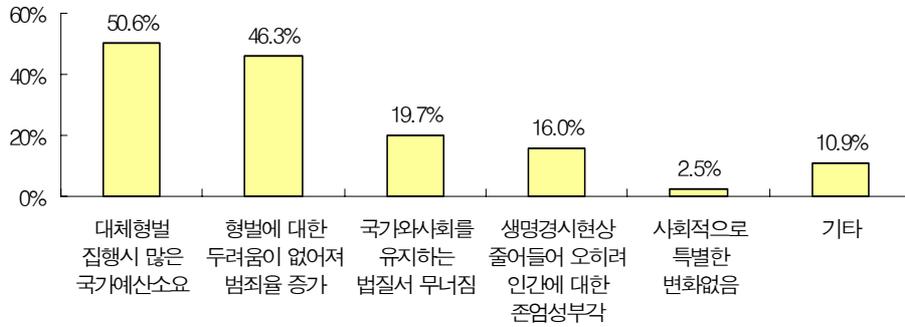


-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의견으로 77.1%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사형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51.9%,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49.5%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정의관념에 부합 형벌의 다양성, 중죄에 대해선 단죄가 필요함 등의 의견이 있었다

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예상되는 점

- 사형제도가 폐지 시에 예상되는 점으로는 우선 대체형벌을 집행하는 데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든가 의견이 5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46.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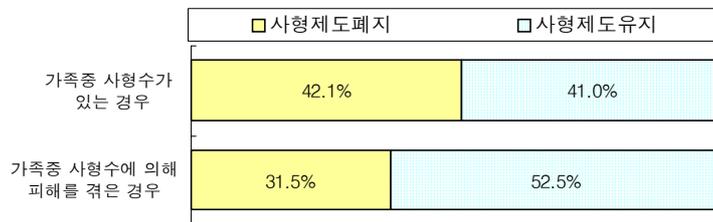
<그림-4>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점 (N=356,복수응답)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가족 중 사형수가 있는 경우는 사형제도 유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되었으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겪은 경우를 가정할 경우는 사형제도 유지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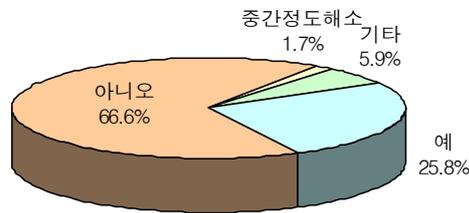
<그림-5>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을 때 (N=356)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만약 가족이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가해자를 사형시키더라도 원한/증오/미움 등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6.6%로 없어질 것 같다는 의견 25.8%, 중간정도 해소 1.7%로 나타났다.

<그림-6>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N=356)



<표-2>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N=3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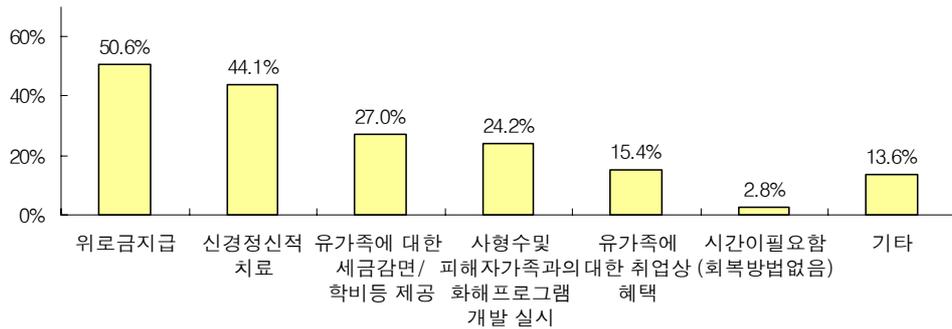
		응답자수	원한/증오/미움이 제거된다	원한/증오/미움이 제거안된다
전 체		356	25.8	66.6
소속	법 관	113	23.0	72.6
	검 사	138	34.1	52.9
	변 호 사	105	18.1	78.1
종교별	기 독 교	75	25.3	69.3
	불 교	75	18.7	73.3
	천 주 교	51	17.6	72.5
	기타/없음	155	32.3	60.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13.2	84.5
	찬 성	222	33.8	56.3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로금지급이 5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신경 정신적인 치료가 44.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가족에 대한 세금감면/학비 등의 제공이 27.0% 등을 응답하였다

- 기타의 의견으로는 종교로 극복, 사형수에 대한 철저한 응징, 특별조치 불필요, 상처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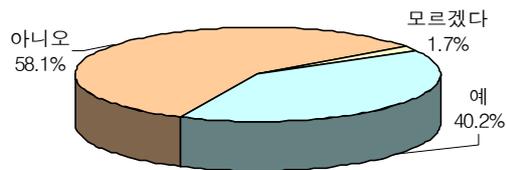
<그림-7>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N=356, 중복응답)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 사형수 가족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40.2%로 그 가족이 피해자로 생각 안 하는 비율 58.1%로 법조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그 가족은 피해자가 아닌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8>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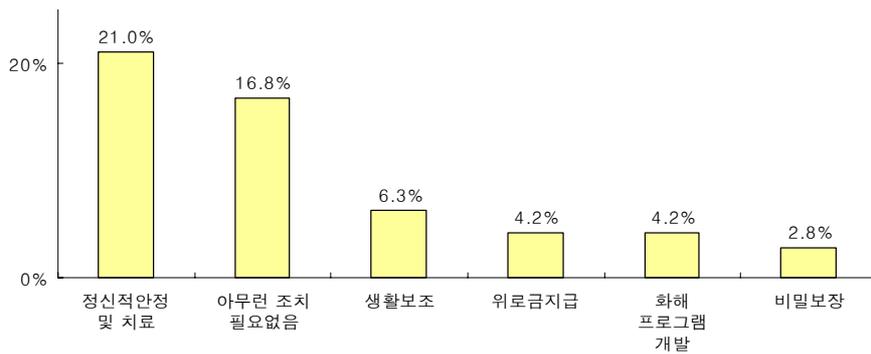


<표-3>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N=356,%)

		응답자수	사형수 가족은 피해자이다	사형수 가족은 피해자가 아니다
전 체		356	40.2	58.1
소속	법 관	113	39.8	58.4
	검 사	138	35.6	61.6
	변 호 사	105	46.7	53.3
종교별	기 독 교	75	37.3	60.0
	불 교	75	48.0	50.7
	천 주 교	51	45.1	52.9
	기타/없음	155	36.1	62.6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52.7	45.7
	찬 성	222	32.4	65.8

- 사형수 가족에 대한 조치로는 우선적으로 정신적 안정 및 치료라고 21.0%의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아무런 조치 필요 없음(16.8%), 생활보조(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 외의 의견으로는 사회적응 프로그램개발 사회질서에 대한 이해, 피해의식 죄의식 해방 등이 있었다

<그림-9> 사형수의 가족에 대한 조치 (N=143,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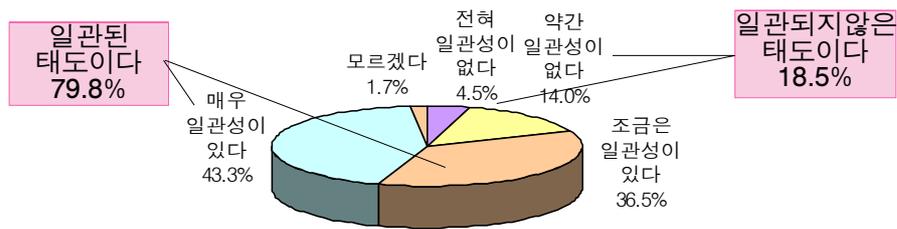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헌법에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는 것과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의견은 79.8%로 나타났으며,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18.5%로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28.8%로 타종교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에 변호사도 37.1%로 법관, 검사에 비해 높았다.

<그림-10>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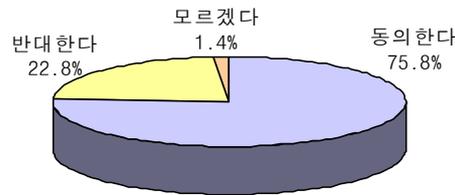
<표-4>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N=356, %)

		응답자수	전혀 일관성이 없다	약간은 일관성이 없다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	매우 일관성이 있다	4점 평균
전 체		356	4.5	14.0	36.5	43.3	3.21
소속	법 관	113	2.7	15.0	42.5	37.2	3.17
	검 사	138	2.9	2.2	29.0	63.8	3.57
	변 호 사	105	8.6	28.6	40.0	22.9	2.77
종교별	기 독 교	75	1.3	16.0	45.3	36.0	3.18
	불 교	75	8.0	13.3	48.0	29.3	3.00
	천 주 교	51	7.8	21.6	25.5	43.1	3.06
	기타/없음	155	3.2	11.0	30.3	53.5	3.3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11.6	31.0	43.4	11.6	2.56
	찬 성	222	0.5	4.5	32.0	61.7	3.57

나.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 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

-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판결에 대해 법조인의 75.8%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법관은 69.0%, 변호사는 61.0%가 동의하고 있었으며 특히 검사 는 92.8%가 동의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변호사는 39.1%가 반대하고 있어 법관 검사에 비해 반대율이 높았다.

<그림-11> 사형에 관한 합헌 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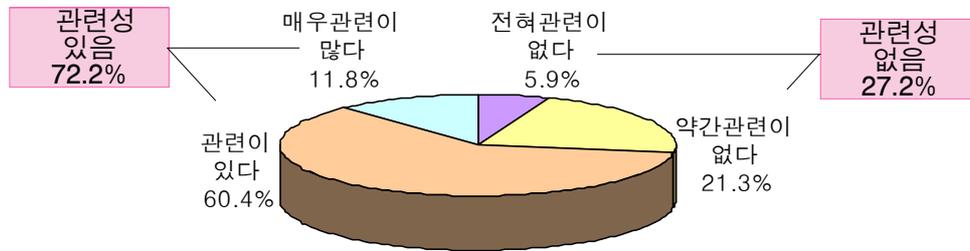
<표-5>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

		응답자수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356	75.8	22.8
소속	법 관	113	69.0	29.2
	검 사	138	92.8	6.5
	변 호 사	105	61.0	37.1
종교별	기 독 교	75	76.0	22.7
	불 교	75	65.3	30.7
	천 주 교	51	72.5	27.5
	기타/없음	155	81.9	17.4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38.8	59.7
	찬 성	222	98.2	1.8

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 사형제도는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과 관계가 있다는 응답은 72.2%로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 27.2%보다 훨씬 많은 의견을 보였다
- 변호사는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과 관계가 없다는 비율이 검사 법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2>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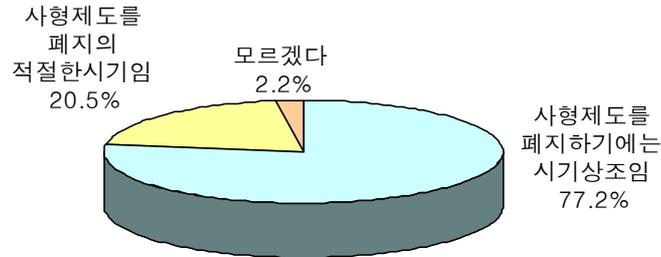
<표-6>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N=356, %)

		응답자수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매우 관련이 많다	4점 평균
전 체		356	5.9	21.3	60.4	11.8	2.79
소속	법 관	113	0.9	16.8	69.9	11.5	2.93
	검 사	138	10.1	30.4	50.7	8.7	2.58
	변 호 사	105	5.7	14.3	62.9	16.2	2.90
종교별	기 독 교	75	4.0	18.7	66.7	10.7	2.84
	불 교	75	9.3	14.7	65.3	10.7	2.77
	천 주 교	51	3.9	21.6	52.9	19.6	2.90
	기타/없음	155	5.8	25.8	57.4	10.3	2.7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2.3	9.3	66.7	21.7	3.08
	찬 성	222	8.1	28.8	55.9	6.3	2.61

1) 문화수준 및 사회 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 문화수준 및 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사형제도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77.2%로 '현재가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 20.5%보다 높았다.
- 변호사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은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하다는 의견이 31.4%로 법관(25.7%), 검사(8.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3>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 여부(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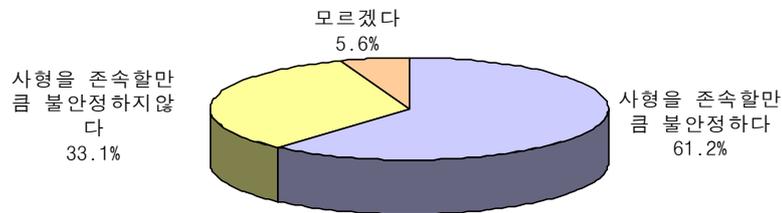
<표-7>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 여부(N=356,%)

		응답자수	문화적·사회적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화적·사회적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전 체		356	77.2	20.5
소속	법 관	113	72.6	25.7
	검 사	138	88.4	8.0
	변 호 사	105	67.6	31.4
종교별	기 독 교	75	81.3	16.0
	불 교	75	74.7	22.7
	천 주 교	51	68.6	31.4
	기타/없음	155	79.4	18.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45.0	54.3
	찬 성	222	95.5	1.4

2) 우리나라의 상황과 사형 존속의 관계

-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사형을 존속시킬 만큼 불안정한가에 대해 법조인의 61.2%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75.4%는 법관 53.1%, 변호사 51.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14> 우리나라 사회의 불안정도와 사형유지관계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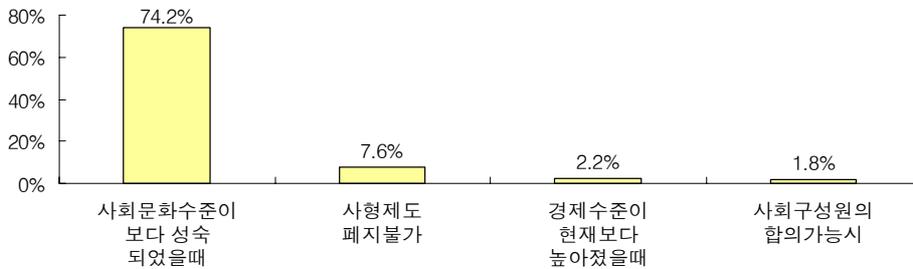
<표-8> 우리나라 사회의 불안정도와 사형유지관계 (%)

		응답자수	사형을 존속할 만큼 불안정하다	사형을 존속할 만큼 불안정하지 않다
전 체		356	61.2	33.1
소속	법 관	113	53.1	40.7
	검 사	138	75.4	16.7
	변 호 사	105	51.4	46.7
종교별	기 독 교	75	61.3	32.0
	불 교	75	53.3	37.3
	천 주 교	51	56.9	39.2
	기타/없음	155	66.5	29.7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32.6	65.9
	찬 성	222	78.8	14.9

3) 적절한 사형제도 폐지 시기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문화 수준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높았다. 이 질문에 사형제도 폐지불가라고 응답한 경우도 7.6%의 비율을 보였다.
- 기타 의견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성숙이 되었을 때 문화적·사회적 여건과는 관계가 없음 범죄없는 세상일 때 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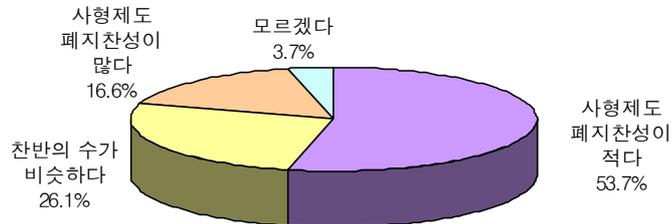
<그림-15>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의 적절한 시기 (N=275)



라.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의 수

- 법조인 53.7%는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수가 적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찬성하는 의원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은 16.6%, 찬반의 수가 비슷하다는 비율 26.1%를 보였다.

<그림-16>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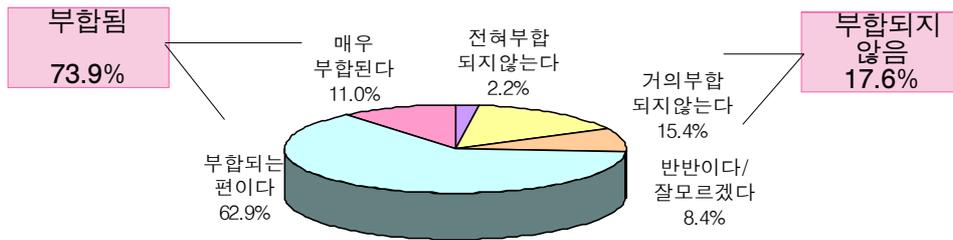
<표-9>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N=356 , %)

		응답자수	사형제도 폐지찬성이 적다	폐지찬성·반대가 비슷하다	사형제도 폐지찬성이 많다
전 체		356	53.7	26.1	16.6
소속	법 관	113	51.3	27.4	18.6
	검 사	138	54.3	25.4	13.8
	변 호 사	105	55.2	25.7	18.1
종교별	기 독 교	75	46.7	30.7	18.7
	불 교	75	49.3	26.7	21.3
	천 주 교	51	62.7	17.6	13.7
	기타/없음	155	56.1	26.5	14.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51.9	27.1	19.4
	찬 성	222	54.9	25.7	14.9

마.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사형제도가 형벌 목적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73.9%가 부합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17.7%만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검사의 경우는 89.9%가 부합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법관 71.7%, 변호사 55.2%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17> 사형제도가 형벌로써의 적합성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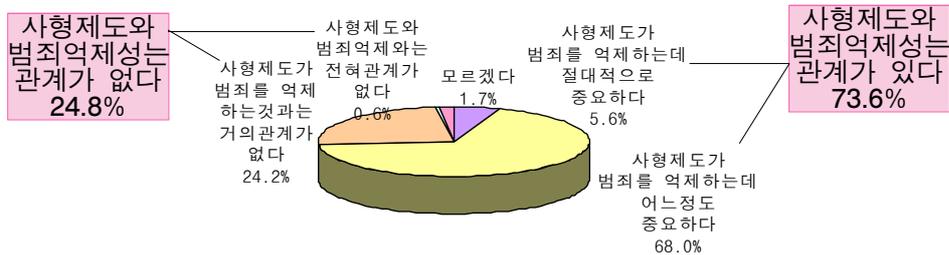
<표-10> 사형제도가 형벌로써의 적합성 (N=356, %)

		응답자수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반반이다/ 잘모름	부합되는 편이다	매우 부합된다	5점 평균
전 체		356	2.2	15.4	8.4	62.9	11.0	3.65
소속	법 관	113	1.8	17.7	8.8	63.7	8.0	3.58
	검 사	138	-	4.3	5.8	71.0	18.8	4.04
	변 호 사	105	5.7	27.6	11.4	51.4	3.8	3.20
종교별	기 독 교	75	1.3	14.7	6.7	68.0	9.3	3.69
	불 교	75	5.3	18.7	8.0	61.3	6.7	3.45
	천 주 교	51	3.9	17.6	19.6	51.0	7.8	3.41
	기타/없음	155	0.6	13.5	5.8	65.2	14.8	3.8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4.7	40.3	14.7	38.8	1.6	2.92
	찬 성	222	0.9	1.4	4.5	76.6	16.7	4.07

바.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73.6%가 있다고 응답하여 없다는 의견 24.8%보다 높았다.
- 특히 검사의 경우는 87.7%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법관 68.1%, 변호사 61.0%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8>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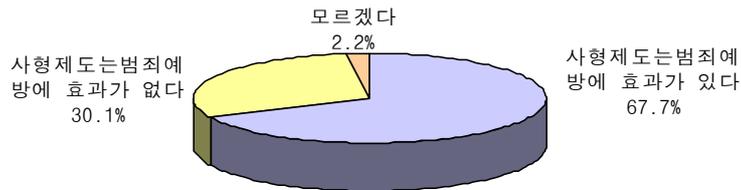
<표-11>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N=356, %)

		응답자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느정도 중요하다	거의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4점 평균
전 체		356	5.6	68.0	24.2	0.6	2.20
소속	법 관	113	1.8	66.4	31.0	0.9	2.31
	검 사	138	10.9	76.8	8.7	-	1.98
	변 호 사	105	2.9	58.1	37.1	1.0	2.37
종교별	기 독 교	75	4.0	68.0	26.7	0.0	2.23
	불 교	75	8.0	62.7	25.3	1.3	2.21
	천 주 교	51	5.9	56.9	35.3	0.0	2.30
	기타/없음	155	5.2	74.2	18.7	0.6	2.15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0.8	39.5	57.4	1.6	2.60
	찬 성	222	8.6	84.7	5.0	-	1.96

사. 사형집행과 범죄예방의 효과 관계

- 사형집행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67.7%를 보였으며, 특히 검사의 86.2%가 이 의견이 동의하였다 반면에 변호사 50.5%는 이 의견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9> 사형집행과 범죄예방 효과와의 관계 (N=356)



<표-12> 사형집행과 범죄예방 효과와의 관계(N=3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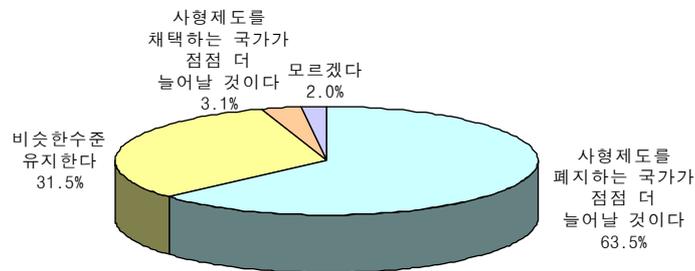
		응답자수	사형을 집행하면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사형집행을 하더라도 범죄예방효과가 없다
전 체		356	67.7	30.1
소속	법 관	113	62.8	35.4
	검 사	138	86.2	10.1
	변 호 사	105	48.6	50.5
종교별	기 독 교	75	66.7	32.0
	불 교	75	62.7	32.0
	천 주 교	51	58.8	41.2
	기타/없음	155	73.5	24.5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28.7	70.5
	찬 성	222	91.0	6.8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 향후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국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은63.5%,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31.5%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의견 3.1%에 불과하였다.
- 법관은 72.6%, 변호사 74.3%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하여 검사 47.8%와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20>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별 증감 상황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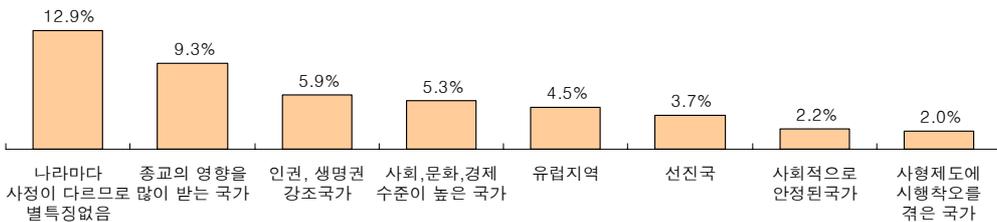
<표-13>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별 증감 상황 (N=356, %)

		응답자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전 체		356	63.5	31.5	3.1
소속	법 관	113	72.6	25.7	0.9
	검 사	138	47.8	41.3	6.5
	변 호 사	105	74.3	24.8	1.0
종교별	기 독 교	75	65.3	33.3	1.3
	불 교	75	66.7	28.0	4.0
	천 주 교	51	64.7	29.4	3.9
	기타/없음	155	60.6	32.9	3.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90.7	7.8	0.0
	찬 성	222	47.7	45.0	5.0

나. 사형제도 폐지국의 특징

○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별 특징이 없다는 의견이 12.9%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9.3%, 인권, 생명권 강조 국가라고 5.9%가 응답하였다.

<그림-21> 사형제도 폐지국의 특징 (N=356,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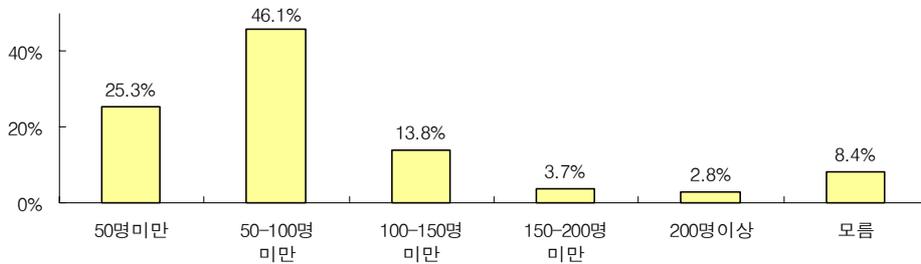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느끼는 사형수의 수는 50~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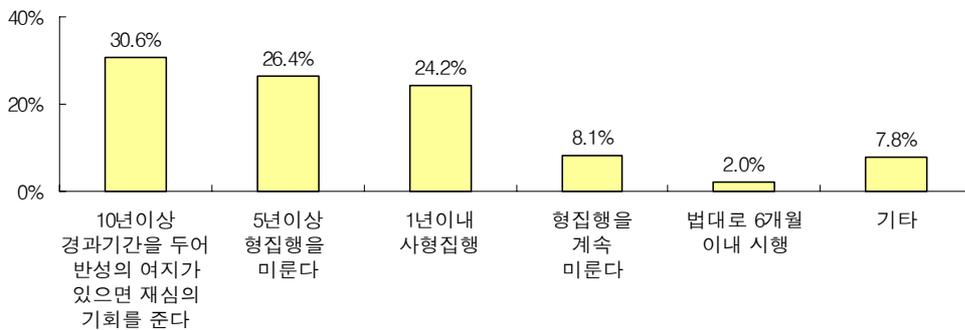
<그림-22> 체감으로 느끼는 사형수의 수 (N=356)



나.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 법조인들은 사형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23> 사형수의 집행시기 (N=356)



- 검사는 사형을 1년 이내 집행하자는 의견이 3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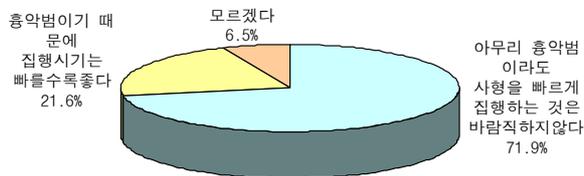
<표-14>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N=356, %)

		응답자수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준다	5년 이상 형집행을 미룬다	1년이내 사형집행한다	형집행을 계속 미룬다
전 체		356	30.6	26.4	24.2	8.1
소속	법 관	113	25.7	26.5	16.8	12.4
	검 사	138	30.4	22.5	37.7	1.4
	변 호 사	105	36.2	31.4	14.3	12.4
종교별	기 독 교	75	41.3	24.0	17.3	5.3
	불 교	75	38.7	22.7	24.0	5.3
	천 주 교	51	33.3	29.4	19.6	9.8
	기타/없음	155	20.6	28.4	29.0	10.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44.2	19.4	8.5	20.2
	찬 성	222	23.0	30.6	33.8	1.4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 시기에 대한 의견

-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사회여론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71.9%를 보였다.
- 검사의 경우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빠르면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31.2%로 법관 15.9%, 변호사 15.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24> 신속한 사형집행에 대한 의견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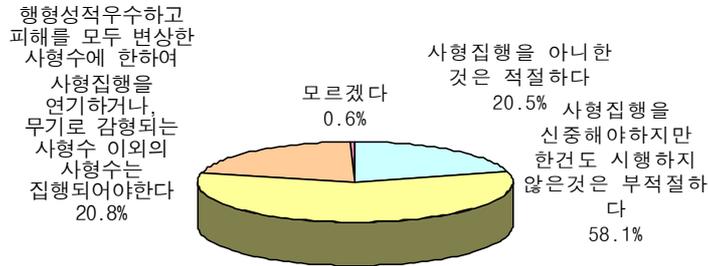
<표-15> 흉악범의 사형 집행 시기에 대한 의견 (N=356, %)

		응답자수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집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전 체		356	71.9	21.6
소속	법 관	113	77.0	15.9
	검 사	138	60.9	31.2
	변 호 사	105	81.0	15.2
종교별	기 독 교	75	74.7	17.3
	불 교	75	76.0	17.3
	천 주 교	51	74.5	17.6
	기타/없음	155	67.7	27.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86.0	7.8
	찬 성	222	64.0	30.2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법조인 전체적으로 사형집행을 한 건도 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8.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 타종교에 비해 천주교를 믿는 응답자는 사형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 적절했다는 의견이 31.4%로 불교 26.7%, 기독교 17.3%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검사의 경우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65.9%로 법관 61.9%, 변호사 43.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25>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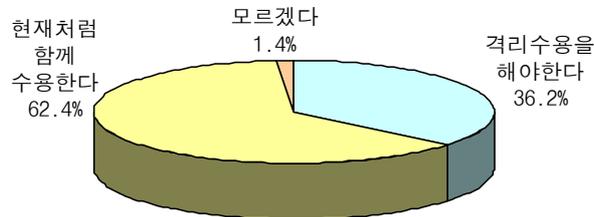
<표-16>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N=356, %)

		응답자수	사형집행을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한건도 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형성적우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의 경우 사형집행 연기 또는 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이외에는 집행되어야 한다
전 체		356	20.5	58.1	20.8
소속	법 관	113	23.0	61.9	14.2
	검 사	138	9.4	65.9	23.9
	변 호 사	105	32.4	43.8	23.8
종교별	기 독 교	75	17.3	58.7	21.3
	불 교	75	26.7	54.7	18.7
	천 주 교	51	31.4	49.0	19.6
	기타/없음	155	15.5	62.6	21.9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49.6	38.8	10.9
	찬 성	222	3.6	69.8	26.1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2.4%로,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36.2%보다 높게 나타났다.
-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 78.4%로 함께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변호사는 68.6%가 함께 수용에 대해 찬성했으며 법관 65.5%, 검사 55.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26> 사형수와 일반수용자의 수용 문제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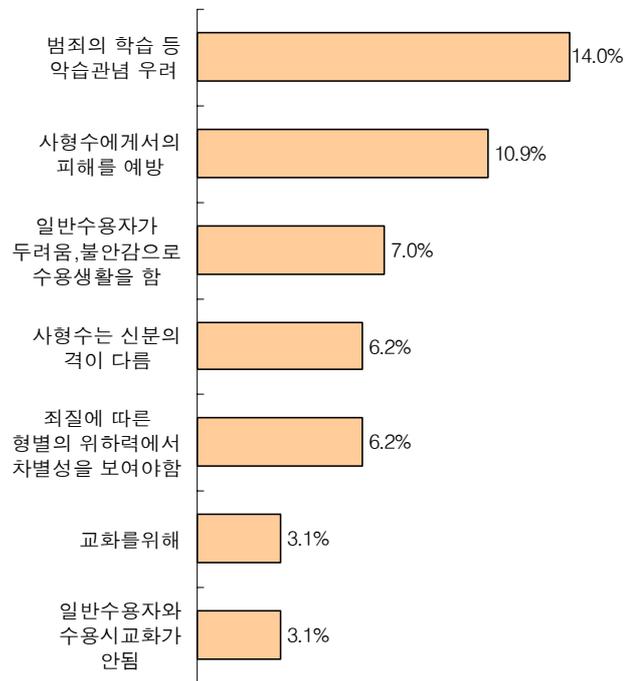


<표-17> 사형수와 일반수용자의 수용 문제(N=356, %)

		응답자수	격리수용을 해야한다	현재처럼 함께 수용해야 한다
전 체		356	36.2	62.4
소속	법 관	113	32.7	65.5
	검 사	138	43.5	55.1
	변 호 사	105	30.5	68.6
종교별	기 독 교	75	34.7	65.3
	불 교	75	34.7	64.0
	천 주 교	51	19.6	78.4
	기타/없음	155	43.2	54.8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25.6	72.1
	찬 성	222	42.3	56.8

○ 격리수용 이유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27> 사형수 격리수용 이유(N=129, 중복응답)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한 의견

- 사형수에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93.0%로 나타났다.
-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 시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교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93.5%로 나타나서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범조인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제공 및 교화 가능성(N=356, %)

		응답자수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		교화 가능성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사형수는 교정 및 교화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다	사형수도 교정 및 교화가 될 것이다
전 체		356	93.0	6.7	2.8	93.5
소속	법 관	113	95.6	4.4	1.8	97.3
	검 사	138	88.4	10.7	4.3	87.7
	변 호 사	105	96.2	3.8	1.9	97.1
종교별	기 독 교	75	93.3	6.7	2.7	96.0
	불 교	75	89.3	9.3	4.0	93.3
	천 주 교	51	98.0	2.0	0.0	96.1
	기타/없음	155	92.9	7.1	3.2	91.6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99.2	0.8	1.6	98.4
	찬 성	222	89.6	10.4	3.6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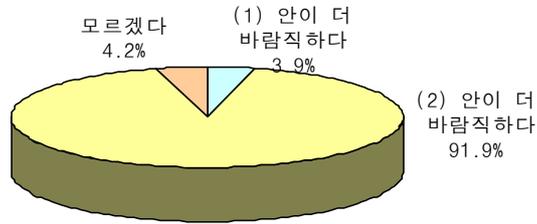
사. 범조향의 표현

- 범조인들의 91.9%는 범조향의 표현²⁾ 중 (2)안이 (1)안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12) 1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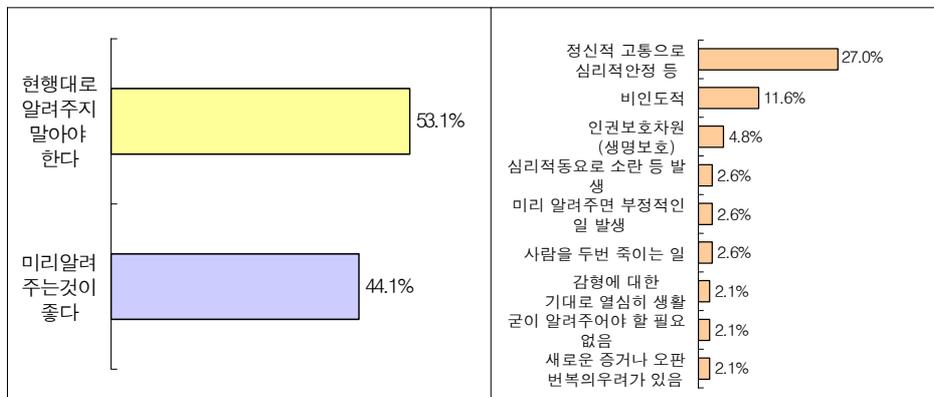
<그림-28> 법조항의 표현 (N=356)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사형수에게 집행 일자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3.1%였다. 반면 변호사의 55.2%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조사되어 법관 검사와 차이를 보였다.
- 사형집행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29>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일 공지 찬·반 및 이유(N=3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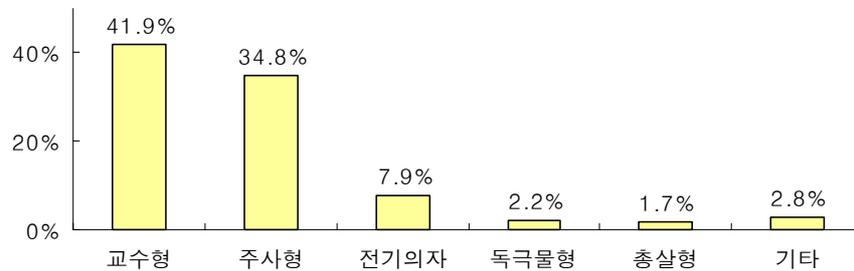
자. 사형집행 방법

-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현행대로 교수형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1.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사형이 34.8%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통없이 가장 빨리 죽는 방법 공개교수형 등의 의견이 있었다

- 검사의 42.8%, 변호사 50.5%는 교수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법관은 주사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30> 사형집행 방법 (N=356,%)



<표-19> 사형집행 방법 (N=356, %)

		응답자수	교수형	주사형	기타
전 체		356	41.9	34.8	12.9
소속	법 관	113	32.7	42.5	15.9
	사	138	42.8	34.8	13.6
	변 호 사	105	50.5	26.7	8.6
종교별	기 독 교	75	46.7	26.7	13.4
	불 교	75	37.3	41.3	14.6
	천 주 교	51	33.3	37.3	13.7
	기타/없음	155	44.5	34.8	11.5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35.7	34.9	14.8
	찬 성	222	45.5	35.1	12.3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가.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 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3%로 나타났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5.9%로 나타났다.
- 법관(54.0%), 변호사(59.0%)의 경우는 폐지 의견이 높은 반면 검사 79.7%는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 또한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20> [사례1]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N=356,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356	39.3	55.9
소속	법 관	113	54.0	43.4
	검 사	138	12.3	79.7
	변 호 사	105	59.0	38.1
종교별	기 독 교	75	42.7	49.3
	불 교	75	44.0	53.3
	천 주 교	51	51.0	41.2
	기타/없음	155	31.6	65.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94.6	3.1
	찬 성	222	7.2	87.4

1)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40명)	응답률
· 오관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오관가능성)	68.6%
·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해	6.4%
· 사형제도가 없다면 시간을 두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므로	4.3%
· 어떤 이유로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3.6%
·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함	2.9%
·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2.1%
· 사형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1.4%
· 재판제도의 한계 때문에	1.4%
· 범죄예방 효과가 미약하므로	0.7%

2)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99명)	응답률
· 오관의 가능성 적음	16.1%
· 최종판결은 신중하되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함	8.0%
· 판결실수와 사형필요성은 연계성이 떨어짐	8.0%
· 제도 자체는 존속되어야 함(사형자체가 문제가 아님)	6.5%
· 오관의 가능성이 있어도 사형제도 유지되어야 함	6.0%
· 증거가 확실하여 오관이 없다면 사형집행	5.5%
·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까 사형제도는 유지	4.5%
· 오관의 가능성으로 진실 규명 기회부여(오관방지위해)	4.0%
· 흉악범죄 예방	2.5%

나.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균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5.1%로 사형제도 유지 쪽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법관, 변호사는 위의 사례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각각 51.3%, 51.4%로 유지 의견보다 높았으나 검사는 82.6%가 사형제도 유지 의견으로 나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표-21> [사례2]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356,%)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356	35.1	59.8
소속	법 관	113	51.3	46.0
	검 사	138	9.4	82.6
	변 호 사	105	51.4	44.8
종교별	기 독 교	75	40.0	50.7
	불 교	75	38.7	60.0
	천 주 교	51	45.1	47.1
	기타/없음	155	27.7	68.4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88.4	8.5
	찬 성	222	4.1	90.1

1)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25명)	응답률
· 우발적인 사건	22.4%
· 인간의 생명권 존엄성 보호	20.0%
· 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15.4%
· 어떤 이유로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5.6%
· 오관의 가능성이 있음	4.8%
· 벌이 너무 과하다	4.8%
· 가해자의 정신분석 후 갱생의 길 모색	3.2%
·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로 대체 가능	3.2%

2)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213명)	응답률
· 제도 자체는 존속되어야 함	7.0%
· 사형선고에 신중을 기한 사형집행	6.6%
· 극단적인 예입	6.6%
· 사람을 죽인 죄값을 받아야 한다(자신의 행동 책임)	5.6%
· 고참병을 죽일만큼의 사건이 아님(놀림당함, 자존심상함)	5.2%
· 군대존속을 위해	4.4%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생각	4.2%
·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 못함	3.8%
· 균형법은 일반법과 다르므로	3.3%
· 고참병(타인)의 생명권 존중	2.8%
·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2.8%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2.3%

다.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여 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1%,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8.0%로 사형제도 유지 쪽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검사의 88.4%는 사형제도 유지율이 법관 59.3%, 변호사 50.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변호사 45.7%는 위의 사례에 대해서도 사형제도 폐지 찬성의견에 대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22> [사례3]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356,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356	28.1	68.0
소속	법 관	113	38.1	59.3
	검 사	138	6.5	88.4
	변 호 사	105	45.7	50.5
종교별	기 독 교	75	30.7	62.7
	불 교	75	34.7	62.7
	천 주 교	51	37.3	58.8
	기타/없음	155	20.6	76.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76.0	20.9
	찬 성	222	0.9	95.0

1)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00명)	응답률
·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 고취	27.0%
· 교화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8.0%
· 종신형이 적당할 것 같아서	8.0%
·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7.0%
· 무기형이 적당할 것 같아서	7.0%
· 사회적, 국가적으로 책임이 있음	5.0%
· 오관의 우려(가능성)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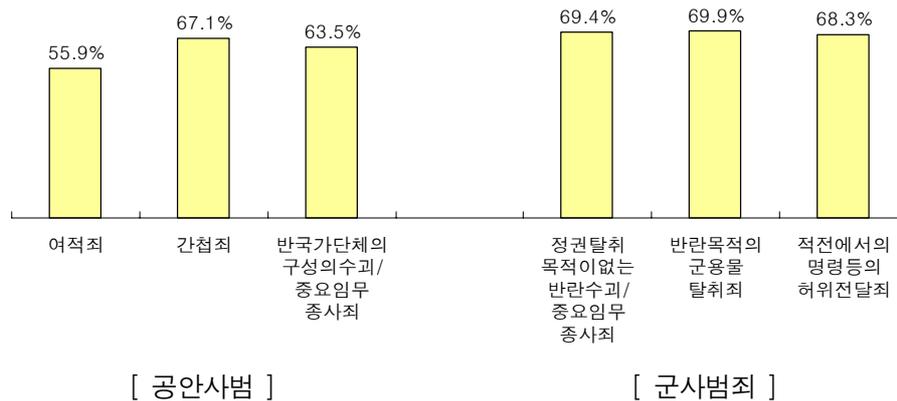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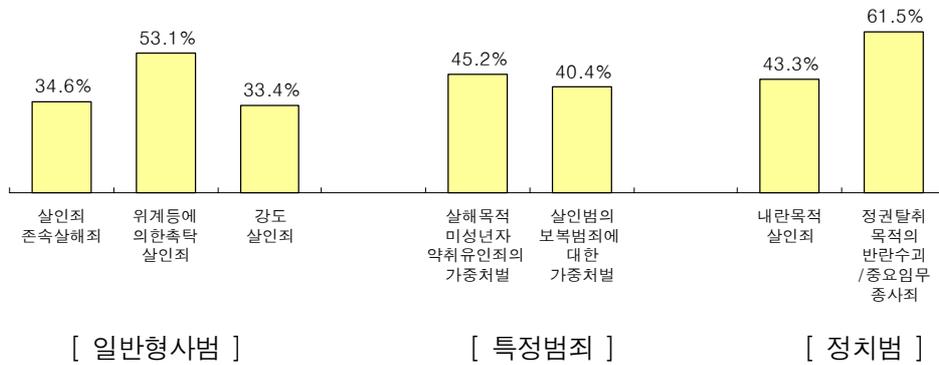
2)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242명)	응답률(%)
· 사회방위 차원 및 범죄예방	9.9%
· 살해방법이 비인간적이라서	7.0%
· 인과응보(죄의 댓가)	5.8%
·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이라면 반드시 죽여야 함	4.5%
· 살인에 상응하는 댓가는 사형뿐이므로	4.1%
·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4.1%
· 흉악범 및 강력범이기 때문에	3.7%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 일반형사범에 해당하는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는 사형반대가 53.1%로 그 대체형벌로는 감형있는 중신형이 45.0%로 가장 높았다.
-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사형찬성의견이 높았다

<그림-31>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한 사형반대율 (N=356)



- 정치범의 '정권탈취목적의 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는 61.5%가 사형반대율을 보였고, 이에 대한 대체형별로는 감형이 있는 종신형 42.5% 이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 공안사범, 군사범죄의 경우도 역시 모두 사형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23>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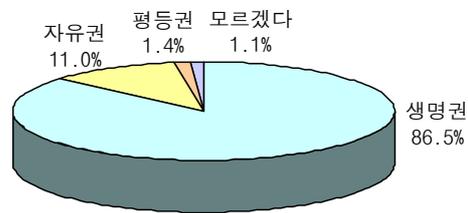
	범죄명	사형 반대율 (%)	대체형별(%)			
			감형없는 종신형	감형있는 종신형	무기형	기타
일 반 형 사 범	살인죄·존속살해죄	34.6	38.2	48.8	8.1	4.8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53.1	29.6	45.0	18.0	7.3
	강도살인죄	33.4	40.3	42.0	11.8	5.8
특 정 범 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45.2	44.1	36.0	12.4	7.4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항가중처벌	40.4	45.1	37.5	10.4	4.2
정 치 범	내란목적살인죄	43.3	34.4	41.6	15.6	8.3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61.5	33.8	42.5	15.1	8.8
공 안 사 범	여적죄	55.9	33.7	42.7	16.6	7.0
	간첩죄	67.1	27.2	44.4	20.9	2.9
	반국가단체의구성외수괴·중요임무종사죄	63.5	28.3	45.1	19.5	6.9
군 사 범 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69.4	25.1	46.2	20.2	8.5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69.9	24.9	43.0	21.3	10.4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68.3	23.0	42.4	23.5	11.1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가. 인간의 기본권

- 인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 생명권(86.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유권(11.0%), 평등권(1.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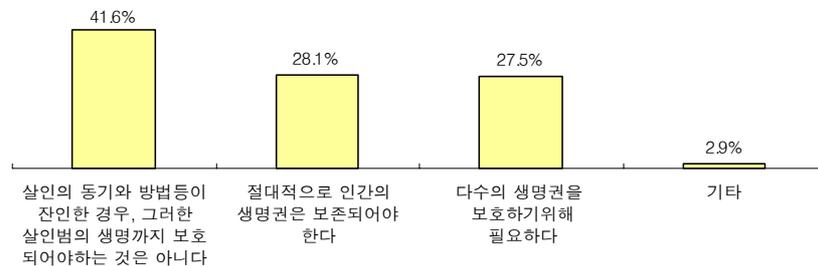
<그림-32> 인간의 기본권 (N=356)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국가가 사회 정의,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41.6%의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절대적 생명권 보호는 28.1%였다.
- 절대적인 생명권에 대해서는 법관 검사보다 변호사에서 더욱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33>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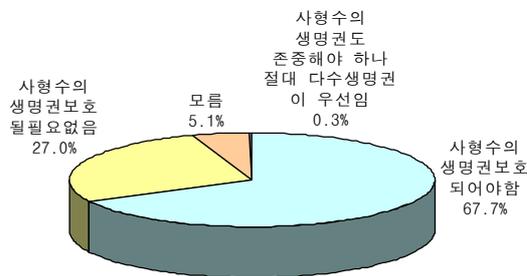
<표-24>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N=356 , %)

		응답자수	살인의 동기와 방법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이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체		356	41.6	28.1	27.5
소속	법 관	113	35.4	38.1	23.0
	검 사	138	49.3	8.0	39.1
	변 호 사	105	38.1	43.8	17.1
종교별	기 독 교	75	48.0	32.0	20.0
	불 교	75	36.0	32.0	28.0
	천 주 교	51	29.4	41.2	29.4
	기타/없음	155	45.2	20.0	30.3
사형찬반 여부	반 대 찬	129	17.1	70.5	8.5
	찬 성	222	55.9	3.6	38.7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7.7%로 나타났으며,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27.0%로 나타났다.
-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에 대해 변호사의 81.0%, 법관 76.1%, 검사는 50.7%로 변호사가 생명권 보호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4>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356)



<표-25>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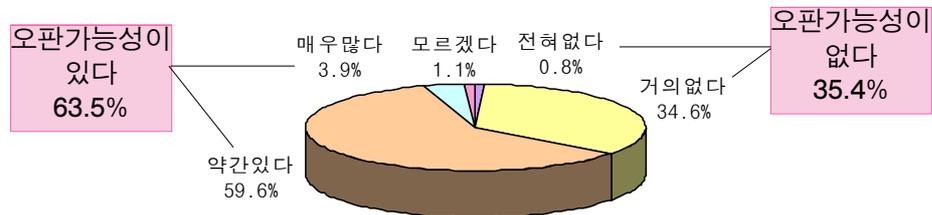
		응답자수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전 체		356	67.7	27.0
소속	법 관	113	76.1	20.4
	검 사	138	50.7	39.9
	변 호 사	105	81.0	17.1
종교별	기 독 교	75	70.7	25.3
	불 교	75	70.7	24.0
	천 주 교	51	74.5	21.6
	기타/없음	155	62.6	31.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93.8	5.4
	찬 성	222	52.7	40.1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가.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 사법제도 상 오판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3.5%로 나타나서 과반수 이상이 오판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 법관의 69.9%, 변호사의 85.7%는 오판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검사의 경우는 41.3%만이 그 가능성을 인정하여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35> 오판가능성의 평가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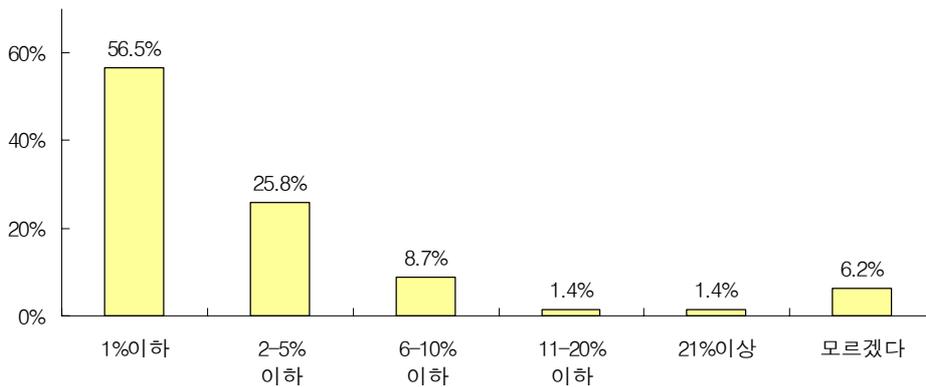
<표-26> 오판가능성 평가 (N=356 ,%)

		응답자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4점 평균
전 체		356	0.8	34.6	59.6	3.6	2.67
소속	법 관	113	0.9	29.2	69.9	-	2.69
	검 사	138	1.4	54.3	40.6	0.7	2.42
	변 호 사	105	-	14.3	73.3	12.4	2.98
종교별	기 독 교	75	0.0	21.3	76.0	2.7	2.81
	불 교	75	0.0	41.3	52.0	5.3	2.64
	천 주 교	51	3.9	29.4	54.9	7.8	2.69
	기타/없음	155	0.6	39.4	56.8	2.6	2.6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0.8	16.3	74.4	8.5	2.91
	찬 성	222	0.9	45.0	51.4	1.4	2.54

나. 현재 우리나라의 오판율

- 현재 우리나라 재판의 오판율에 대해서는 1%이하라는 응답이 56.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5%이하가 25.8%로 나타났다. 오판율에 대해서는 법관 검사는 그 비율을 비교적 낮게 생각하는 반면 변호사는 비교적 높게 생각하여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림-36> 우리나라의 오판율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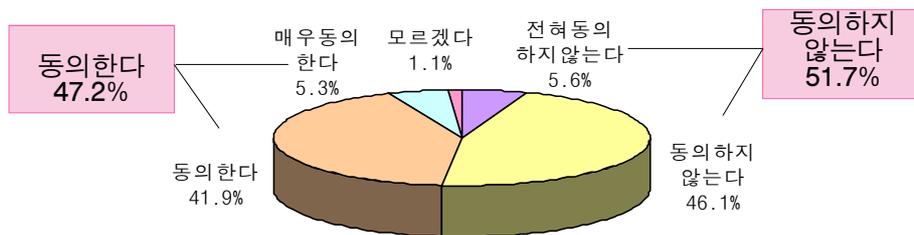
<표-27> 현재 우리나라의 오관율(N=356 ,%)

		응답자수	1% 이하	2~5% 이하	6~10%이하	11~20% 이하	21% 이상
전 체		356	56.5	25.8	8.7	1.4	1.4
소속	법 관	113	62.8	26.5	7.1	-	-
	검 사	138	74.6	13.8	1.4	-	-
	변 호 사	105	25.7	41.0	20.0	4.8	4.8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49.6	28.7	10.9	3.1	3.9
	찬 성	222	60.8	24.3	7.7	-	-

다. 오관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 오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경우는 51.7%로 이 의견에 반대하는 비율 47.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오관가능성으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법관 58.4%, 변호사 70.4%가 찬성하는 데 비해 검사는 77.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림-37> 오관가능성으로 사형제도 폐지 의견 (N=356)



<표-28>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 폐지 동의 여부 (N=356, %)

		응답자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4점 평균
전 체		356	0.8	34.6	59.6	3.6	2.67
소속	법 관	113	0.9	29.2	69.9	-	2.69
	검 사	138	1.4	54.3	40.6	0.7	2.42
	변 호 사	105	-	14.3	73.3	12.4	2.98
종교별	기 독 교	75	0.0	21.3	76.0	2.7	2.81
	불 교	75	0.0	41.3	52.0	5.3	2.64
	천 주 교	51	3.9	29.4	54.9	7.8	2.69
	기타/없음	155	0.6	39.4	56.8	2.6	2.62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0.8	16.3	74.4	8.5	2.91
	찬 성	222	0.9	45.0	51.4	1.4	2.54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2%로 유지하자는 의견 62.4%으로 유지 비율이 더욱 높았다.
- 변호사는 55.2%가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였으나 검사는 86.2%가 사형제도 폐지 반대를 하여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38>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356)



- 사형을 반사회적 범죄에만 적용하고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65.7%, 동의하지 않음이 32.6%로 나타났다.

<표-29> 사형제도의 존폐 및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N=356, %)

		응답자수	사형제도 존폐의견		제한적 사형제도	
			폐지	유지	찬성	반대
전 체		356	36.2	62.4	65.7	32.6
소속	법 관	113	47.8	50.4	68.1	31.9
	검 사	138	12.3	86.2	63.0	34.1
	변 호 사	105	55.2	43.8	66.7	31.4
종교별	기 독 교	75	38.7	61.3	65.3	34.7
	불 교	75	38.7	56.0	65.3	33.3
	천 주 교	51	49.0	49.0	62.7	33.3
	기타/없음	155	29.7	70.3	67.1	31.0
사형찬반 여부	반 대	129	100.0	-	58.1	40.3
	찬 성	222	-	100.0	69.8	28.8

제6장. 사형집행참여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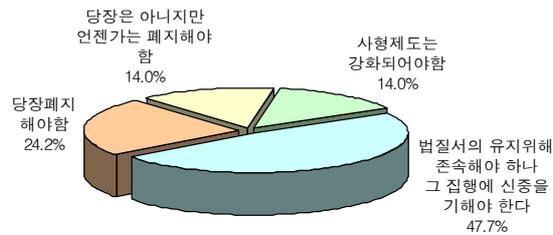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5.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당장 내지는 추후에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38.2%의 비율을 보였으며,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7%,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4.6%를 보였다.

<그림-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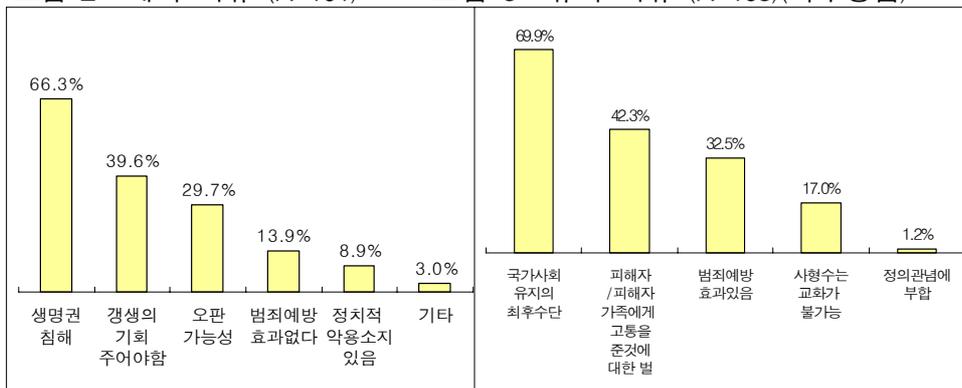
<표-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264,%)

		응답자수	법질서유지위해 존속해야 하나 그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전 체		264	47.7	24.2	14.0	14.0
소속	교도관	106	61.3	3.8	7.5	27.4
	교정위원	103	19.4	56.3	24.3	-
	의무관	55	74.5	3.6	7.3	14.5
종교별	기독교	48	45.8	10.4	22.9	20.8
	불교	66	45.5	18.2	13.6	22.7
	천주교	76	21.1	61.8	11.8	5.3
	기타/없음	74	78.4	-	10.8	10.8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3.1	64.9	30.9	1.0
	찬성	163	73.6	-	4.3	22.1

- 소속별로는 교도관 의무관은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교정위원은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는 타종교에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사형제도 폐지 이유로는 사형제도가 인간이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하여 갱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39.6%의 비율을 보였다.
-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의견이 6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42.3%로 나타났다. 그 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32.5%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폐지 이유 (N=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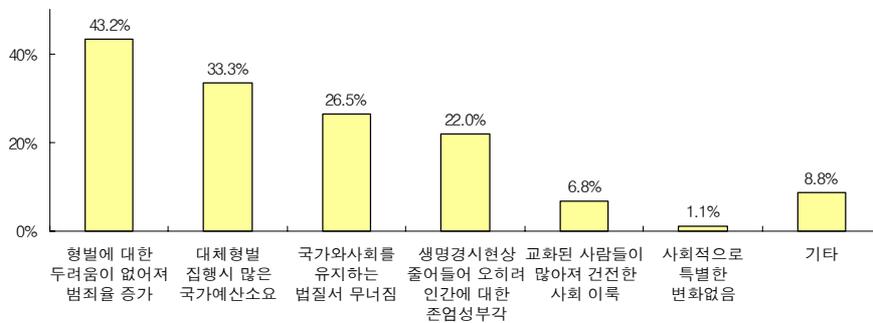
<그림-3> 유지 이유 (N=163)(복수응답)



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예상되는 점

- 사형제도가 폐지 시에 예상되는 점으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체형벌을 집행하는 데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 다라는 의견이 3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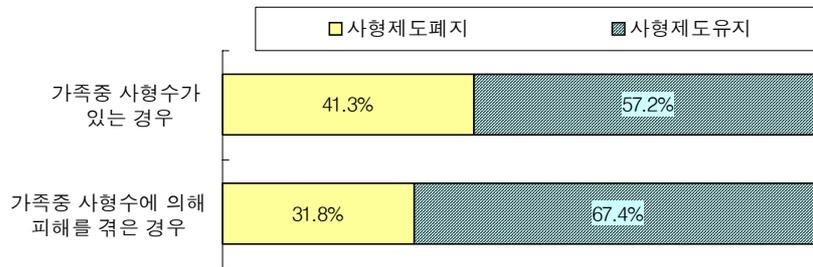
<그림-4>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점 (N=264,복수응답)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가정할 때 모두 사형제도의 유지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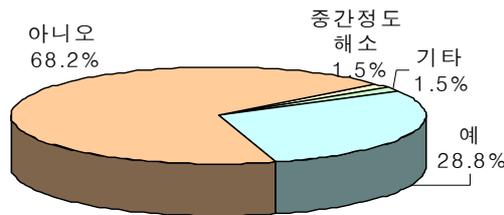
<그림-5>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을 때 (N=264, %)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만약 가족이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가해자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 등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8.2%로 없어질 것 같다는 의견 28.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교정위원의 경우는 교도관, 의무관에 비해 원한/증오/미움 등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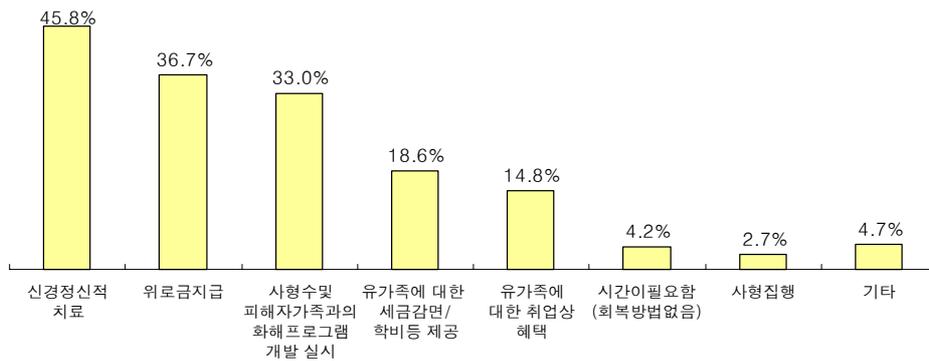
<표-2>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의 제거(N=264, %)

		응답자수	원한/증오/미움이 제거된다	원한/증오/미움이 제거안된다
전 체		264	28.8	68.2
소속	교도관	106	43.4	50.9
	교정위원	103	7.8	91.3
	의무관	55	40.0	58.2
종교별	기독교	48	20.8	75.0
	불교	66	33.3	63.6
	천주교	76	13.2	86.8
	기타/없음	74	45.9	48.6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5.2	94.8
	찬성	163	42.9	52.1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경정신적인 치료가 4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위로금지급이 36.7%를 보였다. 이외에 사형수 및 피해자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이 33.0% 등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 기타 의견으로는 종교의 극복 사회 및 국가가 책임 사형선고를 준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예방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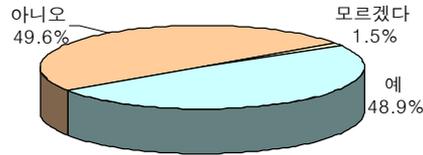
<그림-7>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N=264, 중복응답)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 사형수 가족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48.9%로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비율(49.6%)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의견은 종교별로는 천주교(70.9%)에서, 소속별로는 교정위원(72.8%)에서 두드러지는 비율을 보였다

<그림-8>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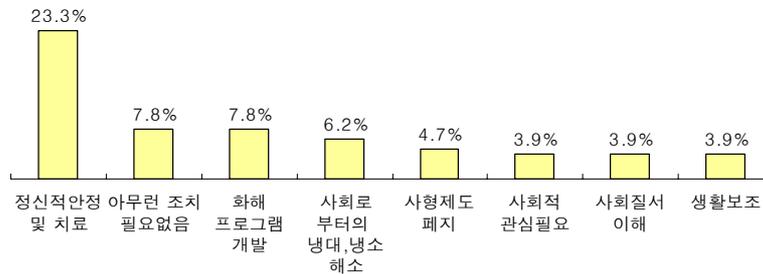


<표-3>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 인지여부 (N=264 ,%)

		응답자수	사형수 가족 또한 피해자이다	사형수 가족은 피해자가 아니다
전 체		264	48.9	49.6
소속	교도관	106	34.0	64.2
	교정위원	103	72.8	25.2
	의무관	55	32.7	67.3
종교별	기독교	48	47.9	52.1
	불교	66	48.5	47.0
	천주교	76	73.7	25.0
	기타/없음	74	24.3	75.7
사형찬반여부	반대	97	80.4	19.6
	찬성	163	28.8	68.7

○ 사형수 가족에 대한 조치로는 정신적 안정 및 치료라고 23.3%의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아무런 조치 필요 없음(7.8%), 화해프로그램개발(7.8%), 사회로부터의 냉대, 냉소 해소(6.2%), 사형제도 폐지(4.7%), 사회적 관심필요(3.9%), 사회질서 이해(3.9%), 생활보조(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9> 사형수의 가족에 대한 조치 (N=129,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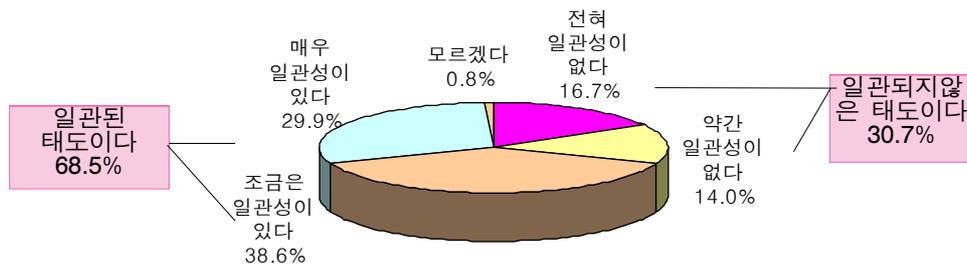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다라는 의견은 68.5%로 나타났으며,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30.7%로 나타났다.
-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일관성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위원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의견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0>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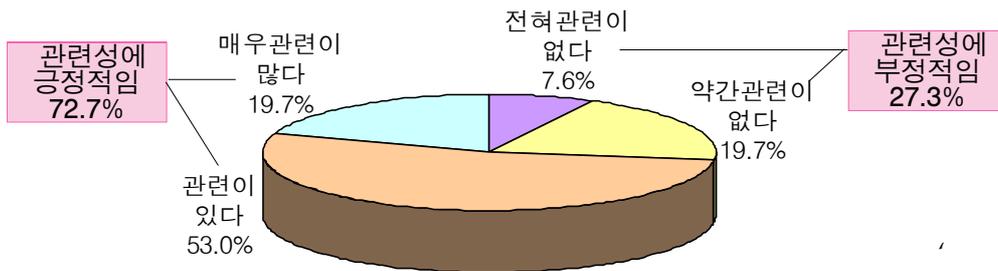
<표-4>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N=264, %)

		응답자수	전혀 일관성이 없다	약간은 일관성이 없다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	매우 일관성이 있다	4점 평균
전 체		264	16.7	14.0	38.6	29.9	2.82
소속	교도관	106	3.8	8.5	41.5	45.3	3.30
	교정위원	103	37.9	20.4	34.0	6.8	2.10
	의무관	55	1.8	12.7	41.8	43.6	3.27
종교별	기독교	48	6.3	10.4	45.8	35.4	3.13
	불교	66	10.6	12.1	45.5	31.8	2.98
	천주교	76	42.1	21.1	26.3	9.2	2.03
	기타/없음	74	2.7	10.8	40.5	45.9	3.30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39.2	23.7	33.0	3.1	2.00
	찬성	163	3.1	8.6	41.7	46.0	3.31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 사형제도는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과 관계가 있다는 응답은 78.4%로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 21.6%보다 훨씬 많은 의견을 보였다
-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는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과 관계가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위원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의견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1>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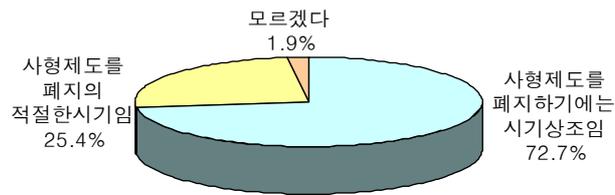
<표-5> 사형제도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N=264, %)

		응답자수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매우 관련이 많다	4점 평균
전 체		264	7.6	19.7	53.0	19.7	2.85
소속	교도관	106	11.3	29.2	50.9	8.5	2.57
	교정위원	103	2.9	8.7	56.3	32.0	3.17
	의무관	55	9.1	21.8	50.9	18.2	2.78
종교별	기독교	48	12.5	22.9	43.8	20.8	2.73
	불교	66	7.6	24.2	51.5	16.7	2.77
	천주교	76	2.6	5.3	63.2	28.9	3.18
	기타/없음	74	9.5	28.4	50.0	12.2	2.65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2.1	4.1	61.9	32.0	3.24
	찬성	163	11.0	29.4	46.6	12.9	2.61

1) 문화수준 및 사회 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 문화수준 및 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형제도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72.7%로 ‘현재가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이 25.4%로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수준 및 사회적 현실은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위원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의견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2> 우리나라 문화적,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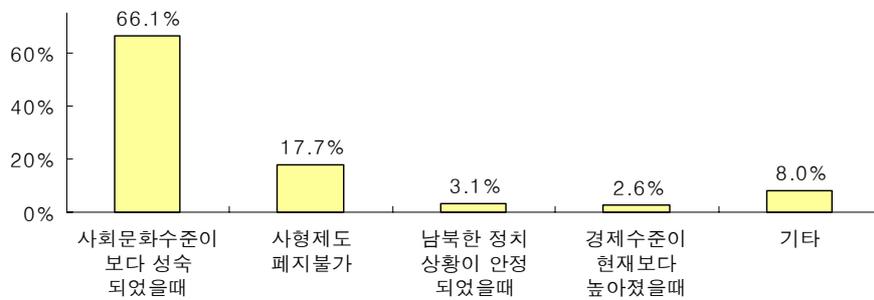
<표-6> 우리나라 문화적, 사회현실에 따른 사형제도 존폐여부(N=264,%)

		응답자수	문화적·사회적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화적·사회적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전 체		264	72.7	25.4
소속	교도관	106	92.5	4.7
	교정위원	103	39.8	58.3
	의무관	55	96.4	3.6
종교별	기독교	48	79.2	18.8
	불교	66	80.3	19.7
	천주교	76	39.5	56.6
	기타/없음	74	95.9	2.7
사형찬반여부	반대	97	32.0	66.0
	찬성	163	96.9	1.2

2) 적절한 사형제도 폐지 시기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문화 수준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형제도 폐지불가 17.7%, 남북한 정치상황이 안정되었을 때가 3.1%, 경제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졌을 때 2.6%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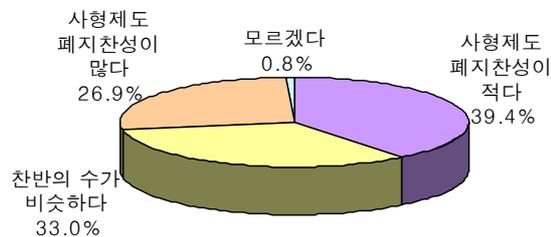
<그림-1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의 적절한 시기 (N=192, %)



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의 수

-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관 전체로 39.4%는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수가 적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찬성하는 의원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은 26.9%, 찬반의 수가 비슷하다는 비율 33.0%를 보였다.

<그림-14>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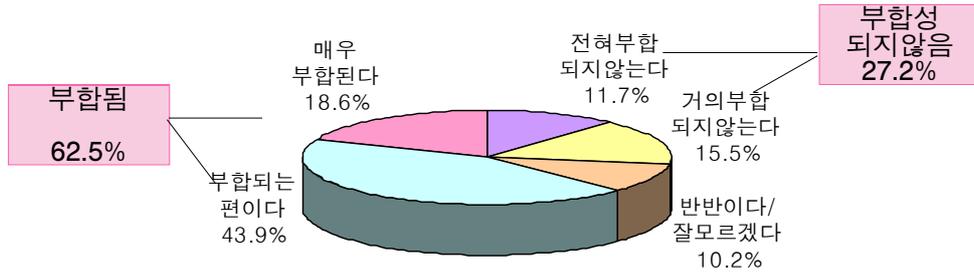


<표-7>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국회의원 수 (N=264, %)

		응답자수	사형제도 폐지찬성이 적다	폐지찬성·반대가 비슷하다	사형제도 폐지찬성이 많다
전 체		264	39.4	33.0	26.9
소속	교도관	106	36.8	40.6	22.6
	교정위원	103	39.8	26.2	34.0
	의무관	55	43.6	30.9	21.8
종교별	기독교	48	31.3	37.5	31.3
	불교	66	36.4	37.9	24.2
	천주교	76	44.7	25.0	30.3
	기타/없음	74	41.9	33.8	23.0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38.1	26.8	35.1
	찬성	163	39.3	36.8	22.7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그림-15> 사형제도가 형벌로써의 적합성 (N=264)



<표-8> 사형제도가 형벌로써의 적합성 (N=2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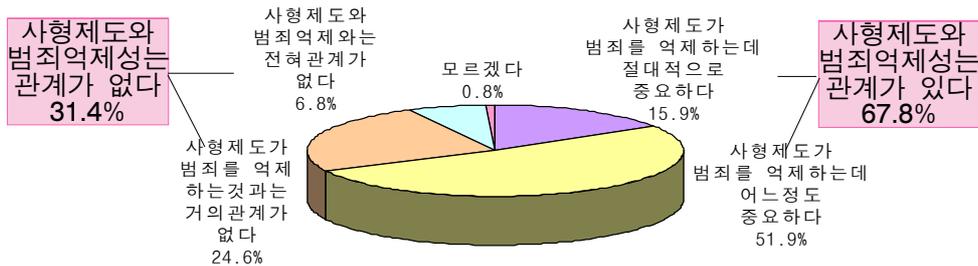
		응답자수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반반이다/잘 모름	부합되는 편이다	매우 부합된다	5점 평균
전 체		264	11.7	15.5	10.2	43.9	18.6	3.42
소속	교도관	106	1.9	3.8	5.7	62.3	26.4	4.08
	교정위원	103	28.2	32.0	13.6	18.4	7.8	2.46
	의무관	55	-	7.3	12.7	56.4	23.6	3.96
종교별	기독교	48	0.0	22.9	10.4	35.4	31.3	3.75
	불교	66	6.1	9.1	13.6	53.0	18.2	3.68
	천주교	76	34.2	30.3	9.2	19.7	6.6	2.34
	기타/없음	74	1.4	1.4	8.1	66.2	23.0	4.08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28.9	36.1	18.6	14.4	2.1	2.25
	찬성	163	1.2	3.7	5.5	61.3	28.2	4.12

- 사형제도가 형벌 목적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62.5%가 부합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27.2%만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 67.8%가 있다고 응답하여 없다는 의견 31.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는 의견은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와 교정 위원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16>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N=264)



<표-9>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N=2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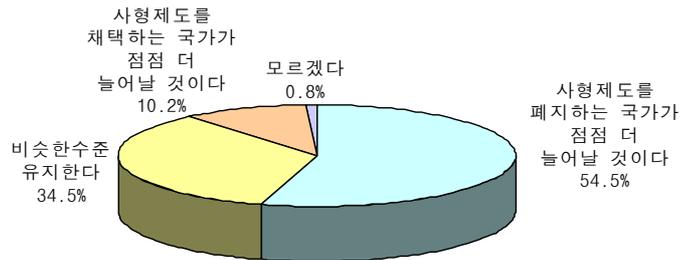
		응답자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느정도 중요하다	거의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4점 평균
전체		264	15.9	51.9	24.6	6.8	2.23
소속	교도관	106	23.6	68.9	6.6	0.9	1.85
	교정위원	103	4.9	28.2	48.5	16.5	2.78
	의무관	55	21.8	63.6	14.5	-	1.93
종교별	기독교	48	20.8	50.0	27.1	-	2.06
	불교	66	16.7	63.6	15.2	4.5	2.08
	천주교	76	6.6	25.0	47.4	19.7	2.81
	기타/없음	74	21.6	70.3	8.1	-	1.86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3.1	20.6	56.7	17.5	2.91
	찬성	163	23.9	69.9	6.1	-	1.82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 향후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국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은 54.5%로 나타났다으며,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의견 10.2%,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비율은 34.5%로 나타났다.
- 종교가 천주교일 경우는 향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종교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교정위원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17>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별 증감 상황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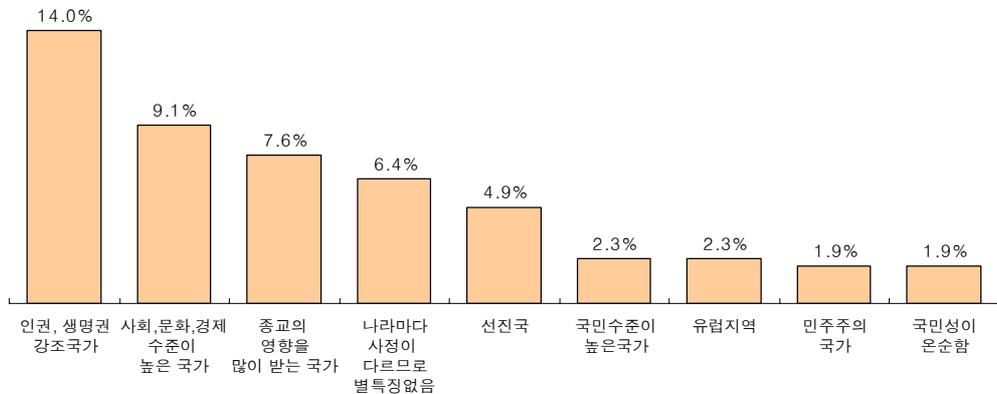
<표-10>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별 증감 상황 (N=264, %)

		응답자수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채택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전 체		264	54.5	34.5	10.2
소속	교도관	106	30.2	50.0	19.8
	교정위원	103	84.5	14.6	0.0
	의무관	55	45.5	41.8	10.9
종교별	기독교	48	58.3	31.3	10.4
	불교	66	43.9	39.4	15.2
	천주교	76	71.1	25.0	2.6
	기타/없음	74	44.6	41.9	13.5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91.8	7.2	0.0
	찬성	163	32.5	50.3	16.6

나. 사형폐지 국가들의 특징

-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인권 생명권 강조 국가라고 14.0%가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회, 문화,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 것이라는 응답이 9.1% 였으며, 그 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7.6%,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별 특징이 없다는 의견이 6.4% 등이 있었다.

<그림-18> 사형제도 폐지국의 특징 (N=264,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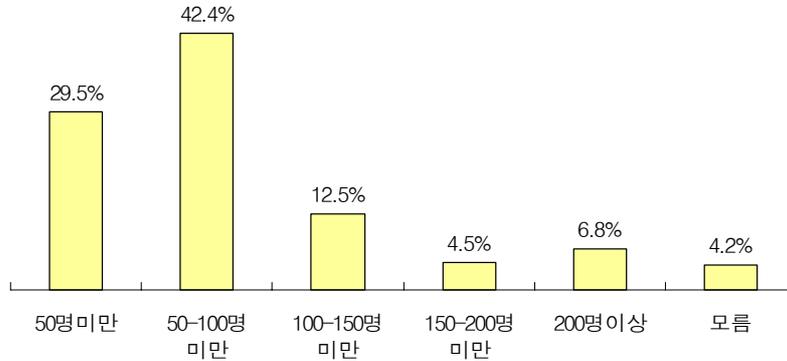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관들이 느끼는 사형수의 수는 50~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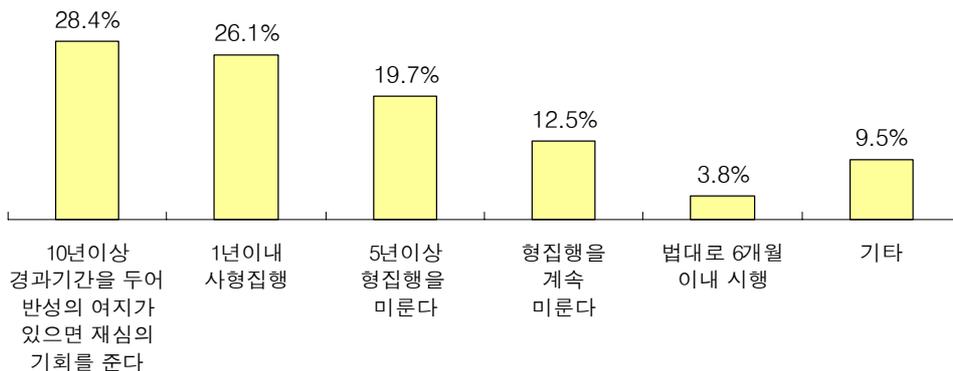
<그림-19> 체감으로 느끼는 사형수의 수 (N=264)



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질문 결과,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관들은 사형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교정위원은 교화 및 재심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교도관은 사형을 1년 이내 집행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0> 사형수의 집행시기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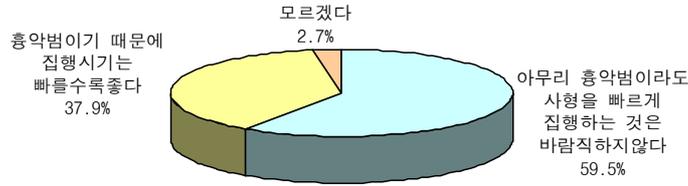
<표-11> 사형수의 집행시기 (N=264 , %)

		응답자수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준다	1년이내 사형집행 한다	5년 이상 형집행을 미룬다	형집행을 계속 미룬다	법대로 6개월 이내 시행
전 체		264	28.4	26.1	19.7	12.5	3.8
소속	교 도 관	106	16.0	45.3	20.8	1.9	1.9
	교정위원	103	47.6	4.9	9.7	26.2	26.2
	의 무 관	55	16.4	29.1	36.4	7.3	7.3
종교별	기 독 교	48	22.9	25.0	22.9	16.7	4.2
	불 교	66	33.3	30.3	15.2	3.0	7.6
	천 주 교	76	42.1	5.3	14.5	23.7	-
	기타/없음	74	13.5	44.6	27.0	6.8	4.1
사형찬반 여부	반 대	97	54.6	4.1	5.2	26.8	-
	찬 성	163	13.5	39.3	27.6	4.3	6.1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 흉악범의 사형집행을 사회적 여론에 따라 신속하게 하였을 때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9.5%를 보였다.
- 신속한 사형집행에 있어 교도관 의무관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교정위원은 반대 의견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종교가 없거나 불교인 경우는 흉악범은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천주교, 기독교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한 사형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림-21>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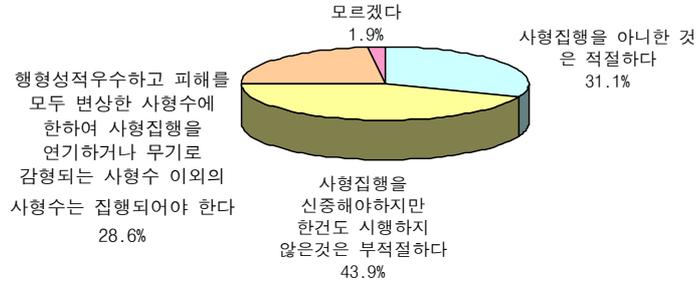
<표-12> 흉악범의 사형집행 시기 (N=264, %)

		응답자수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집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전 체		264	59.5	37.9
소속	교도관	106	43.4	55.7
	교정위원	103	82.5	11.7
	의무관	55	47.3	52.7
종교별	기독교	48	66.7	31.3
	불교	66	48.5	50.0
	천주교	76	77.6	15.8
	기타/없음	74	45.9	54.1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90.7	4.1
	찬성	163	42.3	57.1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관들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31.1%, 한 건도 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3.9%를 보였다.
- 천주교를 믿는 응답자는 사형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 적절했다는 의견이 65.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교도관, 의무관은 사형집행을 한 건도 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58.5%, 67.3%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교정위원은 적절했다는 의견이 69.9%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22>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의견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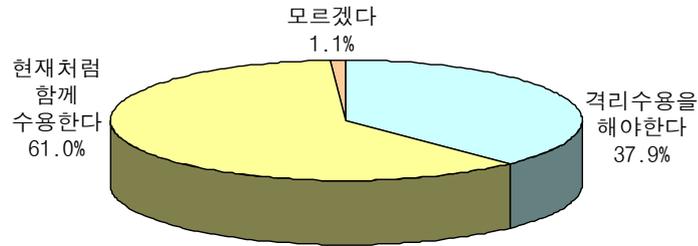
<표-13> 사형집행을 안한 정부에 대한 의견(N=264, %)

		응답자수	사형집행을 안한 것은 적절하다	사형집행을 해야 하지만 신중히 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형성적우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는 사형집행을 연기/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 이외에는 집행되어야 한다
전 체		264	31.1	43.9	23.1
소속	교도관	106	3.8	58.5	35.8
	교정위원	103	69.9	16.5	10.7
	의무관	55	10.9	67.3	21.8
종교별	기독교	48	22.9	50.0	25.0
	불교	66	24.2	45.5	25.8
	천주교	76	68.4	17.1	13.2
	기타/없음	74	4.1	66.2	29.7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81.4	6.2	10.3
	찬성	163	1.8	66.9	30.1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1.0%로, 격리수용을 해야한다는 의견 37.9%보다 높게 나타났다.
- 사형수를 일반수용자는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천주교(73.4%)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교도관과 교정위원은 격리수용보다는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3.8%, 76.7%를 보인 반면, 의무관은 45.5%를 보여 격리수용에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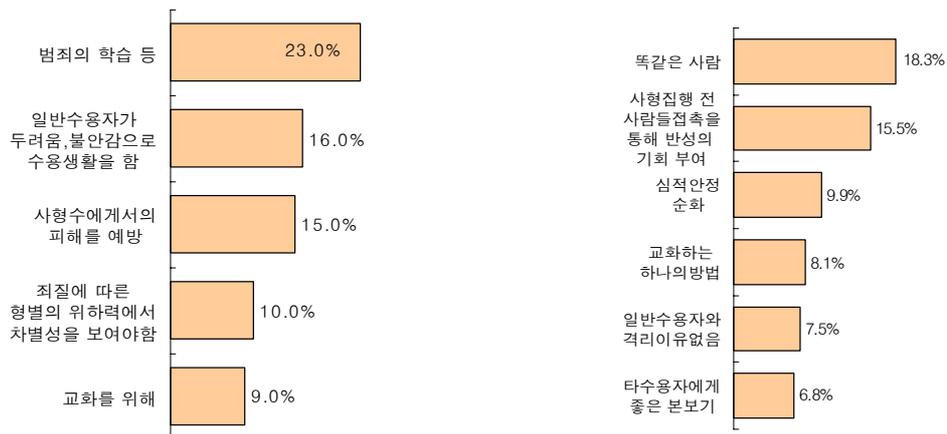
<그림-23> 사형수와 일반수용자의 수용 문제 (N=264)



<표-14> 사형수와 일반수용자의 수용 문제(N=264, %)

		응답자수	격리수용을 해야한다	함께 수용해야 한다
전 체		264	37.9	61.0
소속	교도관	106	46.2	53.8
	교정위원	103	20.4	76.7
	의무관	55	54.5	45.5
종교별	기독교	48	37.5	62.5
	불교	66	36.4	63.6
	천주교	76	23.7	72.4
	기타/없음	74	54.1	45.9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24.7	73.2
	찬성	163	45.4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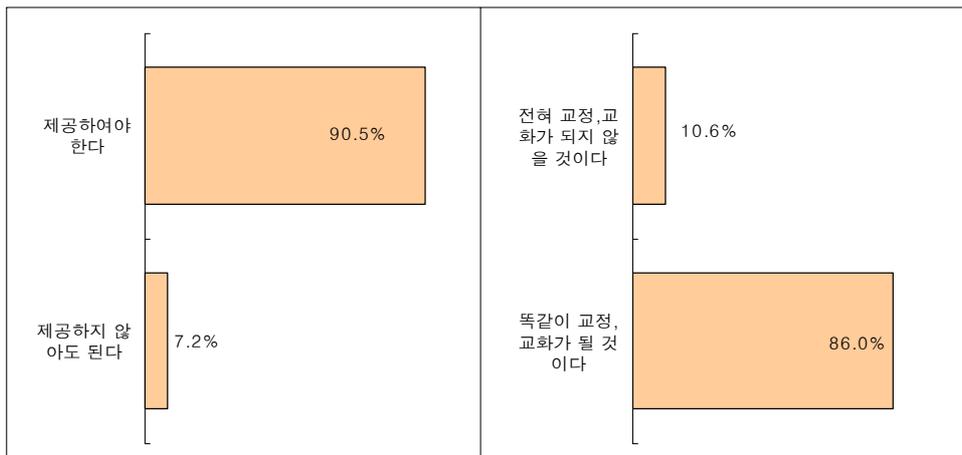
<그림-24> 격리수용 이유(N=100,복수응답) 함께수용 이유 (N=161,복수응답)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 사형수에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90.5%로 나타났다.
-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 시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교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86.0%로 나타나서 교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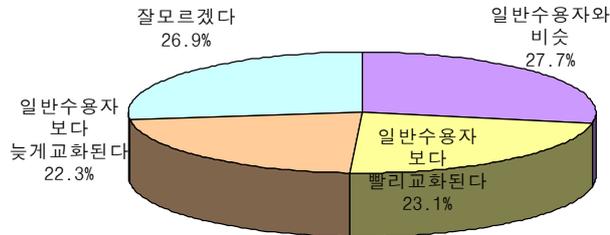
<그림-25> 국가적 차원의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제공 및 교화 가능성(N=264,%)



사. 사형수들의 수용태도

- 전체적으로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와 비슷하거나 보다 빨리 교화된다는 의견이 각각 27.7%, 23.1%로 나타났다.
- 교정위원은 더욱 빠르게 교화된다는 의견이 46.6%였으나, 교도관은 42.5%가 더욱 늦게 교화된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그림-26> 사형수들의 수용 태도(N=264)



<표-15> 사형수의 교화 정도 평가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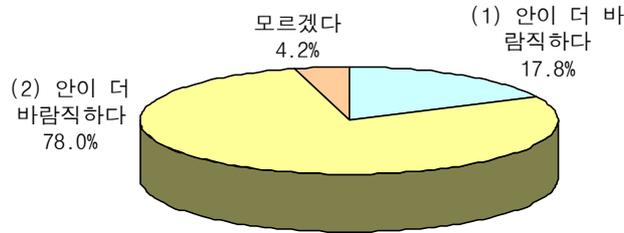
		응답자수	일반 수용자와 비슷하다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교화가 빨리 된다	일반 수용자에 비해 교화가 늦게 된다
전 체		264	27.7	23.1	22.3
소속	교도관	106	34.0	8.5	42.5
	교정위원	103	23.3	46.6	7.8
	의무관	55	23.6	7.3	10.9
종교별	기독교	48	22.9	29.2	16.7
	불교	66	25.8	22.7	33.3
	천주교	76	23.7	36.8	7.9
	기타/없음	74	36.5	5.4	31.1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26.8	43.3	12.4
	찬성	163	28.2	11.7	28.2

아. 법조항의 표현

- 법조항의 표현¹³⁾ 중 (2)안이 (1)안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8.0%를 보였다. 특히 교정위원은 교도관, 의무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13) 1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안: 000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림-27> 법조항의 표현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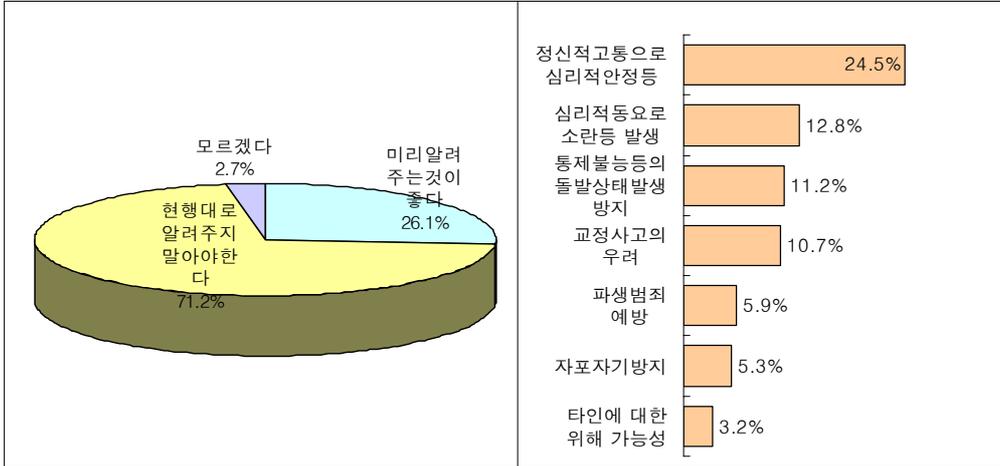
<표-16> 법조항의 표현 (N=264, %)

		응답자수	(1)안이 더 바람직하다	(2)안이 더 바람직하다
전 체		264	17.8	78.0
소속	교도관	106	22.6	72.6
	교정위원	103	4.9	90.3
	의무관	55	32.7	65.5
종교별	기독교	48	22.9	75.0
	불교	66	15.2	78.8
	천주교	76	13.2	80.3
	기타/없음	74	21.6	77.0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1.0	94.8
	찬성	163	28.2	68.1

자.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사형수에게 집행 일자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1.2%였으며, 특히 교정위원은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44.7%로 교도관 7.5%, 의무관 27.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사형집행일자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는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서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심리적 동요로 소란 등 발생한다가 12.8%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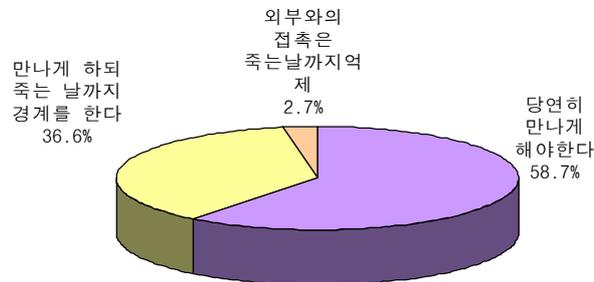
<그림-28>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일 공지 찬·반 및 이유(N=264 , %)



차. 사형수에 대한 면회 허용

- 사형집행 전에 사형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58.7%로 나타났으며, 끝까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35.6%의 비율을 보였다.
- 의무관, 교도관은 경계면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교정위원은 당연히 만나게 해야 한다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림-29> 사형집행 전 사형수의 면회허용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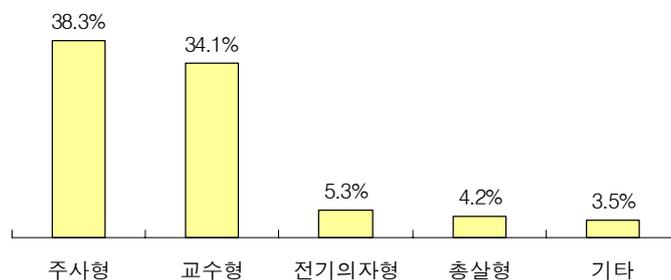
<표-17> 사형집행 전 면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 (N=264,%)

		응답자수	당연히 만나게 해야 한다	만나게 하되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됨	외부와의 접촉은 죽는 날까지 억제되어야 한다.
전 체		264	58.7	35.6	2.7
소속	교도관	106	42.5	50.9	5.7
	교정위원	103	83.5	12.6	-
	의무관	55	43.6	49.1	1.8
종교별	기독교	48	52.1	41.7	4.2
	불교	66	54.5	39.4	3.0
	천주교	76	84.2	11.8	0.0
	기타/없음	74	40.5	52.7	4.1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80.4	16.5	1.0
	찬성	163	47.2	46.0	3.7

카. 사형집행 방법

-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주사형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38.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대로 교수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4.1%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적절한 방법은 없다, 독극물형 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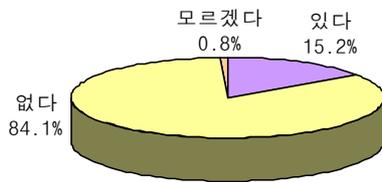
<그림-30> 사형집행의 방법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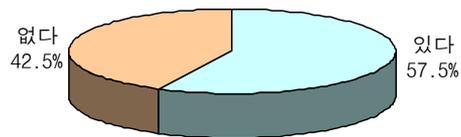
타. 사형집행 참관 경험

- 사형집행에 참관한 경험은 15.2%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형집행에 참관한 이들 중에는 교화된 사형수를 본적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57.8%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교도관은 51.1%, 교정위원은 83.3%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31> 사형집행참관여부(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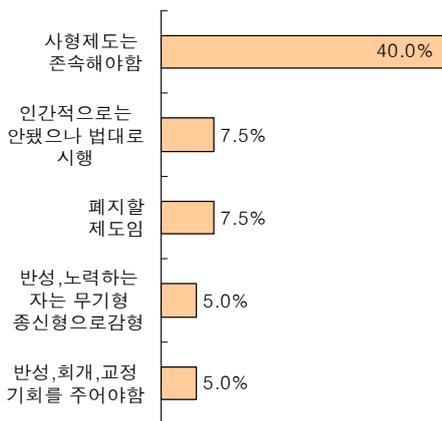


<그림-32> 교화된 사형수 (N=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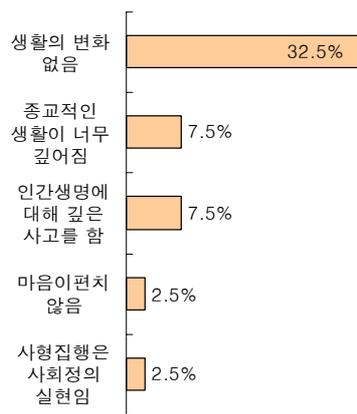


- 사형집행 참관 경험이 있는 이들 중에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40.0%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안됐으나 법대로 시행이 7.5%로 나타났다.

<그림-33> 사형제도 평가(N=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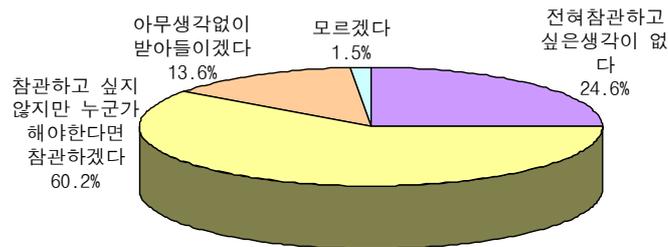
<그림-34> 생활의 변화 (N=40, 복수응답)



과. 사형집행 참관에 대한 의견

- 사형집행 참관에 대해서는 참관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해야한다면 참관하겠다는 의견이 60.2%였으며, 전혀 참관하고 싶지않다는 의견은24.6%로 나타났다.
- 참관여부에 대해서는 교도관 의무관에 비해 교정위원이 참관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5> 사형집행 시 참관 명령 (N=264)



<표-31> 사형집행에 참관 명령 시 참관 여부 (N=264,%)

		응답자수	전혀 참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참관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참관하겠다	아무 생각이 없이 받아들일것다
전 체		264	24.6	60.2	13.6
소속	교도관	106	14.2	67.9	17.0
	교정위원	103	34.0	50.5	13.6
	의무관	55	27.3	63.6	7.3
종교별	기독교	48	14.6	62.5	22.9
	불교	66	27.3	63.6	9.1
	천주교	76	32.9	52.6	11.8
	기타/없음	74	20.3	63.5	13.5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35.1	50.5	13.4
	찬성	163	17.8	66.9	14.1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가.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3%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한 의견은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가 74.7%로 타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교도관, 의무관은 사형제도 유지 쪽에 더 높은 의견을 보였다.

<표-18> [사례1]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N=264, %)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264	46.2	52.3
소속	교도관	106	22.6	75.5
	교정위원	103	81.6	16.5
	의무관	55	25.5	74.5
종교별	기독교	48	43.8	54.2
	불교	66	40.9	59.1
	천주교	76	76.3	22.4
	기타/없음	74	21.6	75.7
사형찬반여부	반대	97	95.9	4.1
	찬성	163	17.8	80.4

1)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22명)	응답률
· 오관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오관가능성)	68.0%
·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해	9.0%
· 사형제도가 없다면 시간을 두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므로	4.9%
· 사형은 또 다른 살인	4.1%
·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모순	2.5%
· 신중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	1.6%
·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함	1.6%
·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1.6%
· 조작된 재판결과로 사형제도의 악용 우려	1.6%

2) [사례1]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1]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38명)	응답률
· 증거가 확실하여 오관이 없다면 사형집행	18.8%
· 오관의 가능성 적음	13.0%
· 정확한 사전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사형제도 유지	8.0%
· 죄가 없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3.6%
· 제도가 완벽하지 못해 시정이 필요함	3.6%
· 오관의 가능성으로 진실 규명 기회 부여(오관방지위해)	3.6%
· 오관의 가능성이 있어도 사형제도 유지되어야 함	3.6%
· 최종판결은 신중하되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함	3.6%

나.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군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0%로 사형제도 유지 쪽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19> [사례2] 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264,%)

		응답자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264	42.0	56.8
소속	교도관	106	18.9	80.2
	교정위원	103	80.6	17.5
	의무관	55	14.5	85.5
종교별	기독교	48	33.3	64.6
	불교	66	40.9	57.6
	천주교	76	73.7	25.0
	기타/없음	74	16.2	83.8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94.8	5.2
	찬성	163	11.7	87.1

○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타종교에 비해 유지 의견 높았으며 소속별로는 교정위원은 교도관, 의무관과 달리 사형제도 폐지 비율이 높았다

1)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11명)	응답률
· 우발적인 사건	28.8%
· 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14.4%
· 인간의 생명권 존엄성 보호	9.0%
·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함	6.3%
· 군복무중이라는 특수상황을 이해 해줘야 할 것 같아서	6.3%
· 가해자의 정신분석 후 갱생의 길 모색	4.5%
· 사형시켜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3.6%
· 사형은 또 하나의 살인	3.6%
· 어떤 이유로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2.7%
·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형벌집행	2.7%
·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것은 모순	2.7%

2) [사례2]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2]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50명)	응답률
· 사람을 죽인 죄값을 받아야 한다(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12.0%
· 고참사병(타인)의 생명권 존중	8.0%
· 고참병을 죽일만큼의 사건이 아님(놀림당함, 자존심상함)	8.0%
·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 못함	7.3%
· 감정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재범의 가능성이 커서	7.3%
· 군대존속을 위해(군대는 명령우선인데 우선사항을 지키지 못함)	6.7%
· 감정에 의한 살인을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함	6.7%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생각	4.7%
· 현행법 및 사법부 판단 존중	6.7%

다.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여 개월 동안 4차래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7%,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8.6%로 사형제도 유지 의견 이 훨씬 많았다

<표-20> [사례3]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여부 (N=264, %)

		응답자수	폐지되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
전 체		264	30.7	68.6
소속	교도관	106	4.7	94.3
	교정위원	103	70.9	28.2
	의무관	55	5.5	94.5
종교별	기독교	48	20.8	77.1
	불교	66	22.7	77.3
	천주교	76	69.7	28.9
	기타/없음	74	4.1	95.9
사형찬반여부	반대	97	83.5	15.5
	찬성	163	-	100.0

- 응답자 중 교정위원이 사형제도 폐지에 70.9%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교도관, 의무관은 각각 4.7%, 5.5%의 비율을 보여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1)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81명)	응답률
· 교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30.9%
· 사회적, 국가적으로 책임이 있음	18.5%
·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 고취	14.8%
· 사형에 대한 형벌 대신 다른 방법의 형벌을 모색해야 된다	8.7%
· 사형자체가 또 다른 방법의 살인이기 때문에	7.4%
· 흉악범일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4.9%
·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5%
· 죄수가 사라졌다고 그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2.5%
· 장기적으로 범죄문제 해결 방안 마련해야 함	2.5%

2) [사례3]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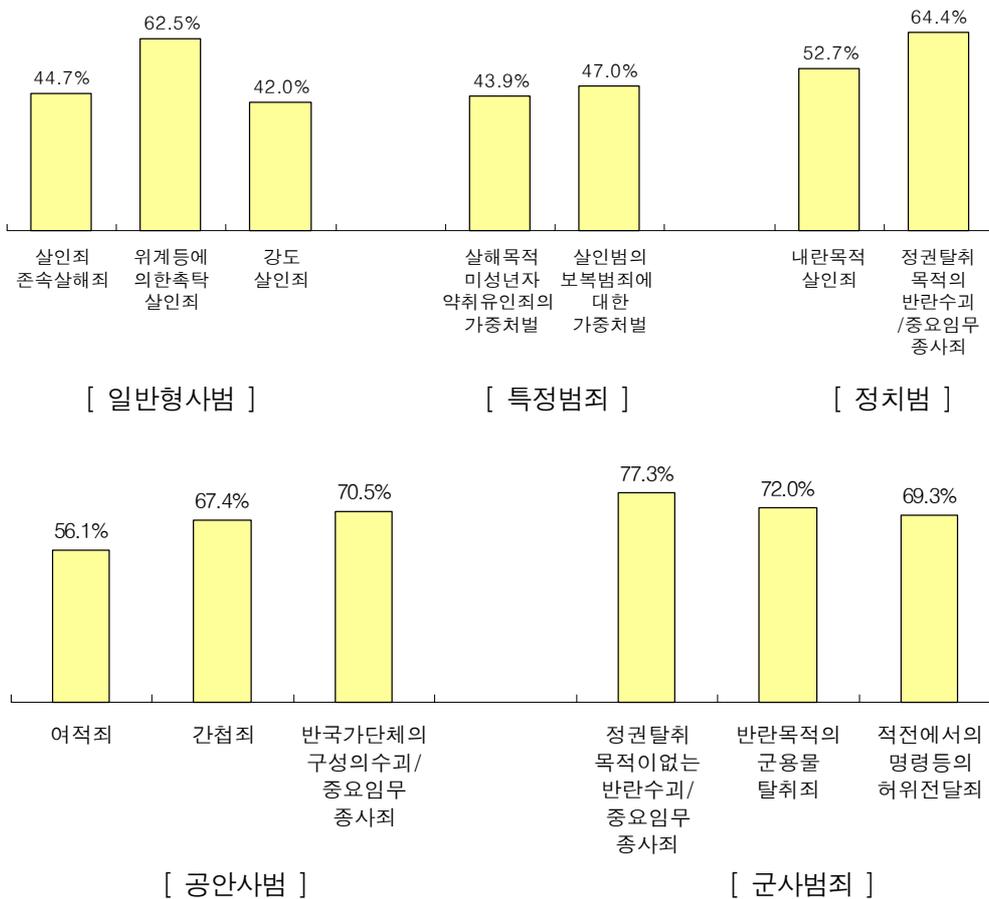
[사례3]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181명)	응답률
· 살해방법이 비인간적이라서	11.0%
· 사회방위 차원 및 범죄예방	6.6%
· 흉악범 및 강력범이기 때문에	6.1%
· 인과응보 (죄의 대가)	4.4%
· 사회적 일소	3.9%
· 피해자 및 가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3.9%
· 인간 생명 및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3.9%
· 사회안전을 위해 영원한 격리 필요	3.9%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서	3.9%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 일반형사범에 해당하는 '위계등에의한축타살인죄는 사형반대가 62.5%로 그 대체형벌로는 감형있는 종신형이 50.3%로 가장 높았다.

-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 '살인범의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사형반대율이 각각 43.9%, 47.0%로 사형찬성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범의 경우는 모두 사형반대의견이 높았으며 '내란목적살인죄와 '정권 탈취목적의 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의 대체형벌로는 모두 감형이 있는 종신형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림-3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한 사형반대율 (N=264)



- 공안사범의 경우도 모두 사형반대의견이 높았으며 그 대체형벌로는 모두 감형이 있는 종신형 의견이 가장 많았다
- 군사범죄의 경우도 역시 모두 사형반대의견이 높았으며 '정권탈취목적이 없는 반란수괴·중요임무중사죄,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의 대체 형벌로는 모두 감형이 있는 종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사형반대율 및 대체형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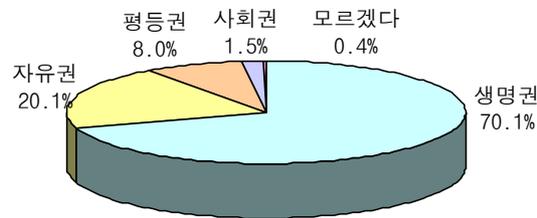
	범죄명	사형 반대율 (%)	대체형벌(%)			
			감형없는 종신형	감형있는 종신형	무기형	기타
민 간 사 범	살인죄·존속살해죄	44.7	19.5	53.4	19.5	7.5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62.5	13.9	50.3	28.5	7.3
	강도살인죄	42.0	16.2	50.5	24.3	9.0
특 정 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43.9	21.6	43.1	24.1	11.3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한가중처벌	47.0	20.2	43.5	23.4	12.9
정 치 범	내란목적살인죄	52.7	20.1	47.5	23.0	9.3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중사죄	64.4	18.8	44.7	22.9	13.6
공 안 사 범	여적죄	56.1	29.7	35.1	23.6	11.5
	간첩죄	67.4	23.0	42.7	22.5	11.8
	반국가단체의구성외수괴·중요임무중사죄	70.5	23.1	40.9	23.7	12.5
군 사 범 죄	정권탈취목적이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중사죄	77.3	15.2	47.5	24.0	13.3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72.0	17.9	43.7	23.7	14.7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69.3	14.2	48.1	21.9	15.7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가. 인간의 기본권

-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명권(70.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유권(20.1%), 평등권(8.0%), 사회권(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37> 인간의 기본권 (N=264)



<표-22> 인간의 기본권 (N=2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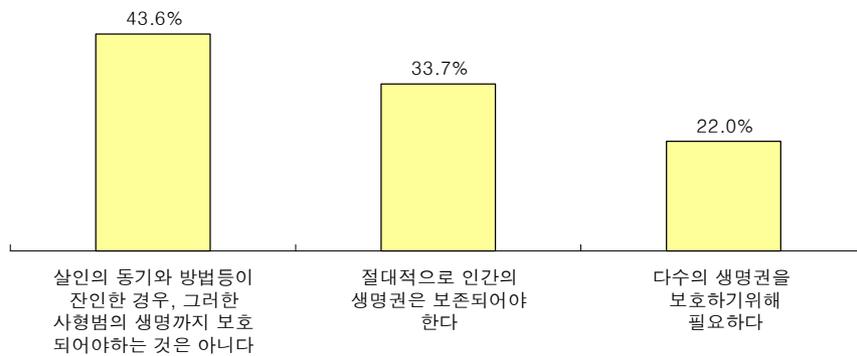
		응답자수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전 체		264	70.1	20.1	8.0	1.5
소속	교도관	106	63.2	23.6	9.4	3.8
	교정위원	103	81.6	12.6	5.8	-
	의무관	55	61.8	27.3	9.1	-
종교별	기독교	48	81.3	14.6	2.1	2.1
	불교	66	63.6	19.7	12.1	4.5
	천주교	76	85.5	11.8	2.6	-
	기타/없음	74	52.7	32.4	13.5	-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85.6	9.3	4.1	-
	찬성	163	60.7	26.4	10.4	2.5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3.6%의 비율을 보였다.

- 교정위원은 절대적 인간의 생명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비율이 71.8%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교도관, 의무관은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8> 사회정의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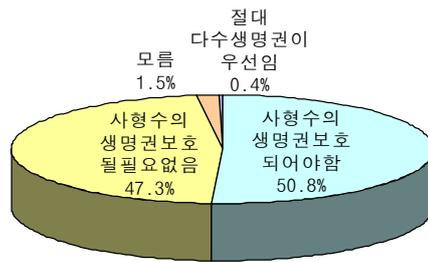
<표-23>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N=264, %)

		응답자수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체		264	43.6	33.7	22.0
소속	교도관	106	58.5	8.5	33.0
	교정위원	103	22.3	71.8	4.9
	의무관	55	54.5	10.9	32.7
종교별	기독교	48	39.6	29.2	31.3
	불교	66	54.5	24.2	21.2
	천주교	76	21.1	69.7	7.9
	기타/없음	74	59.5	8.1	31.1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10.3	84.5	3.1
	찬성	163	63.2	3.7	33.1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0.8%로 나타났으며,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7.3%로 나타났다.
- 생명권보호에 대해서는 교정위원(87.4%)이 교도관(29.2%), 의무관(23.6%)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39>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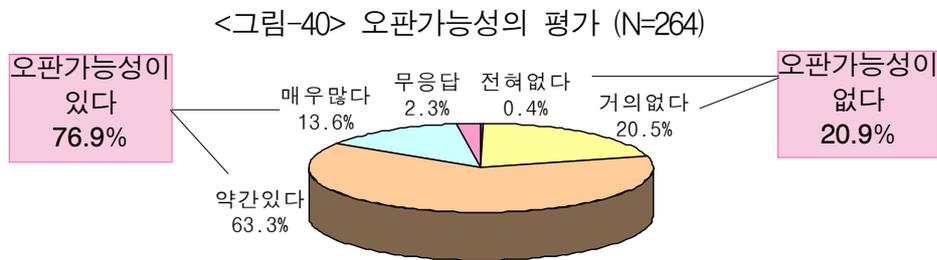


<표-24>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N=264, %)

		응답자수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타인을 죽인 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전 체		264	50.8	47.3
소속	교도관	106	29.2	67.9
	교정위원	103	87.4	12.6
	의무관	55	23.6	72.7
종교별	기독교	48	47.9	47.9
	불교	66	53.0	47.0
	천주교	76	80.3	19.7
	기타/없음	74	20.3	75.7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97.9	1.0
	찬성	163	23.3	74.2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 사법제도 상 잘못된 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6.9%로 나타났다.
- 교도관이나 의무관 교정위원의 경우도 오판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각 57.5%, 93.2%, 83.6%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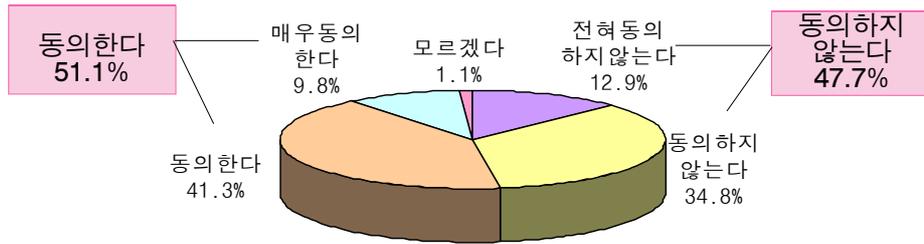
<표-25> 오판가능성에 대한 평가 (N=264,%)

		응답자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4점 평균
전 체		264	0.4	20.5	63.3	13.6	2.92
소속	교도관	106	0.9	41.5	56.6	0.9	2.58
	교정위원	103	-	3.9	61.2	32.0	3.29
	의무관	55	-	10.9	80.0	3.6	2.92
종교별	기독교	48	-	29.2	68.8	2.1	2.73
	불교	66	-	25.8	68.2	4.5	2.78
	천주교	76	-	5.3	52.6	38.2	3.34
	기타/없음	74	1.4	25.7	66.2	4.1	2.75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	4.1	61.9	30.9	3.28
	찬성	163	0.6	30.7	63.8	3.7	2.71

-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데 동의하는 경우는 51.1%로 이 의견에 반대하는 비율 47.7%로 나타났다.

- 이 의견에 대해 교정위원은 찬성하는 비율이 78.6%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교도관은 34.9%, 의무관은 30.9%로 차이를 보였다.

<그림-41> 오판가능성으로 사형제도 폐지 의견 (N=264)



<표-26>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N=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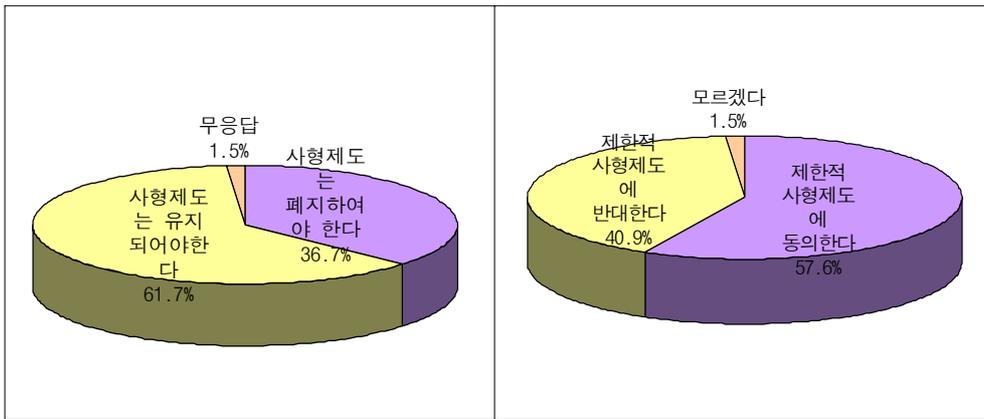
		응답자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4점 평균
전 체		264	12.9	34.8	41.3	9.8	2.49
소속	교도관	106	18.9	46.2	34.0	0.9	2.17
	교정위원	103	1.9	18.4	55.3	23.3	3.01
	의무관	55	21.8	43.6	29.1	1.8	2.11
종교별	기독교	48	22.9	29.2	45.8	2.1	2.27
	불교	66	9.1	47.0	39.4	4.5	2.39
	천주교	76	9.2	9.2	51.3	28.9	3.01
	기타/없음	74	13.5	54.1	29.7	0.0	2.17
사형찬반 여부	반대	97	1.0	11.3	60.8	25.8	3.13
	찬성	163	19.6	49.1	30.1	0.6	2.12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7%로 유지하자는 의견 61.7%보다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 교도관(88.7%), 의무관(87.3%)는 사형제도 유지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교정위원(78.6%)은 사형제도 폐지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형제도를 반사회적 범죄에만 적용하고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57.6%, 동의하지 않음이 40.9%로 나타났다.

<그림-4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N=264)



<표-27> 사형제도의 존폐 및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N=1,064,%)

		응답자수	사형제도 존폐의견		제한적 사형제도	
			폐지	유지	찬성	반대
전 체		264	36.7	61.7	57.6	40.9
소속	교도관	106	9.4	88.7	67.0	33.0
	교정위원	103	78.6	20.4	37.9	60.2
	의무관	55	10.9	87.3	76.4	20.0
종교별	기독교	48	31.3	66.7	62.5	37.5
	불교	66	33.3	63.6	63.6	36.4
	천주교	76	71.1	27.6	34.2	63.2
	기타/없음	74	8.1	91.9	73.0	24.3
사형찬반여부	반대	97	9.4	88.7	37.1	59.8
	찬성	163	78.6	20.4	69.3	30.1

별첨. 설문지

1. 일반국민/시민단체 종사자용 설문지
2. 언론종사자용 설문지
3. 국회의원용 설문지
4. 법조인 용 설문지
5. 사형집행참여자용 설문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지

(일반국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KDN의 조사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정치권, 법조계, 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반국민들과, 국회의원,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교도관 및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와 효과에 대한 의견, 사형의 존폐여부 및 범위, 범죄별 사형 존폐 여부 등 사형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사형제도의 직·간접 피해자 및 범죄피해자의 구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사형제도의 존폐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주관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기관 :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담당연구원 : 이선수 실장

Tel. 02-548-5141 Fax. 02-548-5144, 02-512-0777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지역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경북 13) 경남 14) 전북 15) 전남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나이	만 _____세			조사원 성명				

I.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

문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1.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2.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3.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사형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문2) (문1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2.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하여 갱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4.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5. 법에 의해 결정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6. 기타 _____

문3) (문1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사형수의 경우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3.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4.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 인간의 내부의 악한 마음은 제거가 안 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6. 기타 _____

문4)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십니까?(중복응답)

1. 사형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형벌을 집행하는 데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2.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3.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법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4. 생명경시 현상이 줄어들어 오히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부각될 것이다.
5. 교화가 된 사람들이 많아져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6. 기타 _____

문5)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 여부가 한 국가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전혀 관련이 없다. | 2. 관련이 없다. |
| 3. 관련이 있다. | 4. 매우 관련이 많다. |

문6)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비례의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수의 생명권은 부정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일관성이 없다. | 2. 약간 일관성이 없다. |
| 3.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 | 4. 매우 일관성이 있다. |

문7)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를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환경이 사형제도 폐지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7-1로)
2.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문7-1) 그렇다면, 다음 중 언제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경제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졌을 때
2. 남북한 정치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3. 사회문화 수준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4. 기타 _____

※ 다음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예제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8)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9)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흉악범에 의해 피해를 당한 상황을 가정할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II.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

문10)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반대하는 국회의원 수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1. 적다.
2. 비슷하다.
3. 많다.

문11)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12개국,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83개국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채택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폐지국가 : EU연합 15개국, 니카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남아공화국, 네팔, 캐나다, 칠레, 유고슬라비아, 터키, 홍콩, 우크라이나, 등. 존치국가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

1.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2.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3.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문12) 사형제도를 폐지한 112개국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국가들인 것 같습니까?

문13) 형벌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범죄예방 또는 범죄억제에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잘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 2.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 3. 반반이다/잘 모르겠다.
- 4. 부합되는 편이다.
- 5. 매우 부합된다.

문14)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범죄율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범죄율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 4.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문15) 현재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1. 50명 미만
- 2. 50명~100명 미만
- 3. 100~150명 미만
- 4. 150~200명 미만
- 5. 200명 이상
- 6. 기타 _____

문15-1) 법원이 사형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1. 사형집행을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
- 2.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형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에 한하여 사형집행을 연기하거나, 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 이외의 사형수는 집행되어야 한다.

문16) 우리나라는 사형수와 일반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격리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 (→문 16-1)
- 2. 현재처럼 함께 수용해야 한다.

문16-1) 왜 귀하는 사형수와 일반수용자를 격리수용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7)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수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일반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사형수들은 언젠가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18) 만약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사형수도 교정 및 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수의 경우는 교정 및 교화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다.
- 2. 사형수라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정 및 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19)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수형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다른 집행방법보다는 교수형이 가장 적절하다.
2. 총살형
3. 전기의자형
4. 독극물형
5. 주사형
6. 기타 _____

문20) 만약 귀하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21) 피해자가족에게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1. 유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학비 등을 제공
2. 유가족에 대한 취업상의 혜택
3. 위로금의 지급
4. 신경정신적 치료
5. 사형수 및 사형수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6. 기타 _____

문22)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예 (→문 22-1)
2. 아니오

문22-1) 그렇다면, 사형수의 가족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문23) [사례1]을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균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문24) [사례2]를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 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 6여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문25) [사례3]을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5-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6) [사례3]의 경우 사형 집행 시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 현행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음)

1.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문27) 현재 우리나라에는 50여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의 집행 시기는 언제가 적합한 것 같습니까?

1. 현행법상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형집행을 계속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형선고를 받고 1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좋다.
3. 오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 좋다.
4. 사형 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5. 기타 _____

문28)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범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안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명		찬 반		대 체 형 벌	
		사형찬성	사형반대		
일반형사범	살인죄·존속살해죄 (존속살해라함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가족이 죽음을 강요하여 죽인 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강도살인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특정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하기중처벌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정치범	내란목적살인죄 (국토를 잠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공안사범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간첩죄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반국가단체의구성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군사범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문36)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수에게 사형집행 날짜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집행 일자를 사형수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2. 현행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문 36-1)

문36-1)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7) 마지막으로 귀하는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VI. 응답자 특성

D1) 성별 (조사원 체크) : 1. 남자 2. 여자

D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만 24세 이하 2. 만 25~29세 이하 3. 만 30~34세 이하 4. 만 35~39세 이하
5. 만 40~44세 이하 6. 만 45~49세 이하 7. 만 50~54세 이하 8. 만 55~59세 이하
9. 만 60세 이상

D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도/ 시 () 구

D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기타 _____ 5. 없다

D5) 귀하의 학력은?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 졸업 이상

D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전문직 2. 사무직(사무직 공무원포함) 3. 단순노무직
4. 자영업 5. 판매/서비스/영업직 6. 농림/어업/축산업
7. 주부 8. 학생 9. 무직
10. 기타 _____

D7)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150만원 미만 2. 150만원~200만원 미만 3. 200만원~250만원 미만
4. 250~300만원 미만 5. 300만원~350만원 미만 6. 350만원~400만원 미만
7. 400만원 이상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지

(언론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KDN의 조사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정치권, 법조계, 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반국민들과, 국회의원,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교도관 및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와 효과에 대한 의견, 사형의 존폐여부 및 범위, 범죄별 사형 존폐 여부 등 사형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사형제도의 직·간접 피해자 및 범죄피해자의 구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사형제도의 존폐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주관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기관 :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웍

담당연구원 : 이선수 실장

Tel. 02-548-5141 Fax. 02-548-5144, 02-512-0777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지역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경북 13) 경남 14) 전북 15) 전남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나이	만 _____세			조사원 성명				

I.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

문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1.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2.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3.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사형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문2) (문1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2.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하여 갱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4.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5. 법에 의해 결정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관의 가능성이 있다.
6. 기타 _____

문3) (문1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사형수의 경우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3.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4.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 인간의 내부의 악한 마음은 제거가 안 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6. 기타 _____

문4)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십니까?(중복응답)

1. 사형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형벌을 집행하는 데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2.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3.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법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4. 생명경시 현상이 줄어들어 오히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부각될 것이다.
5. 교화가 된 사람들이 많아져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6. 기타 _____

문5)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 여부가 한 국가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전혀 관련이 없다. | 2. 관련이 없다. |
| 3. 관련이 있다. | 4. 매우 관련이 많다. |

문6)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비례의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수의 생명권은 부정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2. 약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 3.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4. 매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문7)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를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환경이 사형제도 폐지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7-1로)
2.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문7-1) 그렇다면, 다음 중 언제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경제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졌을 때
2. 남북한 정치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3. 사회문화 수준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4. 기타 _____

※ 다음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예제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8)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9)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흉악범에 의해 피해를 당한 상황을 가정할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II.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

문10)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반대하는 국회의원 수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1. 적다.
2. 비슷하다.
3. 많다.

문11)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12개국,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83개국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채택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폐지국가 : EU연합 15개국, 니카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남아공화국, 네팔, 캐나다, 칠레, 유고슬라비아, 터키, 홍콩, 우크라이나, 등. 존치국가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

1.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2.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3.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문12) 사형제도를 폐지한 112개국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국가들인 것 같습니까?

문13) 형벌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범죄예방 또는 범죄억제에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잘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 2.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 3. 반반이다/잘 모르겠다.
- 4. 부합되는 편이다.
- 5. 매우 부합된다.

문14)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범죄율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범죄율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는 거의 관계가 없다
- 4.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문15) 현재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1. 50명 미만
- 2. 50명~100명 미만
- 3. 100~150명 미만
- 4. 150~200명 미만
- 5. 200명 이상
- 6. 기타 _____

문15-1) 법원이 사형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 1. 사형집행을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
- 2.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형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에 한하여 사형집행을 연기하거나, 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 이외의 사형수는 집행되어야 한다.

문16) 우리나라는 사형수와 일반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격리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 (→문 16-1)
- 2. 현재처럼 함께 수용해야 한다.

문16-1) 왜 귀하는 사형수와 일반수용자를 격리수용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7)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수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일반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사형수들은 언젠가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18) 만약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사형수도 교정 및 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수의 경우는 전혀 교정 및 교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
- 2. 사형수라도 똑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정 및 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19)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수형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다른 집행방법보다는 교수형이 가장 적절하다.
- 2. 총살형
- 3. 전기의자형
- 4. 독극물형
- 5. 주사형
- 6. 기타 _____

문20) 만약 귀하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21) 피해자가족에게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 1. 유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학비 등을 제공
- 2. 유가족에 대한 취업상의 혜택
- 3. 위로금의 지급
- 4. 신경정신적 치료
- 5. 사형수 및 사형수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6. 기타 _____

문22)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문 22-1)
- 2. 아니오

문22-1) 그렇다면, 사형수의 가족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문23) [사례1]을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균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문24) [사례2]를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 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 6여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문25) [사례3]을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5-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6) [사례3]의 경우 사형 집행 시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 현행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음)

1.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문27) 현재 우리나라에는 50여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의 집행 시기는 언제가 적합한 것 같습니까?

1. 현행법상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형집행을 계속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형선고를 받고 1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좋다.
3. 오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 좋다.
4. 사형 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5. 기타 _____

문28)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범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안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명		찬 반		대 체 형 벌	
		사형찬성	사형반대		
일반형사범	살인죄·존속살해죄 (존속살해라함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가족이 죽음을 강요하여 죽인 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강도살인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특징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하기중처벌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정치범	내란목적살인죄 (국토를 잠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공안사범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간첩죄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반국가단체의구성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군사범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지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KDN의 조사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정치권, 법조계, 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반국민들과, 국회의원,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교도관 및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와 효과에 대한 의견, 사형의 존폐여부 및 범위, 범죄별 사형 존폐 여부 등 사형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사형제도의 직·간접 피해자 및 범죄피해자의 구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사형제도의 존폐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주관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기관 :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웍

담당연구원 : 이선수 실장

Tel. 02-548-5141 Fax. 02-548-5144, 02-512-0777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지역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경북 13) 경남 14) 전북 15) 전남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나이	만 _____세 조사원 성명

I.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

문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1.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2.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3.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사형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문2) (문1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2.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하여 갱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4.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5. 법에 의해 결정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관의 가능성이 있다.
6. 기타 _____

문3) (문1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사형수의 경우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3.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4.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 인간의 내부의 악한 마음은 제거가 안 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6. 기타 _____

문4)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십니까?(중복응답)

1. 사형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형벌을 집행하는 데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2.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3.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법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4. 생명경시 현상이 줄어들어 오히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부각될 것이다.
5. 교화가 된 사람들이 많아져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6. 기타 _____

문5)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 여부가 한 국가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전혀 관련이 없다. | 2. 관련이 없다. |
| 3. 관련이 있다. | 4. 매우 관련이 많다. |

문6)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비례의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수의 생명권은 부정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2. 약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 3.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4. 매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문7)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를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환경이 사형제도 폐지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7-1로)
2.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문7-1) 그렇다면, 다음 중 언제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경제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졌을 때
2. 남북한 정치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3. 사회문화 수준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4. 기타 _____

※ 다음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예제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8) 만약에 의원님의 가족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9) 만약에 의원님의 가족이 흉악범에 의해 피해를 당한 상황을 가정할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II.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

문10)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반대하는 국회의원 수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1. 적다.
2. 비슷하다.
3. 많다.

문11)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12개국,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83개국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채택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폐지국가 : EU연합 15개국, 니카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남아공화국, 네팔, 캐나다, 칠레, 유고슬라비아, 터키, 홍콩, 우크라이나, 등. 존치국가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

1.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2.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3.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문12) 사형제도를 폐지한 112개국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국가들인 것 같습니까?

문13) 형벌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범죄예방 또는 범죄억제에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잘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 2.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 3. 반반이다/잘 모르겠다.
- 4. 부합되는 편이다.
- 5. 매우 부합된다.

문14)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범죄율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범죄율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 4.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문15) 현재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1. 50명 미만
- 2. 50명~100명 미만
- 3. 100~150명 미만
- 4. 150~200명 미만
- 5. 200명 이상
- 6. 기타 _____

문15-1) 법원이 사형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1. 사형집행을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
- 2.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형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에 한하여 사형집행을 연기하거나, 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 이외의 사형수는 집행되어야 한다.

문16) 우리나라는 사형수와 일반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은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격리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 (→문 16-1)
- 2. 현재처럼 함께 수용해야 한다.

문16-1) 왜 의원님은 사형수와 일반수용자를 격리수용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7)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수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일반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사형수들은 언젠가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18) 만약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사형수도 교정 및 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수의 경우는 전혀 교정 및 교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
- 2. 사형수라도 똑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정 및 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19)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수형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다른 집행방법보다는 교수형이 가장 적절하다.
- 2. 총살형
- 3. 전기의자형
- 4. 독극물형
- 5. 주사형
- 6. 기타 _____

문20) 만약 의원님이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21) 피해자가족에게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 1. 유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학비 등을 제공
- 2. 유가족에 대한 취업상의 혜택
- 3. 위로금의 지급
- 4. 신경정신적 치료
- 5. 사형수 및 사형수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6. 기타 _____

문22)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문 22-1)
- 2. 아니오

문22-1) 그렇다면, 사형수의 가족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문23) [사례1]을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균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문24) [사례2]를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 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 6여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문25) [사례3]을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5-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6) [사례3]의 경우 사형 집행 시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 현행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음)

1.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문27) 현재 우리나라에는 50여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의 집행 시기는 언제가 적합한 것 같습니까?

1. 현행법상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형집행을 계속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형선고를 받고 1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좋다.
3. 오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 좋다.
4. 사형 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5. 기타 _____

문28)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범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안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명		찬 반		대 체 형 벌	
		사형찬성	사형반대		
일반형사범	살인죄·존속살해죄 (존속살해라함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가족이 죽음을 강요하여 죽인 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강도살인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특정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하기중처벌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정치범	내란목적살인죄 (국토를 잠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공안사범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간첩죄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반국가단체의구성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군사범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문36)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수에게 사형집행 날짜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집행 일자를 사형수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2. 현행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문 36-1)

문36-1)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7)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높을 경우, 사형제도의 폐지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문38) 일반국민이 아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음은 자료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D1) 성별 (조사원 체크) : 1. 남자 2. 여자

D2) 의원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만 24세 이하 2. 만 25~29세 이하 3. 만 30~34세 이하 4. 만 35~39세 이하
5. 만 40~44세 이하 6. 만 45~49세 이하 7. 만 50~54세 이하 8. 만 55~59세 이하
9. 만 60세 이상

D3) 의원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도/ 시 () 구

D4) 의원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기타 _____ 5. 없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지

(법조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KDN의 조사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정치권, 법조계, 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반국민들과, 국회의원,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교도관 및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와 효과에 대한 의견, 사형의 존폐여부 및 범위, 범죄별 사형 존폐 여부 등 사형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사형제도의 직·간접 피해자 및 범죄피해자의 구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사형제도의 존폐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주관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기관 :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담당연구원 : 이선수 실장

Tel. 02-548-5141 Fax. 02-548-5144, 02-512-0777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지역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경북 13) 경남 14) 전북 15) 전남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나이	만 _____세 조사원 성명

I.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

문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1.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2.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3.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사형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문2) (문1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2.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하여 갱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4.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5. 법에 의해 결정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관의 가능성이 있다.
6. 기타 _____

문3) (문1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사형수의 경우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3.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4.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 인간의 내부의 악한 마음은 제거가 안 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6. 기타 _____

문4)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십니까?(중복응답)

1. 사형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형벌을 집행하는 데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2.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3.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법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4. 생명경시 현상이 줄어들어 오히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부각될 것이다.
5. 교화가 된 사람들이 많아져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6. 기타 _____

문5)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 여부가 한 국가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전혀 관련이 없다. | 2. 관련이 없다. |
| 3. 관련이 있다. | 4. 매우 관련이 많다. |

문6)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비례의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수의 생명권은 부정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2. 약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 3.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4. 매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문7)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를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환경이 사형제도 폐지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7-1로)
2.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문7-1) 그렇다면, 다음 중 언제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경제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졌을 때
2. 남북한 정치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3. 사회문화 수준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4. 기타 _____

※ 다음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예제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8)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9)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흉악범에 의해 피해를 당한 상황을 가정할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II.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

문10)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반대하는 국회의원 수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1. 적다.
2. 비슷하다.
3. 많다.

문11)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12개국,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83개국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채택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폐지국가 : EU연합 15개국, 니카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남아공화국, 네팔, 캐나다, 칠레, 유고슬라비아, 터키, 홍콩, 우크라이나, 등. 존치국가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

1.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2.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3.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문12) 사형제도를 폐지한 112개국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국가들인 것 같습니까?

문13) 형벌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범죄예방 또는 범죄억제에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잘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 2.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 3. 반반이다/잘 모르겠다.
- 4. 부합되는 편이다.
- 5. 매우 부합된다.

문14)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범죄율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범죄율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 4.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문15) 현재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1. 50명 미만
- 2. 50명~100명 미만
- 3. 100~150명 미만
- 4. 150~200명 미만
- 5. 200명 이상
- 6. 기타 _____

문15-1) 법원이 사형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1. 사형집행을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
- 2.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형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에 한하여 사형집행을 연기하거나, 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 이외의 사형수는 집행되어야 한다.

문16) 우리나라는 사형수와 일반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격리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 (→문 16-1)
- 2. 현재처럼 함께 수용해야 한다.

문16-1) 왜 귀하는 사형수와 일반수용자를 격리수용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7)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수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일반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사형수들은 언젠가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18) 만약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사형수도 교정 및 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수의 경우는 전혀 교정 및 교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
- 2. 사형수라도 똑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정 및 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19)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수형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다른 집행방법보다는 교수형이 가장 적절하다.
- 2. 총살형
- 3. 전기의자형
- 4. 독극물형
- 5. 주사형
- 6. 기타 _____

문20) 만약 귀하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21) 피해자가족에게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 1. 유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학비 등을 제공
- 2. 유가족에 대한 취업상의 혜택
- 3. 위로금의 지급
- 4. 신경정신적 치료
- 5. 사형수 및 사형수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6. 기타 _____

문22)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문 22-1)
- 2. 아니오

문22-1) 그렇다면, 사형수의 가족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문23) [사례1]을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균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문24) [사례2]를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 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 6여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문25) [사례3]을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5-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6) [사례3]의 경우 사형 집행 시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 현행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음)

1.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문27) 현재 우리나라에는 50여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의 집행 시기는 언제가 적합한 것 같습니까?

1. 현행법상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형집행을 계속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형선고를 받고 1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좋다.
3. 오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 좋다.
4. 사형 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5. 기타 _____

문28)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범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안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명		찬반		대 체 형 벌	
		사형찬성	사형반대		
일반형사범	살인죄·존속살해죄 (존속살해라함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가족이 죽음을 강요하여 죽인 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강도살인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특정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하기중처벌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정치범	내란목적살인죄 (국토를 잠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공안사범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간첩죄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반국가단체의구성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군사범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문36)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수에게 사형집행 날짜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집행 일자를 사형수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2. 현행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문 36-1)

문36-1)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7) 귀하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 판결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문38)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판결을 내리면서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을 고려하였는데 우리의 상황이 사형을 존속시킬 만큼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39) 사형을 집행하면, 우리사회의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40) 현재 우리나라는 지문/DNA 검사 등 과학적인 수사를 도입하여 오판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오판률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1% 이하, 2. 2~5% 이하, 3. 6~10% 이하, 4. 11~20% 이하, 5. 21% 이상

문41) 법조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음은 자료 분류용 질문입니다.

D1) 성별 (조사원 체크) : 1. 남자 2. 여자

D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만 24세 이하 2. 만 25~29세 이하 3. 만 30~34세 이하 4. 만 35~39세 이하
5. 만 40~44세 이하 6. 만 45~49세 이하 7. 만 50~54세 이하 8. 만 55~59세 이하
9. 만 60세 이상

D4)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기타 _____ 5. 없다

문4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직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KDN의 조사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정치권, 법조계, 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반국민들과, 국회의원,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교도관 및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와 효과에 대한 의견, 사형의 존폐여부 및 범위, 범죄별 사형 존폐 여부 등 사형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사형제도의 직·간접 피해자 및 범죄피해자의 구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사형제도의 존폐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주관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기관 :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담당연구원 : 이선수 실장

Tel. 02-548-5141 Fax. 02-548-5144, 02-512-0777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지역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경북 13) 경남 14) 전북 15) 전남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나이	만 _____세			조사원 성명				

I.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

문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1.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2.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3.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사형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문2) (문1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2.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하여 갱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4.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5. 법에 의해 결정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관의 가능성이 있다.
6. 기타 _____

문3) (문1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1. 사형수의 경우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3.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4.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 인간의 내부의 악한 마음은 제거가 안 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6. 기타 _____

문4)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십니까?(중복응답)

1. 사형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형벌을 집행하는 데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2.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범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3.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법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4. 생명경시 현상이 줄어들어 오히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부각될 것이다.
5. 교화가 된 사람들이 많아져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6. 기타 _____

문5)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 여부가 한 국가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전혀 관련이 없다. | 2. 관련이 없다. |
| 3. 관련이 있다. | 4. 매우 관련이 많다. |

문6)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비례의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수의 생명권은 부정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2. 약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 3.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4. 매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문7)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를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환경이 사형제도 폐지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 (문7-1로)
2.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여건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거나 안정되었다.

문7-1) 그렇다면, 다음 중 언제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경제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졌을 때
2. 남북한 정치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3. 사회문화 수준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4. 기타 _____

※ 다음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예제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8)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9)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흉악범에 의해 피해를 당한 상황을 가정할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II.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

문10)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반대하는 국회의원 수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1. 적다.
2. 비슷하다.
3. 많다.

문11)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12개국,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83개국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채택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폐지국가 : EU연합 15개국, 니카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남아공화국, 네팔, 캐나다, 칠레, 유고슬라비아, 터키, 홍콩, 우크라이나, 등. 존치국가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

1.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2.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3.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문12) 사형제도를 폐지한 112개국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국가들인 것 같습니까?

문13) 형벌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범죄예방 또는 범죄억제에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잘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2.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3. 반반이다/잘 모르겠다.
4. 부합되는 편이다.
5. 매우 부합된다.

문14)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범죄율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범죄율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4.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문15) 현재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 50명 미만
2. 50명~100명 미만
3. 100~150명 미만
4. 150~200명 미만
5. 200명 이상
6. 기타 _____

문15-1) 법원이 사형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사형집행을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
2. 사형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형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형수에 한하여 사형집행을 연기하거나, 무기로 감형되는 사형수 이외의 사형수는 집행되어야 한다.

문16) 우리나라는 사형수와 일반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격리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 (→문 16-1)
2. 현재처럼 함께 수용해야 한다.

문16-1) 왜 귀하는 사형수와 일반수용자를 격리수용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7)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사형수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일반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사형수들은 언젠가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18) 만약 사형수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사형수도 교정 및 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수의 경우는 전혀 교정 및 교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
2. 사형수라도 똑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정 및 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19)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수형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다른 집행방법보다는 교수형이 가장 적절하다.
- 2. 총살형
- 3. 전기의자형
- 4. 독극물형
- 5. 주사형
- 6. 기타 _____

문20) 만약 귀하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원한·증오·미움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21) 피해자가족에게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 1. 유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학비 등을 제공
- 2. 유가족에 대한 취업상의 혜택
- 3. 위로금의 지급
- 4. 신경정신적 치료
- 5. 사형수 및 사형수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6. 기타 _____

문22)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사형수의 가족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문 22-1)
- 2. 아니오

문22-1) 그렇다면, 사형수의 가족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사례1]

A는 1981년 2월 야간당직을 하던 이모씨를 과도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982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A는 공판과정에서 “사건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거물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발견한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198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계인사 1,200여명이 구명탄원서를 냈다. 이후 1988년 A는 무기로 감형되었으며,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후에는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문23) [사례1]을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2]

B는 군복무중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쏘아 죽여 균형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B는 그 후 사형이 집행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문24) [사례2]를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3]

1994년 현실사회에 불만을 가져온 4명이 조직을 결성한 후,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한 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하는 등 6여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되어 조직원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어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문25) [사례3]을 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25-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6) [사례3]의 경우 사형 집행 시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 현행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음)

1.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문27) 현재 우리나라에는 50여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의 집행 시기는 언제가 적합한 것 같습니까?

1. 현행법상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형집행을 계속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형선고를 받고 1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좋다.
3. 오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 좋다.
4. 사형 최종판결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경과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재소기간 중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5. 기타 _____

문28)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범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안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명		찬 반		대 체 형 벌	
		사형찬성	사형반대		
일반형사범	살인죄·존속살해죄 (존속살해라함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가족이 죽음을 강요하여 죽인 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강도살인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특정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하기중처벌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정치범	내란목적살인죄 (국토를 잠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공안사범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간첩죄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반국가단체의구성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군사범죄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1	2	1. 감형없는 종신형 3. 무기형	2. 감형이 있는 종신형 4. 기타_____

문36)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수에게 사형집행 날짜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집행 일자를 사형수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2. 현행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문 36-1)

문36-1)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7) 일반수용자와 사형수를 같이 수용하고 있는 현행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문37-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 이유(문37에서 찬성응답자) :

반대 이유(문37에서 반대응답자) :

문38) 사형집행 전 사형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면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당연히 만나게 해야 한다.
2. 만나게 하되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3. 외부와의 접촉은 죽는 날까지 억제 되어야 한다.

문39)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의 수용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1. 일반수용자와 비슷하다.
2. 일반수용자보다 훨씬 교화가 빨리 된다.
3. 일반수용자에 비해 교화가 늦게 된다.
4. 잘 모르겠다.

문40) 귀하는 사형집행에 참관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40-1번 문항으로)
2. 없다.(41번 문항으로)

문40-1) 사형집행 시 완전히 교화된 사형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40-2) 그 경우 사형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